季刊 1979年 3月 13日 登錄
登錄番號 바-565

제11권 제3호 1989 가을

韓國開發研究

情報化와 産業組織 李 奎 億

經濟構造의 變動과 經濟豫測 沈 相 達
—變動係數벡터自己回歸모델을 이용한 分析—

醫療保險制度의 所得再分配效果 權 純 源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 理事會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宋 大 熙 李 興 宰

廣告業의 産業組織과 政府規制改善方案 劉 承 旻

家計資産蓄積經路에 대한 考察 金 寬 永

KDI 韓國開發研究院

季刊 韓國開發研究

제 11 권 제 3 호 1989 가을

情報化와 産業組織 ……李 奎 億… 3

經濟構造의 變動과 經濟豫測
—變動係數벡터自己回歸모델을 이용한 分析— ….沈 相 達… 39

醫療保險制度의 所得再分配效果 ……權 純 源… 61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 理事會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宋 大 熙, 李 興 宰… 87

廣告業의 産業組織과 政府規制改善方案 ……劉 承 旻…103

家計資産蓄積經路에 대한 考察 ……金 寬 永…131

編 輯 陣

委員長 兪 正 鎬
幹 事 左 承 喜
委 員 權 純 源 朴 埈 卿
宋 大 熙 沈 相 達
編 輯 申 東 祚

編輯問議 : 編輯委員會(960-0084)
購讀問議 : 發刊資料相談室(960-3283)

論評 및 書評 寄稿案內

本 季刊誌는 本誌에 發表된 論文과 本院에서 發刊되는 研究叢書 및 其他報告書에 대한 院內外 專門家들의 論評 혹은 書評을 揭載하고 있읍니다.

研究主題 및 그 內容과 관련되는 研究方法論 혹은 國家政策上의 爭點을 表出시켜 向後의 研究課題와 政策方向 設定에 寄與하고, 아울러 實質的이고 建設的인 批判과 討論의 習慣을 造成하자는 것이 그 趣旨입니다. 이를 諒知하시어 아래와 같은 要領에 의하여 虛心坦懷한 所感과 批評을 寄稿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길이는 200字 原稿紙 基準 30枚 內外로 限定하되 原稿紙에 淨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論評은 該當論文에 담긴 誤謬 혹은 爭點을 內容으로 하여 가급적 論文이 發刊된 후 3個月 以內로, 書評은 該當報告書의 主要內容 紹介, 寄與度 및 問題點 評價, 그리고 向後 研究課題 提示를 內容으로 하되 原則的으로 報告書가 發刊된 후 6個月 以內로 作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原稿는 郵便 혹은 人便으로 『韓國開發研究』編輯委員長에게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寄稿된 論評과 書評은 本院 所定의 審査節次를 거치도록 되어 있읍니다. 論評은 該當論文 執筆者의 應答과 함께 揭載하겠읍니다. 채택된 原稿는 稿料를 支給합니다.

情報化와 産業組織

李 奎 億

尖端 情報·通信技術의 革新이 초래하는 情報化는 産業의 情報化와 情報의 産業化를 촉진하면서 企業의 生産, 經營體制의 流動化, 産業間 接面의 증대와 技術의 融合, 企業間 情報連結組織의 확충, 情報의 擴散과 集中에 수반되는 새로운 競爭構造, 企業間의 情報化隔差에 따른 市場構造의 변화, 企業間의 垂直的 情報系列化의 형성, 流通體系의 개편 등을 통하여 産業構造와 産業組織에 커다란 變革을 초래함과 아울러 情報化는 情報財의 內在的 特性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市場의 開放性과 閉鎖性을 높이는 效果를 함께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금후 情報化를 추진하면서 각 市場에서 競爭의 活力을 고양하고 일부 經濟先進國과의 情報化隔差를 좁혀 새로운 國際競爭力을 배양할 수 있도록 公共政策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本稿는 이러한 問題意識에서 情報化의 意味와 效果를 産業組織論의 視角에서 정리하고 금후 情報化에 대응하는 政策의 基本方向을 概括的으로 제시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I. 序 言

半導體技術의 혁신과 光通信技術의 출현은 情報·通信技術을 革命的으로 變革하여 각종의 新媒體(new media)가 도입되고 있다[1]. 情報·通信技術의 革新은 産業革命 이래 産業化를 추진해 온 力學的 技術의 발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規模와 速度로 業種의 境界를 넘는 橫斷的인 産業革新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情報通信革命이라고 할 수 있는 技術發展의 영향은 단지 産業分野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經濟·社會·文化 등에 걸쳐 종래의 行動樣式·思考方式·組織과 關係 등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총괄적으로 情報化(informationalization)라고 한다.

筆者 : 本院 先任硏究委員

* 本稿는 情報化에 관한 최근의 理論的·制度的·實務的 論議의 결과를 産業組織論 및 競爭政策의 視角을 중심으로 概觀하여 금후 이 문제에 관한 硏究를 위한 參考資料로서 작성한 것이다.

1) 新媒體가 갖고 있는 特質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情報는 傳達을 위해 選擇되고 組織된 資料로서 表示·記號 등의 수단에 의해 事物과 現象이 갖는 曖昧性을 줄이고 不確實性을 감소시켜 이를 통하여 각 주체의 意思決定에 영향을 주는 機能을 발휘한다[2]. 知識을 貯量(stock)化된 情報로 본다면 知識의 貯量을 流量(flow)化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情報이며 또한 知識이라는 貯量에 새롭게 추가하는 活動으로서 작용하는 것도 情報이다. 情報化의 行態的 意味는 過去·現在 및 未來에 걸친 組織의 활동을 모든 構成員이 이해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照會할 수 있는 형태로 基本的 諸槪念을 조합하여 整理·體系化·記載·保存하는 것이다[3]. 그러므로 情報化는 각종의 情報를 좀더 廣範·迅速·低廉하게 蒐集·傳達함으로써 종래에는 완전히 알 수 없었던 여러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즉 情報化는 社會의 모든 측면에 걸쳐 情報의 含有量과 情報의 流通量이 많아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情報化라는 槪念은 세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4]. 첫째로 社會에 있어서 生産·加工·傳達·保存·活用되는 情報의 量이 人的·物的 資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대하는 것이며, 둘째로 情報의 生産·加工·傳達·保存·活用에 투하되는 人的·物的 資源이 다른 用途에 투하되는 資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며, 셋째로 有形의 物的 財貨에 의한 物的 機能에 비하여 無形의 情報에 의한 情報機能이 갖는 의미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情報化는 人間의 選擇範圍를 넓히고 滿足을 추구하는 手段의 종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人間間의 接觸과 關係도 변화시킨다. 情報는 傳達手段인 媒體와 전달되는 意味內容(message)이 一體가 되어 傳達·共有됨으로써 여러가지 組織과 關係를 뒷받침하고 매개하는 社會神經系를 형성함과 아울러 다수의 主體를 組織과 關係 속에 편입시킨다. 媒體와 意味內容은 불가분의 것이나 같은 意味內容이라도 媒體가 다름에 따라 組織과 關係를 달리 구성하고 媒體의 特性에 따라 다양한 意味內容의 空間을 조성한다. 人間은 다수의 媒體를 이용하면서 여러가지로 專門·分化된 機能을 맡는 組織과 多層的 關係를 형성함으로써 다양하게 分化된 組織·關係·情報의 三角的 機能空間에서 매우 選擇的인 生活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5].

수 있다. 즉 ①情報의 空間的 遊離가 순간적으로 연결되며 情報의 選別·加工 등의 처리도 고속으로 수행되는 高速性 ②情報機器의 발달에 의해 異質·大量의 情報의 傳達·處理·蓄積이 가능하게 된 大量性 ③팩시밀리·컴퓨터 등에 의한 情報의 記錄性 ④투입된 한 단위의 情報를 다른 여러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多重性 ⑤다수의 受信者에 동시에 情報를 送信할 수 있는 同報性 ⑥音聲·映像·文字에 의한 情報의 兩方向傳達이 가능하게 되는 兩方向性 ⑦임의의 加入者들을 接續하여 情報를 전달할 수 있는 自動交換性 ⑧大容量 機器와 이에 접속되어 광범위하게 분산된 端末機에 의해 대규모의 情報傳達體系가 구축되어 情報의 集中處理가 가능하게 되는 반면 小規模 機器의 性能이 향상되어 분산된 영역에서의 情報處理의 量과 質이 개선되고 이를 온라인으로 接續함으로써 고도의 能力이 발휘되는 集中性과 分散性 ⑨情報傳達·蓄積·處理體系의 入力·出力機構가 機械化·電子化에 의해 쉽게 되고 高速化되는 入出力의 簡易化와 高速化 등이다. 龍澤菊太郎·小川英次 編(1988) 참조.

2) 宮澤健一(1988).

3) 壹岐晃才·木村立夫·影山喜一 編(1986).

4) 太田文平(1984).

5) 組織·關係·情報의 機能空間의 類型을 분류한다면 家庭 혹은 組織內의 自然發生的인 非公式集團과 같이 非定型的 情報를 가지며 內部結合

이런 의미에서 人間社會의 歷史는 情報化過程으로 볼 수 있다. 前近代를 自然의 길(soft path), 産業化時代를 人工의 길(hard path)이라고 한다면 情報化時代의 길은 近代化·産業化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人間·人工·自然의 조화있는 共存을 모색하는 調和의 길(holonic path)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6]. 이를 産業化過程에서 보면 自然을 상대로 하는 農業化段階에서 加工된 自然을 상대로 하는 工業化段階를 거쳐 人間相互間의 作用을 중시하는 超工業化 내지 情報化段階로 이행하는 것이다.

西歐에서 近代化·工業化를 추진한 原理는 科學技術面에서는 原子論이며 政治·社會·經濟面에서는 個人主義로서 모두 要素還元主義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체를 균일한 要素·個體·機能으로 환원함으로써 균일한 機械的 處理가 가능하게 되고 機械化·人工化가 진전되어 여러 분야에서 集中化·集積化·巨大化가 진행되었다. 經濟에서는 사람들의 균일한 欲求를 전제로 균일한 商品을 신속하게 大量生産하는 것이 中心課題로 되어 機械的 處理와 機能主義에 의해 規模의 經濟가 추구되었으며 政治에서는 各人의 投票의 價値는 같다는 것을 전제로 多數決原則이 채택되었다. 情報化는 바로 이러한 産業社會의 組織原理를 수정하여 個體間의 差異와 그 相互作用이 중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情報化는 社會의 組織原理를 均一한 供給에서 多樣한 選擇으로 변화시키며 이것은 특히 經濟領域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産業化의 진전은 媒體의 技術革新과 意味內容의 開放을 통하여 社會分權化를 지향하고 社會的 活力을 고양함과 동시에 情報費用의 저하와 市場의 확대에 의해 經濟的 活力을 제고한다. 그리고 이 두가지 活力은 市場競爭을 통하여 媒體의 革新이 加速化되고 意味內容의 市場이 형성되어 社會·經濟·政治 등을 망라한 社會的 意味內容空間이 形成·開放됨으로써 維持·强化된다. 社會媒體는 企業의 販賣나 廣告活動만이 아니라 産業活動과 經濟運用을 뒷받침하는 광범한 經濟意味內容의 전달이나 公共經濟政策의 公開的 論議를 위하여도 이용되므로 企業經營이나 經濟運用의 전제로 되는 共通認識이 사회적으로 조성되는 중요한 意味內容空間도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産業分野에서의 情報化의 진전은 情報의 産業化와 産業의 情報化로 나타난다. 情報의 産業化는 情報를 취급하는 産業分野가 확대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電氣通信産業이나 컴퓨터등 情報關聯機器産業의 발전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企業內에서 처리되어 온 情報處理가 市場에서 거래되게 된 것을 나타낸다[7]. 産業의 情報化는 企業內의 情報關聯部

이 강한 自然結合型, 企業이나 行政組織 등 상당히 定型化·組織化된 情報를 갖는 管理型, 貨幣를 媒體로 각종의 財貨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市場型, 大衆媒體를 통하여 다수의 메시지受發信의 主體가 구성하는 社會的 機能集團과 같은 擬似統合型 그리고 機能空間에 질서를 부여하는 公的主體에 의한 制度·法制로 類型化할 수 있다. 關係의 면에서는 自然結合型이 가장 농밀하고 擬似統合型을 대표하는 大衆媒體와 讀者·視聽者間의 關係가 가장 희박하다. 사용하는 媒體의 종류로는 家庭이 가장 원시적으로 媒體의 革新에 대하여 三角的 機能空間의 構造變化를 받기 어려우나 다른 類型은 민감하게 변화한다. 이러한 機能空間은 自己完結的인 原始共同體의 自然結合型 機能空間 속에 응집되어 있던 것이 機能分化하면서 확산되고 廣域化해 온 것이다. 經濟企劃廳(1984) 참조.

6) 大藏省(1984).

7) 企業間連結組織에 관하여는 아래의 V章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門의 확대 및 高度化, 企業間情報連結組織化의 진전 등 情報關聯産業 이외의 産業에서 情報에 관련된 事業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8]. 情報의 産業化와 産業의 情報化는 相乘的으로 작용하여 費用과 欲求와 技術源泉의 세가지 면으로부터 革新을 가속해 가면서 情報化社會의 高度化를 촉진하고 있다.

情報化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情報社會로의 移行을 촉진함과 아울러 특히 情報化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先進諸國과의 經濟的 隔差를 좁히기 위하여서는 우선 情報化가 갖는 經濟的 意義와 效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認識에 입각하여 情報化에 내재하는 논리를 추구함과 아울러 情報化가 특히 經濟領域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이로부터 政策的 含意를 도출하고자 한다.

本稿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本章의 序言에 이어 II章에서는 情報化가 유발하는 産業再編成의 輪廓을 개관하여 情報化의 經濟的 意義를 강조한다. 이어 III章에서는 財貨로서의 情報의 特性을 분석함으로써 情報化에 관한 일련의 論議의 基礎的 槪念을 정립하고 IV章에서는 情報不完全性에 대응하는 機構로서 組織이 형성된다는 것을 논한다. V章에서는 情報化에 따른 産業組織의 새로운 형태로서 市場과 內部組織의 原則이 혼재되어 있는 企業間連結組織의 논리를 제시하고 VI章에서는 이를 技術革新의 경우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전개한다. 다음 VII章에서 企業間連結組織의 基本的 類型을 定型化하고 VIII章에서는 情報化의 競爭效果를 일반적으로 논한다. 그리고 IX章에서는 情報化가 가장 신속·광범하게 보급될 수 있는 流通部門에 있어서 情報化가 流通體系의 組織과 競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X章에서는 情報化가 中小企業에 주는 諸般效果와 課題를 논의한다. 끝으로 XI章에서는 情報化에 대응하기 위한 政策의 基本方向을 개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結論에 대신한다.

8) 公正取引委員會(1985).

II. 情報化와 産業의 再編成

情報의 동태적 힘을 축으로 한 産業化過程은 市場의 성립, 市場分業을 통한 産業活動의 확대, 企業內의 管理組織의 확대라는 세가지 국면에서 진전되고 있다. 産業分野에 있어서 情報化를 촉진하는 要因과 背景으로는 우선 需要面에서의 현저한 변화와 그 加速化를 지적할 수 있다. 消費者들의 價値觀은 크게 변화하여 量的 擴大보다 質的 充足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質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단히 多樣하고 個性的인 것을 지향하는 傾向이 강화되고 있다. 商品에 대하여 그 본래적인 機能外에 個性的·流行的 要素나 複合的 機能을 요구하는 한편 輕薄短小指向에서 볼 수 있듯이 商品의 本來的 機能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實用性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등 需要가 점차 多樣化하고 있다. 동시에 需要變化도 加速化하여 商品의 壽命(life cycle)이 짧아지는 傾向이 있다. 이와 같이 消費者欲求의 個性化·多樣化로 市場이 細分됨에 따라 需要를 파악하기 위한 신속한 情報處理나 連結組織의 형성이 중요하게 되며 또한 이에 부응하는 多

品種少量生產體制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情報化는 商品과 서비스를 供給하는 產業에 대하여는 效率化를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그러한 변화에 대한 適應力을 높인다. 製造業이나 流通業에 있어서는 消費者欲求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商品을 效率的으로 生產하는 것이 긴요하지만 종래에는 그러한 欲求에 관한 情報를 신속하게 蒐集·分析하여 經營戰略에 활용하려고 하여도 情報獲得과 費用 등의 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보하는 情報處理技術을 체현·응용하는 각종 機器가 저렴하게 보급됨에 따라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에너지나 資源의 制約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企業間의 競爭이 가열되는 것을 배경으로 企業活動의 效率化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특히 企業活動의 國際化로 企業間의 競爭이 國際的으로 전개되는 현재 그 중요성은 일층 커지고 있다. 컴퓨터등 情報處理機器 및 技術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機能은 事務處理의 效率化라는 점에 있으므로 企業이 이를 적극적으로 導入·利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情報處理機器 및 技術은 그 活用方法에 따라서는 환경변화에 대한 適應力을 증대시켜 去來에 수반하는 여러가지 危險이나 費用의 저하에 기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의 성패는 企業의 競爭力에 직접 영향을 주며 이러한 의미에서 事業活動의 效率化를 기하려는 企業에 있어서 情報處理의 高度化는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產業分野에서의 情報化는 產業의 情報化와 情報의 產業化가 同時的·相乘的으로 진행되고 있다. 情報化가 진전되는 배경으로 우선 情報處理 및 通信에 대한 需要가 급증한 것을 들 수 있다. 供給面에서는 電子工學등 基礎分野의 技術이 급속도로 革新되고 있으며 새로운 情報通信機器의 開發·改良 및 低廉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情報通信連結組織의 정비·확대, 情報處理의 하드웨어면과 소프트웨어면의 발달, 制度面에서의 情報通信事業의 自由化가 진전되는 등 情報基盤의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情報關聯產業은 세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通信回線을 매개로 하여 각종의 通信서비스를 제공하는 電氣通信事業으로 이를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情報의 內容·形式을 변화시키지 않고 전송하는 基本通信서비스(電話·텔렉스 등)와 情報의 內容·形式에 附加價値를 더하는 高度서비스(프로토콜變換·電子郵便·온라인情報處理 등)로 구분된다. 둘째는, 情報關聯機器產業으로 컴퓨터 및 關聯機器產業과 通信機器產業(電話機·팩시밀리·交換機 등)이 있다. 셋째는, 情報서비스產業으로 소프트웨어開發·프로그램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業, 受託計算·데이터入力·시스템管理受託 등을 하는 情報處理서비스業, 데이터베이스서비스를 하는 情報提供서비스業과 기타 콘설팅이나 연수 등을 하는 產業 등을 포함한다.

情報關聯產業의 각 분야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 情報關聯產業의 각 분야는 확연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 겹쳐 경쟁하는 接面(interface)이 重層的으로 존재한다. 예컨대 電氣通信產業에서의 高度서비스와 情報서비스產業에서의 情報處理는 유사한 서비스이다. 둘째, 情報關聯產業分野에서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基本

通信서비스와 電話機, 通信處理와 情報處理 등에서와 같이 관련되는 財貨와 서비스가 여러가지로 조합되어 結合財(joint product)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情報關聯産業의 각 분야가 相互去來關係에 있다. 즉 情報關聯産業은 다른 産業分野만이 아니라 情報關聯産業의 각 분야에 대하여 財貨와 서비스를 供給하므로 각각의 분야는 相互依存하고 있다. 예컨대 電氣通信産業은 通信關聯機器를 사용하고 컴퓨터製造業者는 소프트웨어의 供給을 받아야만 비로소 事業展開가 가능하다.

情報化는 情報關聯産業을 창출하고 재편할 뿐만 아니라 다른 産業에 대하여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企業內外에서의 流通·金融의 情報技術革新은 需給情報의 처리를 좀더 확실하고 效率的으로 하며 새로운 情報技術의 革新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財貨와 서비스의 去來에 수반하는 情報費用을 낮춰 새로운 市場競爭을 창출하여 市場을 活性化할 것이다. 流通을 중심으로 하여 消費者와 生産者, 生産者와 生産者, 消費者와 消費者間의 意味內容의 交流活動이 활발해지고 注文·決濟의 去來行爲의 標準化에 수반한 情報技術의 도입이 진전되며 需要와 供給間에 效率的이며 풍부한 意味內容를 교환하는 仲介産業(logistics industry)의 複合化와 확대가 진전하여 産業構造의 變革이 가속된다[9]. 金融·證券·保險分野의 情報化는 決濟·信用供與·保險·資産運用등의 서비스의 情報化와 병행하여 生産者나 消費者들 사이에 意味內容交換의 經路를 확대하고 地域的·國際的 連結組織을 형성하면서 金融費用과 金融危險을 낮추는 동시에 流通과의 결부를 심화하면서 仲介産業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종래의 産業化가 人間의 力學的 能力의 약점을 보완하는 力學的 技術의 革新을 軸으로 財貨와 에너지의 生産·加工·流通의 흐름에 따라 市場分業을 심화하면서 産業을 조직하여 왔음에 비해 금후 産業의 情報化는 媒體의 革新을 軸으로 媒體의 공급과 意味內容의 生産·加工·傳達의 흐름에 따른 市場分業을 촉진하고 産業의 組織樣態를 새로운 방향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情報技術의 革新은 효율적 생산에 필요한 勞動의 學習期間을 단축시킴과 아울러 柔軟生産體制(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 FMS)와 같이 多品種少量生産의 經濟性을 높임으로써 大量生産의 利點이 소멸되고 있다.

內部生産의 이점을 살리기 위하여 企業의 內部組織을 管理統合하는 데 드는 費用은 組織이 커질수록 가속적으로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情報技術의 도입으로 組織의 適正管理規模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업의 내부에 축적된 人力·資金·經營노하우 등의 거대한 經營資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이를 垂直分解하여 독립된 市場活動으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情報技術의 革新은 組織에 비하여 市場을 크게 유리하게 한다[10].

産業의 情報化에 따라 機械設備全般에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化가 진전되어 效率性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일면 특히 새로운 市場分業이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硏究開發·生産·在庫·販賣·財務·人事 등 管理業務에 관하여 意味內容의 定型化 및 編集·分類·傳達의 定式化가 용이한 情報

9) 經濟企劃廳(1986).
10) 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企業의 位相에 관한 논의는 Sweeney(1982) 참조.

處理體系를 구축함으로써 管理業務 상호간의 意味內容交換을 機動化하고 동시에 각각 독자의 業務領域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외부에 대하여도 서비스를 판매하게 된다. 컴퓨터技術과 通信技術이 결부되어 새로운 情報處理서비스의 市場分業이 진전되면서 외부에 독립적인 다양한 業務情報處理體系의 서비스가 전개되어 이를 활용하여 設備나 人力의 貯量을 갖지 않고 企業을 경영할 수 있게 되는 企業의 流量化가 진전될 것이며 동시에 市場進入과 退出이 기동적으로 되어 위험이 축소되는 新陳代謝가 촉진될 것이다.

ME(microelectronics)를 위시한 새로운 情報技術은 다른 技術과의 融合性이 매우 높다. 예컨대 NC工作機械나 産業用로봇은 通信技術에 의해 工程管理用의 미니컴퓨터나 CAD/CAM 體系등의 情報機器와 연결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大型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多層的인 連結組織體系 속에 편입될 수도 있다. 情報技術의 革新은 다른 技術에 대한 波及效果가 커서 技術體系의 한 분야에서의 진보에 그치지 않고 技術體系를 根柢로부터 變革해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情報技術의 革新은 여러 産業에 걸쳐 새로운 製品과 서비스를 창출함과 아울러 生産技術의 진보를 초래하고 있다.

앞서 情報關聯産業의 각 분야간의 接面이 증대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지만 컴퓨터와 通信의 경우와 같이 技術 자체가 情報化를 軸으로 融合하고 이에 따라 각 産業에 대한 共通投入物(joint input)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증대하여 情報關聯産業의 각 분야간의 産業區分이 확연하지 않으며 상호간에 競爭하는 면이 많게 되는데 이를 業際化(fusion)라고 한다[11].

실제로 業際化는 情報關聯産業에만 국한되지 않고 종래의 産業·業種·業態의 경계가 情報化에 의해 소멸되어 技術面에서의 融合化와 市場面에서의 融業化 즉 技術面과 市場面에서의 相互浸透로 새로운 競爭關係나 協力關係를 발생시킨다. 이처럼 業際化와 情報化가 병행하여 진행되면서 情報連結組織化를 촉진하며 이것이 情報化社會의 産業組織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情報連結組織化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財貨로서의 情報의 특성을 규명하기로 한다.

III. 情報財의 特性

財貨로서의 情報의 특성은 보통의 財貨에 대하여는 價格이 쉽게 결정되지만 情報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있다. 보통의 財貨는 專有될 수 있으므로 所有權을 분명히 할 당함으로써 私的財(private good)로 되고 이를 거래하는 市場이 성립하여 價格이 결정되지만 情報는 共有性을 갖고 있으므로 所有權이 할당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이 경우에는 所有權을 거래하는 場인 市場이 성립하지 않고 情報는 私的財가 아니라 公共財(public good)로 된다. 그러나 情報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 特許料나 複製料를 징수하는 형태로 價格을 설정할 수 있으면 情報도 私的財로 된다. 따라서 財貨의 성격은 所有權의 歸屬可能性과 價格設定의 可能性의 관계로 파

11) 今井賢一 編(1984).

악할 수 있다. 情報의 성격과 制度의 대응이 정확하게 1對1의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利用이 개방되는 公共財와 特許權制度로 뒷받침되는 私的財의 사이에 예컨대 클럽組織의 클럽財와 같이 公共財와 私的財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

클럽財는 連結組織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槪念이다[12]. 클럽이란 生産費, 參加者의 資格, 利益專有가 가능한 財貨라는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共有함으로써 相互利益을 도출하는 自發的 集團으로 여기서 共有對象의 財貨를 클럽財(club good)라고 한다. 財貨의 消費에 있어 專有性(excludability)과 不可分性(nonrivalry 또는 indivisibility)이 순수한 형태가 아니면 이 財貨의 公共性은 불완전한데 이러한 종류의 財貨 중에서 消費의 惠澤은 전유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不可分的인 것을 클럽財라고 한다. 클럽財는 클럽의 外部에 대하여는 私的財이나 內部에서는 公共財로 되는 성격을 갖는다.

情報處理는 合目的的 操作으로서 不可逆的이므로 관련자들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게 되며 이 점에서 情報財를 활용하기 위한 클럽組織의 形成과 情報處理가 결부된다. 情報處理는 단지 情報의 加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類型分類·取捨選擇·體系化 등의 의미도 갖는다. 또한 情報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으로서 情報자체에 의미를 인정하는 경우와 많은 情報의 體系化·秩序化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경우의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情報保管樣態를 변화시켜 그것의 效率的 活用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情報는 多面的 特性을 갖고 있다[13]. 첫째, 情報는 共有可能性을 갖는다. 情報는 周知性과 複製可能性이 있으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共同消費되는 성질을 갖게 되며 共同消費의 정도가 클수록 公共組織에 의해 공급되어 公共財에 근접하게 된다. 둘째, 情報에는 事前確認困難性과 價値評價의 相對性이라는 특징이 있다. 情報는 그 내용의 單位와 質을 거래 전에 客觀的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私的財나 準私的財로 되는 경우에도 價格設定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또한 같은 情報라도 利用者에 따라 그 價値에 대한 評價가 다르게 된다. 이것은 情報의 單位와 質을 객관적으로 定義하기 어렵다는 성격과 결부되어 있다. 셋째, 情報에는 機密性·優先性·先導性이 요구된다. 情報의 機密性과 先導性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情報를 專有할 필요가 있게 되며 이 경우에는 知的所有權에 대한 市場價格으로서 特許料나 複製料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尖端技術의 발전은 컴퓨터 프로그램·컴퓨터 그래픽스·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財貨를 창출하여 종래의 知的所有權制度로서는 완전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情報의 傳達은 情報를 時間的·空間的으로 傳送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物理的으로 각 주체간에 情報를 效率的으로 傳達하는 과정과 전달된 情報를 읽고 取捨選擇하여 새로운 情報를 창출하는 과정은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情報流通을 본다면 외부에 제공되는 情報는 대체로 受發注情報나 在庫情報와 같이 商品의 量에 관한 通信的 情報

12) 클럽財에 관한 상세한 理論的 論議는 Cornes and Sandler(1986) 참조.

13) 宮澤健一(1988).

가 중심인 定量的 情報이고 組織에 머무는 情報는 예컨대 기존의 市場經驗에 입각하여 새로운 質을 창출하는 새로운 패키지의 商品을 개발하는 경우에 필요한 情報처럼 通信的 情報를 처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定性的 情報이다. 즉 處理度가 높은 마케팅情報등은 기본적으로는 組織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에 머물고 외부로의 流出은 억제된다.

情報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特性이 얽혀 있으므로 이에 대한 對應과 處理의 방법이 문제로 된다. 일면으로는 情報의 祕藏과 隱匿이 필요하고 情報漏泄에 대처해야 하지만 定量型 情報라면 이를 特許로서 販賣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企業經營戰略의 일환으로 高附加價値의 情報는 組織內部에 유보하고 處理度가 높지 않은 情報는 외부로 유출할 수도 있다. 어떤 情報를 組織의 내부에 유보하고 어떤 情報를 외부에 공개하여야 하는가를 선택하는 데에 情報流通의 二元性이 있다. 물론 二元性이라고 하더라도 그 境界線은 항상 流動的인 것이 특징이다.

情報流通의 二元性의 배후에는 情報의 二律背反的 屬性이 개재되어 있다. 情報의 使用面에서의 價値를 높이기 위해 情報를 널리 共同消費시켜 公共財的 側面을 강화하려고 하면 生產面에서는 情報生產의 誘因이 없어져 情報는 過少生產된다. 거꾸로 生產面에서 情報生產의 私的誘因을 높이려면 特許料등을 부과하여 使用者를 제한할 필요가 생기므로 情報는 過少消費되게 된다. 다시 말하여 情報開發의 利益保護와 情報公開의 社會的 要請이 상충하게 된다.

이에 대한 社會의 對應體制는 市場去來·內部組織·企業間의 連結組織에 의한 調整 등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市場에서는 情報에 대하여 特許料나 複製料 등의 價格을 설정함으로써 情報를 私的財나 準私的財로 전환하여 조정을 진행시킨다. 內部組織(internal organization)에서는 情報를 外部에 대하여 차단하고 이를 獨占함으로써 해결하려 한다. 連結組織은 클럽型의 組織과 같이 연한 連結의 構造 속에서 情報를 공유하여 구성원간에는 公共財이나 외부에 대하여는 私的財的 機密性을 갖도록 함으로써 대응한다. 물론 連結組織의 경우에도 連結의 强度나 情報公開의 정도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여하간 이상의 세가지 방법은 代案的이기는 하지만 임의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對象情報의 성격은 물론 情報가 갖는 費用的 側面을 각각의 組織類型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IV. 情報와 組織形成

組織(organization)은 不確實性(uncertainty) 등의 이유로 市場機能이 실패하는 경우에 集團的 行動의 利益을 달성하려는 手段이다. 個別經濟主體의 情報構造는 市場을 통한 危險負擔의 配分에 큰 영향을 미친다. 情報構造(information structure)란 단지 일정한 時點에 존재하는 知識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유관한 情報를 획득할 가능성도 의미한다. 이는 情報經路(information channel) 및 외부로부터 信號(signal)로서 받게 될 情報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情報經路는 外生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容量

과 전달되는 信號의 유형은 費用과 便益을 비교하여 선택된다[14].

情報費用의 한가지 특징은 個人 자신이 그의 情報經路에 대한 投入物로서 個人의 매우 제한된 情報의 獲得·利用能力은 情報處理에 있어서 固定要素로 작용하여 다른 情報資源의 증가에 대하여 일종의 收穫遞減을 나타내므로 個人에 대한 情報費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制限을 統制의 範圍(span of control)라고 한다. 情報費用의 두번째 특징은 부분적으로 不可逆的(irreversible)인 資本費用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投資는 意思疎通의 物理的 側面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外國語 學習과 같이 하나의 信號를 다른 信號와 분간할 수 있도록 時間과 努力을 적절히 投入한다는 것을 말한다. 情報經路의 價値는 그 본질상 불확실하다. 일단 情報經路를 획득하면 새로운 經路에 投資하기보다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것이다. 따라서 애초 설정된 情報蒐集의 방향을 후에 바꾸는 것은 어렵게 된다.

세번째 특징으로 情報費用은 情報經路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는 절대로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정한 時點에 個人은 자신의 能力과 知識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특정한 情報經路를 개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學習은 특정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고 저렴하게 일반화한다. 예컨대 같은 接近方法이나 言語를 사용하는 사람과 意思疎通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쉽다.

意思決定은 情報의 函數이다. 意思決定은 특정한 구체적인 의미에서 행동하려는 決定과 情報를 수집하려는 決定의 두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각각 最終行動(terminal act)과 實驗(experiment)이라고 한다. 實驗은 직접 아무런 해택도 주지 않지만 좀더 많은 情報를 제공함으로써 最終行動을 개선하는 手段的 價値를 갖고 있다. 組織의 機能的 役割은 構成員들의 結合行動이 내포하는 우월한 生産性을 이용하는 것이다. 組織은 각 構成員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實驗을 시킬 수 있으므로 어느 한 個人보다 더 많은 情報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個人의 能力에 대한 制約이 극복되지만 그 대신 항상 지불해야 할 代價가 있다. 즉 情報가 組織에 有用性을 가지려면 調整되어야 하므로 組織內에 意思疎通經路를 만들어야 한다.

組織의 모든 構成員이 받는 모든 情報가 다른 모든 構成員이나 하나의 本部에 전달된다면 情報處理費用에 이득이 없다. 오히려 組織內部에 추가적인 情報經路가 있으므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사실상 組織에서의 情報의 經濟性은 얻는 情報의 상당부분이 關聯性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組織의 한 構成員이 받는 情報는 最終行動의 선택을 위한 價値를 잃지 않으면서 再發送(retransmission)을 위하여 훨씬 작은 量으로 變型될 수 있다.

情報處理를 위한 組織의 效用은 이러한 再發送의 減少로서 설명될 수 있다. 情報는 비싸므로 內部發送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效率的이다. 즉 內部意思疎通經路를 절약하기 위해 最終行動의 선택을 위한 價値에 약간의 손실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 內部意思疎通經路는 설계될 수 있으므로 그 구조는 費用最小化를 목표로 선택될 수 있다. 특히 이 經

14) 이하 情報의 屬性과 組織에 관한 좀더 상세한 論議는 Arrow(1974)를 참조.

路의 效率性은 符號(code)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증대될 수 있다.

符號設定은 組織의 活動規模의 확대에 따른 費用增大傾向을 약화시키지만 이를 제거하지는 않는다. 組織이 規模를 확대하여 얻는 利得은 그 構成員들이 서로 다른 實驗, 즉 特化로써 도출된다. 그리고 個人이 符號를 배우는 것은 그를 위해서는 不可逆的 投資이므로 組織은 일단 만들어지면 분명한 正體(identity)를 갖는다. 符號는 組織이 생길 당시의 최선의 期待와 부합하도록 결정된다. 符號는 組織이 갖는 資本의 일부이므로 그것이 수정되더라도 時間의 경과에 따라 완만하게만 이루어질 것이다. 組織의 構成員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符號가 필요하다는 것은 構成員의 행동이 均一性(uniformity)을 가져야 한다는 要件을 부과한다. 構成員들은 符號로 전송될 수 있는 情報에 特化하므로 그 符號에 쉽게 맞지 않는 情報를 獲得·傳送하는 것에는 效率的이지 못하다. 따라서 組織 자체가 그 構成員의 행동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情報의 特性과 그것이 組織에 대하여 갖는 意味를 좀더 구체적으로 組織形成의 관점에서 전개하기로 한다[15]. 이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시각은 앞의 논의에서도 함축되어 있듯이 去來費用(transaction cost)에 의한 市場의 組織失敗(organizational failures)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16][17] 生産費가 生産技術에 의하여 규정됨에 대하여 去來費用은 말하자면 經濟體制의 運營費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市場去來의 본래적 특징은 去來가 매번 독립하여 市場內의 각 주체의 離合集散이 전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市場에서의 去來費用이 去來되는 商品·서비스의 특성이나 市場構造 등에 따라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市場去來를 內部化하려는 움직임이 생겨 組織을 형성하게 된다. 去來費用에 의한 시각에서 보면 市場과 組織은 情報流通 내지 資源配分에 있어 代替機能을 가지며 去來費用의 多寡에 의하여 선택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差別化에 의하여 組織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組織의 특징은 클럽적 結合에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市場去來의 특징은 매번의 去來가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있으나 前回나 前前回의 去來가 今回의 去來를 유도한다는 去來의 繼續性 혹은 粘着性이 클럽을 형성시키는 이유로 된다. 즉 去來者 상호간의 情報交換에 共通性이 있고 서로 배신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지면 구태여 第三者를 去來相對로 하지 않고 去來는 반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그 결과 클럽組織이 형성되게 된다.

세번째로, 情報에 관한 設計工學的 發想으로부터도 組織形成의 한 측면을 밝힐 수 있다. 情報를 蒐集·交換하기 위하여 각각의 主體를 연결하는 한가지 방법은 이들을 직접 결부시키는 것이지만 主體의 수가 늘어나면 이들을 잇는 回線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매우 많은 費用이 들게 된다. 따라서 主體가 많은

15) 宮澤健一 編(1988) 참조. 內部組織에 관한 최근의 論議를 개관한 論文으로는 Langlois(1984).

16) 여기서 去來費用이란 生産費나 物流費用 등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競爭的 市場機構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費用으로 구체적으로는 情報費用·交涉費用·契約費用·外部效果의 內部化費用 등을 포함하고 있다.

17) 組織失敗에 관한 古典的 文獻은 Williamson(1975). 이를 포함하여 企業의 발생에 관한 諸學說의 槪觀은 李奎億·尹暢晧(1988) 참조.

경우에는 情報交換量이 많아지므로 각 主體를 중개하는 結節點(node)을 형성하는 편이 유리하게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結節點의 수가 증가한다면 각각의 結節點을 잇기보다는 한 次元 위의 結節點을 새로 만드는 것이 效率的인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情報交換量이 증가하면 平面的인 단순한 결부로부터 立體的인 결부로 組織形態가 변화한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情報의 傳達·處理라는 관점에서 組織形成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주체의 情報傳達能力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規模의 經濟에 제약이 발생한다. 情報傳達費用이 상당히 크게 될 경우의 대처방법은 情報流通量의 削減과 組織化이다. 符號의 統一·標準化 등은 情報流通量을 삭감시키고 組織化는 情報의 流通速度를 향상시킨다. 독립된 개별주체간에 情報의 流通이 신속하지 못한 것은 개별주체들을 組織化함으로써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이 組織化는 하나의 硬直的인 單位로 할 수도 있지만 連結組織으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連結組織에 의해 독립된 主體들이 연결된다면 각자가 부족한 情報를 서로 보완하거나 나아가 相乘效果(synergy)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제까지 組織形成의 論理를 몇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情報·通信技術의 향상과 이에 따른 費用의 저하로 반드시 內部組織化를 하지 않더라도 情報傳達이 점점 더 쉽게 된다는 점이다. 종래의 대표적인 組織은 位階構造(hierarchy)를 가져 上部가 下部를 統制·指揮하는 硬性(hard)組織이었으나 情報化는 이러한 組織을 軟性(soft)連結의 構造로 전환시키는 機能을 갖는다. 즉 종래에는 情報의 傳達·處理가 하나의 組織에서만 가능하였던 경우도 이제는 개개의 獨立組織에 의한 軟性連結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되고 있다.

V. 企業間連結組織의 論理

消費의 多樣化·個性化로 市場의 分斷化(market segmentation)가 초래되고 企業의 生產目標가 불명확하게 되는 한편 情報化의 진전에 의해 價格 이외의 情報를 이용하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位階型 組織으로는 市場의 변화에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組織形態로서 情報連結組織(information network)의 형성이 필요하게 된다.

情報는 市場이나 組織을 통하여 전달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각각의 대상이 언제나 명확하게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市場에는 組織의 要素, 組織에는 市場의 要素가 존재한다. 예컨대 企業間의 長期固定的인 去來關係의 형성에 있어 독립된 企業間의 去來라는 측면은 市場的 要素이나 長期固定的 關係는 組織的 要素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場으로서의 市場에서의 資源配分은 대부분 市場原則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나 組織原則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반면 場으로서의 企業內의 資源配分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市場原則이 組織原則과 함께 이용된다[18]. 이와 같이 市場과 企業에

18) 일반적으로 市場이나 企業에 있어서의 情報流通 내지 資源配分을 논할 때에는 활동의 場(area)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그것의 原則(principle)을

두가지 原則이 공존하는 것을 「市場과 組織의 相互浸透」(interpenetration of market and organization)라고 한다[19]. 이 관계를 市場에 있어서의 企業間連結로 본다면 企業間連結組織을 市場과 企業을 連結하는 第三의 調整裝置로서의 連鎖型組織으로 位置를 부여하는 것이다[20].

連結組織이란 추상적으로는 일정한 關係 아래 어느 정도 繼續的으로 連結되어 있는 여러 單位의 統一體라고 할 수 있다[21]. 이 定義에 있어 첫째, 連結組織이라는 槪念은 특히 組織間의 關係를 統一體로서 파악할 때 효과적이므로 連結組織을 구성하는 單位를 組織 내지 그 下部組織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組織의 集合으로서 組織의 경우보다는 좀더 유연한 連結을 중시한다는 점에 連結組織의 槪念을 사용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로, 組織間 關係를 어떤 측면에서 파악하는지가 문제로 된다. 일반적으로 組織間 關係는 情報의 傳達·交換關係, 財貨·서비스의 去來關係 및 信賴·義務 등의 規範的 關係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이들 관계가 복합하여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우선 財貨·서비스의 去來關係가 생긴 다음 情報의 傳達·交換이 있게 되며 그리고 이 관계가 상당기간 계속된다면 信賴·義務의 規範的인 關係가 발생하게 된다. 連結組織에서의 去來關係는 기본적으로 去來가 어느 정도 長期的으로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長期契約처럼 안정적인 去來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도 市場條件에 따라 수시로 결제되는 去來이지만 개개의 去來條件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고려가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去來의 繼續過程에서 去來當事者間에 信賴關係가 생기게 되고 이 의미에서 去來 자체도 市場去來와 組織內去來의 中間型으로 된다. 즉 去來의 성질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市場交換과 愛情·信賴의 交換이라는 贈與의 世界의 중간에 있는 社會的 交換(social exchange)인 것이다[22]. 일반적으로 連結組織의 參加者數가 많을수록 他人의 努力과 費用에 편승하려는 無賃乘車(free ride)의 誘因과 可能性이 높아지므로 相互信賴의 형성은 連結組織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信賴(trust)는 값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면 이것이 존재한다면 社會制度의 效率을 높이는 潤滑劑로서 큰 기여를 한다[23]. 특히 組織內에 情報의 安全性·信用性·機密性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信賴가 일층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셋째로, 連結組織를 구성하는 組織間 連結

지칭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러한 原則은 去來에 관한 두가지 變數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첫째는 去來에 참여하는 各人의 意思決定原則(decision principle)이고 둘째는 이러한 參加者들의 參加資格과 그들간의 相互關係(membership principle)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純粹市場原則은 私的利益의 極大化와 進入·脫退의 自由이며 純粹組織原則은 共同利益極大化를 위한 權威에 입각한 指示와 固定的·繼續的 關係를 내용으로 한다. 이에 관한 詳論은 Imai and Itami(1984) 참조.

19) 市場과 組織의 相互浸透라는 槪念은 今井賢一에 의하여 여러 文獻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예로서는 前揭한 Imai and Itami(1984) 참조.

20) 이와 유사한 槪念으로 Mariti and Smiley(1983)와 Powell(1987)은 協同的 協約(co-operative agreement), Miles and Snow(1986)는 動態的 連結組織(dynamic network)을 제시하고 있다.

21) 今井賢一 外(1986)는 連結組織의 存在理由를 組織論的 觀點에서 分析하고 있다.

22) Blau(1964).

23) Arrow(1974)는 信賴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港(1988)은 都給去來關係에서 이것이 형성되는 過程을 관찰하고 있다.

의 양태를 硬性과 軟性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企業間組織에 있어서는 企業間의 株式保有나 任員派遣 혹은 技術提携나 市場提携처럼 명시적인 拘束的 關係를 갖는 방법이 硬性連結이며 그러한 拘束關係가 없이 계속적인 去來關係나 협력적인 信賴關係를 갖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언제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형태가 軟性連結組織이다.

넷째로, 이 連結의 强弱과도 관련되지만 連結組織의 構成員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문제 즉 連結組織의 境界의 문제가 있다. 硬性連結의 경우에는 분명히 構成員이 명시되어 있고 상당기간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軟性連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약한 관계를 포함하는가에 따라 構成員의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連結組織의 구성은 情報集積의 核과 發散의 體制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즉 體制의 中核的 企業이 結節型인지 組織者(organizer)型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結節型 企業은 指導者(leader)機能을 가지며 組織者型 企業은 聚合·調整하는 指揮者(conductor)機能을 중심으로 한다. 連結의 形態로 보면 前者가 統制型의 강한 結合으로서 組織은 命令系統에 의해 縱的인 位階構造로 성립하는 것이 많은 반면 後者에서는 參加型의 연한 結合方法을 택하여 각 企業의 獨立性을 인정하는 彈力的인 連結組織으로서 組織의 形態는 橫的인 팀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많다. 調整의 형태로 보면 前者가 中央集權型의 權力的 調整, 後者가 分權型의 協力的 調整을 중심으로 한다[24].

連結組織이 하나의 體制로서 유지되려면 힘의 分布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힘은 威脅權力(condign power)·報償權力(compensatory power) 및 條件附權力(conditioned power)으로 구별할 수 있다[25]. 이러한 시각에서 連結組織의 組織方法을 다시 본다면 結節型 企業의 경우에는 强制에 의한 威脅權力과 報酬를 주는 報償權力의 두가지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즉 威脅權力에 의한 强制·命令·指示를 核으로 하면서 이를 金錢的인 誘因에 연동시키는 것으로 이것이 權力的 調整型이다. 組織者型 企業의 경우에는 오히려 報償權力과 條件附權力이 결부되는 면이 강하여 金錢的인 誘因은 條件附權力에 의한 共通目的에의 一體感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형태로 協同 내지 順應하는 것이 協力的 調整이다. 문제의 핵심은 權力과 協力의 어느 것과의 連結誘因의 비중이 높은지 하는 것이다. 連結組織이나 內部組織에는 調整形態로서 이러한 두가지 면이 공존하여 양면간의 緊張關係의 여하에 따라 連結의 形態·性格·程度를 구분하게 된다.

그러나 中心이 존재하지 않는 水平的 連結의 自然發生的인 連結組織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

24) 宮澤健一(1988).

25) 威脅權力은 個人이나 集團의 選好에 대하여 적절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에 입각하여 위협함으로써 服從을 얻는 것이며 報償權力은 肯定的 報償을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의 服從을 얻는 것이다. 이 두가지 類型의 힘에 공통되는 특징은 복종하는 個人이 자신의 服從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條件附權力은 說得·敎育·社會的 目標 등에 의해 個人의 信念을 변화시켜 他人의 意志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 服從은 個人이 選好하는 行動을 반영하며 服從의 사실이 인지되지 않는다. 威脅權力이나 報償權力보다도 條件附權力이 現代經濟의 作動에 중심적인 힘으로 된다. 이러한 힘의 源泉은 個性·財産 및 組織에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論議는 Galbraith (1984) 참조.

딘가에 指導者機能을 발휘하는 主體가 나타난다. 財貨나 서비스 혹은 좀더 넓은 情報나 信賴의 交換이 일어나는 社會的 交換의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等價交換이 아니라 交換當事者間에 어느 일방이 좀더 많이 주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힘이 발생하여 이것이 指導者機能의 源泉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參加者가 모두 이를 추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종전의 水平的인 組織으로부터 연한 上下關係를 갖는 階層的 構造가 생겨나는 것이다. 産業이나 企業의 連結組織에 있어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指導者機能을 갖는 主體 내지 焦點組織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情報連結組織은 다수의 經濟主體間에 형성되어 그 사이에 어떤 종류의 情報가 서로 제공되어 공용되는 情報交換網이다. 情報連結組織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情報를 두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形式的 情報로 情報의 形式 내지 構文에만 주목하는 概念으로 通信의 情報處理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意味的 情報로서 人間間의 意味內容이나 文脈의 전달에 해당한다. 形式的 情報의 경우에는 傳達經路가 直線型이든 連結組織型이든 무관하나 意味的 情報의 경우는 어떠한 連結組織에서 그 내용이 傳達되고 理解되는지가 본질적인 문제이다[26].

硬性連結組織에서는 形式的 情報가 中心的 役割을 갖지만 軟性連結組織에서는 非定型的인 일이 많고 人的 連結이 기본이므로 意味的 情報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硬性連結組織에서는 情報媒體를 통한 物理的 連結의 흐름이 核心的 機能을 수행하지만 軟性連結組織에서는 情報媒體는 補助的 機能을 수행함에 그친다. 軟性連結組織은 작은 環境變化에도 대응할 수 있는 敏感性을 갖고 그 適應方法에 多樣性·異質性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軟性連結組織은 예컨대 企業과 企業外部를 연결하여 수행하는 硏究開發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이유는 硏究開發의 경우에 連結組織參加者의 行動에 요구되는 것은 定型性이 아닌 創造性이기 때문이다[27].

종래 力學技術의 발전에 따른 大量生産方式은 生産規模의 확대에 의해 費用이 저하하는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를 추구하였음에 비하여 情報技術의 革新은 한가지 品種보다 여러 品種을 각각 少量生産하더라도 費用이 저하한다는 範圍의 經濟(economies of scope)와 業際化를 통한 産業間接面의 확대를 초래하여 競爭과 企業組織의 양태를 변화시킨다. 情報化는 동시에 企業間連結組織을 진작하여 連結의 經濟性(economies of network)이라는 새로운 利益을 창출하고 있다[28]. 이것은 個別企業이 連結組織을 구축함으로써 한 企業에 있어서의 製品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單位當 費用이 저하하고 파생적으로 다른 利益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連結의 經濟性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外部效果(externalities)의 內部化라고 할 수 있다. 우선 情報는 集合體로 되어야만 유익하게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連結組織은 이러한 組織擴大의 이익을 초래한다. 情報는 여러 分野·主體에 분산하여 발생하는 것이 많다. 그

26) 今井賢一(1985).
27) 硏究開發을 위한 企業間連結組織에 관하여는 아래의 VI章을 참조.
28) 이에 관한 理論的·實際的 考察은 宮澤健一(1988) 및 公正取引委員會(1985) 참조.

러한 情報間에 부분적인 重疊이 있어 상호간에 補完性 내지 依存性이 있는 경우에는 공통의 목적하에 情報體系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相乘效果는 새로운 情報가 이미 축적된 情報에 부가되고 또한 각종의 情報를 체계적으로 조합함으로써 일층 효력이 높아진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즉 情報가 갖는 體系性·蓄積性을 기초로 情報連結에 의해 새로운 情報의 效果가 더욱 발휘되는 것이다.

또한 情報는 여러 번 사용되어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으며 連結組織을 활용하면 다수의 企業이 少額의 出資로 동시에 평등하게 많은 情報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情報의 共同利用으로 費用을 절감할 수 있다. 企業은 連結組織에 참여함으로써 情報를 獨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情報를 입수할 수 있다. 아울러 連結組織內의 情報나 通信機能은 각 企業에 의해 여러가지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連結組織 전체로서는 마치 한 企業에서의 範圍의 經濟性과 같이 여러 財貨를 생산함으로써 經濟性을 획득하게 된다. 특히 情報는 실제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유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내용을 아는 것 자체가 情報의 去來로 되기 때문에 市場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성격이 있으므로 連結組織內로 去來範圍를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活用可能性이 확대된다.

情報連結組織을 구축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連結組織의 經濟性외에도 몇가지 다른 動機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이미 지적하였듯이 受發注 體系처럼 去來關係에 있는 企業들이 情報連結組織을 구축하면 去來費用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情報連結組織을 구축함으로써 市場에서의 競爭力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확대함으로써 市場支配力을 갖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去來處를 固定化하고 종래부터의 去來關係를 좀더 확실히 할 수 있다. 셋째, 同業者間에 情報連結組織을 구축할 경우에는 서로 競爭者의 情報를 얻기 쉽게 될 뿐만 아니라 共通意思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 넷째, 競爭企業이 情報連結組織을 구축한다면 市場에서 優位에 서게 되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해 情報連結組織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

情報化의 진전은 企業의 行動樣式에도 큰 변화를 초래한다. 종래에는 사전의 情報獲得을 근거로 豫測·行動하는 豫測體制가 中核이었으나 情報連結組織에서는 각 主體가 連結에 의해 새로운 현실의 情報와 知識을 더 빨리 입수하고 饋還(feedback)하여 이를 蓄積·體系化해 간다. 이 점에서 經驗蓄積에 의한 學習效果(learning effect)가 앞으로 經濟主體의 行動樣式에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需要의 個性化·多樣化·少量化로 商品의 壽命이 매우 짧아져 豫測이 점점 곤란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情報連結組織에 의한 情報蓄積의 技術的 基盤이 형성되어 低費用으로 迅速·低廉·廣範하게 情報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된다는 사실에 배경을 두고 있다.

VI. 企業間連結組織과 技術革新

研究開發은 그것이 수행되는 場에 따라 成果가 달라지는 不規則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研究開發의 과정에는 意外性이 생긴다. 研究開發의 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여러가지 强弱의 형태로 連結되는 準內部

組織 내지 外部組織도 포함하여 어떻게 硏究開發體制를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로서 파악해야 하며 連結組織의 槪念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情報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組織을 流動化해야 하는데 이것은 組織構成員의 활동에 어느 정도의 自由度를 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硏究者의 自由度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여 반드시 바람직한 成果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企業의 硏究開發은 時間·領域·目的을 한정하여 수행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方向性과 그것에 입각한 管理가 불가결하게 된다.

企業의 內部組織에 있어서 自由度는 제한받으므로 內部組織의 관점에서 좀더 큰 自由度를 필요로 하는 硏究開發課題에 도전해야 할 경우에는 예컨대 기존의 組織과 유리되어 새로운 硏究組織을 구성하든가 혹은 좀더 自由度가 높은 硏究組織과 제휴하는 등 새로운 組織的 對應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현대의 硏究開發은 다양한 要素技術을 편입하여야 하므로 企業은 특정한 硏究開發을 組織內部에서 수행하거나 外部組織과 협동하거나 또는 硏究成果를 市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세가지를 어떻게 조합하여 이용할 것인지가 硏究開發管理의 문제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체제는 필연적으로 硬性連結과 軟性連結의 두가지 組織聯關을 포함하는 連結組織型으로 된다[29].

技術革新이란 價値있는 새로운 情報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 組織들을 어떻게 效果的으로 連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情報傳達에 있어서의 軟性連結의 效果이다. 硬性連結의 경우에는 情報가 전부 內部的으로 교환되어 構成員들의 發想도 같게 되지만 軟性連結의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새로운 情報가 들어온다든지 異質的인 思考에 접하는 기회가 증대한다. 약하면서도 한번에 그치는 接觸이 아니며 어느 정도의 信賴性이 유지된다면 革新에 있어서의 意外性·異質性의 역할을 고려할 때 軟性連結의 의의가 커진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情報化에 따라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資源으로 된다는 資源의 多重活用性이 증대하고 企業이 長期의 固定投資로 埋沒費用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피하고 가능한 한 進入과 退出을 쉽게 하려고 하며 規模의 經濟性보다는 範圍의 經濟性이 중요하게 되는 등의 새로운 변화로 가속되고 있다.

硏究開發連結組織을 維持·發展시키기 위해서 核心이 되는 內部組織을 어떤 規模로 할 것인지는 技術開發의 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로서 對象技術의 領域과 企業의 戰略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 場을 설정함에는 技術開發의 可能性을 전망하고 그 實現性을 투시할 수 있는 강한 知識(strong knowledge)이 필요하게 된다[30]. 그리고 이 場을 처음부터 넓게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좁게 焦點을 맞출 것인가 또한 어느 부분을 內部組織으로 수행하고 어느 부분을 외부의 連結組織에 의존할 것인지는 戰略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戰略을 명확한 設計로서 설정할 수 없다는 것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情報의 形成過程은 본질적으로 非線型的인 것이어서 하나의 경향으로서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시점에서 場을 설정하고 여기에

29) 今井賢一 外 (1986).
30) Nelson(1982).

관련되는 組織의 구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인 主體가 그 뒤에 생기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情報에 입각하여 다음의 構造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自己組織化가 일어나는 것이다. 硏究開發의 경우에서 보면 自由度를 갖는 硏究者가 주체적으로 硏究를 진행시키고 情報를 창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다른 硏究者와의 提携 및 外部組織과의 關係가 생겨 이것이 自生的으로 어떤 構造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企業이 硏究開發組織을 구상하는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自己組織化의 힘을 어느 정도까지 믿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創造性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自由度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企業間連結組織은 新製品開發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技術革新은 基本技術의 部分的 改良, 즉 差異化(narrow focusing)의 累積에 입각한 微增的 革新(incremental innovation)이다[31]. 이를 통하여 개개의 要素技術이 개선되면 그 다음에는 이들을 連結하는 接面의 개선이나 또는 전혀 새로운 接面이 필요하게 되는 한편 어떤 要素技術의 革新은 그것과 관련되는 다른 要素技術의 革新도 불가피하게 하여 새로운 接面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部分改良의 連鎖가 連結組織化를 촉진하는 기반으로 되는데 市場과 組織의 사이에 존재하는 系列企業·都給企業·關聯企業 등의 다양한 中間組織이 連結組織의 觸媒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新製品開發을 위한 連結組織의 대표적인 예는 日本의 東京이나 川崎의 下町工業地帶에서 볼 수 있다. 이곳의 小企業과 零細企業은 生産性이 높고 新規開業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社長들이 熟鍊工出身으로 技術力이 매우 높고 소량의 特殊品이나 試作品을 만드는 企業이 많다. 이들은 각각 독립해 있으면서 상호간에 연계되어 약한 連結組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工業集積은 자연발생적인 것으로서 이에는 下町社會의 공동체적 전통 외에도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즉 한 企業이 다양한 發注企業의 특별한 注文을 소화하려면 각각의 發注企業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중심에 처하여 단시간내에 협의차 왕래하거나 材料·部品을 운반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어떤 注文에도 응할 수 있고 注文을 融合하거나 分割하려면 다종다양한 專門業者가 일정한 地域範圍 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連結組織의 分業體系는 市場에서의 고립적인 分業이나 大企業 內部에서의 제약된 分業과 달리 각각 自律性을 가지면서 밀접한 相互依存關係에 있는 分業으로 각자는 連結組織에 있어서의 位置와 他人과의 距離를 고려하면서 행동한다. 分業의 정도는 市場의 크기에 의존한다는 古典的 命題와 같이 需要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는 分業은 매우 細分化되고 中小企業에서 일하던 技能工은 독립하여 자신의 零細企業을 설립할 수 있다.

이들은 과거에 연마한 특정한 技術을 더욱 심화하여 特殊技術者로 독립한다. 과거의 組織 속에서의 제약된 分業과 달리 技能을 자유롭게 신장하므로 技能이 더욱 分化되고 새로운 用途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伸縮的 專門化(flexible specialization)는 技術의 專門化를 초래함과 아울러 市場을 창출하고 그것

31) 今井賢一(1985).

이 自己組織化에 의해 連結組織으로 연결된다[32]. 극도로 細分化된 分業은 필연적으로 각각의 分業을 담당하는 小企業들간에 連帶關係를 발생시켜 그들은 지역내에 相互補完的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事業을 신장할 수 없다. 또한 상호의 特技에 응해 일을 融合하는 데 필요한 情報交換을 위해서도 평소의 밀접한 交流가 불가결하다. 企業間連結組織에서는 試作品의 경우에 注文이 少量이지만 配列의 學習(learning in arrangement) 때문에 學習效果(learning effect)가 발생한다. 즉 미세한 分業 속에서의 試作品의 주문은 發注處가 다르고 試作品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技術·技能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서 材料나 作業手順의 配列만이 다르므로 이에 習熟된다면 같은 제품을 連續生產할 때와 마찬가지의 學習效果가 발생한다[33].

連結組織의 지속적인 去來關係 속에서 構成員間에 信賴關係가 발생하고 따라서 去來도 市場去來와 組織內去來의 中間型으로 되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은 어느 한쪽에 힘이 생기게 된다. 예컨대 都給關係에서 發注企業이 受給企業에 대하여 技術·資本을 제공하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종래에는 受給企業의 從屬的 地位를 강화하였으나 高度成長과 함께 發注企業은 連結組織의 核으로서 連結組織 전체를 유지·발전시키는 指導者의 역할을 발휘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최근의 情報·通信技術의 발달은 連結組織에 요구되었던 地理的 近接性의 조건을 완화하면서 새로운 情報連結組織으로서 기존의 亂雜性을 정리하고 오히려 連結組織의 장점을 진작시키고 있다.

Ⅶ. 企業間連結組織의 類型

企業間連結組織의 類型은 參加企業들이 활동하는 市場間의 관계로 보아 垂直型(vertical)·水平型(horizontal)·複合型(conglomerate)으로 구분할 수 있다[34]. 企業은 우선 자신의 利益에 직접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連結組織에 참여하므로 企業間連結組織은 垂直的去來關係에 있는 企業들간에 구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垂直型 連結組織의 動機는 企業內 온라인(on-line)化에 의한 自動化·即時化의 效果를 더욱 추구하려는 것, 關聯企業 및 流通段階의 情報를 自社內의 情報體系와 결합시켜 情報를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효과를 얻으려는 것, 連結組織을 企業戰略의 전개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 등으로 구분되나 連結組織化의 진전에 따라 그 目的도 단순한 것으로부터 점차 情報의 좀더 전략적인 활용으로 변모하여 이에 대응하는 효과도 自動化에서 情報의 有效活用 그리고 戰略的 活用으로 이행한다.

垂直型 連結組織은 우선 營業情報·經理情報·製造檢査情報의 授受의 自動化·即時化에

32) Piore and Sabel(1984).

33) 그러나 이상에서 본 微增的 革新은 機械工業을 중심으로 하는 메카트로닉스分野에서 성공적이며 生命工學과 같이 순수한 知的 探求欲에 입각한 基礎硏究로부터 새로운 發想이 생겨나는 領域에서는 製造業을 原型으로 하는 日本型의 연한 連結組織으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고 美國型의 上層頭腦部가 두터운 형태의 情報化가 효과적일 것이다. 日本과 美國의 經營組織의 論理와 特質에 관한 최근의 포괄적인 硏究는 加護野忠男 等(1988) 참조.

34) 通商產業省 機械情報產業局 編(1984) 및 產業政策局 編(1985) 참조.

의한 努力과 時間의 節減效果를 초래하며 連結組織化가 진전됨에 따라 企業間에 生產狀況·製品의 移動狀況·販賣狀況 등의 情報가 신속하게 입수된다. 이러한 情報를 加工·分析함으로써 종래보다 정확한 狀況把握이 가능하게 되고 業務의 效率化를 위하여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各種의 情報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으므로 企業이 책정하는 여러가지 計劃의 위험을 경감시키고 效率的인 輸送計劃의 책정에 의한 輸送費用의 삭감이나 在庫의 適正化에 의한 在庫費用의 삭감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상세한 大量의 情報를 授受하게 되면 企業間連結組織도 좀더 밀접하게 결합되고 高度化된 生產管理體制·販賣管理體制 등을 통하여 企業間連結組織이라기보다도 大企業의 企業內連結組織과 같은 양상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미 系列化되어 있는 企業間에는 連結組織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垂直型 連結組織은 營業·經理情報의 交換에 의해 事務의 效率化를 목표로 한 경우에는 우선 업무상 관련이 깊은 소수의 企業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製造段階의 資料交換에 대해서는 特定工程 및 直系企業間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期待效果가 달성되면 이것을 좀더 크게 하기 위해 점차 對象企業을 系列外企業등으로 확대해 간다. 구체적으로는 生產라인의 自動化·多品種少量生產化·生產計劃의 短縮化에 關係企業들이 전체로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生產管理에 있어서도 이들 企業을 포함하여 事後管理型이 아니라 生產計劃重視型의 總合生產管理體系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情報連結組織의 動機와 利用形態의 高度化에 따라 對象情報의 內容이 일정한 處理를 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는 情報로부터 예컨대 販賣時點情報管理(POS : point of sales)와 같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情報로 변화한다. 즉 情報化의 의미가 自動化로부터 情報의 蒐集·解析·活用으로 진전하여 情報解析力의 유무가 企業의 競爭力에 있어 중요하게 된다.

連結組織이 이루어지면 企業間 關係가 변하게 된다. 우선 生產管理體制의 高度化에 의해 外注加工業體도 社內의 加工延長部門으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外注業體도 고도의 管理體制를 구축할 필요가 있게 되어 情報體系化에 여하히 대응하는가에 따라 外注業體가 선별되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 특히 設計 및 製造關聯情報의 連結組織化(CAD·CAM化의 異企業間展開)는 生產의 效率化·노하우의 分散防止·連結組織設備費用의 削減 등의 이유로 都給再編의 要因으로 되고 있다. 이것을 거꾸로 都給企業의 관점에서 보면 대응할 수 없는 企業은 쇠퇴하지만 技術力을 가진 企業은 連結組織에 대한 적응을 통해 製造工程의 일부를 분담하여 都給企業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다. 한편 販賣·流通의 連結組織化는 流通經路의 短縮·迂廻化를 초래할 수 있다.

水平型 連結組織은 기본적으로 競爭企業들간의 連結이므로 구성되기가 어려우나 예컨대 성숙된 產業에서 各企業이 가능한 범위에서 情報를 공개함으로써 상호간의 情報取得水準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企業의 競爭基盤을 높인다는 관점에서는 業界團體등을 중심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中小企業에 있어서는 企業規模에 비해 事業機會가 많아 中小企業間의 協同化가 個別企業에 있어서도 經

營을 效率化한다면 資金的·人的·技術的 制約上 業界內에 共通事務處理를 목적으로 한 連結組織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실제로 水平型 連結組織에는 共同데이터베이스型과 共同受注센터方式의 두가지 類型이 있다[35]. 이와 같이 水平型 連結組織은 個別企業間에 직결되지 않아 그 效果가 간접적이므로 보편적으로 企業間의 連結組織으로서 형성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水平型 連結組織에 의한 情報의 共有化는 競爭의 기반으로서 產業活動의 效率化에 기여한다고 적극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情報의 내용에 따라서는 連結組織에 가입하지 않은 企業에 排他的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競爭者間의 情報連結組織인만큼 그 운용에 있어서 競爭制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複合型 連結組織은 垂直型 連結組織의 發展形態로서 系列關係는 아니나 去來關係에 있는 企業들을 連結組織化함으로써 經營效率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去來關係가 없더라도 業種의 구별없이 여러 企業이 노하우와 기타의 經營投入物을 共有함으로써 市場狀況의 급변에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다. 日本에서는 현재 經營資源이 부족한 中小企業이 產業構造의 전환을 극복하여 多品種少量生產 및 消費者欲求의 多樣化와 複雜化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異業種企業을 융합한 組合이 다수 형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러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Ⅷ. 情報化와 競爭構造

情報化의 중심적인 한가지 特徵은 業際化이다. 業際化는 產業間의 障壁을 낮추는 것이므로 該當市場에 대한 進入障壁(entry barrier)이나 退出障壁(exit barrier)을 낮추어 競爭을 격화시키는 要因으로 된다[36]. 특히 業際化에 의하여 여러 개의 連結組織이 형성되어 서로 競爭하게 되면 이는 競爭을 多面的으로 촉발하게 된다. 連結組織이 하나만인 경우에도 단기간내에 다른 代替技術이 개발되고 새로운 連結組織이 조직될 수 있다면 역시 市場을 개방하는 效果를 갖게 된다. 그러나 반면 業際化에 의한 連結組織 속에서의 去來關係가 고정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大企業에 의한 多邊的인 市場支配의 手段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企業間 情報連結組織에는 여러 類型이 있고 각각의 連結組織을 구성하는 企業間 連結의 樣態와 程度에도 차이가 있다. 데이터베이스센터와 같이 情報提供이나 情報檢索을 主目的으로 하는 連結組織이나 業界에서 共同으로 情報處理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構成企業間에 거래상의 優劣關係는 없고 또한 連結組織의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開放的인 경우가 많다. 이와 대조적으로 製造業과 流通業, 母企業과 都給企業처럼 去來關係가 있는 企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去來關聯情報의 處

35) 綜合データ通信ネツトワーク構想懇談會 編(1984).
36) 進入障壁에 관한 理論的·實證的 分析은 產業組織論의 발전과 함께 상당히 축적되어 있지만 退出障壁에 관한 分析은 최근에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에 관한 理論의 槪觀과 參考文獻은 李奎億·尹暢晧(1988)에 소개되어 있으나 특히 Caves and Porter(1976)는 進入障壁과 退出障壁의 對應性을 제시하고 있다.

理傳達을 위한 連結組織의 경우에는 重要性이나 機密性이 높은 去來關聯情報가 컴퓨터·通信回線 등을 통해 전달되므로 中核企業이 連結組織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參加企業을 선별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거꾸로 일단 구축된 連結組織에 참가한 企業과 中核企業間의 連結이 강화되어 去來對象이 제한되고 系列化가 이루어지기 쉽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에서 中核企業이 去來關係上 劣位에 있는 다른 企業에 대해 連結組織을 구축하기 위하여 과중한 投資負擔을 강요한다든지 이에 응할 수 없는 企業과의 去來를 거부한다든지 혹은 連結組織에 의한 相互依存關係를 기초로 構成企業에 대해 去來情報外에도 事業活動의 전반에 걸친 情報를 요구함으로써 構成企業의 자유로운 事業活動을 제약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連結組織을 통해 中核企業이 構成企業의 事業活動에 대한 監視와 拘束을 쉽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連結組織의 編成方法도 市場의 競爭構造에 대하여 상반된 영향을 준다. 企業間連結組織의 編成形態에는 개개의 構成企業의 自主性과 獨立性을 보장하는 參加型의 軟性連結이 중시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參加型의 連結組織은 市場의 開放性을 강화하는 要因으로서 작동한다. 그러나 企業間의 軟性連結은 伸縮性 때문에 다소간에 불안정한 要因을 내포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位階構造를 갖는 강한 統制型의 結合을 이룩할 誘因이 있게 되며 그 결과는 市場閉鎖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市場需要와 去來行態의 변화는 항상 競爭構造에 영향을 준다. 需要面에서 個性化·多樣化·少量化·短期化가 초래됨과 함께 生產體制가 多品種少量生產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과 결부되어 業際化·連結組織化는 市場의 競爭性을 강화하는 要因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情報化에 의하여 축적되는 데이터베이스를 開放하지 않고 專有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接面에서의 去來와 人間間의 對面活動이 증가하고 信用카드에 의한 購買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購買者가 익명으로 남아 있지 않고 그 정체가 나타나게 되므로 市場을 분할하고 顧客을 식별할 수 있게 되어 顧客別 價格設定, 즉 價格差別이 쉽게 되고 이것이 競爭沮害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

情報化와 競爭構造의 관계는 情報 자체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측면이 있다. 情報는 公開되면 無料로 이용될 수 있다는 周知性 때문에 情報化에 의해 價格情報나 기타의 商品情報등 각종의 情報가 企業間에 迅速·廣範하게 파급되면서 市場의 競爭條件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中小企業의 協業에 의해 형성되는 低費用의 情報連結組織은 大企業과의 情報隔差를 극복할 수 있다. 한편 情報連結組織이 형성되면 連結組織의 中核企業에 情報가 집중하기 마련인데 情報의 對外提供은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情報가 集中占有될 가능성도 크다. 情報의 集中占有는 競爭의 前提條件으로 되는 각종 情報의 周知性을 취약하게 하고 市場의 有效競爭의 정도를 약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情報의 集中占有는 그 情報가 일단 複製되면 쉽게 붕괴될 것이므로 그러한 弊害는 情報에 대한 接近이 제한될 경우에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情報化는 또한 情報의 蒐集·傳達·處理能力面에서 企業間의 隔差를 확대시킬 수 있다.

즉 情報化에는 상당한 資金·노하우 등이 필요하므로 大企業과 中小企業, 企業과 消費者間의 情報隔差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企業에 있어서 企業活動에 필요한 情報는 기본적으로 같을 것이므로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情報隔差는 同種情報의 蒐集·傳達·處理에 관련된 隔差가 중심으로 된다. 企業과 消費者間에서는 消費者가 필요로 하는 情報가 商品의 品質·價格·入手方法 등에 관한 情報로 受發注情報나 在庫情報 등 企業經營에 관한 情報와는 다르다.

情報化에 의한 企業間의 隔差問題에 있어 내부의 情報處理나 이를 살려 環境變化에 機動的으로 대응한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臨機應變을 할 수 있는 中小企業이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外部情報의 입수나 컴퓨터등 情報處理機器의 導入·活用과 資金·人力 등의 면에서는 中小企業이 大企業에 비해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 外部情報의 입수와 관련하여 특히 데이터베이스가 문제로 된다. 大企業은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資金力등을 갖고 있는 반면 資金力등의 制約이 있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외부의 情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情報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趨勢에 있어서 이것은 競爭條件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문제로 되기 쉬운 것이다. 또한 잘 팔리는 商品에 관한 情報와 같이 어느 정도 集積됨으로써 價値가 증대되는 종류의 情報에 대해서는 內部情報의 量이 작은 中小企業으로서 大企業과의 競爭上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情報化에 의해 企業間 隔差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각 市場에서 寡占化가 초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資金力·人力·物的 設備 등을 갖춘 企業은 스스로 中核으로 되어 비교적 쉽게 連結組織을 구축하고 그 事業活動을 效率化하며 戰略的 展開를 도모하여 가일층 競爭力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情報의 역할이 증대하는 情報化社會에 있어서는 資金力이나 物的 設備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저하하므로 종래의 槪念에서의 大規模企業이 항상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異業種間에서의 競爭이 활발하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반드시 寡占化가 진전된다고 할 수 없는 면도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連結의 經濟性을 추구하는 행동은 일반적으로는 市場構造에 대하여 開放性을 강화하는 면과 閉鎖性을 강화하는 면의 상반된 效果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業際化의 性格, 組織의 構成方法과 連結度의 强弱, 市場需要 및 去來行態의 變化方向, 情報의 效果 등 네가지 要因의 각각의 作動力과 相互組合의 정도에 따라 最終效果가 결정될 것이다. 情報化의 상반된 效果 중에서 어느 면이 강하게 작용할 것인가는 業種과 業態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時平線의 어느 時點에서 위의 네가지 要因의 作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각각의 經濟活動分野別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流通産業은 製品市場과는 다른 特性을 갖고 있다.

IX. 情報化와 流通

流通機構는 生産과 消費·産業用使用間의 간격을 잇는 社會的 裝置로서 많은 構成要素

로 성립되며 流通活動을 행하는 經濟主體에는 消費者와 여러 類型의 企業이 있다[37]. 이와 같이 다수의 企業과 消費者들이 流通에 관하여 서로 관련되면서 意思決定을 함으로써 流通機構가 성립하며 그 相互關聯이나 意思決定에 있어서 情報가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流通構造는 一次都賣·二次都賣·小賣로 이어지는 連鎖型 市場을 형성하여 각각이 연결됨으로써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며 物流·商流·情報流通이 서로 겹쳐 있으면서 각각 독립된 문제를 갖고 있다[38]. 情報化·情報連結組織化가 流通分野를 起點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성격에도 관계가 있으며 情報化의 진전에 따라 流通을 독자적인 分野로서 위치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39].

流通機構의 특징은 生産—都賣—小賣—消費段階에 따라 市場이 系列的으로 계속되어 있는 垂直的 連結市場構造, 流通段階가 내려감에 따라 地域的으로 확산되는 空間的 連結市場構造, 여러 종류의 財貨를 連結하는 각 財貨市場의 集合機能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垂直連結的·空間連結的·集合的 構造를 結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流通市場은 生産—都賣—小賣—消費者가 多面的으로 상호관련하는 連結組織市場으로서 主體間의 接面이 매우 중요하며 상호의 連絡·去來 등의 效率性이 크게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流通活動의 최대의 특성은 去來에 부수하여 所有權 移動·空間的 移動·時間的 移動등 財貨의 社會

37) 消費者는 消費財의 購入, 生産者는 生産物의 販賣와 投入物의 購入으로 流通活動을 한다. 그 밖에 垂直的으로 消費者와 生産者의 중간에 都賣業者와 小賣業者가 독립된 企業으로서 개재한다. 또한 社會的 分業의 결과로서 機能的 分化가 발생하여 物的流通에는 陸·海·空의 輸送業者와 倉庫業者, 商的流通에는 流通金融을 담당하는 金融機關과 危險負擔을 담당하는 保險業者, 情報流通에는 廣告·市場調査·情報處理·情報傳達經路(印刷物, 電波 등) 提供 등을 분담하는 專門業者가 있어 流通흐름에 관련한 業務를 다른 업무와 함께 수행한다.

38) 流通의 機能은 기본적으로 生産과 消費의 地理的·時間的·人的 差異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所有權의 移轉인 商的流通, 客體의 時間的·空間的 移動인 物的流通 및 이들에 부수되는 情報流通의 세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商的流通에는 所有權移轉機能·需給機能, 物的流通에는 集荷分散機能·貯藏保管機能, 情報流通에는 情報傳達機能·價格形成機能 등이 있다. 流通의 主體와 機能의 결합은 經濟發展에 따라 合理化되고 專門化·分業化되어 예컨대 購買에 快適性이나 娛樂性 등을 주는 便宜機能이나 뉴스·賣物情報 등 각종의 情報를 제공·판매하는 情報發信機能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각 機能이 통합되어 業際化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39) 情報化는 財貨의 經濟로부터 서비스의 經濟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며 이에 따라 經濟의 分析視角도 변화하여야 한다. 財貨中心의 經濟를 분석함에 있어서 첫번째 大前提는 商品의 一義的 定義로서 去來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商品의 單位가 명확하고 質이 客觀的으로 識別可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單位와 質이 분명하므로 規格化가 될 수 있고 去來對象이 명확하게 되며 당사자간에 合理的인 去來의 가능성이 열려 商品의 價格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개개의 財貨市場이 獨立單位로서 분명히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 두번째 大前提이다. 즉 市場과 市場과의 境界線이 분명하며 각 市場은 商品과 市場이 1對1로 대응하는 完結型 市場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셋째, 生産과 消費를 잇는 在庫와 生産者와 消費者를 잇는 流通이 市場의 需給調整의 緩衝役割을 수행한다. 그러나 情報化로 流通과 같은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서비스나 情報의 單位와 質 그리고 서비스의 生産性을 측정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市場의 境界도 業際化의 진전으로 重疊되고 不明確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는 財貨와 달리 대부분 生産과 消費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在庫가 없으므로 市場에서의 調整은 在庫가 아니라 時間이나 場所에 맡길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的 屬性을 변화시키는 일종의 서비스生産이다[40].

情報·通信技術은 情報의 傳達·處理라는 連結組織技術이므로 본래적으로 連結組織業인 流通業에 쉽게 부합한다. 情報化의 中核은 情報連結組織化로서 流通이 갖는 垂直連結的·空間連結的·集合的 構造의 성격에 적합하며 이런 의미에서 情報化와 流通의 결부는 情報連結組織型 流通體系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流通主體間에 情報가 縱橫으로 연결되며 그 속에 情報를 集積·發散하는 中核的 情報處理機構를 갖고 情報를 低費用·迅速·廣域的으로 集積·處理·提供하면서 각 主體間의 情報流通의 速度와 量을 높이는 機能과 企業間의 相殺決濟機能등을 갖는 體系이다[41][42].

情報連結組織型 流通體系는 당연히 流通構造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이 體系를 통하여 消費의 欲求·時間·場所 등의 多樣性에 대응할 수 있고 집약된 情報를 활용하여 새로운 情報를 생산하며 이에 입각하여 새로운 商品·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市場의 狀況變化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商品을 適正量만큼 적합한 時間에 적당한 場所에서 적절한 價格으로 販賣할 수 있게 되며 消費者로서도 필요한 商品을 언제 어디서나 살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된다. 情報連結組織型 流通體系의 형성은 流通體系를 뒷받침하는 物流·金融등 관련분야의 支援體制의 정비도 촉진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분야의 效率性도 촉진시키게 된다[43].

情報連結組織型 流通體系는 價格에도 영향을 미친다[44]. 情報化에 의하여 價格情報의 周知性이 향상되어 價格機構의 機能이 향상된다. 그러나 質的情報는 情報化가 진전하더라도 그 周知性의 향상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면도 작지 않다. 즉 新媒體를 활용하더라도 商品의 質을 완전히 상대에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購買者에 의한 質의 확인에 있어서는 補助的 手段에 그치게 된다. 현실의 市場

---

40) 宮澤健一 編(1988).

41) 流通分野에 있어서 消費者가 필요로 하는 商品情報는 共同消費性이나 正의 外部性을 가지므로 準公共財的 性格을 갖는 반면 企業이 수집하는 販賣情報·顧客情報 등의 經營情報는 특정한 集團組織의 내부에서 활용되는 일종의 클럽財라고 할 수 있다. 消費者가 合理的 購買行動을 하는데 필요한 情報는 새로운 媒體에 의해 좀더 效率的으로 보급될 것이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媒體는 實物로부터 직접적인 情報를 얻을 機會를 감소시킨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2) 이 體系도 다른 産業分野에서의 連結組織과 같이 同業種·同業界內의 水平的 連結, 情報의 垂直性·段階性에 대응한 垂直的 連結 및 개개의 業種·業界의 境界를 넘어 財貨와 서비스를 融合하는 業際的 連結의 構造的 形象을 가질 수 있고 그 性格도 意思決定統合의 정도에 따라 강한 連結과 약한 結合의 두가지가 있다. 連結의 强弱은 情報連結組織型 流通體系를 흐르는 情報가 意思決定의 어느 段階에서 활용되는지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體系는 단지 情報流通을 위한 連結組織이 형성된 상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情報를 集積·處理하는 核이 존재하고 그곳으로부터 情報가 發散되는 構造的 特性을 갖는다.

43) 通商産業省 産業政策局 商政課 編(1985).

44) 價格機構의 機能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한 基礎條件을 情報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면 價格情報가 市場의 參加者에 대해 費用이 없이 傳達된다는 價格情報의 周知性, 市場에 어떤 財貨가 去來되는지가 모든 市場參加者들에 주지되어 있다는 質的情報의 周知性, 財貨의 量을 누구든지 統制·管理할 수 없다는 量的情報의 散在性, 購買者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去來의 匿名性등 네가지 條件으로 집약된다. 이 條件들로부터 市場의 規模가 抽象的이지만 결정되게 된다. 價格情報와 質的情報가 費用없이 전해지는 範圍가 市場의 範圍를 한정하는 要因이며 量的情報의 散在性과 去來의 匿名性이 확보되기 위한 市場의 規模와 市場參加者의 數가 市場의 範圍를 확대시키는 要因이 된다.

條件下에서 市場參加者는 價格情報만에 입각하여 행동할 수 없고 價格 이외의 情報도 필요로 한다. 이것은 특히 不確實性이 높을 경우에 合理的인 行動에 근접하기 위한 條件이 된다. 流通主體에 의한 連結組織이 市場에서는 얻기 어려운 각종 情報를 蒐集·蓄積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그 중요한 예이다.

한편 情報連結組織化의 진전에는 負의 측면도 존재한다. 예컨대 개개의 去來가 屬人的으로 파악되어 去來의 匿名性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消費者의 情報蒐集·處理能力은 情報化의 진전에 의해 향상될 것이지만 流通主體와의 隔差는 오히려 확대되어 그 결과 競爭的 小賣市場이 相對去來的 市場으로 변하고 市場의 有效競爭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종래에는 消費者가 販賣者의 正體를 아는 반면 販賣者는 消費者의 正體를 알지 못하였음에 비하여 情報化가 진전되면 거꾸로 販賣者는 顧客管理에 의해 消費者를 파악하지만 消費者는 자신에 대한 販賣者만을 部分的으로 밖에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消費者는 販賣者들을 비교할 수 있는 情報는 물론 자신에 대한 販賣者가 다른 消費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관한 情報를 얻는 것도 어렵게 되어 販賣者의 顧客管理가 쉽게 된다.

情報連結組織型 流通體系가 형성됨에 따라 종래와는 다른 유형으로 價格이 형성되는 측면도 있다. 價格은 원래 質과 單位가 명확한 商品에 대해 時點別로 형성되는 것으로 單品價格去來의 體系가 기초로 된다. 그러나 情報化·서비스化에 따라 商品과 質을 분명히 할 수 없게 되므로 商品에 情報를 부가한 結合財에 대하여 價格이 설정되는 등 여러가지 새로운 單位에 대해 價格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진전해 갈 것이다.

情報連結組織型 流通體系는 流通市場의 構造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流通分野에 있어서 情報連結組織의 規模의 經濟性은 相對的으로 작아 進入·退出이 격심하므로 情報連結組織型 流通體系가 다수 형성되어 상호간의 競爭이 表面化할 것이다. 둘째, 情報連結組織型 流通體系의 中核이 되는 結節型企業은 집적한 去來情報등을 效率的으로 활용하려고 하므로 情報의 統制를 지향하는 市場行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情報統制의 정도는 情報流通의 開放性의 程度·集積된 情報의 種類·情報網에 있어서의 結節(node)의 類型등에 따라 다르나 情報의 統制가 가능하게 된다면 結節型 企業의 市場占有力이 강화되고 有效競爭이 저해되는 정도도 높아지게 된다. 셋째, 情報連結組織의 형성에 있어서는 先發企業이 費用面에서 유리하게 된다는 經驗效果가 크게 작용한다. 넷째, 情報連結組織化가 더욱 진전하면 顧客情報와 去來情報의 결합에 의한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消費者까지도 連結組織에 편입되어 다양한 消費者欲求에 대응하는 市場分割型의 流通體系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 超過利潤이 발생한다면 競爭에 의해 견제될 수 있는 반면 結節型企業의 競爭狀態 여하에 따라서는 市場의 有效競爭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 다섯째, 消費의 組織化·클럽化의 문제로서 클럽의 進入·退出의 自由度가 높고 流通主體가 임의로 클럽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클럽은 拘束的인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반면 消費者는 종전보다 좁은 범위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으므로 競爭沮害的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情報連結組織型 流通體系에 내재하는 競爭性의 문제를 準競爭的 市場(contestable market)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본다[45]. 準競爭的 市場이라는 槪念의 前提는 첫째, 市場에 대한 進入과 退出의 自由로서 退出의 自由는 埋沒費用(sunk cost), 즉 生産을 중지하더라도 回收不可能한 固定費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장된다[46]. 둘째로, 새로운 進入企業도 市場內의 旣存企業과 같은 技術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이상의 두가지 條件으로부터 價格은 주어진 것으로 취급된다[47]. 이러한 條件들이 충족된다면 市場構造에 관계없이 超過利潤은 발생하지 않고 市場은 가장 낮은 費用으로 生産하는 企業으로 구성되게 된다. 즉 통상적인 定義에서의 獨占이나 寡占構造라고 하더라도 埋沒費用이 없이 進入·退出이 자유스럽다면 효과적인 競爭이 가능하게 된다[48].

情報連結組織型 流通體系에 있어서는 結節型 企業이 顧客情報·販賣情報 등 각종의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나 그 작성에 요하는 時間이나 企業戰略上의 價値등으로 보아 주요한 固定資本으로 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는 費用의 埋沒性의 정도가 市場의 準競爭性에 관련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는 情報財로서 팔 수 있으므로 埋沒費用이 작다면 情報連結組織型의 流通市場은 準競爭的으로 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형성에는 상당한 時間이 필요하고 旣存企業에 進入沮止價格을 설정할 調整期間을 주므로 특히 準競爭的 市場의 理論이 주장하는 一過的(hit and run)인 進入은 상당히 어렵다. 다음은 技術的 要因인데 설사 情報化에 대한 技術上의 制約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로 되는 것은 經驗效果로서 後發企業이 같은 技術을 활용하는 데 障碍로 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情報連結組織型 流通體系를 準競爭的이라고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게 된다.

한편 連結의 經濟性의 核은 連結組織化에 의한 主體內·主體間의 機能補完的인 連鎖的 相乘效果로서 規模의 經濟性이 機能集積的이며 集約的인 擴大效果를 核으로 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情報化 내지 情報連結組織化가 市場開放性을 높일 수도 있는 반면 閉鎖性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앞서

45) 準競爭的市場理論의 嚆矢는 Baumol, Panzar and Willing(1982). 有效競爭과 準競爭的市場의 槪念에 관한 槪括的 論議는 李奎億·尹暢晧의 前揭書 참조.

46) 固定投入物(fixed input)은 生産量의 增減에 관계없이 필요하게 되는 生産要素로서 長期에 있어서도 生産을 중지하지 않는 한 줄일 수 없다. 生産을 완전히 중지할 때 종전의 固定投入物을 다른 用途에 이용함으로써 그 費用을 회수할 수 있다면 이를 固定費用이라고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埋沒費用이라고 한다. 예컨대 鐵道會社에 있어서 鐵道는 埋沒費用으로 되며 컴퓨터會社에서 컴퓨터는 固定費用이나 埋沒費用은 아니다. 固定費用의 존재에 의한 規模의 經濟性과 埋沒費用을 수반하는 規模의 經濟性에서 실질적으로 進入障壁이 되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47) 여기서 세번째 條件은 準競爭的 市場의 槪念에서 가장 論難의 대상으로 된 것이나 이것은 旣存企業은 市場에서 불리한 條件이 형성된다면 언제라도 退出할 수 있으므로 進入을 방해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價格을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8) 準競爭的 市場의 개념을 流通市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지만 이것이 전통적 이론과는 다른 시각에서 獨占·寡占의 市場構造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多製品生産企業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두가지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개념의 成立條件은 엄격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이것은 현실을 분석하기보다도 현상의 평가를 위한 槪念으로 유익할 것이다.

지적한 바 있다. 流通市場의 開放性을 높이는 要因에는 情報의 蒐集·處理能力의 향상에 의해 他產業으로부터 流通市場으로의 橫的進入(cross entry)이 쉽게 되고 無店舗쇼핑에 의해 小賣業의 큰 進入障壁인 店舗立地條件의 制約이 약화되는 것 등이 있다. 거꾸로 流通市場의 閉鎖性을 높이는 것은 情報化에 대한 資金的·人的 制約에 따른 進入의 어려움이나 情報連結組織의 형성에 의한 去來關係의 固定化등을 들 수 있다.

情報連結組織化에 의해 價格·品質 등 商品에 관한 각종 情報의 周知性이 높아져 消費者가 합리적인 購買行動을 하기 위한 條件이 정비된다면 流通市場에서 企業間의 競爭이 가속되고 市場의 開放性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종래는 內部去來費用이 작다는 등의 이유로 市場보다 주로 組織形成에 의해 情報가 傳達되었으나 情報化의 진전은 市場去來費用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組織化指向이 약화되고 軟性結合이 생겨 市場의 開放性이 높아질 것이다. 더욱이 情報連結組織化 자체의 推進力이 市場의 開放性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高度情報化의 흐름이 불가피하게 기존의 規制를 제거시켜 市場의 競爭性을 높임과 아울러 이와 같이 市場의 競爭條件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流通市場의 複雜性이 크게 해소되어 流通市場의 低生產性이나 小規模零細性 등의 構造的 問題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情報連結組織의 형성으로 市場의 閉鎖性이 높아질 수도 있다. 예컨대 情報連結組織의 형성을 위한 端末機器의 費用이 높다면 連結組織間의 이동은 資金的으로 제약되므로 去來關係가 고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流通主體가 방대한 顧客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消費者別로 價格·서비스 등을 달리하고 市場을 分斷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한다면 消費者가 고정되므로 市場의 競爭性은 약화되고 그 결과 閉鎖性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流通主體間의 去來關係의 固定化는 情報連結組織에 의한 系列化나 情報隔差의 확대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流通市場의 開放性과 閉鎖性에는 각각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要因이 있으므로 그 평가에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며 특히 이 要因들은 각각의 活動分野別로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므로 連結組織의 主體別로 혹은 連結의 內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X. 情報化와 中小企業

中小企業의 情報化는 情報關聯機器가 高價이고 事業活動이 大企業에 비해 小規模이므로 生產·販賣·事務管理 등 各部門을 내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등의 要因으로 大企業에 비해 진전이 늦기 마련이다. 그러나 급속한 技術革新에 의하여 情報關聯機器의 價格이 하락하고 특히 都給과 流通部門의 中小企業을 중심으로 大企業의 情報化에 대응할 필요성이 점차 인식되면서 中小企業에도 情報化가 급속히 진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中小企業이 大企業과 都給(sub-contracting)을 통하여 垂直的인 去來關係에 있는 경우에는 情報化의 중요성이 강조된다[49]. 일반적으로 發注企業과 受給企業이 온

49) 都給(日本에서는 下請이라고 함)의 理論·歷史·

라인으로 連結組織化되는 基本要因은 發注企業이 종합적인 生産管理體系를 지향하기 때문이다[50]. 發注企業은 競爭의 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事務·生産의 效率化나 在庫의 감축을 통하여 費用을 일층 저하시켜야 하며 需要多樣化와 商品壽命의 短期化로 生産計劃을 短期化하고 적확한 需要豫測에 입각하면서 大量生産體制로부터 多品種少量生産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納期管理도 엄중히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技術集約度가 높은 製品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한편 使用者의 選擇眼도 엄격하게 되고 있으므로 精度나 品質을 향상시켜야 하며 發注企業 자신은 原材料만을 공급하고 製品工程을 대부분 각 工程別로 特化하고 있는 中小受給企業에 맡기는 경우에는 生産狀況·在庫狀況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生産指示나 出荷指示 등의 工程管理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긴요하다.

中小企業에 대한 情報化의 효과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製造業分野에서 生産工程과의 관계로 보아 어느 정도 공통된 效果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51].

첫째, 情報連結組織이 발전함에 따라 連結組織의 構成企業들간에 工程進陟情報를 一元的으로 管理할 수 있게 되어 財貨와 情報의 흐름이 一體化함으로써 迅速性과 正確性(精度)이 향상된다. 이에 따라 浪費가 축소되고 生産計劃을 쉽게 세울 수 있게 되어 經營의 效率化와 高度化가 촉진된다. 특히 多品種少量生産으로 情報量이 많아져 工場이나 企業이 遠距離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이다.

둘째, 連結組織에 참가하는 中小企業은 個別企業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生産管理體制의 향상과 高生産性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개개의 企業이 전체로서 生産分業體系를 형성하여 종합적인 生産情報管理體制를 확립하게 된다. 종래 生産의 合理化라고 하는 경우 生産工程 자체의 合理化에 역점이 두어져 그 결과 NC機器·産業用로봇의 도입등 메카트로닉스化가 受給企業에 있어서도 진전되어 왔으나 受給企業의 生産의 合理化를 더욱 진전시키려면 메카트로닉스化만이 아니라 이것과 결합하여 受注로부터 設計·生産·納品까지 종합적인 管理合理化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컴퓨터의 導入·利用은 이러한 종합적인 生産管理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팔릴 商品을 팔릴 때 팔릴 만큼 生産한다는 소위 看板生産方式(just-in-time method)을 일층 效率化하여 在庫를 축소하고 高生産性을 초래하게 된다.

셋째, 情報連結組織化가 발전하여 構成企業間에 生産管理의 一元化 나아가 經營共同體로서의 一體化가 진전되면 構成企業間의 分業體系가 하나의 大企業內의 生産工程別 分業體系와 같이 움직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效果를 보면 우선 業務面에서는 受發注業務處理能力의 合理化·節約化(OA化)로 費用을 절감하고 종래의 傳票作業이나 資料入力業務의 폐지 등 定型的 業務를 컴퓨터化함으로써 開發力·企劃力의 강화에 중점을 둘 수 있게 됨과 아울러 附加價値通信網(value-added network : VAN)의 경우 企業間의 休日·操業時間의 同時化가 불필요하게 되어 通信費의 삭

制度에 관한 硏究는 특히 日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이 문제를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논의한 최근의 文獻으로는 예컨대 李奎億(1986)과 朴埈卿(1989)을 참조.

50) 中小企業廳下請企業課 編(1985).

51) 通商産業省産業政策局 編(1985).

감이나 情報化를 위한 設備投資가 경감된다. 生產工程面에서는 先行時間(lead time)의 단축에 의해 市場의 변동에 대응하기 쉽게 된다든가 在庫의 저하로 資金負擔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連結組織을 구성하는 企業들 전체의 生產管理를 一元化함에 따른 合理化로 生產性이 향상된다. 또한 情報化와 메카트로닉스化의 相乘效果로 企劃·開發·設計段階로부터 完成品出荷까지 전체의 體系化를 촉진하여 CAD/CAM 體系나 FMS 등의 도입과 함께 生產性의 향상을 촉진하게 된다.

넷째, 情報連結組織化가 전개되게 되면 企業經營의 效率化·合理化라는 단순한 費用節減目的으로부터 連結組織을 통하여 情報의 活用範圍가 확대되어 範圍의 經濟性과 같은 效果를 초래하게 된다. 즉 종래의 經營活動의 틀에 들어가지 않는 新規事業의 積極的 展開를 가능하게 하고 事業의 擴大와 多邊化를 도모하는 등 企業競爭力의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經營戰略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受給企業에 있어서는 새로운 發注企業을 개척하거나 다른 受給企業과의 제휴를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事業展開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企業들의 所在·分布·必要性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또한 자신의 技術力向上등에 의해 受注能力이 향상되는 경우에도 이를 여러 受注企業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受給企業團體에 의한 去來斡旋情報를 위시한 각종 情報의 提供體制가 정비되면 그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情報連結組織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게 된다. 첫째, 情報連結組織은 構成企業 전체의 종합적인 生產情報管理體系를 형성하여 각 企業의 經營效率化와 生產性向上을 추구하게 되므로 尖端技術이나 最新銳機械設備 및 효율적인 管理體制를 갖는 高生產性의 企業을 중심으로 業界再編成 혹은 都給再編成을 초래하게 된다. 情報化의 진전은 都給企業의 選別要因이 되는 生產費·製品品質·納期 등의 對應力을 크게 좌우하므로 情報化의 進陟程度에 따라 受給企業間에 새로운 隔差를 발생시키거나 종래의 技術革新의 차이로 인한 隔差를 일층 확대시킬 수 있다. 특히 發注企業과 受給·協力企業間에는 發注企業에 의한 受發注管理·生產管理의 一元化 등을 통하여 受給·協力企業이 發注企業의 分工場的 存在로 되어 관리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中小企業에 있어서는 資金力의 부족이나 情報를 經營戰略上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人力의 부족등으로 情報化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情報化社會에 있어서는 情報는 매우 중요한 經營資源으로 資金力등의 면에서 유리한 大企業이 情報의 有效하고 戰略的인 활용을 도모하여 收益力을 높일 수 있으므로 情報面에서의 隔差가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새로운 經營力隔差로 나타나며 나아가 情報를 풍부하게 갖는 企業이 새로운 情報系列化에 의하여 市場支配力을 顯在化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中小企業에 부당한 去來制限등 각종의 不公正去來行爲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發注企業과 受給企業이 온라인으로 직결되면 소프트웨어의 作成方法 여하에 따라서는 受給企業의 生產工數·部品展開方式·生產의 進陟狀況 등까지 發注企業이 파악하여 受給企業의 自主性이 손상되거나 都給單價의

低下·納期短縮등의 去來條件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發注企業과 受給企業間의 代金決濟方式에 있어서 종래의 어음決濟에 따른 事務量 및 費用節減을 목적으로 예컨대 金融機關을 개재시켜 팩토링(factoring)方式을 도입한다면 이것은 發注企業과 銀行間의 온라인連結組織化를 전제로 하므로 그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受給企業이 去來銀行을 전환하거나 現金比率을 변화시키는 등 去來條件이 변화될 수 있다.

넷째, 發注企業은 온라인連結組織化를 계기로 在庫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少量의 發注를 高頻度·短納期로 하기 마련이지만 中小受給企業이 書面에 의한 情報交換段階로부터 일거에 온라인連結組織化되는 경우에 生產管理體制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는 한 發注企業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情報의 흐름과 자신의 製造品의 흐름간에 乖離가 발생하여 受注企業은 在庫를 증가시킴으로써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게 된다.

다섯째, 受給企業이 發注企業의 컴퓨터와 프로토콜(protocol)이 같은 機種을 도입하여야 한다면 受給企業이 去來處의 多邊化를 시도하더라도 發注企業間에 機種이 다른 경우 互換性(interoperability)이 결여되므로 需給企業이 여러 機種을 보유하여 이에 대응하려면 막대한 資金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첫번째로 지적한 원인과는 다른 技術的 理由로 불가피하게 특정한 發注企業에 의한 系列化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여섯째, 都給企業이 發注企業과의 사이에 온라인 連結組織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開發·補修 및 技術者의 確保·訓鍊에 필요한 費用이 크고 교환되는 情報量이 많게 되면 通信回線使用料도 증대하여 中小企業의 資金負擔이 커지게 된다. 그 밖에도 旣存 法制에 기인하는 制約도 개재하게 된다. 예컨대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 法律」에 의하면 原企業이 受給企業에 發注한 경우 發注內容을 적은 書面을 교부하고 受給企業 자신도 發注內容등에 관한 書類를 作成·保存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각종 稅法에도 去來關係書類를 記錄의 형태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온라인傳送에 의한 發注의 경우에는 이 原則과 부합되도록 制度面에서의 보완이 필요하게 된다.

일곱째, 企業間 情報連結組織化가 競爭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同業種企業間에 의한 水平型連結組織 중 共同데이터베이스처럼 情報提供이나 情報檢索을 주목적으로 하는 連結組織이나 業界에서 공동으로 情報處理連結組織을 構築·運營하는 경우는 構成企業間에 去來上의 優劣關係가 없고 네트워크의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開放的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連結組織의 경우 構成企業間의 連結은 連結組織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金融業·旅行代理業 등과 같이 連結組織에 의한 情報의 授受가 企業活動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실상 必須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情報連結組織을 當該業界의 다수의 企業의 참가에 의해 構築하려는 경우에 新規進入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참가할 수 없는 企業이 입는 피해가 크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業界內에 상당규모의 連結組織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構成企業이 意思疎通을 하여 價格이나 供給量 등을 제한하거나 그 實施狀況을 서로 감시한다면 명백한 競爭制限의 문제가 발생한다.

情報化의 진전이 불가피한 추세라면 都給企業으로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法制度 및 施行面에서의 보완을 별도로 한다면 情報連結組織의 전개를 위하여는 構成企業間의 生產技術·生產管理面에서의 平準化와 緊密化가 필요하므로 개개의 中小企業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生產工程의 自動化·體系化를 촉진하고 컴퓨터의 활용에 의한 經營의 效率化를 도모하며 독자의 生產情報管理體系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開發力을 강화하여 企業의 自主性을 확립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中小企業은 連結組織化에 대한 적응의 차이로 企業間 隔差가 확대되지 않도록 情報의 蒐集·傳達·處理能力·蓄積情報量·附加價値能力등 情報化裝備率을 높이는 體制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컴퓨터의 導入·利用 등에 따른 情報化의 效果는 메카트로닉스化와 비교하면 그다지 可視的이 아니므로 都給企業의 經營者에 대하여는 큰 誘因이 작용하기 어려우나 情報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그 企業의 基礎能力을 증강시켜 中長期的인 企業能力의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XI. 結言: 基本政策方向의 摸索

情報化는 그 技術的 內容뿐만 아니라 進行速度와 波及效果에 있어서 종래의 技術革新의 線型的 延長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政策의 發想과 展開도 새로운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經濟社會 전반에 걸쳐 情報化를 촉진하는 한편 情報化에 수반되는 각종의 副作用과 弊害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政府와 民間의 合理的인 役割分擔에 입각하여 經濟는 물론 經濟外的 領域에서의 多面的인 政策接近이 필요하다. 그러나 經濟的側面에서의 政策을 개괄적으로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므로 本稿에서는 情報化와 產業組織의 관계를 중심으로 몇가지 중요한 基本政策方向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產業橫斷的인 情報化 즉 業際化의 추세는 公共政策의 對象分野가 중첩된다는 것을 의미하나 이를 特定分野의 관점에서 본다면 業際化에 의해 관련되는 公共政策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產業間의 接面의 확대에 부응하여 政策間의 接面도 증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여러 產業에 걸친 情報化의 利點을 적극적으로 도출하고 그 波及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分割主義的 傾向이 강한 政府의 政策體制를 개편하여 政策을 종합적으로 立案·調整·施行할 뿐만 아니라 民間의 계속적인 참여 아래 부단히 政策을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政策에 통용되는 一般的 處方이지만 情報化는 금후 經濟社會의 가장 중요한 運動樣態일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강조되는 것이다.

결국 情報化에 따라 개개의 市場이나 產業을 대상으로 한 法制는 陳腐化할 수밖에 없으므로 多面的으로 전개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法體系와 行政組織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동시에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產業에 직접 관련되는 規制는 물론 情報化에 대응하는 새로운 業際

的 企業行動과 產業組織의 움직임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각종 競爭制限的 規制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技術的인 安全規定·規制나 財務·稅務·報告·申請 등 情報秩序形成의 行政行爲에 관련되는 制度도 적극적으로 情報化를 지원한다는 명확한 目標를 설정하여 情報化 沮害要因을 제거하고 情報化指向性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情報化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政府의 直接干涉을 배제하고 民間活力을 활용하여 市場競爭의 利點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것을 政策의 基本方向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情報의 市場化와 開放化를 촉진하여야 한다. 즉 通信回線·컴퓨터 등 다양한 情報媒體와 國內外의 技術·經濟·生活·行政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情報機資材施設의 利用機會를 개방함과 동시에 市場競爭을 통하여 그 이용의 高度化와 多邊化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政府企業의 獨占으로 운영되고 있는 情報通信事業에 대하여 국내외로부터 競爭을 導入하고 컴퓨터 機種間의 互換性을 확보하며 新媒體의 이용과 관련된 無體財產權을 보호하는 등의 방향으로 政策이 정비되어야 한다[52].

技術波及效果와 外部經濟性이 큰 大型·尖端의 情報通信技術의 硏究開發, 原型技術의 事業化 혹은 企業間 情報化隔差의 해소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目的·時限性을 명확히 하는 조건 아래 公的造成과 直接的인 政策介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政府와 企業의 共同活動의 가능성을 활용함과 아울러 그러한 政府介入이 市場經濟의 이점을 저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評價가 계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情報化의 核心인 企業間情報連結組織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과제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連結組織의 構成者로서의 大企業과 中小企業은 물론 關聯制度를 정비·도입하여야 하는 政府가 개별적으로 혹은 相互協助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情報化의 社會的 波及效果와 그 進展方向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競爭條件의 확보를 위해서는 현단계에서 情報化를 위한 機能과 制度面에서의 基礎條件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긴요하다.

情報連結組織化에 내재되어 있는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市場의 開放性과 閉鎖性이다. 市場의 閉鎖性과 관련된 機能面의 문제에서는 情報連結組織 자체의 閉鎖性과 市場 전체의 閉鎖性이라는 두 측면을 구별해야 한다. 예컨대 개개의 連結組織이 閉鎖的이라도 이것이 한 產業에 다수 존재하여 競爭하고 있는 경우에는 市場의 競爭性이 높아지는 면이 있고 開放的인 連結組織이라도 카르텔이나 기타의 拘束的 關係를 형성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情報化와 관련하여 市場의 閉鎖性을 높이는 要因으로서는 資金的·技術的 理由에 의한 進入의 어려움, 情報連結組織의 형성에 의한 去來의 固定化 및 系列化 등이지만 이것은 대부분 競爭條件이 충분히 확보되면 市場機構內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이므로 競爭促進이 긴요하게 된다. 이 점에서 政府의 競爭制限的 規

52) 우리나라의 情報通信產業의 競爭化와 對外開放化에 관하여는 현재 多角的인 論議가 政府와 關聯業界 및 硏究者들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中長期的인 政策方向은 금후 제시될 예정이다. 여하간 이 문제는 별도의 主題로서 分析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本稿에서는 이에 관한 問題提起에만 그친다.

制의 정비와 아울러 競爭政策의 積極的 展開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市場의 閉鎖性을 제거하고 市場의 開放性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環境造成에 의해 誘因을 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된다. 市場에 있어서의 拮抗力을 형성한다는 시각에서 情報化에 의해 競爭力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情報化가 수반하는 새로운 事業機會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中小企業에 의한 連結組織은 消費者와의 밀접한 접촉이 가능하게 되는 地域性, 連結組織參加者의 自主性의 중시, 組織構造의 開放性등 大企業에는 없는 유리한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새로운 事業機會에 대한 中小企業의 伸縮的 適應力을 발휘하도록 情報化와 관련한 大企業의 競爭制限行爲를 방지하는 것이 긴요하다.

消費者에 대해서는 情報에 쉽게 接近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個人情報의 누설등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消費者保護問題는 특히 流通分野에서 표면화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消費者信用데이터베이스의 형성·個人領域의 보호·事故責任의 明確化 등의 논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消費者의 情報化對應力을 형성하여 供給者와 消費者의 情報化가 균형있게 진전되도록 하는 것이다. 消費者保護는 情報의 수집·처리등의 면에서 企業에 비해 압도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消費者들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消費者가 市場에서의 궁극적인 決定者로서 市場의 競爭性을 규정한다는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情報連結組織의 形成過程에는 이 밖에도 다른 競爭政策上의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 우선 情報連結組織에의 加入·脫退에 대한 부당한 制限이 문제가 된다. 情報連結組織은 일종의 클럽組織이므로 일정한 加入資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業界全體에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企業에 대하여 加入이 봉쇄된다면 이들은 共同데이터베이스로부터 事業遂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情報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連結組織이 일종의 隘路카르텔(bottleneck cartel)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3]. 마찬가지로 情報連結組織 속에서 특정한 企業이 어떤 형태로든 差別的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情報連結組織의 利用을 制限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中小需給企業이 현재의 主發注企業 이외의 他企業의 情報連結組織도 이용할 수 있다면 都給去來가 고정되지 않으므로 競爭政策上 바람직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經費負擔·情報의 安全維持의 문제 등 여러가지 難點을 극복하여야 한다. 동시에 情報連結組織化에 의해 情報管理機能이 향상됨에 따른 역기능에 대하여도 대처하여야 한다. 예컨대 製造業體가 再販賣價格維持行爲(resale price maintenance)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末端販賣價格의 감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하하여 再販賣價格의 拘束이 쉽게 되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情報化와 관련된 產業組織的 政策의 과제에는 이미 위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였지만 情報·通信產業의 技術開發體制, 情報連結組織

53) 隘路카르텔은 同業種에 종사하는 수개의 企業들이 營業活動의 수행에 필수적인 資源(原資材·施設 등)을 共同獨占하고 그 이용에 있어서 다른 競爭企業들을 배제함으로써 競爭을 저해하려는 共同行爲를 말한다.

化를 위한 技術基盤의 확립과 이에 따른 效率性·互換性·安全性의 보장, 情報化의 國際的展開에 따른 國際情報去來의 문제, 情報通信市場의 開放化와 競爭化, 情報化에 의한 生產方式의 전환과 企業組織의 재편, 中小企業의 情報化隔差 해소, 情報化로 인한 流通產業의 변화와 서비스經濟化에 대한 대응, 情報化에 따른 無體財產權의 재정립, 情報化에 부응하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制度의 확충 등 허다한 문제가 산적하여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相互聯關의 시각에서 금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朴埈卿, 「經濟構造變化와 下請生產體制」, 『韓國開發硏究』, 1989 봄.

李奎億,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產業組織的 關係」, 『韓國開發硏究』, 1986 가을.

李奎億·尹暢皓, 『產業組織論』, 法文社, 1988.

加護野忠男·野中郁次郎·榊原淸則·奧村昭博, 『日米企業の經營比較: 戰略的環境適應の理論』, 日本經濟新聞社, 1988.

經濟企劃廳綜合企劃局(編), 『新情報論: 組織·關係·情報の新たな展開』, 1984.

經濟企劃廳綜合企劃局(編), 『高度情報社會の業際展望』, 1986.

經濟調査硏究會(編), 『經濟構造の變化と產業組織』, 1987.

公正取引委員會事務局經濟部調査課(編), 『新しい情報通信と獨占禁止政策』, 1985.

宮澤健一, 『業際化と情報化: 產業社會へのインパクト』, 有斐閣, 1988.

宮澤健一(編), 『高度情報社會の流通機構: 情報ネットワーク型流通システムの展開』, 東洋經濟新報社, 1988.

今井賢一, 『情報ネットワーク社會』, 岩波文庫, 1985.

今井賢一(編), 『ニューメディアと日本經濟』, 日本經濟硏究センター, 1984.

今井賢一 外, 『イノベーションと組織』, 東洋經濟新報社, 1986.

大藏省財政金融硏究室(編), 『ソフト社會を見る眼』, 1984.

龍澤菊太郎·小川英次(編), 『先端技術と中小企業』, 有斐閣, 1988.

壹岐晃才·木村立夫·影山喜一(編), 『情報化時代の產業·企業·人間』, 有斐閣, 1986.

綜合データ通信ネットワーク構想懇談會(編), 『ネットワーク化社會をめざして』, コンピユータ·エージ, 1984.

中小企業廳計劃部下請企業課(編), 『下請企業と情報化』, 1985.

中小企業廳取引流通課(編), 『中小卸賣業の情報化ビジョン』, 1985.

太田文平, 『情報關聯產業論』, 千倉書房, 1984.

通商產業省機械情報產業局(編), 『飛躍する情報化』, 1984.

通商產業省產業政策局(編), 『企業情報ネットワーク』, 1985.

通商產業省產業政策局商政課(編), 『情報武裝型 卸賣業ビジョン』, 1985.

港 哲雄, 「下請取引における「信賴財」の形成過程」, 『商工金融』, 1988. 1.

Arrow, K. J., *The Limits of Organization*, W. W. Norton, New York, 1974.

Baumol, W., J. Panzar and R. Willing, *Contestable Markets and the Theory of Industry*

Structur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Jovanovich, 1982.

Blau, P. M.,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John Wiley, 1964.

Caves, R. E. and M.E. Porter, "Barriers to Exit," R. T. Masson and P. D. Qualls (eds.), *Essays on Industrial Organization in Honor of Joe S. Bain*, Cambridge,. Mass.: Ballinger, 1976.

Cornes, R. and T. Sandler, *The Theory of Externalities, Public Goods, and Club Goo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Galbraith, J. K., *The Anatomy of Power*, London: Hamish Hamilton, 1984.

Imai, K. and H. Itami, "Interpenetration of Organization and Market: Japan's Firm and Market in Comparison with the U. 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 1984.

Langlois, R. N., "Internal Organization in a Dynamic Context: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M. Jusswalla and J. Ebenfield(eds.),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conomics: New Perspectives*, Amsterdam: North-Holland, 1984.

Mariti, P. and R. H. Smiley, "Co-operative Agreements and the Organization of Industr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June 1983.

Miles, R.E. and C. C. Snow, "Organizations: New Concepts for New Form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Spring 1986.

Nelson, R. R., "The Role of Knowledge in R & D Efficienc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ust 1982.

Piore, M. J. and C. F. Sabel,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New York: Basic Books, 1984.

Powell, W. W., "Hybrid Organizational Arrangements: New Forms or Transitional Development?,"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Fall 1987.

Williamson, O. E.,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Free Press, 1975.

經濟構造의 變動과 經濟豫測

— 變動係數벡터自己回歸모델을 이용한 分析 —

沈 相 達

本稿는 Sims가 개발한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經濟構造가 급히 변하는 상황에서의 經濟豫測의 正確度를 제고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本稿는 예측자의 事前信賴를 이용하여 계수의 값에 대하여 事前制約을 賦課하고 時間變動을 허용하는 變動係數벡타自歸(*TBVAR*)模型의 추정방법뿐만 아니라 事前制約의 母數를 선택하는 방법과 誤差의 分散이 自己回歸할 경우의 대처방법 등 豫測의 正確度를 제고시키는 데 실제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6變數模型을 이용하여 *TBVAR* 모델의 正確度를 他 모델과 비교한다. 政府建設, 總通貨, 私債市場利子率, 民間建設, 實質GNP 및 消費者物價指數 등 6變數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타일 *U*」값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TBVAR*은 時間變動을 고려하지 않고 事前制約만 적용한 *BVAR*이나 事前制約도 적용하지 않은 *VAR*보다 대부분의 변수의 예측에 있어 더 정확하며 民間建設을 제외하고는 *OLS*보다 豫測誤差가 작게 나타난다.

I. 序 論

時系列모델이 변수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관측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時系列編制方法이 바뀔 때 舊系列의 일부만을 新系列로 바꾸어 놓고 있어 이용가능한 시계열의 길이가 매우 짧다. 예를 들면, 時系列分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國民所得計定의 時系列은 일관된 기준으로는 70년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작성되어 있다.

이렇게 짧은 時系列資料를 예측모형에 사용할 시 恣意度의 問題로 인하여 설명변수로 쓸 수 있는 변수의 숫자가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예측자가 任意的으로 설명변수의 수를 적

筆者 : 本院 硏究委員

* 本稿의 모델추정에 이용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제공해 준 미네소타大의 Christopher Sims敎授, Bayesmth프로그램의 제공과 아울러 여러가지 助言을 해준 慶北大 河仁鳳 敎授, 本稿를 읽고 논평해준 朴佑奎 博士에게 감사를 표한다. 模型推定 및 計算作業을 도와준 朴仁元 硏究員과 원고정리 및 편집에 도움을 준 孫혜레나 硏究員, 柳男禮 硏究助員에게 감사한다.

게 하면, 예측변수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들을 빠뜨릴 가능성이 많다. 반면 모든 가능한 변수를 설명변수로 예측모형에 더할 경우에는 推定係數의 過多로 인하여 豫測의 誤差가 커진다[1].

우리나라의 급변하는 經濟構造와 잦은 時系列編制의 변화는 예측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즉 經濟變數의 關係가 80년대에서 70년대와 같다고 믿기가 어려우나, 관측치의 총수가 적으므로 標本期間을 나누어서 하부기간별로 모형을 추정하여 經濟構造의 변화를 모델에 반영시키는 통상적인 방법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다른 수가 없어 선택하게 되는, 전기간 동안 經濟構造의 變動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固定係數모델은, 표본기간 전체의 평균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그것도 그리 정확하지 못하게 반영하고 있을 뿐이므로, 표본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 政策效果를 分析하기에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

本稿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측을 해야 하는 豫測業務 從事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예측방법으로 「變動係數벡터自己回歸模型」(이하 *TBVAR*)을 소개하고 이의 有用性을 부분적으로나마 分期別資料를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同 *TBVAR*은 연구자가 계수의 분포 및 계수의 時間變動構造에 대하여 갖고 있는 事前的 지식과 자료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혼합해서 係數의 過多로 인하여 豫測誤差가 커지는 문제를 극복하고 아울러 係數의 時間變動을 허용하여 변동하는 經濟의 豫測效率을 제고시키는 방법이다[2].

本稿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II章은 變動係數모델의 연속계산과정인 「칼만필터」와 係數의 分布에 대한 事前制約의 明記 등 變動係數模型의 構造 및 이의 推定過程을 설명한다. III章은 係數의 事前分布의 母數를 선택하는 方法을 기술한다. 最適母數를 선정하는 기준과 아울러 豫測誤差의 분산이 自己回歸할 경우의 대처방법 등 變動係數模型의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한다. IV章은 우리나라의 70년 이후 분기별자료를 이용한 6變數 *TBVAR*을 추정한다. 이 章은 事前制約의 母數를 조직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예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추정한 *TBVAR*의 正確度를 單一變數모델이나 固定係數벡터모델과 비교한다. V章은 結語와 앞으로의 硏究方向을 제시한다.

II. 「베이지안 벡터自己回歸」 (Bayesian Vector Auto-Regression)[3]

벡터自己回歸法(*VAR*)은 經濟構造에 대해

1) 이에 대해서 Fair(1979) 참조. 그래서 時系列모델보다는 産業聯關分析이나 예측자의 감각이 더 신뢰를 받는 경향이 있다.

2) 朴佑奎(1987)는 經濟構造가 변동할 때 固定係數縮約모델은 여건변동에 따른 經濟行爲主體의 行爲가 과거의 樣態와 현저히 다를 수 있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Lucas(1976)의 指摘에 착안, 本稿의 모델과 같은 형태의 變動係數 벡터自歸모델을 이용하여 三低效果를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朴佑奎(1987)는 經濟構造가 아주 급격히 변동할 때에는 變動係數벡터모델이 固定係數모델보다 표본기간외의 기간에 대한 예측에 있어 예측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하였다.

3) 本節은 河仁鳳(1986)의 「칼만필터」모델설명을 재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사전적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을 전제로 한 非制約的 縮約型(unrestricted reduced form)의 모델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Sims(1980)가 개발한 벡터自己回歸法은 기존의 構造模型(structural model)과 같이 변수를 內生, 外生으로 恣意的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변수를 同一하게 內生으로 취급하며 時差構造에도 제약을 주지 않고 모든 變數에 동일한 시차를 부여하여 變數間의 완전한 相互作用을 허용하고 있다[4]. 따라서 變數間의 動學的인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係數의 數가 과다해서 발생하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5].

너무나 많은 係數가 작은 量의 자료로부터 추정되면 變數自體가 교란을 더하게 되어 이를 이용한 예측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다. 한편 변수를 줄이기 위해 어떤 설명변수를 배제할 경우,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간 聯關關係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Litterman(1981, 1982)은 係數의 過多와 지나친 單純化로 인한 問題를 피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事前信賴」를 제약으로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6].

4) 실제로 자료의 量의 제약으로 인해서 時差의 數에 制限을 둔다. 그러나 各 說明變數의 時差의 數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 이 時差를 몇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표본 밖의 豫測誤差를 가장 작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Akaike기준과, 시차의 數를 바꾸어서 추정한 推定誤差의 行列式의 決定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尤度比率테스트(likelihood ratio test)방법 등이 있다.

5) Fair(1979) 참조.

6) 이 事前信賴는 Sims(1980, 1982, 1986), Doan-Litterman-Sims(1984)에서도 이용되었다.

1. 「베이지안 벡터自己回歸」

「베이지안 벡터自己回歸」法은 중요한 변수에는 계수의 평균과 분산값을 크게 주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變數의 係數를 平均은 0으로 하고, 分散값은 최소가 되는 정규 분포를 갖도록 事前制約(stochastic prior restriction)을 부과하여 자료로부터 정보를 최대한 추출하여 係數의 事後的 分布를 추정하는 것이다.

2. 「變動係數 벡터自己回歸」
(Time Varying Vector Auto-Regression)

「變動係數 벡터自己回歸」法은 「베이지안 事前制約」(Bayesian Prior Restriction)을 「칼만필터」連續計算(Kalman Filter Algorithm)에 결합시킨 것이다. 이러한 變動係數 벡터自己回歸法은 係數의 초기값에 대한 事前分布와 係數가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명시한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 期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 예측치와 다음 期에서의 실제값과의 차이인 예측오차를 구한다. 이 예측오차에 가중치를 부과하여 계수의 분포에 대한 견해를 수정한다. 이 수정된 분포를 다음 期 예측의 사전분포로 사용해 가는 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변화하는 經濟構造에 대한 情報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이 방식은 係數의 分布에 대한 事前的 信賴(prior belief)를 바탕으로 정보의 증폭을 꾀하고 증폭된 情報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變動係數 벡터自己回歸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情報濾過 및 係數의 값을 수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칼만필터」演算過程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7].

가. 「칼만필터」變動係數 벡터自歸모델

變動係數 벡터自歸모델의 n벡터體系를 보면 다음과 같다.

$$
\begin{aligned}
Y_i(t) = {} & \theta^i_{11}(t)\, Y_1(t-1) + \theta^i_{12}(t)\, Y_1(t-2) \cdots + \theta^i_{1k}(t)\, Y_1(t-k) \quad \cdots\cdots\cdots\cdots (1) \\
& + \qquad\qquad\qquad\qquad\qquad\qquad + \\
& + \theta^i_{i1}(t)\, Y_i(t-1) + \qquad\qquad + \theta^i_{ik}(t)\, Y_i(t-k) \\
& + \theta^i_{n1}(t)\, Y_n(t-1) + \qquad\qquad + \theta^i_{nk}(t)\, Y_n(t-k) \\
& + C_i(t) + \varepsilon_i(t) \\
& i = 1, 2 \cdots, n
\end{aligned}
$$

$$
\text{혹은} \quad Y_i(t) = X(t)\,\theta^i(t) + \varepsilon_i(t) \quad \cdots\cdots\cdots\cdots (2)
$$

$$
X(t) = (Y_1(t-1) \cdots, Y_1(t-k) \cdots, Y_i(t-1) \cdots, Y_i(t-k) \cdots, Y_n(t-k))
$$

여기에서 說明變數가 各 式마다 같은 모든 變數의 k번째까지의 時差變數인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varepsilon_1(t),\ \varepsilon_2(t), \cdots, \varepsilon_n(t)\}$는 오차항으로 時系列非相關(serially uncorrelated)인 結合正規分布(joint normal distribution)를 가지며 평균은 $\{0, \cdots, 0\}$이고 分散은 $\sigma(t)$이다.

위 식에서 $Y_j(t-s)$는 j번째 Y변수의 s번째 과거시차이고 $\theta^i_{js}(t)$는 i번째 방정식의 j변수의 s번째 과거시차의 계수이다. 變動係數 모델이 固定的 回歸모델과 다른 점은 계수 θ^i_{js}가 고정적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값이 변하는 점이다. θ의 時間變化構造는 變化方程式에 의해 표현된다.

$$
\theta^i_t = R^i \cdot \theta^i(t-1) + \mu(t) \quad \cdots\cdots\cdots\cdots (3)
$$

R은 $n^2k \times n^2k$의 변환행렬로서 非確率母數(non-random parameter)를 가진 대각행렬(diagonal matrix)이며 $\mu(t)$는 시계열비상관인 결합정규분포를 가지는 오차항으로 평균은 0「벡터」이고 분산은 $M(t)$으로 $\varepsilon(t)$와는 서로 독립적이다.

나. 「칼만필터」過程

「칼만필터」과정은 $\theta(t)$를 추론하기 위한 循環過程(recursive procedure)을 의미하며 이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 : t期의 Y값 $Y(t)$를 알기 전인 t-1期에서 $\theta(t-1)$는 정규분포를 가지며 그 평균은 $\theta_{t-1|t-1}$이고 분산은 $\Sigma_{t-1|t-1}$이다.

$$
\begin{aligned}
& (\theta(t-1) \mid Y(t-1), \cdots, Y(t-n)) \\
& \sim N(\theta_{t-1|t-1}, \Sigma_{t-1|t-1}) \quad \cdots\cdots\cdots\cdots (4)
\end{aligned}
$$

여기에서 $\theta_{t-1|t-1}$은 $\theta(t-1)$의 $Y(t-1), \cdots,$

7) 그러나 테크니칼한 部分에 관심이 없는 독자는 여기에서 곧장 IV章으로 가도 좋을 것이다.

$Y(t-n)$에 의거한 條件附數學的 期待値이며 $\Sigma_{t-1|t-1}$는 條件附分散이다.

$$\theta_{t-1|t-1}=E[\theta(t-1) \mid Y(t-1), Y(t-2), \cdots]$$
$$\Sigma_{t-1|t-1}=Var[\theta(t-1) \mid Y(t-1), Y(t-2), \cdots]$$

여기에서 $\theta(t)$에 대한 最適推定値는 式(3)의 方程式에 의해 平均 $R\theta(t-1)$, 分散 $R\Sigma_{t-1|t-1}R'+\Lambda$의 정규분포를 갖는다.

$$(\theta(t) \mid Y(t-1), \cdots, Y(t-n)) \sim N(R\theta(t-1),\ R\Sigma_{t-1|t-1}R'+\Lambda) \cdots (5)$$

R'는 R의 전치행렬이며 式(5)는 t-1期에서 t期의 θ에 대한 사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단계 : t期에 도달한 이후 $Y(t)$의 관측이 가능해지면 $\theta(t)$의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를 계산하게 된다.

$\theta(t)$의 사후분포의 平均과 分散을 多變量統計(multivariate statistics)의 결과를 이용하기 쉽게 구할 수 있다[8].

W_1와 W_2가 二變量正規分布(bivariate normal distribution)

$$\begin{pmatrix} W_1 \\ W_2 \end{pmatrix} \sim N\begin{pmatrix} \theta_1, \Sigma_{11}, \Sigma_{12} \\ \theta_2, \Sigma_{21}, \Sigma_{22} \end{pmatrix}$$

를 가진다면, W_2에 의거한 W_1의 條件附分布는

$$(W_1 \mid W_2) \sim N(\theta_1+\Sigma_{12}\Sigma_{22}^{-1}(W_2-\theta_2),\ \Sigma_{11}-\Sigma_{12}\Sigma_{22}^{-1}\Sigma_{21}) \cdots\cdots (6)$$

이다.

8) $\theta(t)$는 바로 平均濾過誤差自乘 $E(\theta(t)-\theta_{t|t})^2$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theta_{t|t}$는 $Y(t)$, $Y(t-1), \cdots, Y(t-n)$에 의거한 $\theta(t)$의 條件附數學的 期待値이다.

따라서 式(6)을 이용함으로써 $Y(t)$에 의거한 $\theta(t)$의 事後分布를 다음과 같이 얻는다.

$$(\theta(t) \mid Y(t),\ Y(t-1), \cdots) \sim N\begin{cases} \theta_{t|t-1}+Cov[\theta_{t|t-1}, Y(t)] \cdot Var[Y_{t|t-1}]^{-1}(Y(t)-X(t)\theta_{t|t-1}), \\ \Sigma_{t|t-1}-Cov[\theta_{t|t-1}, Y(t)] \cdot Var[Y_{t|t-1}]^{-1}Cov[\theta_{t|t-1}, X(t)]' \end{cases} \cdots (7)$$

여기에서

$$\theta_{t|t-1}=E(\theta_t \mid Y(t-1),\ Y(t-2), \cdots, Y(t-n)=R\theta_{t-1|t-1} \cdots\cdots (8)$$

$$\Sigma_{t|t-1}=Var(\theta(t) \mid Y(t-1), \cdots, Y(t-w)) =R\Sigma_{t-1|t-1}R'+\Lambda \cdots\cdots (9)$$

$$Cov(\theta_{t|t-1}, Y(t))=\Sigma_{t|t-1} \cdot X(t) \cdots (10)$$

$$Var(Y_{t|t-1})=Var(Y(t) \mid Y(t-1), Y(t-2), \cdots, Y(t-n)) =X(t)(\Sigma_{t|t-1})X(t)'+6 \cdots\cdots (11)$$

式(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만필터」모델은 $\theta_{t|t-1}$에서 $\theta_{t|t}$로 추정 과정에서 예측오차, $Y(t)-X(t)\theta_{t|t-1}$와 「칼만효과」(Kalman gain) $Cov(\theta_{t|t-1}, Y(t))\ Var(Y_{t|t-1})^{-1}$을 이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1期前 과거에서 행한 今期에 대한 예측의 오차로부터 攪亂(noise)과 情報(signal)를 가려내는 것으로 여기서 추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今期의 θ_{t-1}에 대한 견해 $\theta_{t|t}$를 형성하고 이 $\theta_{t|t}$를 다음期의 Y_{t+1}을 예측하는 데 事前分布로 사용한다.

다. 「베이시안 事前制約」의 明示

「칼만필터」模型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본기간 초기의 平均과 共分散(initial mean and

covariance) 行列을 명시하여야 한다. 초기값을 얻는 한가지 방법은 자료로부터 얻는 방법, 즉 標本資料의 一部를 사용하여 초기값을 추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資料에는 많은 교란(noise)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標本資料로부터 초기값을 추정하는 것은 非效率的일 것이다. 특히 관측치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資料의 一部를 이용하여 얻는 초기값은 부정확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칼만필터」벡터自己回歸모델에 「베이시안 事前信賴」를 적용하는 것이다. 「베이시안 事前信賴」方法은 經濟의 시계열자료의 흐름이 추세를 갖지 않는 無作爲步行(random walk)과 비슷하다고 믿고 自己回歸方程式에 있어서 自身의 첫번째 時差變數가 從屬變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89년도 2/4분기 民間投資額을 88년도 2/4, 3/4, 4/4 및 89년도 1/4분기 民間投資額, 國民總生產, 公共投資額, 私債利子率, M_2 및 物價 등을 說明變數로 하여 回歸方程式을 추정해 보면 89년도 1/4분기 民間投資額이 89년도 2/4분기 民間投資額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믿는 것이다[9].

이러한 믿음 아래 이루어진 「베이지안 明示化」는 事前平均으로 자체 과거 첫번째 시차변수는 1을 주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0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시차가 멀어질수록 또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獨立變數일수록 係數의 事前分散값을 작게 주는 것이다[10].

方程式 i의 係數의 사전평균 및 事前分散은 다음과 같다.

$$m(0)^{i}_{js} \begin{cases} = Mean(\theta^{i}_{js}) = 1 & (i=j\text{이고 } s=1) \\ = 0 & (i \neq j \text{ 또는 } s \neq 1) \end{cases}$$

$$Var(\theta^{i}_{js}) = \Sigma^{i}_{js} = \frac{\sigma_i^{*}\pi_1\delta_{ij} + \pi_1\pi_2(1-\delta_{ij})}{\sigma_j}\pi_3 \quad \cdots\cdots\cdots\cdots (12)$$

여기서 σ_i는 方程式 i의 잔여항 ε_i의 분산으로서 一變量 最小自乘法(univariate ordinary least squares method)에 의해 구해진 殘差의 分散이다. δ_{ij}는 Kroneker delta로서 다음과 같다.

$$\delta_{ij} = \begin{cases} 1 & (i=j) \\ 0 & (i \neq j) \end{cases}$$

事前母數 π_1는 i번째 方程式의 i번째 變數, 즉 自體變數의 分散의 크기를 정하고, π_2는 $0<\pi_2<1$ 값으로 다른 變數들의 分散의 크기를 自體變數의 分散의 값보다 比例的으로 작게 되도록 조절한다. π_3는 시차값 s에 比例的으로 減少하는 s의 函數값으로 $\pi_3 = f(s)$이다. 즉 먼 과거시차의 變數일수록 적은 分散의 값을 갖도록 한다.

라. 係數의 時間變化構造에 대한 明示

係數 θ의 時間變化構造는 變化方程式 (3)에 의해 표현되었다.

$$\theta^{i}(t) = R^{i} \cdot \theta^{i}(t\text{-}1)^{i} + \mu(t)$$

μ의 分散 $Var(\mu(t))$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Lambda^{i}_{st}(t) = \pi_6 \Sigma^{i}_{js}(0) \quad \cdots\cdots\cdots\cdots (13)$$

---

9) 자체 과거의 첫번째 時差變數뿐만 아니라 둘째 변수도 중요하다고 믿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10) 事前分散의 값이 작을수록 係數의 추정값이 事前平均에 강하게 매어지는 효과가 있다. 事前分散의 값이 0이 되면 계수값은 사전평균과 같게 된다.

π_6는 $0 \leq \pi \leq 1$ 값으로 Λ의 값은 초기의 Σ 값에 비례하여 주어진다.

한편 各 回歸方程式의 상수항에 대해서는 事前分布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수항의 事前平均은 0, 事前分散의 값 π_4는 크게 줌으로써 「칼만여과」과정동안 모델에 적절한 상수값을 표본으로부터 추출하도록 유도한다.

III. 最適母數의 選定

本節에서는 係數의 事前分布의 母數($\pi_1, \cdots, \pi_4$)의 값 및 時間變化率(π_6)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를 살펴본다. 事前分布의 母數값에 따라 推定結果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推定을 이용한 예측의 正確度도 영향을 받게 된다. 係數의 事前分布를 변동시킴에 따라 예측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적절한 「베이지안」推論方法은 서로 다른 母數값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을 事後分布의 確率密度函數값(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加重値로 해서 加重平均하는 것이다. 事後分布函數는 事前分布函數와 條件附確率密度函數(condition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값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 條件附確率密度函數가 다름 아닌 자료의 尤度函數이므로 「로그」尤度값은 모델의 適合度를 평가하는 좋은 척도가 된다. 특히 事前信賴를 도입하는 중요한 이유가 예측오차를 줄이는 것이라면 「로그」尤度값을 최대화하고 母數값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1. 變形最尤度基準(Pseudo Likelihood Criterion)

「칼만필터」모델은 式(2), (3)에서와 같이

$$\left.\begin{aligned} Y^i(t) &= X(t)^i\theta^i(t) + \varepsilon^i(t) \\ \theta^i &= R^i \cdot \theta^i(t-1) + \mu^i(t) \end{aligned}\right\} \quad \begin{aligned} i=1,\cdots,n \\ i=1,\cdots,n \end{aligned}$$

이고 標本資料로 연산을 하기 위해서 $\theta(0)$, $\Sigma(0)$, R, σ, Λ 값은 事前 明示한다.

그런데 實證分析에 있어서 예측오차와 그 분산은

$$\varepsilon^i(t) = Y^i(t) - X^i(t)\,\theta^i_t(t-1) \quad \cdots\cdots(14)$$

$$\eta^i(t) = Var(\varepsilon^i(t)) = \sigma(t) + X(t)\Sigma_{t|t-1}X(t)' = Var(Y_{t|t-1}) \cdots(15)$$

이다. ε가 정규분포를 가진다면 「로그」尤度函數는

$$log\ L^i = -\frac{T}{2}\ log\ 2\pi - \frac{1}{2}\sum_{t=1}^{T} log\ \eta^i(t) - \frac{1}{2}\sum_{t=1}^{T}\frac{(\varepsilon^i(t))^2}{\eta^i(t)} \cdots\cdots\cdots\cdots\cdots(16)$$

이 된다.

그러나 이 「로그」尤度函數를 최대화하는 것으로 最適母數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델의 연산을 위해 事前에 明示된 $\Sigma(0)$, σ, Λ 등의 분산값을 λ倍 하면 계수의 事後平均의 값 $\theta_{t|t}$는 변하지 않는 반면 $\eta(t)$값은 λ倍 된다. 따라서 「로그」우도값은 달라지게 된다. 즉 동일한 예측오차를 초래하는 모수가 그 스케일을 달리함으로써 상이한 우도값을 갖게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Doan-Litterman-Sims(1984)는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λ값을 구해서 이를 우도함수에 대입한 다음의 代用尤度函數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log\ L = -\frac{T}{2}\ log\ \frac{1}{T}\sum_{t=1}^{T}\frac{\varepsilon^2(t)}{\eta(t)/\bar{\eta}_t} - Constant \quad \cdots\cdots(17)$$

여기에서 $\bar{\eta} = \Pi_{t=1}^{T}\eta(t)^{1/T}$

즉 $\bar{\eta}$는 $\eta(t)$의 幾何平均이 된다. 따라서 이 우도함수는 동일한 事後係數, 즉 同一豫測値에 대해 유일한 우도값을 제공하므로 最適豫測의 기준이 된다. 또한 最適母數는 예측오차의 자승을 오차의 표본기간 평균분산의 해당기 분산에 대한 比率을 加重値로 하여 加重平均한 平均豫測誤差의 자승을 最小化하는 것이다.

한편 「칼만필터」과정에서 생성된 1期 앞 예측오차가 自己回歸 條件附 異分散(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 이하 *ARCH*라고 함)을 갖게 될 경우에는 「칼만필터」과정이 가장 효율적인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이 *ARCH*가 있을 때의 문제점과 이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도 논의하고자 한다.

2. ARCH除去를 위한 「칼만필터」의 修正[11)]

「칼만필터」과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1期 앞 예측오차는 異分散(heteroscedasticity)을 갖게 된다. 「칼만필터」과정은 式(7)에서와 같이 분산 η_t으로 나누어진 값을 이용해서 계수의 값을 수정하므로 일반적인 異分散으로 인해서 추정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는 問題는 이미 해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ngle(198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측오차의 분산이 自己回歸한다면 分散 $\eta(t)$의 제곱근으로 $Y(t)$ 및 $X(t)$를 나누는 加重最小自乘法(weighted least squares)은 더 이상 효율적이 아니다[12)].

豫測誤差의 分散 η_t가 다음과 같이

$$\eta_t = \alpha_0 + \alpha_1\varepsilon_{t-1}^2 + \cdots + \alpha_p\varepsilon_{t-p}^2 + e_t \quad \cdots\cdots(18)$$

自己回歸하면 과거의 豫測誤差는 미래의 분산값에 대해서 情報를 주게 되지만 單純加重最小自乘法은 이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式(16)의 「로그」尤度函數를 극대화하는 θ의 값은 다음을 만족시켜야 한다.

$$\frac{\partial\ log\ L}{\partial\theta} = \frac{1}{T}\Sigma\frac{\varepsilon_t X'_t}{\eta_t} + \frac{1}{T}\Sigma\frac{1}{2\eta_t}\frac{\partial\eta_t}{\partial\theta}\left(\frac{\varepsilon_t^2}{\eta_t} - 1\right) \cdots\cdots(19)$$

첫번째項은 일반적인 異分散(heteroscedasticity)의 수정을 위한 조건이다[13)]. 두번째項은 η_t가 θ의 함수이므로 극대화조건의 일부가 되었다.

실제로 $\frac{\partial\eta_t}{\partial\theta}$의 값은 다음과 같다.

---

11) 本節에 論議되는 *ARCH*現象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Engle(1982)과 Bollerslev(1986)를 참조.

12) 여기에서 效率的이 아니란 말은 추정결과가 最尤度推定値(maximum likelihood estimator)와 다름을 뜻한다.

13) 「칼만필터」演算公式을 보면 異分散의 제거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rac{\partial \eta_t}{\partial \theta} = \alpha_1 \varepsilon_{t-1} X'_{t-1} + \cdots + \alpha_p \varepsilon_{t-p} X'_{t-p}$$

이를 式(19)에 대입하고 X와 ε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log L}{\partial \theta} = \frac{1}{T} \Sigma \varepsilon_t X'_t [\eta_t^{-1} - \sum_{j=1}^{p} \alpha_j \eta_{t+j}^{-2} (\varepsilon_{t+j}^2 - \eta_{t+j})]$$

$$= \frac{1}{T} \Sigma \varepsilon_t X'_t \cdot S_t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20)$$

만약에 p가 1일 경우 즉 1次自己回歸의 경우 S_t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S_t = \eta_t^{-1} (1 - \alpha \frac{\eta_t}{\eta_{t+1}} (\frac{\varepsilon_{t+1}^2}{\eta_{t+1}} - 1))$$

η_t는 η_{t+1}와 $\frac{\varepsilon_{t+1}^2}{\eta_{t+1}}$는 $\frac{\varepsilon_t^2}{\eta_{t+1}}$ 와 서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frac{\varepsilon_{t+1}^2}{\eta_{t+1}}) = 1$이므로 S_t는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14].

$$S_t \approx \eta_t^{-1} (1 - g(\frac{\varepsilon_t^2}{\eta_t} - 1)) \approx$$

$$\eta_t^{-1} [1 + g(\frac{\varepsilon_t^2}{\eta_t} - 1)]^{-1}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21)$$

따라서 $ARCH$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η_t 대신에 $\eta_t[1 + g(\frac{\varepsilon_t^2}{\eta_t} - 1)]$로 나눈 正常式(normal equation)을 풀어야 할 것이다. 「칼만필터」과정은 η_t로 나누고 있으므로 효율적 추정을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 정상적인 「칼만여과」과정을 통하여 ε_t 및 $\frac{\varepsilon_t^2}{\eta_t}$의 값을 구한후 $\lambda_t = 1 + g(\frac{\varepsilon_t^2}{\eta_t} - 1)$로 θ_t의 事後分散行列을 확대시키도록 한다. $t+1$期에도 정상적인 「칼만여과」과정으로 λ_{t+1}의 값을 구한후 θ_{t+1}의 分散行列을 확대시켜야 하나 이에 분산행렬이 t期에서 λ_t만큼 확대되어 있으므로 동 분산행렬을 $\frac{\lambda_{t+1}}{\lambda_t}$만큼 倍數調整(scale up)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末期까지 계속 반복하여야 한다[15].

$ARCH$ 존재유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ARCH$가 없다는 가정하에 「칼만필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 얻은 1期 예측오차의 자승을 상수항과 p개의 自己時差變數에 회귀시킨 회귀식을 추정한다. 여기에서 얻은 이 회귀식과 ε_t^2과 복합상관계수(R^2)와 오차의 수(T)를 곱한 $T \cdot R^2$가 충분히 큰지를 본다. $ARCH$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T \cdot R^2$은 $\chi^2(P)$의 확률분포를 갖는다[16]. 여기에서 $ARCH$가 존재한다고 판명되면 시차변수의 계수추정치 $\hat{\alpha}$를 이용하여 λ_t의 값을 계산한다. 이와 아울러서 最適母數選定을 위한 우도함수도 η_t를 S_t^{-1}로 置換한 것이 되어야 한다.

3. 多量母數 體制

이제까지는 모든 式의 事前分布의 構造가 같은 것을 전제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式의 사전분포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GNP 式은 公共投資式보다 변수의 시차가 더 중요할 수가 있다. 또한 M_2의 係數의 時間變

---

14) $1-a \approx \frac{1}{1+a}$(만약 a가 아주 작을 경우).

15) p가 2 이상일 경우나 Bollerslev(1986)가 말하는 바와 같이 條件附分散이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ARCH$, 즉 $GARCH$(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과정일 경우에 「칼만필터」연산과정을 그대로 두고 수정하는 것은 어려운 명제로 생각된다. 이때는 最尤度函數를 직접 추정하는 복합된 절차를 취해야 할 것이다.

16) Engle(1982) 참조.

動率은 私債市場利子率과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式간에 係數의 構造가 다를 경우 모든 式을 같게 취급하고 單一事前分布보다는 式들을 크게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첫번째 집단의 式의 母數는 두번째 집단의 모수의 π_5倍로 하는 二重母數體系가 우도값을 크게 할 것이다[17]. 이 경우 해당집단의 계수의 事前分布의 분산이나 時間變動係數의 분산을 적절하게 배수조정하여야 한다. 이 倍數母數 π_5도 추정되어야 한다.

4. 段階的 母數探索

本節에서 논의한 7개의 母數들의 最適벡타값을 찾는 것은 매우 지루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이를 조직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을 모른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Sims의 Bayesmth 계산프로그램은 미리 母數벡터값($\pi_i, i=1, \cdots, n$)을 여러 개 뽑아서 이에 대한 各式의 우도값의 합 $\{f(\pi_i),\ i=1, \cdots, n\}$을 이미 계산해 갖고 있을 때, Bayesmth는 $(\pi, f(\pi_i))$의 모든 점을 연결하는 함수 $f_1^*: f_1^*(\pi_i)=f(\pi_i)$를 구한 뒤 이를 이용해서 f^*를 최대화하는 π_1^*를 구하여 줌으로써 다음 번에 시도해볼 母數값 탐색의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pi_1^*=\pi_{n+1}$을 이용해서 「칼만연산」과정을 지나면 다시 $f(\pi_{n+1})$의 값이 구해진다. 이제는 하나가 더 늘어난(π_i, $f(\pi_i)$)를 연결하고 함수 f_2^*를 구해서 f_2^*를 극대화시키는 점 π_{n+2}^*를 찾아 준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함으로써 $f(\pi)$의 값이 어느 일정한 값에 접근하도록 한다.

이것의 자세한 사항은 附錄에 수록되어 있다. 실제로 이 과정은 최대값(global maxima)을 찾는다기보다는 극대값(local maxima)을 찾아준다. 따라서 Bayesmth를 이용하기 전에 母數벡터空間을 몇개의 넓은 지역으로 나누어서 탐색(crude grid search)을 선행하는 것이 좋다. 제1단계에서는 π_1과 π_6만을 변동시키면서 「그리드」探索(grid search)을 하고 제2단계에서는 母數의 式別差異의 구조를 판별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이 Bayesmth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實證分析

1. 資料說明

實證分析에 사용된 資料는 1970년 1/4분기부터 1985년 2/4분기까지의 分期別 時系列資料이며 이에 포함된 變數 및 略字는 다음과 같다.

RGFIN : 1980년 價格基準 實質政府建設(季節變動調整後)의 自然對數값

M_2 : 總通貨(季節變動調整後)의 自然對數값

17) 式別로 事前分布를 모두 다르게 할 경우 式別尤度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本 硏究에서는 가급적 모든 式을 같게 취급하도록 하는 벡터自己回歸모델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도록 2개 이상의 집단을 만들지 않기로 한다.

RUN : 私債市場利子率

RPFIN : 1980년 價格基準 實質民間建設(季節變動調整後)의 自然對數값

RGNP : 1980년 價格基準 實質國民總生產(季節變動調整後)의 自然對數값

CPI : 消費者物價指數의 自然對數값

여기에서 公共投資에 관한 資料中 分期別로 나타나 있는 것은 新國民計定導入 以前의 時系列 중 政府建設資料밖에 없어 *RPFIN*과 *RGNP*로 舊系列을 이용하였다. 舊系列의 GNP「디플레이터」는 1983년 2/4분기까지만 작성되어 있어 物價指數로 消費者物價指數를 사용하였다.

計定變動要因을 調整하기 위해서는 X−11 ARIMA方式을 사용하였으며, 利子率을 제외하고 이를 變數의 自然對數값을 모델의 變數로 사용하였다. 時差 k로는 4를 이용하였다.

2. 變動係數모델의 明示

모델은 6變數 變動係數모델이다.

$$Y_i(t) = X(t)\,\theta^i(t) + \varepsilon^i(t)$$

$$\theta^i(t) = \theta^i(t-1) + \mu^i(t)$$

로써 이들 係數의 事前分布는 다음과 같다[18].

$$\theta^i(0) \sim N(m_i^i,\ \Sigma_{js}^i)$$

$$m_{js}^i \begin{cases} =1 & (i=j\text{이고 } s=1) \\ =0 & (i\neq j \text{ 또는 } s\neq 1) \end{cases}$$

$$Var(\theta_{js}^i) = \Sigma_{js}^i = \sigma_i \times \frac{\sigma_i}{\sigma_j}\ \pi_1 \times \frac{1}{S^{\pi 3}} \quad (i=j)$$

$$= \Sigma_{js}^i = \sigma_i \times \frac{\sigma_i}{\sigma_j} \cdot \pi_1 \cdot \pi_2 \times \frac{1}{S^{\pi 3}}$$

$$\pi_1 = TIGHT,\ \pi_2 = OTHERS,$$

$$\pi_3 = DECAY,\ \pi_6 = TVAR$$

$$Var(\mu^i(t)) = \pi_6 \cdot Var(\theta_{t|t-1}^i)$$

π_1, *TIGHT*는 自體變數뿐만 아니라 모든 時差變數의 分散값의 크기를 정한다. 이 값이 작을수록 係數의 事後平均을 係數의 事前平均값의 근처에 '꽉' 잡아매는 役割을 하는 母數이다. σ_i는 i式의 잔여항의 分散이다. 이는 i變數를 자신의 4개의 時差에 회귀시킨 式을 추정했을 때의 殘差의 標本分散값으로 추정된다[19]. π_2, *OTHERS*는 타변수의 分散의 自體變數의 分散에 대한 比率이다. $\pi_3 = DECAY$는 시차의 수가 분산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母數로서 이 *DECAY*의 값을 크게 할수록 時差가 커짐에 따라 分散은 더 빠르게 작아진다[20].

3. 最適母數의 選定

III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變動係數모델의 추정결과는 어떠한 母數값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선정기준을 式(17)에 의한 尤度값을 식별로 계산하여 합한 값(이하 *LHSUM*)이다. 이 *LHSUM*을 최대로 하는 母數의 探索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가. 第1段階

제1단계에서는 *ARCH*의 존재나 式別母數

18) R을 항등행렬로 가정한 것과 같다.

19) Doan-Litterman-Sims는 殘差의 分散값에 0.9를 곱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TIGHT*, π_1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倍數調整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20) 本 實證分析은 *RATS* Version 3.0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表 1〉 **TBVAR의(제1단계 母數探索) 結果**

π_1	π_6		Theil's U(1分期後)					
TIGHT	*TVAR*	*LHSUM*	*RGFIN*	M_2	*RUN*	*RPFIN*	*RGNP*	*CPI*
0.1	0.1	1589.930*	1.056	0.304**	1.043	1.031	0.956	0.555
0.2	0.1	1580.540	1.021	0.306	1.061	1.006	0.979	0.537
0.3	0.1	1566.341	1.003	0.310	1.078	0.997**	0.992	0.535
0.4	0.1	1550.613	0.997**	0.315	1.090	0.998	1.001	0.538
0.5	0.1	1534.797	0.999	0.320	1.098	1.003	1.008	0.543
0.6	0.1	1519.460	1.005	0.324	1.103	1.008	1.014	0.548
0.7	0.1	1504.843	1.013	0.328	1.107	1.014	1.018	0.553
0.8	0.1	1491.054	1.023	0.332	1.108	1.020	1.021	0.558
0.9	0.1	1478.131	1.033	0.336	1.109	1.025	1.024	0.562
0.1	0.2	1571.520	1.089	0.302	1.070	1.053	0.997	0.537
0.1	0.3	1552.264	1.114	0.305	1.086	1.074	1.035	0.530
0.1	0.4	1535.080	1.130	0.308	1.097	1.090	1.064	0.527
0.1	0.5	1519.877	1.141	0.311	1.104	1.102	1.085	0.526**
0.1	0.6	1506.346	1.147	0.314	1.109	1.110	1.110	0.526
0.1	0.7	1494.237	1.152	0.317	1.112	1.117	1.111	0.526
0.1	0.8	1483.366	1.155	0.319	1.114	1.122	1.118	0.526
0.1	0.9	1473.586	1.158	0.321	1.116	1.126	1.124	0.527
0.1	0.0	1581.045	1.030	0.334	1.030**	1.026	0.942**	0.609

註 : 1) 本表의 Theil's U값은 1971년 1/4분기부터 1985년 2/4분기까지 前期에 대한 變動係數模型의 1期앞 豫測誤差임.

2) π_1, π_6의 母數는 첫번째와 두번째 列과 같고 다른 事前制約의 母數는 다음과 같음.
$\pi_2=0.2411695$ $\pi_3=1$ $\pi_4=2$ $\pi_5=1$ $\pi_7=0$

3) 여기에서 *는 제1단계 탐색결과 중 尤度값이 最大인 경우이고 **는 Theil's U값이 式別로 最小가 되는 경우임.

가 다른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다른 모수들은 고정시키고 *TIGHT*와 *TVAR*만을 변화시켜 다음 단계의 조직적인 母數探索의 시발점을 찾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TVAR*을 0.1로 하고 *TIGHT*를 0.1에서 0.9까지 변화시킬 때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IGHT*가 0.1일 때 *LHSUM*의 값이 제일 크다. 그러므로 이제는 *TIGHT*를 0.1로 하고 *TVAR*를 0.1에서 0.9까지 변화시켜 보았다. 이 18가지 母數벡타 중에서 *TIGHT*와 *TVAR*이 각각 0.1일 때 *LHSUM*이 가장 크다.

〈表 1〉의 오른쪽을 보면 各式의 「타일 U」값을 가장 작게 하고 모수의 결합이 式마다 다름을 알 수 있다[21].

21) 「타일 U」값(Theil's U Statistics)은 해당모델을 이용한 경우($M.D$)의 豫測誤差自乘의 平均의 次期의 값이 今期와 같다는 공식을 이용할 경우($R.W$)의 誤差自乘의 평균에 대한 비율의 제곱근이다.
$U=\sqrt{MSE(MD)/MSE(RW)}$ 이 U값이 1보다 크

따라서 제2단계에서는 式別母數構造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추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나. 第2段階

母數의 式別差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일차적으로 계수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또한 「베이지안」事前信賴도 이용하지 아니하고 自己時差만을 설명변수로 한 式(*OLS*)과, *OLS*와 같은 가정을 하고 다른 변수의 時差도 설명변수로 한 式(*VAR*)을 추정하였다. 또한 이 *OLS*에 「베이지안」事前制約을 부과한 *BOLS*와 *VAR*에 「베이지안」事前制約을 부과한 *BVAR*을 추정하였다. 70년 1/4분기부터 80년 4/4분기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이들의 式을 이용해서 83년 1/4분기부터 85년 2/4분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1期앞 예측을 할 경우 「타일 *U*」값이 〈表 2〉에 기록되어 있다. 「베이지안」事前制約은 제1단계의 결과 중 *LHSUM*을 제일 크게 하는 $\pi_1=0.1$, $\pi_6=0.1$을 이용하였다[22].

*OLS*와 *BOLS*를 비교해 보면 *RGFIN*, M_2 및 *CPI*에 있어 *BOLS*의 *U*값이 *OLS*의 경우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3개의 式에서는 사전제약이 너무 강한 것을 시사하므로 Doan(1989)의 제의를 따라 이들의 *TIGHT*의 값은 다른 式보다 크게 하여 줄 것이 요구된다.

한편 *BVAR*과 *BOLS*를 비교하여 볼 때 *BVAR*의 *U*값이 *RGFIN*, *RUM*과 *RGNP*에서는 *BOLS*보다 적은 반면 M_2, *RPFIN*과 *CPI*에서는 *BOLS*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M_2, *RPFIN*과 *CPI*는 *OTHERS*(π_2)를 작게 하면 예측오차가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고 *RGFIN*과 *RUM* 및 *RGNP*는 π_2를 크게 해 줄 경우 豫測誤差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

한편 계수의 시간변동을 고려하지 아니한 *BVAR*과 계수의 시간변동을 고려한 *TBVAR*을 비교해 보면 係數의 時間變動要因의 도입으로 예측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23]. *RGFIN*, *RPFIN*과 *RGNP*는 시간변동 도입후에 「타일 *U*」값이 커지는 반면 M_2, *CPI*는 시간변동후 *U*값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RUM*도 소폭이나마 *TBVAR*에서 예측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GFIN*, *RPFIN*과 *RGNP*는 時間變動率을 다른 변수들보다 작게 줄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母數를 式別로 다음과 같이 다르게 하는 것을 시도해 본다.

TIGHT : 式 (1), (2), (6)은 式 (2), (3), (5)의 4배

OTHERS : 式 (1), (2), (3), (5)는 式 (4), (6)의 2배[24]

TVAR : 式 (1), (4), (5)는 式 (2), (3), (6)의 1/8배

다는 것은 모델추정을 하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모델을 이용하는 것의 平均誤差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22) *RATS* Version 3.0은 이 探索을 간편하게 하는 프로그램(RUNTHEIL. PRG)을 갖고 있다.

23) Sims는 變動係數모델을 *BVAR*이라고 하였지만 本稿에서는 「베이지안」事前制約만을 적용한 모델을 *BVAR*이라 하고 變動係數모델은 *TBVAR*이라고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用語使用에 통일이 없는 단점이 있지만 시간변동 허용여부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기 위한 고려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24) *OTHERS*의 크기를 0.24보다 작게 할 경우에 *LHSUM*의 값이 증가함이 발견되어 제2단계탐색에서는 *OTHERS*로는 π_2대신 π_2^2을 사용하였다.

〈表 2〉 第2段階 母數探索結果 및 각 모델의 比較

Theil's U	OLS	BOLS	VAR	BVAR	TBVAR		
					I 단계	II-1	II-2
式(1) *RGFIN*	0.737	1.004	1.288	0.916	0.996	0.844	0.877
式(2) M_2	0.558	0.785	0.420	0.774	0.493	0.491	0.491
式(3) *RUM*	1.313	1.154	1.574	1.090	1.06	1.043	1.054
式(4) *RPFIN*	0.966	1.007	1.083	1.023	1.062	1.040	1.040
式(5) *RGNP*	0.704	0.709	1.009	0.649	0.732	0.704	0.729
式(6) *CPI*	1.277	2.919	2.668	3.162	1.083	0.874	0.874
LHSUM					1589.930	1613.166	1616.381
TIGHT π_1		0.1		0.1	0.1	0.4(1, 2, 6 式)	
						0.1(2, 3, 5 式)	
OTHERS π_2		0.001		0.24	0.24	0.116(1, 2, 3, 5 式)	
						0.058(4, 6 式)	
DECAY π_3		1.0		1.0	1.0	1.0	II-1과 같음
CONST π_4		2.0		2.0	2.0	2.0	
π_5					1	0.5	
TVAR π_6		0		0	0.1	0.0125(1, 4, 5 式)	
						1(2, 3, 6 式)	
ARCH π_7		0		0	0	0	0.3(1, 3, 5 式)
							0(2, 4, 6 式)

註 : 여기에서 Theil's U는 모델을 이용하여 1983년 1/4분기에서 1985년 2/4분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1期앞 예측을 하였을 경우의 값임.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式간의 母數값이 다를 경우에 單一母數體制보다 *LHSUM*이 1589.93에서 1613.166으로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모든 式에 있어서 「타일 U」값이 향상되는(작아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 *OLS*와 비교해 볼 때 *RGFIN*을 제외하고는 모든 式에 있어서 다른 변수의 時差變數들이 예측의 正確度를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外生的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政府建設의 경우를 제하고는 계수의 과다로 인하여 예측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 *VAR*의 內在的인 문제를 *TBVAR*모형이 2단계에서 이미 상당히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章 1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차의 분산이 自己回歸하고 있다면 이로부터의 情報를 이용해서 豫測의 正確度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제2단계의 탐색을 마치고 「베이스스므드」프로그램을 이용한 3단계 母數探索에 앞서서 豫測誤差의 分散의 自己回歸與否를 조사하였다.

예측오차의 自乘을 첫번째 自己時差에 회귀

〈表 3〉 ARCH테스트 結果

變　數	時　差=1		時　差=4
	R^2 2)	$ARCH$ 1)	R^2 3)
$RGFIN$	0.084*	0.287(2.01)	0.252*
M_2	0.001	0.046(0.25)	0.029
RUM	0.263*	0.512(3.96)	0.432*
$RPFIN$	0.024	-0.157(-1.04)	0.016
$RGNP$	0.047	0.212(1.46)	0.028
CPI	0.000	-0.004(-0.06)	0.007

註 : 1) $ARCH$는 $\varepsilon_t^2=\alpha_0+\alpha_1\varepsilon_{t-1}^2$式의 α_1의 추정값이며 ( )안은 t값임.
2) *는 $R^2\times T$가 $\chi^2(1)$의 95 percentile인 3.84보다 큰 경우로서 이 경우 $ARCH$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3) 본 列의 수치들은 $\varepsilon_t^2=\alpha_0+\alpha_1\varepsilon_{t-1}^2+\alpha_2\varepsilon_{t-1}^2+\alpha_4\varepsilon_{t-2}^2$을 추정하였을 경우의 R^2값임. *는 $R^2\times T$가 $\chi^2(4)$의 95 percentile보다 큰 경우임.

시킨 결과는 〈表 3〉에 수록되었다. $RGFIN$과 RUM式에 한하여 시차변수의 계수값이 統計的으로 有意하였다.

Engle(1982)이 제의한 χ^2테스트를 적용할 경우에도 이 두 式에서만 $ARCH$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空假說이 5% 수준에서 기각된다.

따라서 두 변수에 대해서 前章에서 살펴본 $ARCH$調整을 위하여 「칼만여과」과정을 수정할 경우의 결과가 〈表 3〉에 있다. $ARCH$母數(π_7)를 0.2로 하였을 때 $LHSUM$이 1613.166에서 1612.085로 감소함과 아울러 $ARCH$가 수정된 式의 「타일 U」값이 전보다 조금씩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RGNP$의 예측과 분산의 시차변수의 계수가 0.2로서 $RGFIN$의 그것과 같은 크기이고 t값은 1.46이 되므로 $RGNP$에도 $ARCH$修正을 적용하여 보았다. 아울러서 $ARCH$母數(π_7)을 0.3으로 늘려보았을 때 $LHSUM$의 값은 증가했으나 U값은 $ARCH$調整한 세 式 모두에 있어서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母數값이 式別로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는 것은 예측을 향상시키나 $ARCH$의 수정은 豫測正確度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불확실성의 이유가 $ARCH$調整方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ARCH$의 존재가 통계적으로 강하게 有意하지 않기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여러가지 母數의 結合을 시도해서 결과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보다 잘 알게 될 것을 기대하고 3단계로 넘어갔다.

다. 第3段階

이번 단계에서는 제1, 제2단계에서 얻은 母數의 대략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베이스스므드」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인 탐색을 시도한다.

이 3단계 母數探索은 2단계 탐색에서 사용한 母數벡터값들과 또 추가로 선택한 母數값 10개와 母數값의 $LHSUM$값 $[(\pi_i, f_i), i=1, \cdots n]$를 이용해서 Bayesmth로 하여금 이 10

〈表 4〉 第 3 段階 母數探索結果

Theil's U	OLS	Bayesmth에 의한 母數探索後 TBVAR의 豫測結果 (A)	(B)	(C)	(D)	ARCH 修正前 (E)
式(1) *RGFIN*	0.737	0.838	0.730	0.899*	0.791	0.817
式(2) M_2	0.558	0.458	0.415	0.505	0.451	0.458
式(3) *RUM*	1.313	0.973	1.051	1.101	0.983	0.972
式(4) *RPFIN*	0.966	1.025	1.034*	1.059*	1.023	1.025
式(5) *RGNP*	0.704	0.706	0.717*	0.689	0.711	0.686
式(6) *CPI*	1.277	0.703	0.698	0.882	0.704	0.713
LHSUM		1626.612	1609.113	1610.067	1621.743	1621.550
π_1		0.055	0.098	0.100	0.083	0.055
π_2		0.020	0.156	0.121	0.052	0.020
π_3		0.185	0.906	1.000	0.973	0.185
π_4		2.412	1.995	2.000	2.330	2.412
π_5		0.155	0.131	0.500	0.177	0.155
π_6		0.051	0.097	0.100	0.061	0.051
π_7		0.242	0.397	0.300	0.305	0.000

註 : 1) 여기에서 π_2는 (1),(2)式은 0.17, (3),(4)式은 0.083, (5),(6)式은 0.041이 이용되었음.
2) *는 *OLS*보다 Theil's U값이 큰 경우.

개의 점을 연결하는 연결함수 f_1^*를 구한 뒤 이 f_1^*를 극대화하는 점 π_{11}을 구하도록 한다. 연결함수 f_1^*는 10개의 (π_i, f_i)를 이용해서 구할 경우 어떠한 모수값 π의 條件附期待値 $E[f(\pi) \mid (\pi_i, f(\pi_i)),\ i=1,\cdots 10]$가 된다. π_{11}이 구해지면 「칼만필터」과정을 거쳐서 *LHSUM*값 f_{11}을 구한다. 그리고 다시 Bayesmth로 하여금 11개의 점을 연결하고 연결함수 f_2^*를 구하고 f_2^*를 극대화하는 π_{12}을 찾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30회 계속하였음에도 f값은 極大값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낮은 값의 f_i를 가지는 母數값들은 일부 버리고 이 과정을 약 15회 가량 계속하였을 때 f값이 極大값에 수렴하였다[25]. 결과는 〈表 4〉에 정리되어 있다.

(A)는 *LHSUM*이 가장 크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모수값은 하단에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타일 U」값으로 비교해 보면 *RGFIN, RPFIN* 및 *RGNP*式에 있어 *TBVAR*이 *OLS*보다 예측이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난다. (B)는 *RGFIN*과 *RPFIN*式의 「타일 U」값을 *OLS*보다 작게 하는 경우이고, (C)는 *RGNP*의 U값이 *OLS*보다 작은 경우이다. (D)는 탐색결과를 *RPFIN*의 U값이 제일 작아지는 경우이나 여기에서도 *OLS*보

25) 퍼스널 컴퓨터로 Bayesmth를 돌릴 경우 (f_i)의 값을 50개 이상 사용하면 f^*에 필요한 역행렬 $[COV(f_i, f_j)]^{-1}$를 구하지 못한다.

다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民間建設投資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 대한 적절한 母數를 선택하는 變動係數벡터모델이 *OLS*나 다른 모형보다 豫測의 正確度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變動係數모델(*TBVAR*)이 *RGNP*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不變係數「베이지안」벡터모델인 *BVAR*보다 *U*값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CPI*는 係數變動을 도입하면서 *U*값이 3.162에서 0.874로 매우 현저하게 작아짐을 알 수 있다.

本 硏究에서 시도한 모든 형태의 벡터모델이 民間建設投資를 *OLS*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OLS*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民間建設投資가 임의적으로 보행(random walk)하고 있으므로 첫번째 시차계수값이 1, 다른 계수값은 0이 된다. 그러므로 계수값이 1에서 늘 벗어나게 하는 *TBVAR*이 Random Walk의 예측에 있어 *OLS*를 능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標本이 추출된 기간이 經濟計劃에 의하여 民間投資를 유도했던 기간이었음에 비추어 政府政策方向이 民間의 投資決定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重化學工業育成을 위해 建設民間投資事業이 政策金融에 의해 지원되었으므로 이들 투자가 私債市場利子率이나 金融利用可能性의 척도인 M_2의 변화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民間投資가 자기보행을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므로 이 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ARCH*修正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母數는 모두 (A)와 같은 값을 갖도록하고 *ARCH*修正을 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를 추정하여 〈表 4〉의 (E)列에 명기하였다. (E)列의 결과를 (A)와 비교할 때 *ARCH*修正後 전기간의 尤度값 *LHSUM*은 커지는 반면 *ARCH*修正이 이루어진 式의 *U*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U*값이 현저히 커지는 곳이 *ARCH*가 통계적으로 그다지 有意하지 않았던 *RGNP*와 *RGFIN*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 母數選定基準으로 사용된 *LHSUM*은 每期의 誤差의 自乘의 가중치를 다르게 가중평균한 것에 비례하고 *U*값은 標本末期에의 기간의 예측오차자승의 單純算術平均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와 같이 대상기간이 다르고 가중치가 서로 다르므로 *LHSUM*을 향상(크게)시키는 모수가 반드시 *U*값을 향상(작게)시킬 수는 없으므로 이상의 결과는 기대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本 硏究에서 사용한 *ARCH*의 수정방법이 표본기간 밖의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正確度를 제고시키는 修正方法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結　　論

우리나라와 같이 經濟構造가 급격히 변하는 반면 이용가능한 자료는 충분히 많지 아니한 상황에서 豫測者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變動係數벡터自己回歸(*TBVAR*)模型을 소개하였다.

同 模型은 계수의 값에 대하여 事前制約을 賦課하고 時間變動을 허용함으로써 係數의 過

多로 인하여 예측이 부정확해지는 *VAR*의 단점과 係數의 過小로 인하여 주요한 상관관계를 포착하지 못하는 단순한 모델의 단점을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本稿는 「칼만필터」의 演算過程과 「베이지안」事前制約의 明示方法 등 *TBVAR*模型이 추정에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事前分布의 母數를 最適으로 선택하는 방법과 誤差의 分散이 自己回歸할 경우의 대처방법 등 豫測의 正確度를 提高시키는 데 실제 사용되는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6變數模型을 이용하여 이를 예시하였다.

政府建設, 總通貨, 私債市場利子率, 民間建設, 實質GNP 및 消費者物價指數 등 6變數를 70년 1/4분기에서 82년 4/4분기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TBVAR, BVAR, VAR, OLS*를 각각 추정한 후 각 모델의 83년 1/4분기에서 85년 2/4분기까지의 1期앞 豫測의 正確度를 비교하였다. 「타일 *U*」값을 기준으로 볼 때 *TBVAR*은 時間變動을 고려하지 않고 事前制約만 적용한 *BVAR*이나 事前制約도 적용하지 않은 *VAR*보다 대부분의 변수에 대한 예측이 더 정확하였다. 自己變數의 時差만을 說明變數로 하는 *OLS*와 비교할 경우에도 民間建設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모수를 선택하면 *TBVAR*의 예측오차가 작게 될 수 있음을 보았다.

民間建設의 경우 모든 형태의 벡터모형의 예측이 보다 정확하지 못한 것은 벡터모델에 포함된 변수의 선택이 적절치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타변수를 포함시키거나 이자율의 변수 등을 다른 변수로 대체한 후 다시 추정을 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RCH*除去를 한 후에 예측이 더 정확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TBVAR*의 有用性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ARIMA 모델이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구조적 모델들과도 예측을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추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公共投資가 物價나 民間投資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政策시뮬레이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政策分析에 모델을 이용하기에 앞서 상기 언급한 民間投資에 대한 豫測의 正確度를 제고시키는 것과 타모델과의 예측비교가 선행되어야 *TBVAR*을 이용한 政策分析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附錄 : Bayesmth 프로그램[26)]

母數 π가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尤度값 (*LHSUM*)을 계산하는 것이 本 硏究에서와 같이 「칼만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시간이 걸리는 狀況에서 모수값의 모든 가능성을 무작위적으로 다 시도해 보면서 最適母數값을 찾는 方法(numerical differentiation)은 계산부담이 너무 크다. 새로운 母數값을 시도해 보았을 때 우도값이 얼마나 변할지에 대해서 미리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경우에는 母數探索에 소요되는 시간이 節減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ims(1986)의 Bayesmth 프로그램은 모수값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同 프로그램은 n개의 母數값과 이에 대한 函數값(우도값) $\{(\pi_i,\ f_i) : i=1,\ \cdots,\ n\}$을 이용해서 이 점을 모두 통과하는 連結函數(interpolated function) f^*를 구한다. 즉 이 連結函數는 i의 모든 값에 있어서 $f^*(\pi_i)=f(\pi_i)$를 만족한다. 또한 $f^*(\pi)$는 새로운 母數값 π의 函數값 $f(\pi)$에 대한 條件附期待値가 되기도 한다.

이 연결함수는 f값들이 結合正規分布(joint normal distribution)를 갖는다는 假定下에서 $\{(\pi_i,\ f_i) :\ i=1,\ \cdots,\ n\}$의 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모수값으로 π의 함수값 $f(\pi)$를 예측할 경우의 最小分散線型豫測(minimum variance linear predictor)이 된다. 多變量統計學을 이용하면 이 連結函數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E[f(\pi) \mid (\pi_i,\ f_i) : i=1,\ \cdots,\ n] = B + f_0' \Omega^{-1}\ \Phi = f^*\pi)^{27)}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text{(A)}$$

$$\Omega = [R(\pi_i,\ \pi_j)]$$

$$\Phi = [R(\pi_i,\ \pi)]$$

$$f_0 = [f(\pi_i) - B]$$

여기에서 $R(x, y) = Cov(f(x),\ f(y))$로서 $f(x)$와 $f(y)$값의 共分散이다. 따라서 Ω는 기존 n개의 값 f_i의 共分散行列式이고 Φ는 f_i값과 새로운 $f(\pi)$값의 共分散벡터이다. B는 $f(\pi)$값의 大略的 平均値로서 기초값을 말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R(x, y)$의 形態에 대한 選擇이다. Bayesmth프로그램은 다음의 $R(x, y)$를 사용한다.

$$R(x,\ y) = \int k((x-z)'S)\ k((y-z)'S)\ dz$$
$$= \int exp[-S'(x-z)'(x-z)S] \cdot$$
$$exp[-S'(y-z)'(y-z)S]\ dz \quad \cdots\cdots\cdots\text{(B)}$$

여기에서 S는 대각행렬로서 $1/\tau_i(i=1,\ \cdots,\ k)$를 그 대각요소로 갖는 加重値行列(scaling matrix)이다. τ_i의 값과 B의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最小分散線型豫測인 f^*는

26) 本 附錄은 Sims(1986)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原文을 참조.

27) 式(6)에서와 같이 二變量正規分布(bivariate normal distribution)下에서 $E[X_1 \mid X_2] = U_1 + \Sigma^{12}\Sigma_{22}^{-1}[X_2 - U_2]$이다.

영향을 받게 된다[28]. 따라서 f에 대한 적절한 「베이지안」推論(Bayesian Inference)은 S와 B의 각기 다른 값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들을 加重平均하는 것이다. 이때 加重値로서 S와 B에 대한 「베이지안」事後分布의 確率密度函數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베이지안」事後分布의 確率密度函數값은 S, B에 대한 事前分布와 우도함수를 곱한 것이다. 그런데 우도함수는 S와 B의 값이 주어졌을 때 이 값들은 條件附로 하는 자료의 確率密度函數값이므로 資料에 대한 「로그」確率密度函數값(log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value)는 모델의 適合度에 대한 귀중한 척도가 된다.

結合正規分布를 가정하면 「로그」確率密度函數는

$$-.5\ log|\Omega| -.5\ f_0'\Omega^{-1} f_0 \cdots\cdots\cdots\cdots\cdots (C)$$

에 비례한다.

式(A)에 의한 豫測値의 값은 모든 $R(x, y)$의 값을 λ倍 해도 변하지 않으므로, Ω의 스케일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C)의 값이 영향을 받지 않는 척도가 필요하다. 이는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5n\ log\ f_0'\Omega^{-1} f_0 -.5\ log|\Omega|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D)$$

실제로는 이 (D)값으로 加重平均된 連結函數값 대신에 이 (D)의 값을 가장 크게 하는 B와 S를 이용한 것이 連結函數 f^*가 된다[29]. 일단 f^*가 결정되어 이를 f_1^*라고 하면 Newton-Raphson 極大化過程을 이용하여 f_1^*를 최대화하는 母數값 π_{n+1}을 구한다. 그리고 π_{n+1}을 이용해서 時間變動係數모델을 추정하고 또 $LHSUM(f(\pi_{n+1}))$을 계산한다. 이제 $f(\pi_{n+1})$이 얻어지면 이를 추가해서 또다시 $n+1$개의 f_i값과 π_i값을 이용한 連結函數 f_2^*를 구한 다음 f^*를 최대화하는 母數값 π_{n+2}를 구해서 이를 이용해서 또 $f(\pi_{n+2})$를 구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LHSUM$의 값이 어느 값에 접근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本 硏究에 이용된 變動係數벡터自歸模型의 프로그램과 Bayesmth프로그램은 우송료 및 디스켓값에 해당하는 實費를 필자에게 보낼 경우 플로피디스크에 넣어 우송할 예정이다.

28) $k(x)$의 函數形態가 바뀔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9) 이 B와 S의 값을 여러가지로 바꾸면서 (D)값을 구한 후 (D)값을 크게 하는 B와 S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족하다.

▷ 參 考 文 獻 ◁

朴佑奎, 「TVBAR 模型을 이용한 三低效果의 分析」, 『韓國開發硏究』, 第9卷 第1號, 1987 봄.

Bollerslev, Tim,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Journal of Econometrics*, Vol. 31, 1986, pp.307~327.

Doan, Thomas A., *Users's Manual RATS* Version 3.00.

Doan, T., R. Litterman, and C. A. Sims,

"Forecasting and Conditional Projection Using Realistic Prior Distributions", *Econometric Reviews*, 1984.

Engle, Robert F.,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with Estimates of the Variance of United Kingdom Inflation," *Econometrica*, Vol. 50, No. 4, July 1982, pp. 987~1008.

Fair, R.C., "An Analysis of the Accuracy of Four Macroeconomic Model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1979, pp.701~718.

Ha, In-Bong, "Predictability of Exchange Rat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1986.

Kalman, R.E., "A New Approach to Linear Filtering and Prediction Theory", *Journal of Basic Engineering*, March 1960, pp. 35~45.

Litterman, R.B., "A Bayesian Procedure for Forecasting with Vector Autoregressions," Working Pape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81.

_____, "Specifying Vector Autoregressions for Macroeconomic Forecasting", Working Paper,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1982.

Sims, Christopher A., "Macroeconomics and Reality", *Econometrica*, 48, 1980, pp.1~49.

_____, "Bayesmth: A Program for Multivariate Bayesian Interpolation", Discussion Paper No.234,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University of Minnesota.

Theil, Henry, *Applied Econometric Forecasting*, Chicago, IL., Rand-McNally, 1966.

醫療保險制度의 所得再分配效果

權 純 源

本稿에서는 최근 달성된 全國民醫療保險(NHI)의 財源調達方式을 개관한 다음 所得再分配觀點에서 理論的, 實證的 分析을 행하고자 한다.

醫療保險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병든 사람으로 醫療의 水平的 再分配機能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垂直的 再分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衡平과 관련하여 모든 國民들에게 필요한 最低水準의 醫療利用을 보장한다든가 醫療利用에 따른 經濟的 負擔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諸基準의 선택은 결국 우리 社會가 내려야 할 價値判斷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前者를 基調로 하되 後者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實證分析의 결과는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再分配效果를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간 給與와 保險料負擔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NHI 財政統合이라는 長期目標 아래 所得連繫的인 保險料負擔 및 給與體系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되 우선은 醫療保護부터 이 方案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고한다.

I. 序 論

최근 醫療保險의 財源調達을 둘러싸고 흥미를 자아내는 一連의 움직임[1] 이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이들 노력은 한결같이 醫療保險制度의 公平性과 결부되고 있는데 결국 社會保險의 所得再分配機能을 강조하는 데 焦點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醫療保險은 1989년 7월 1일을 기하여 全國으로 확대되었는데 醫療保護制度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약 10%의 人口를 제외할 경우 全國民을 適用對象으로 포괄하고 있어 全國民醫療保險(national health insurance, 줄여서 NHI)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2]. 그런데 社會保險으로서의 醫療保險과

筆者 : 本院 硏究委員

* 먼저 本 硏究를 위하여 電算資料를 제공해 준 醫療保險管理公團의 張慶植理事長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유익한 助言으로 本稿의 내용을 크게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준 本 硏究院의 柳一鎬박사와 高日東박사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本稿의 작성과정에서 유용한 討論者가 되어준 鮮于悳주임연구원과 빠르고 정확한 타이핑으로 시간을 절약해준 金賢淑주임연구조원께도 謝意를 표한다.

1) 大統領에 의하여 拒否權이 행사되어 폐기되었으나 國會를 통과한 바 있는 醫療保險統合法案이

公的扶助로서의 醫療保護를 합쳐 醫療保障制度라고 부른다.

Davis敎授가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NHI는 (1) 全國民에 대하여 醫療에의 接近을 보장하고, (2) 醫療費負擔이 주는 經濟的 곤란을 제거하며, (3) 保健醫療費의 上昇을 억제하는 등 財源調達機構를 통하여 가장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目標를 지니고 있다. 또한 NHI는 費用負擔과 給與側面에서 公平性을 기할 수 있고 制度에 대한 理解가 쉽고 行政이 容易하며 醫療供給者와 一般國民들에게 受容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3].

本稿에서는 그 중에서도 NHI財源調達의 垂直的 公平性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인바 이는 "高所得層에 비하여 低所得層에 歸着되는 費用負擔이 더 무겁지 않도록" NHI의 財源을 마련하는 방향이라고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NHI財源調達의 所得再分配的 측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所得再分配가 가장 절실한 經濟·社會的 政策課題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時代的 背景 아래 社會保險의 所得再分配機能이 다시금 강조되기에 이르렀고 政府도 이에 호응하여 막대한 규모의 補助金을 醫療保障을 위하여 쏟아넣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77년에 다 같이 시작된 NHI와 醫療保護는 오늘날 政府支出의 主要項目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本稿의 主目的은 現行財源調達方式이 보여주는 실제적인 所得再分配效果를 분석하고 설정된 評價틀에 의거하여 "賃金稅를 一般財政으로 代替"하여야 한다는 「保健과 社會」 등을 중심으로 하는 최근의 一部 主張을 검토한 다음 現制度를 보다 公平하게 개선시키기 위한 政策代案을 開發하는 데 두고 있다.

本稿의 構成은 序言에 이어 第2章에서는 주로 衡平의 觀點에 치중하여 NHI의 現行財源調達方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第3章에서는 保健醫療財源調達의 公平性을 평가하기 위한 基準을 설정한 다음 理論的 分析과 아울러 公平한 財源調達을 위한 方案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第4章에서는 現行醫療保險의 給與와 費用負擔을 所得階層別, 그리고 年齡階級別로 검토할 것이며 NHI財源調達과 관련하여 政策代案을 강구할 것이다. 끝으로 第5章은 지금까지의 分析과 論議에 기초를 두고 政策提案을 정리한 후 結言을 맺을 것이다.

II. 現行醫療保障制度의 財源調達方式

1. 醫療費調達의 所得分配的 側面

保健醫療費用을 어떻게 公平하게 조달하느냐 하는 과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醫療保險制度를 통하여 成就하려고 하는 目的이 무엇이며 실제로 그 醫療保險制度가 이들 目的을 얼마만큼 달성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4]. 그런데 1976년에 制定된 우리나라

나 敎會貧民醫療協議會의 주장 또는 「保健과 社會」 회원들의 論文들에서 볼 수 있는 것들.

2) 그러나 一部 地域住民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行政未備로 누락되고 있고 5人이하 勤勞者를 고용하는 零細事業場 중에서도 빠져 있는 업체가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全國民이 모두 NHI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3) Karen Davis(1975) 참조.

4) Anne Mills(1983) 참조.

의 醫療保險法은 第1條에서 醫療保險制度의 主目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疾病, 負傷, 分娩 또는 死亡 등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실시함으로써 國民保健을 향상시키고 社會保障의 增進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西歐의 福祉國家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社會保障制度의 觀點에서 우리나라의 NHI를 이해하고 評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醫療保險은 우리나라 社會保障體系를 구성하는 여러 制度 중에서도 投入되고 있는 資源의 규모나 加入人口의 擴大推移로 보아 가장 重要한 제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社會保障은 그 나라 國民들에게 日常生活에서 당면하는 各種 危險을 공동노력으로 分散시켜 社會構成員들을 보호하려는 社會的 裝置인바 합당하게 제도화될 경우 社會保障은 〈表 1〉에서 보는 것처럼 經濟的 福祉와 社會的 厚生增進에 바람직한 충격을 주게 된다. 社會保障이 가져오는 여러가지 效果 중에서도 本稿에서는 NHI가 주는 平等化效果와 保險效果를 중심으로 分配側面을 다루고자 한다. 前者는 주로 所得의 垂直的 再分配와 관련되며 後者는 주로 水平的 再分配와 관계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NHI는 社會的 危險分散에 근거를 두고 전국적으로 組織化된 財源調達機構로서 주로 民間醫療機關이 제공하는 醫療서비스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財源을 調達하는 公的制度라고 할 수 있겠다. 衡平의 관점에서 볼 때 醫療保險은 需要面에서 現物補助를 실시함으로써 再分配를 돕는 제도이다.

〈表 1〉 社會保障의 經濟的 및 經濟外的 效果

- 福祉의 改善
  - 經濟的 福祉의 增進
    - 1. 國民所得의 變動에 주는 效果
      - 國民生活의 安定化: 經濟不安의 保險化와 國民의 最低生活 保障
      - 景氣變動의 安定化:
        1) 財政手段으로서
        2) 自動安定化裝置로서
        3) 社會保障基金의 利用에 의해서
    - 2. 國民所得의 分配에 주는 效果
      - 垂直的再分配에 의한 平等化效果
      - 水平的再分配에 의한 保險效果
    - 3. 國民所得의 增大效果
      - 正의 效果:
        1) 公共貯蓄의 手段으로서
        2) 勤勞能力의 增大
        3) 勞使關係의 改善에 의한 間接的 影響
      - 負의 效果:
        1) 個人貯蓄의 減少
        2) 勤勞意慾의 沮害
  - 經濟外的 福祉의 增進
    - 1. 健康의 增進
    - 2. 不安·不確實性의 완화
    - 3. 住居環境의 유지·개선
    - 4. 社會的 連帶感의 向上

〈表 2〉 保健醫療費調達과 再分配側面(1989. 7)

醫療保障	財源調達方式	適用人口(千名)	所得移轉方式	管掌部署
A. 醫療保險	保險料, 國庫補助, 本人一部負擔	38,134	健康한 者에서 病者로 이전(水平的 再分配)	保健社會部
職場保險		15,312		醫療保險聯合會
地域保險[1]		18,634		醫療保險聯合會
公敎保險		4,188		醫療保險管理公團
B. 醫療保護	政府의 租稅收入, 本人一部負擔(2種, 3種)	4,246	所得階層間 이전(垂直的 再分配)	保健社會部
1 種		648		
2 種		1,917		
3 種(醫療扶助)		1,681		

註 : 1) 기존의 職種保險加入者 포함함.
資料 : 保健社會部 內部資料.

需要面의 주된 現物補助制度는 NHI와 醫療保護로 나누어지는데 간접적인 需要補助方式도 채택되고 있다. 이를테면 醫療保險에 가입하고 있는 職場勤勞者가 每月 불입하는 保險料[5]에 대하여 勤勞所得稅가 면제되고, 勤勞者 1人當 年間 24萬원까지 本人負擔醫療費에 대하여 역시 免稅가 되며 使用者가 부담하는 나머지 1/2의 保險料에 대하여도 事業所得稅가 면제되는 제도 등이 간접적인 需要補助에 속한다.

한편 供給面에서도 補助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現役軍人들에게 제공되는 醫療서비스나 戰傷退役軍人들에게 政府運營 病院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간접적인 補助프로그램으로는 이를테면 非營利病院에 대한 租稅減額措置등이 열거된다.

本稿에서는 두가지 형태의 직접적인 需要補助인 NHI와 醫療保護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醫療保險制度는 현재 醫療保護의 혜택을 받고 있는 人口를 제외한 나머지 全人口에 적용되고 있다. NHI의 주된 資金源은 勤勞者와 使用者가 갹출하는 保險料와 本人一部負擔金 그리고 政府가 租稅收入에서 지출하는 補助金으로 구성된다. 반면 醫療保護의 주된 財源은 政府의 一般財政인바 2種 및 醫療扶助對象者가 지불하는 本人一部負擔金이 추가된다(表 2, 附表 1, 附表 2 참조).

5) 本稿에서는 保險料(premiums)와 賃金稅(payroll tax)를 같이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定義할 경우 우리나라의 醫療保險料는 保險料 대신 賃金稅라고 불리어야 옳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所得에 比例하여 갹출하는 것은 賃金稅이기 때문이다. 반면 保險料는 所得水準에 관계없이 定額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私保險의 경우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保險料方式은 賃金稅方式에 비하여 所得逆進的이다. 第3의 財源調達方式으로는 一般租稅收入에서 支出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總體的인 所得累進程度를 보아 다른 두가지 方式과 비교하여 所得逆進的인지 所得累進的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賃金稅方式의 缺點은 利子, 配當, 賃料 및 資本利得(capital gains) 등 其他所得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高所得者에 비하여 低所得者의 경우 總所得에서 점하는 賃金稅의 비중이 크다는 것임.

醫療保險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로 健康한 가입자로부터 아픈 가입자에게로 水平的 再分配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나 결과적으로 垂直的 再分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保險對象이 되는 各種 疾病의 발생이 不確實하여 어떤 가입자는 保險料拂入額보다 더 많은 금액의 給與를 타가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입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쁜 低所得層이 醫療利用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게 될 경우 所得階層間再分配에 바람직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醫療保險은 불가피하게 所得再分配效果를 지니게 되는데 그 성격과 정도는 財源調達方式 및 保險料算定方法에 달려 있다. 특히 衡平增進의 입장에서는 전체가입자들(우리나라의 경우 全國民)을 놓고 所得階層別로 保險料負擔과 給與水準이 어떤 양상을 띠는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또 하나의 이슈는 租稅歸着問題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勤勞者가 부담하는 賃金稅部分은 勤勞者에 歸着될 뿐 轉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使用者負擔의 賃金稅部分은 그만큼 賃金水準을 낮추어 勤勞者에게로, 또는 製品값을 그만큼 올려 일반소비자에게로 轉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6]. 이와 같은 견해를 받아들일 경우 賃金稅制度는 低賃金勤勞者에게 더욱 不利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補助金 역시 所得再分配效果를 지니게 된다. 租稅收入이 총체적으로 累進的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나 醫療利用에 관한한 일반적으로 低所得層에 有利할 것으로 판단된다. 政府補助金의 供與로 인하여 保健醫療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資金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고 따라서 低所得層의 접근이 한층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醫療保護는 公的扶助制度의 一部인데 주된 受惠階層은 最低所得水準에 속하는 零細民들이다. 이와 같은 公的制度가 없을 경우 身體不具者를 포함하여 低所得層은 그들이 비록 醫療保險에 가입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本人一部負擔金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의료적으로 危險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公的扶助에 의한 低所得層의 醫療利用增進은 상당한 정도의 垂直的 所得再分配效果를 지니게 될 것이다.

2. 醫療費의 調達

우리나라의 國民醫療費는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는데 國民醫療費의 계속적이고 빠른 증대는 주로 1人當 醫療利用增加 및 同 强度增加에 기인한다고 분석되고 있다[7]. 醫療保險加入人口의 확대에 힘입어 이와 같은 추세는 向後 數年間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國民醫療費의 急伸張과 함께 그 構成도 크게 변모되고 있는데 個人醫療費를 財源別로 보면 〈表 3〉과 같다. 가장 큰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 財源은 바로 第3者支拂로서 1980년의 16%線에서 1989년에 와서는 거의 49%에 육박할 것으로 計測된다.

醫療利用者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은 1978년 이후 계속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되어 왔으나 1989년에 와서도 總個人醫療費支出의 약 51%를 점할 것으로 보여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

6) Anne Mills(1983) 참조.
7) 權純源 外(1989) 참조.

〈表 3〉 財源別 個人醫療費支出의 推移

(단위 : 10億원, %)

	1980		1985		1989[1]	
合計	1,214.9	(100.0)	2,904.0	(100.0)	3,473.6	(100.0)
患者直接支拂	1,015.6	(83.6)	2,064.2	(71.1)	1,778.5	(51.2)
第3者負擔	198.7	(16.3)	837.4	(28.8)	1,691.0	(48.7)
醫療保險	132.8	(10.9)	591.6	(20.4)	1,209.4	(34.8)
醫療保護	14.2	(1.2)	65.9	(2.3)	132.7	(3.8)
産災保險	24.0	(2.0)	65.1	(2.2)	126.3	(3.7)
私保險	27.4	(2.2)	114.8	(3.9)	222.6	(6.4)
企業內 醫療費支出[2]	0.9	(0.1)	2.4	(0.1)	4.1	(0.1)

註 : ( )안은 합계에 대한 백분비임.

1) 權純源 外, 『醫療保險療養取扱機關 經營收支分析 硏究報告書』에 의거하여 추계함.

2)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慈善團體의 醫療費支出 제외함.

資料 : 大韓民國政府, 『歲入歲出決算報告書』; 經濟企劃院, 『豫算概要』, 各年度 및 權純源, 『國民醫療費推移와 醫療費安定化對策』, 韓國開發硏究院, 1988. 4.

〈表 4〉 主要年度別 公共醫療費支出의 推移

(단위 : 10億원)

	公共醫療費	醫療保障을 위한 政府補助金(A)	合計	保社部[1] 支出總額 (B)	政府 支出總額 (C)	構成比率(%)		彈力度[2]	
						A/B	A/C	B에 대한 A의	C에 대한 A의
1977	79.7	4.2	83.9	52.2	3,001.2	8.0	0.14		
1980	174.4	25.1	199.5	161.2	8,647.8	15.6	0.29		
1985	391.1	82.0	473.1	337.0	13,370.7	24.3	0.61		
1987	605.6	142.6	748.2	521.8	17,781.2	27.3	0.80		
1988[3]	770.4	251.5	1,021.9	663.8	20,113.3	37.9	1.25		
1989[3]	1,016.3	388.8	1,405.1	875.7	23,167.3	44.4	1.68		
年平均增加率(%)	23.6	45.9	26.5	26.5	18.6	-	-		
1977~83								1.65	1.96
1984~89								1.58	3.11

註 : 1) 母子保健, 家族計劃, 疾病豫防 및 退治事業 등에 대한 支出임.

2) J. Stigler의 修正公式을 적용함.

3) 예산치임.

資料 : 財務部, 『決算概要』, 各年度 및 經濟企劃院, 『豫算概要』, 各年度.

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매우 높은 實效本人負擔率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表 4〉는 公共醫療費와 醫療保障에 대한 政府補助金의 推移를 보여 주고 있다. 政府補助金은 주로 地域醫療保險과 醫療保護를 돕기 위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總公共醫療費支出의 28%線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保健醫療行政의 담당부서인 保健社會部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주요 公共 프로그램으로는 報勳事業 및 國防部에 의한 現役軍人醫療事業 등이 있다.

[圖 1] 年齡階級別 受診率 推移(適用人口 100名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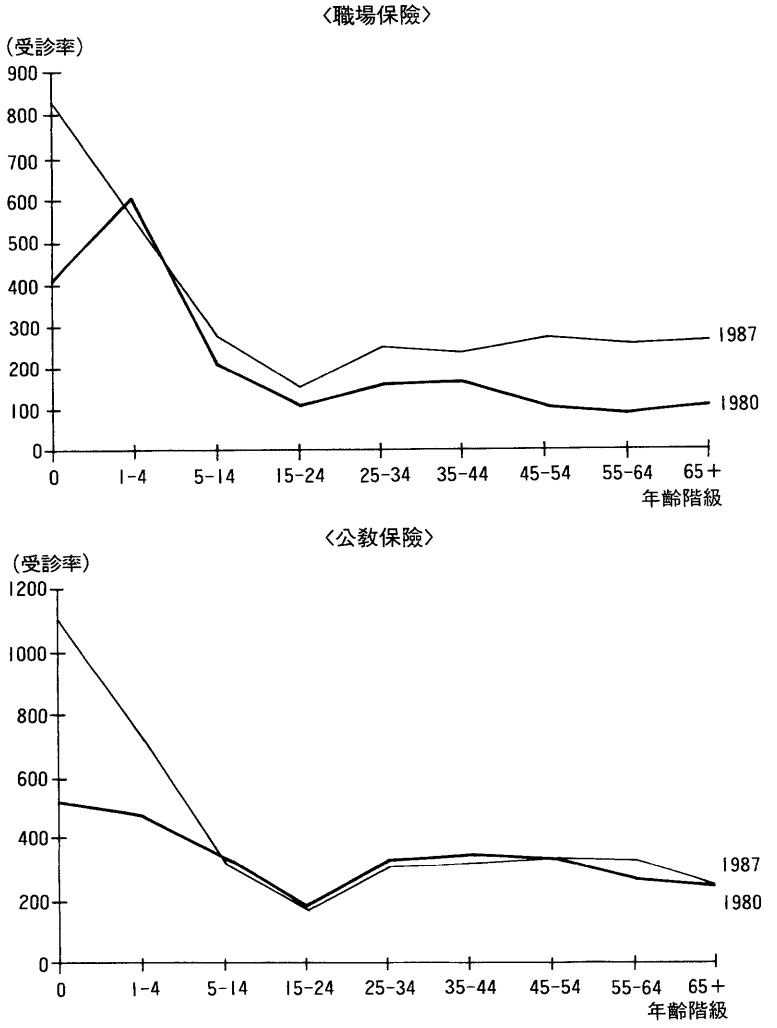

資料 : 醫療保險聯合會 및 醫療保險管理公團, 『醫療保險統計年報』, 1981, 1988.

또한 醫療保險과 醫療保護에 대한 政府補助金規模를 保健社會部支出總額과 비교해 보면 兩制度가 실시된 1977년의 불과 8%線에서 1989년에는 44% 이상을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醫療保障을 위한 補助金은 餘他의 公衆保健프로그램을 차츰 밀어내면서 상대적 比重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觀測된다.

年齡은 保健醫療서비스利用을 결정하는 主要變數 중의 하나인데 [圖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年齡階級別 受診率分布는 흔히 先進諸國에서 나타나는 U型曲線이 아닌 독특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1987년을 예로 들면 0歲集團의 受診率이 다른 年齡集團의 그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었으며 15~24歲受診率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한가지 特記할 만한 점은 25歲以上의 각 年齡階級에 걸쳐서 受診率이 대체로 安定化趨勢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老齡人口集團조차 韓國的 특

수여건을 반영하여 受診率이 높지 않은데 그 이유로서 이를테면 老人들은 주로 被扶養者들이고 韓方 또는 民俗療法 같은 非現代醫療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本人一部負擔率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이 열거된다.

III. 全國民醫療保險制度와 所得再分配效果

1. 理論的 檢討

NHI를 衡平의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이를 평가하는 基準設定이 요구되는데 國民이면 누구나 최저수준의 醫療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거나 의료이용에 따른 經濟的 負擔을 균등하게 제도화한다는 등 몇가지 基準이 제시될 수 있겠다. 이들 代替的인 價値基準 중 어느 하나를 택하거나 혹은 混合하는 형태를 취하는 등의 선택은 國民들의 要求와 財政的 自生能力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醫療保險加入者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個人的 豫算制約과 國家的 資源制約下에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한가지 基準은 醫療서비스의 最低水準保障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社會構成員도 疾病에 걸렸을 경우 一定水準 이하의 醫療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기준인 것이다. 두번째 기준은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醫療서비스이용에 있어 均等한 經濟的 負擔(equal financial access to medical care)을 요구한다. 이를 더욱 연장시키면 세번째 기준을 얻게 되는데 醫療利用에 영향을 미치는 經濟的 또는 社會·人口的 要因에 관계없이 同一한 醫療서비스消費(equal consumption of medical services)를 보장한다는 것이다[8].

그런데 세번째 기준은 상대적 低所得階層이 負의 酬價制度[9]를 통하여 補助될 경우에만 달성가능하기 때문에 同一한 醫療서비스消費, 또는 말을 바꾸어 同一必要에 의한 同一治療(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s)라는 개념은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10]. 만약 대다수의 韓國民들이 모든 社會構成員들에게 醫療서비스利用에 따른 經濟的 負擔을 同一하게 만들기를 원할 경우 이와 같은 目標는 無料醫療서비스利用制度(또는 모든 이용자에게 매우 낮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하거나) 혹은 所得水準에 따라서 補助金에 差等을 두는 제도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는 이를테면 低所得層에 대하여 醫療費用이 전혀 들지 않게끔 補助金制度를 실시하면 經濟的 負擔의 均等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經濟的 負擔均等基準은 最低醫療서비스 保障基準에 비하여 더 큰 규모의 補助金을 필요로 한다.

8) P. Feldstein(1983) 참조.

9) 負의 價格은 低所得階層에 대하여 直接的 現物供給補助方式으로 지불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低所得地域에 醫院과 保健所를 세워 醫師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와서 활동하도록 誘因을 제공할 경우 醫療서비스에의 接近度가 올라가고 旅費등 부대비용이 감소되어 利用이 增加할 것임.

10) 醫療需要가 금전적 요인 이외에도 醫療機關과의 거리, 醫師와 患者와의 관계, 時間費用 등 여러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변동되기 때문에 단순히 醫療利用價格을 "零"으로 인하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均等消費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임.

[圖 2] 最低水準의 醫療서비스保障과 醫療서비스利用에 따른 負擔의 均等保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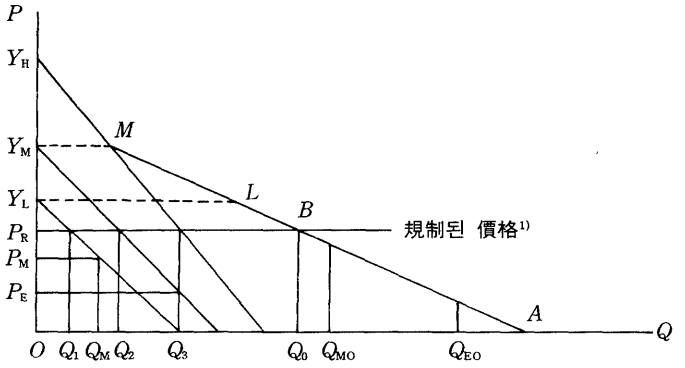

單純化를 위하여 3部類의 所得階層이 存在한다고 가정할 때 Y_H는 高所得層, Y_M은 中所得層, 그리고 Y_L은 低所得層을 나타낸다. 이 경우 이들 계층을 모두 합친 總需要曲線은 Y_HMBA가 된다. [圖 2]의 總需要曲線은 L에서 한번 더 굴절되나 이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圖示되고 있음을 밝혀 두며, 規制價格의 水準과 所得水準 등이 [圖 2]의 경우와 다를 때 다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註 : 1) [圖 2]에서 가정하고 있는 完全彈力的인 供給曲線은 醫療保險酬價가 政府에 의하여 規制되고 있는 우리나라 保健醫療市場의 特色과 관련된다. 따라서 有效供給曲線은 右側圖에서 $ABCS_R$이 되고 典型的인 最高價格制의 경우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圖 2]의 供給曲線은 오른쪽 그림에서 BCS_R部分의 供給曲線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오른쪽 그림에서 最高價格이 均衡價格인 P^*보다 낮은 P_R水準에서 설정될 경우 供給과 需要의 상호조정기능이 봉쇄될 것이다. 그 결과 醫師들은 달리 收入을 보상하거나 서비스質을 저하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인바 그들은 진료의 다양성이나 편의성을 줄이거나 價格規制를 받지 않는 서비스(이를테면 各種 檢査등 非給與項目에 속하는) 제공에 치중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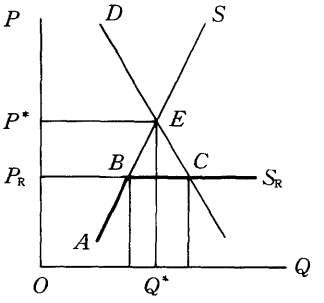

最低醫療서비스保障은 설정된 最低水準의 醫療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最低水準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補助金을 지급하거나 또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補助金을 주어 醫療酬價를 충분히 引下시킴으로써 그 酬價水準에서 어느 社會構成員도 설정된 最低水準을 밑돌지 않도록 조치할 경우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圖 2]에서 우리 社會가 最低醫療서비스保障을 Q_M으로 설정했다면 低所得層에만 補助金을 주는 방식의 경우 모든 이용자에게 酬價를 引下시켜 주는 방식에 비하여 總費用이 적게 소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前者의 방식을 채택할 때 低所得層의 利用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補助金規模는 $(P_R - P_M)$에 Q_M을 乘한 것이 될 것이다.

반면 韓國民들이 醫療에 대한 經濟的 負擔의 均等을 바라고 있다면 [圖 2]에서 低所得層에 대하여 P_R만큼의 補助金을 지급하여 消費를 Q_3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中所得階層에 대하여는 $(P_R - P_E)$에 해당하는 補助金을 지급할 경우 醫療서비스消費가 Q_3까지 증가될 것이어서 Q_3에서 3 所得階層의 醫療서비스利用量이 같게 될 것이다.

2. NHI와 醫療保護의 評價

우리나라의 醫療保障制度는 最低서비스保障, 經濟的 負擔의 均等 및 同一한 要求에 대하여 同一한 醫療서비스提供 등 세가지 기준의 요소를 다소간 混合해서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일단 醫療酬價統制가 주는 負의 效果가 끼칠 非效率을 접어둘 경우 韓國政府는 특히 低所得層을 대상으로 最低水準의 醫療서비스提供을 돕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醫療保險酬價를 낮게 유지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욱이 豫算上 制約下에서도 최근 政府는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補助金을 地域醫療保險에 지원하고 있는바 그 주된 受惠人口는 低所得層에 속한다. 最低所得階層의 零細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醫療保護制度 역시 一般租稅收入으로부터 주로 財源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크게 보아 우리나라의 醫療保障制度는 어느 정도 所得水準을 감안하여 補助金을 지급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겠다. 나아가서 대부분의 住民이 低所得層에 속하고 있는 農漁村등 醫療脆弱地域에 대하여는 保健所體系를 개선하거나 확장하고 公衆保健醫를 增員하여 直接的인 現物供給補助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現行 NHI는 衡平의 관점에서 몇가지 주요한 問題點을 던져주고 있다고 分析된다. 먼저 앞서 살펴본 것처럼 實效本人負擔率이 매우 높아 個人醫療費에서 점하는 患者直接支拂金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 특히 醫療保護에 속하는 醫療扶助該當者의 경우에도 <附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부분의 醫療費를 自擔하도록 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本人負擔金이 低所得層에 상대적으로 더욱 무거운 經濟的 짐이 됨은 분명한 일인데 더구나 醫療保險酬價보다 낮은 酬價水準이 적용되고 있는 醫療保護適用對象者들은 醫師들로부터 차별대우를 받는 등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醫療利用을 他意에 의하여 억제당하는 副作用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高所得層은 低所得層에 비하여 더 많은 量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은 더 나은 병원에서 더 나은 醫師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더욱 高價醫療를 이용하는 性向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醫療保障制度에 대한 정부의 補助가 現行보다 더욱 진보적으로 所得水準에 따라 差等을 두고 행하여진다면(물론 行政管理費가 늘어나겠지만) 더 적은 비용부담으로 같은 量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어 公平性뿐만 아니라 效率側面에서도 진전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NHI의 주된 受惠者는 低所得階層에 속하면서도 우리 社會가 그들로 하여금 利用했으면 하는 量의 醫療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零細民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어진 國家的

個人的 豫算制約下에서 해마다 더 큰 규모의 政府補助金이 NHI에 투입되고 있는 現實情에 비추어 醫療서비스이용의 最低水準保障이 政策의 基調로 채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基調를 토대로 1人當 所得水準의 增加와 발맞추어 醫療利用에 따른 經濟的 負擔의 均等이라는 目標가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重點的으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目標人口階層으로서 低所得層에 대한 補助金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어야 바람직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社會全體가 내려야 할 價値判斷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계층으로 하여금 필요한 醫療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덜 관대한 補助를 원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低所得階層에게 醫療費負擔을 상당한 정도로 가볍게 하도록 補助함으로써 經濟的 負擔의 均等을 기하거나 나아가서 醫療保險의 財源調達과 관련하여 現行賃金稅方式을 一般財政負擔方式으로 전환시켜 同一要求에 대한 同一消費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一團의 社會福祉 관련인사들의 提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11].

그와 같은 提案은 定額所得을 얻는 勤勞者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豫算當局者는 추가적인 財源所要로 인하여 국민들의 稅負擔이 늘어나거나 다른 公共事業을 축소시켜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리고 있어 政治的 妥當性에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同 提案이 立法措置가 된다 하더라도 現行制度와 절충하는 선에서 基本方向의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醫療保護制度는 政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資格要件이 다양하여 對象者選定을 둘러싸고 많은 잡음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受惠對象者들이 대부분 低所得層에 속하지만 所得水準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 행정관료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따라서 貧困線 이하에 있는 모든 零細民들이 醫療保護의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다.

醫療保護는 주로 一般稅收에서 財源이 지원되나 우리나라의 稅收가 간접세 중심의 所得逆進的인 성격을 띠고 있음에 비추어 그와 같은 財源調達이 分配中立的인 賃金稅와 비교하여 반드시 더 公平한 방식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醫療保護에 대한 정부의 支援幅은 1982년의 303億원에서 1988년에는 1,225億원으로 急增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주로 1986년에 추가된 醫療扶助制度와 醫療保護酬價水準의 점진적인 上向調整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된다[12]. 二重酬價制度의

11) 本稿에서는 醫療費調達과 관련하여 效率側面을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衡平側面을 강조한다고 해서 公平을 위하여 效率을 희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醫療酬價가 매우 낮다면 사람들은 醫療서비스를 過多하게 이용할 것이고 따라서 非效率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NHI制度下에서는 소비자나 공급자나 費用意識的이 되도록 고취함으로써 效率增進을 위한 誘因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醫療保障을 위한 政府補助金의 擴大可能性에도 분명한 制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個人所得이 증가하고 經濟規模가 擴大됨에 따라서 稅源이 擴充되고 있으나 여전히 늘어나는 財政需要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租稅收入은 附加價値稅등 간접세의 비중이 크고(1988년의 경우 35.2%) 所得稅등 직접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1988년에 27.5%) 편이기 때문에 現行 稅收體系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政府의 支援幅을 늘리는 방안은 所得再分配效果에 관한 한 바람직한 代案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12) 1989년 현재 醫療保護의 酬價水準은 평균적으로

존재는 결국 二重醫療制度를 낳고 있는데 하나는 醫療保護患者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醫療保險患者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醫療保護患者들은 상대적으로 값싼 환자로 분류되어 醫療供給者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NHI의 근본취지의 하나가 醫療를 再分配시키는 것이라면 가장 公平한 財源調達方式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NHI費用 중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부담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高所得者가 더 많이 갹출하고 低所得者가 더 많은 給與를 타가게 될 경우 財源調達의 公平性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NHI는 규정상 給與內容에 있어서 프로그램간 별차이가 없다[13]. 그러나 이미 수차 지적된 바 있는 것처럼 醫療利用時 상당한 금액의 本人直接支拂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低所得階層에 속하는 적용대상자는 필요한 만큼 醫療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反誘因을 받게 된다. 반면 醫療保險의 적용과 함께 醫療서비스의 價格이 크게 引下되었으므로 本人一部負擔이 주는 상대적 부담이 적은 高所得階層에 속하는 환자들은 醫療서비스를 濫用하고 專門醫와 病院으로부터 높은 質의 醫療서비스를 구매할 誘因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醫療酬價規制로 인하여 需要와 供給의 調整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規制되고 있는 현재의 最高價格制下에서 供給不足이 생겨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現行價格水準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醫療서비스의 규모보다 공급될 수 있는 量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配給이 불가피한 것이다. 한가지 현상으로 待期時間을 연장시켜 醫療서비스가 配給되고 있는데 따라서 醫療供給者들은 費用效果的인 健康敎育이나 豫防醫療보다는 急性治療와 重病治療에 치중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稅制面에서도 現行 租稅減免規定이 所得再分配效果를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現行租稅減免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被傭者 중 所得稅를 납부하는 部類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주된 受惠者는 高所得層에 속하는 사람들이다[14]. 그러므로 現行稅制는 高所得階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풀이된다.

3. NHI의 其他再分配效果

일반적으로 NHI는 所得, 年齡 또는 居住地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로 하여금 良質의 醫療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취하여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醫療資源의 지역간 不均衡分布는 주로 醫療供給者의 전통적인 서비스제공 유형에 기인한다고 지적될 수 있겠는데 그만큼 農漁村居住者는 醫療利用에서 상대적인 不利益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輕減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하여 直接供給補助를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NHI財源調達의 또 다른 문제는 勞動集約

醫療保險酬價水準의 90~94%線을 보이고 있으나 1990년에 가서는 兩者가 一致하도록 정부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음.

13) 公敎醫療保險의 被保險者에게만 2년에 1회씩 無料로 健康檢診서비스가 제공되는 차이가 있을 뿐임.

14) 최근통계에 의하면 免稅點 이하의 근로자들은 근로자 總數의 50%를 넘고 있는 실정임.

的 企業에 대하여 勞動費用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醫療保險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新規企業들의 人件費가 醫療保險의 賃金稅 중 使用者負擔만큼 증가하게 될 것인데 勤勞者의 숫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追加經費가 소요될 것이므로 이들 기업들은 未熟練勤勞者를 熟練勤勞者로 代替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근로자들의 失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기업들은 資本에 비하여 勞動의 費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勞動을 資本으로 代替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나아가서 勞動에 대한 稅賦課는 우리 社會가 생산하는 財貨 및 서비스의 구성을 변모시켜 간접적으로 社會的 衡平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4. 公平한 財源調達을 위한 提案

우리 社會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醫療保險의 所得再分配效果를 고취시키자면 現行 NHI下에서의 補助金은 所得水準에 따라서 변동될(또는 費用分擔이 所得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NHI는 補助金支給을 所得水準과 연계시킴으로써 醫療서비스의 最低水準保障과 經濟的 負擔의 均等이라는 두 기준을 併合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補助金이 소득에 따라서 변동한다면 총체적인 수요증가가 現行의 경우에 비하여 적을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醫療서비스利用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國民醫療費의 增加가 둔화될 것이다. 醫療保護對象者들을 위해서도 給與支給이 所得水準과 더욱 분명히 연결될 필요가 있을 터인데 所得連繫的 "利用券"(vouchers)이나 또는 "쿠폰"(coupons)의 형태로 差等補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제도는 行政이 복잡해진다는 큰 결점을 안고 있으나 일단 명시적으로 所得水準 또는 生活水準을 감안하는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이를테면 「바우처」의 경우 醫療保護對象者를 生活水準에 따라서 上·中·下의 3等級으로 나눈 다음 4人으로 구성된 標準家口의 最低必要醫療費가 月 15,000원 정도라면, 각각 月 12,000원, 15,000원, 18,000원에 해당하는 現金의 效力을 지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쿠폰」制度는 現行制度의 테두리 안에서 2種 및 3種受惠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所要本人一部負擔金中 일부를 現物利用券으로 差等支給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NHI財政을 所得水準과 연계시킬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가장 많은 금액의 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最低所得階層에 속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資力調査(means test)가 필요한데 全體家口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 수반될 것이므로 우선 零細自營者들의 所得水準把握에 주력할 것이 요구된다.

(2) 감기, 몸살 등 빈번하게 발생되나 少額醫療費를 낳게 되는 질환에 대한 給與支給보다는 고혈압, 암 등 큰 금액의 醫療費發生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保險給與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옮아갈 경우 行政管理費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NHI는 오늘날 先進國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욱 保險給與對象이 될 수 있는 의료비발생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점은 NHI가

重病(catastrophic illness) 爲主의 給與支給體系로 이행할 경우 保險效果를 더욱 충실하게 발휘함으로써 效率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절약되는 行政費를 그만큼 所得連繫的 給與支給에 충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低所得階層은 需要補助에 힘입어 그들의 의료비부담이 감소할 것이므로 당초보다 의료이용이 늘어날 것이나 그 수준 이상으로 醫療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조치될 것이 요청된다면 保健所體系의 補强으로 低所得農家地域에 供給補助를 추가시켜 수요보조를 補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만 NHI나 醫療保護를 막론하고 비록 행정절차가 복잡하기는 하나 상대적인 低所得階層에 대하여 利用券이나 또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 요청된다.

IV. 醫療保險의 給與와 負擔

앞서 살펴본 理論的 考察에 이어 實證分析을 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公敎醫療保險의 최근자료가 사용될 것이다[15]. NHI 財源調達現況이 보여주는 再分配程度를 설명하고자 各家口가 받는 給與와 負擔하는 비용을 토대로 再分配指數를 산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韓國의 NHI는 被傭者와 使用者集團 그리고 自營者集團 등 두가지 다른 部類로 나눌 수 있는데 前者는 다시 産業勤勞者를 대상으로 하는 職場醫療保險프로그램과 公敎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後者의 경우 地域單位로 醫療保險組合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地域醫療保險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런데 이들 세가지 다른 프로그램간에는 衡平의 측면을 놓고 볼 때 保險料負擔과 給與面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勤勞者集團을 대표하는 職場프로그램과 自營者를 포괄하는 地域프로그램을 비교할 때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附表 3 및 附表 4 참조). 이와 같은 프로그램간의 격차는 주로 保險料策定方式과 醫師들의 地域間不均等分布에 주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公敎醫療保險은 財政的으로 安定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는데 被保險者의 月平均所得이 다른 프로그램의 그것과 비교하여 가장 높고 保險料率 역시 제일 높아 被保險者當 保險財政에의 기여가 가장 많은 편이다. 또한 加入者 1人當給與도 높으며 被扶養者數도 1988년의 경우 被保險者 1人當 2.9명으로 높은 편이다(職場프로그램은 같은 해에 2.1명이었음). 適用對象者 중에서 점하는 高齡者의 比重 역시 職場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勤勞者들을 위한 醫療保險의 保險料는 賃金이나 俸給을 기초로 各組合에서 정하는 料率을 乘하여 결정된다. 本人一部負擔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各家口의 費用負擔은 醫療保險에 대한 被保險者의 기여금에 한정될 것

15) 단순히 이용가능한 群集資料가 입수될 수 있었기 때문에 公敎保險이 선정되었으나 職場醫療保險이 가장 많은 대상자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代表的인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그러나 醫療保險聯合會로부터 給與와 負擔에 대하여 적절한 자료를 短期間에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例示的으로 公敎醫療保險을 분석하고자 함.

이다. NHI財源調達의 再分配效果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公式으로 계산되는 再分配指數를 사용하고자 한다.

$$\frac{\text{再分配以後所得} - \text{再分配以前所得}}{\text{再分配以前所得}} \times 100$$

이와 관련하여 單純化를 목적으로 다만 두 가지 所得階層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醫療保險의 給與와 費用負擔原則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a"가 再分配指數, "b"가 平均給與, "c"가 平均保險料 그리고 "y"가 當初의 平均所得을 나타낸다고 할 때 低所得階層(1集團)과 高所得階層(2集團)의 再分配指數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보이게 된다:

$$a_1 = (b_1 - c_1)/y_1, \quad a_2 = (b_2 - c_2)/y_2 \qquad (1)$$

단, $b_1 > b_2$, $y_1 < y_2$

$$(b_1/y_1) - (c_1/y_1) \geqq (b_2/y_2) - (c_2/y_2) \qquad (2)$$

또는,

$$(b_1/y_1) - (b_2/y_2) + (c_2/y_2) \geqq (c_1/y_1) \qquad (3)$$

再分配가 달성되려면 NHI의 收支가 均衡을 이룬다고 가정할 때 1集團의 再分配指數가 正의 값을 가져야 하는 반면 2集團의 再分配指數는 負의 값을 지녀야 할 것이다. 따라서 保險料率은 方程式 (2) 또는 (3)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低所得層에게는 當初所得에 대한 純給與(net benefits)比率이, 高所得者의 경우 當初所得에 대한 純寄與(net contributions)比率이 正의 값을 가져야 所得再分配가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의 保險制度도 體系的 再分配現象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를테면 低所得勤勞者의 경우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住居나 勤勞環境이 劣惡하여 높은 危險이 수반된다면 따라서 醫療利用이 상대적으로 많게 될 것이고(附表 5 참조)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입자로부터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입자에게로 체계적인 再分配가 이루어지게 되어 衡平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社會保險을 통한 再分配는 다른 主要所得移轉手段에 비하여 매우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아주 긴 時期를 통하여 고찰할 경우 社會保險에 대한 寄與와 그로부터 받는 給與間의 관계는 무척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나 알려진 자료가 별로 없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고 판단된다[16].

公敎醫療保險의 再分配效果를 月標準所得階層別로 살펴보면 〈表 5〉와 같은데 상대적으로 高所得階層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低所得階層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로 분명한 再分配흐름을 읽을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再分配指數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最低 5所得階層들의 指數가 5.2%로 가장 높았으며 最高 7所得階層들의 指數가 −1.6%로 가장 낮았다. 이를 〈附表 6〉에서 日本의 경우와 類似한 방식으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再分配指數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年齡階級別로 보아 被保險者 1人當[17] 再分配指數를 산출하면 〈表 6〉과 같다. 全年齡階級에서 正의 指數를 나타내었으나 25~34

16) 寄與와 給與는 많은 關聯要因 중 두가지 요인에 불과하며 이 主題는 또한 技術的인 자료 및 측정 문제 이외에도 여러가지 개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Creedy and Disney, 1985 참조).

17) 만약 適用對象者 全員에 대한 자료가 알려진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인바 中間年齡階層의 再分配指數는 낮아지고 젊은 人口와 老齡人口의 指數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表 5〉 公敎醫療保險의 標準報酬月額等級別 再分配效果(1987)

等級	被保險者(名)	適用對象者(名)	扶養率(名)	月平均報酬[1](원)	月平均保險料[2](원)	月平均保險給與[2](원)	再分配指數(%)	
							被保險者 1人當	適用對象者 1人當
1~ 5	6,475	15,848	1.34	51,217	1,178	3,859	5.2	2.2
6~10	29,559	114,001	2.86	142,870	3,286	8,310	3.5	0.9
11~15	47,648	145,729	2.06	190,304	4,377	7,869	1.8	0.6
16~20	129,139	450,258	2.49	242,826	5,585	10,272	1.9	0.5
21~25	225,894	827,606	2.66	316,435	7,278	11,841	1.4	0.4
26~30	164,006	791,523	3.83	428,087	9,846	14,428	1.1	0.2
31~35	94,071	465,151	3.94	546,348	12,566	15,067	0.5	0.1
36~40	49,733	228,273	3.59	668,522	15,376	16,118	0.1	0.02
41~45	1,750	7,809	3.46	887,505	20,414	19,087	-0.1	-0.03
46~53	13	41	2.15	1,317,174	30,295	9,103	-1.6	-0.53
平均	748,588	3,046,149	3.07	364,565	8,385	12,379	1.1	0.3

註 : 1) 月平均報酬=被保險者 1人當 月平均保險料÷0.023
2) 被保險者 1人當.
資料 : 醫療保險管理公團 內部資料.

〈表 6〉 公敎醫療保險의 年齡階級別 再分配效果(1987)

年齡階級	被保險者(名)	月平均報酬(원)	月平均保險料(원)	月平均保險給與(원)	被保險者 1人當 再分配指數(%)
~24	47,329	195,261	4,491	4,913	0.2
25~34	277,352	291,348	6,701	10,754	1.4
35~44	205,391	382,304	8,793	13,672	1.3
45~54	173,766	454,217	10,447	14,598	0.9
55~64	43,539	567,783	13,059	15,774	0.5
65~	1,211	577,304	13,278	16,723	0.9
平均	748,588	364,565	8,385	12,379	1.1

資料 : 醫療保險管理公團 內部資料.

세그룹의 指數가 1.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醫療利用率을 반영하여 55~64세 및 65세이상 그룹 등 老齡人口의 指數가 기대한 것보다 낮아 각각 0.5%와 0.9%를 기록하였다.

같은 자료를 所得10分位別로 再編成해 보면 所得再分配指數 및 지니係數를 산출할 수 있다. 保險料를 지불하기 以前과 지불한 以後의 지니係數는 分配中立的인 保險料性格을 반영하여 0.2186과 0.2187로 매우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保險料醵出과 給與支給을 모두 고려할 경우 지니係數의 크기는 조금 낮아져 0.2153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再分配指數는 모두 작은 크기지만 正의 수치를 보였는데 高所得層으로 갈수록 指數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表 7 참조).

〈表 7〉 保險料醵出前後 및 保險給與實施後 지니係數와 所得10分位別 再分配指數

(단위 : 원)

所得10分位	月平均報酬[1]			月平均保險料	月平均保險給與	再分配指數[2]
	(A)	(B)	(C)	(D)	(E)	(%)
I	166,848	163,112	171,056	3,736	7,944	2.5
II	232,821	227,600	236,933	5,221	9,333	1.8
III	268,176	262,139	273,116	6,037	10,977	1.8
IV	297,418	290,788	301,492	6,630	10,704	1.4
V	327,063	319,744	332,170	7,319	12,426	1.7
VI	365,917	357,648	370,702	8,269	13,054	1.3
VII	415,576	406,256	420,545	9,320	14,289	1.2
VIII	468,289	457,800	472,475	10,489	14,675	0.7
IX	548,138	535,990	551,022	12,148	15,032	0.5
X	683,393	668,431	684,320	14,962	15,889	0.1
지니係數	0.2186	0.2187	0.2153			

註 : 1) A는 保險料醵出以前 報酬月額.
B는 保險料醵出以後 報酬月額으로 (A-D).
C는 保險給與實施以後 報酬月額으로 (B+E).
2) 再分配指數=[(E-D)/A]×100.

資料 : 醫療保險管理公團 內部資料.

요컨대 우리나라의 醫療保險制度는 公敎프로그램을 통하여 볼 때 어느 정도 再分配效果를 지니고 있으나 그 정도는 작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衡平에 관한 한 公敎프로그램이 職場이나 地域프로그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再分配機能을 보여주었다는 종전 硏究의 결과[18]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우리나라의 NHI는 결과적으로 所得再分配效果가 큰 財源調達方式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된다.

더욱이 각기 다른 프로그램별로 保險財政이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된 保險財政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垂直的 再分配效果가 약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保險財政이 취약한 地域醫療保險의 경우 被保險者의 平均所得水準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高齡者의 比重이 매우 높으며 많은 家口에 있어서 산정된 保險料가 所得과 연결되지 않아 불평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막대한 규모의 政府支援金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년동안 地域프로그램加入者들의 醫療서비스利用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여 保險給與請求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財政不安要素가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일 醫療保險財政이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赤字프로그램과 黑字프로그램간에 체계적인 資金移轉이 이루어질 경우 再分配效果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19]. 세가지 다른 프로그램간에 나타나는 保險料負擔과 給與上의

18) 延河淸 外(1983) 참조.

19) 日本의 例를 좇아 우리나라 政府는 醫療保險聯合會에 中央財政安定基金을 설치하여 財政上 위협을 받게 되는 單位組合들에게 再保險機能을 발휘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 더불어 同基金은 老人醫療費와 高額醫療費로 인한 각 조합의 財政壓迫을 경감시킨다는 목적을 아울러 지니고 있음.

隔差增大와 함께 地域醫療保險의 가입자인 自營者들이 평균적으로 職場醫療保險의 勤勞者들만큼 保險料를 기여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自營者들의 所得은 평균적으로 勤勞者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疾患發生率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居住地域內에 專門醫療人力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醫療施設을 방문하자면 交通費와 時間費用 등 더 많은 부수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과제는 政府補助金과 관련된다. 현재 補助金支援을 위한 분명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醫療保險組合으로 하여금 財政上 문제가 생기면 政府가 지원해 준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政府支援金의 費用效果性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保險프로그램間 費用負擔과 給與水準을 더욱 公平하게 유도할 수 있는 對策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保險프로그램의 차이에 관계없이 "同一寄與와 同一給與(equal contributions and equal benefits)"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두 被保險者의 所得이 같다면 被扶養家族數가 같다고 할 때 같은 금액의 保險料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20] 給與水準과 內容 역시 同一寄與를 한 모든 가입자에게 균등하도록 조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政府는 地域醫療保險에 대한 補助金의 效果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일단 各組合別로 징수한 保險料收入에 대한 對應資金(a matching fund)을 보조한 다음 징수된 總保險料收入의 一定比率(이를테면 10%[21])과 家口當 平均所得水準을 감안하여 行政管理費補助를 행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老齡人口가 醫療서비스를 더욱 빈번하게 이용할 것이므로 NHI基金內에 老人醫療費附屬基金을 설치하고 重症으로 인한 高額診療費負擔을 경감시키고자 高額醫療費附屬基金을 같이 설립하도록 요청한다[22]. 制度의 변화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通例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NHI 財政統合을 목표로 프로그램간 財政調整의 신축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經過措置가 활용될 때 보다 폭넓게 再分配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20) 定額所得을 올리는 勤勞者의 경우 保險料算定은 俸給이나 賃金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地域프로그램의 自營者들에게는 現金所得과 財產所得이 고려될 뿐만 아니라 世帶當一定額, 世帶員數當一定額이 추가되어 世帶當 保險料가 산정된다. 아래 소개하는 回歸分析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被扶養者數의 변동이 給與請求에 有意한 正의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勤勞者의 保險料算定에도 被扶養者數가 감안될 필요가 있을 것임:

$$\log \text{給與} = 9.166 + 0.201 \log \text{保險料} + 0.802 \log \text{被扶養者數}$$
$$(22.025)\ (3.609)\qquad (7.019)$$
$$R^2 = 0.853 \qquad F\text{값} = 125.026$$

21) 地域醫療保險에 속하는 조합 중 行政管理費가 적은 順으로 上位 70%에 해당하는 조합들의 行政管理費 平均比率을 다시 계산하여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補助金을 지급해야 할 것임.

22) 이들 두가지 附屬基金의 주요기능은 다른 조합들에 비하여 老人醫療費나 高額醫療費를 全國平均보다 많이 쓰고 있는 조합들을 財政的으로 도와주려는 것임.

V. 政策提案과 結言

우리나라의 NHI制度는 社會保障의 觀點에서 평가될 것이 요청되는데 NHI의 앞으로의 發展方向은 우리 국민들의 요구와 財政能力을 감안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겠다.

지난 12년간 韓國의 醫療保障制度는 적용대상인구를 빠르게 확대시켜 오면서 적어도 個人醫療費負擔의 위험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지적된다. 그러나 所得再分配效果에 관한 한 現行 NHI財源調達은 일단 再分配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保險料와 給與面에서 所得과의 연계정도가 약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醫療保險프로그램간 保險料負擔과 給與水準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도 분명하다. 요컨대 NHI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再分配效果를 보여주었다고 分析되나 프로그램별 또는 組合別로 보게 되면 不均等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혹자는 社會保險이 더욱 명시적으로 再分配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단의 專門家들은 公的醫療保險이 所得再分配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점은 장기적으로 所得과의 연계를 높이는 財源調達方式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당분간은 全體國民을 대상으로 所得連繫的인 給與支給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우선은 적어도 醫療保護對象者만을 위해서 이와 같은 代案을 실천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所得把握努力과 더불어 직접적인 需要補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供給補助의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때 韓國의 NHI는 더욱 公平하고 더욱 效率的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所得連繫的인 醫療保障의 給與體系確立은 行政管理費用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므로 衡平을 강조하는 이러한 방식의 채택여부는 政治的인 해결에 일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醫療保障과 관련하여 담당기구의 중복

[圖 3] 醫療保險財政의 長期的 再組織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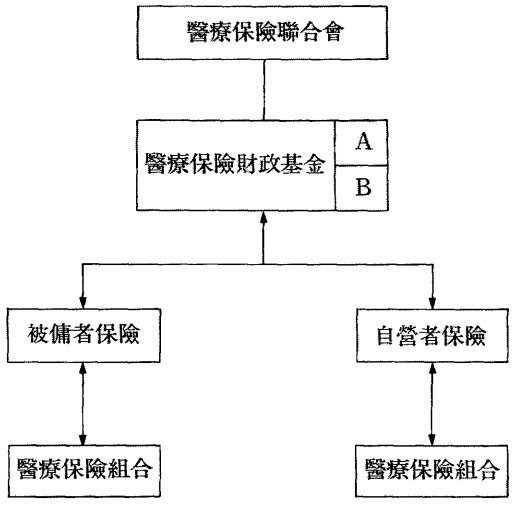

* A, B는 醫療保險財政內의 特別基金으로 A는 老人醫療費, B는 高額診療費를 보조키 위한 基金임.

註 : 주요변화 및 선행조건은 다음과 같음 :

1) 醫療保護制度를 醫療保險制度로 흡수
2) 醫療保險管理公團을 醫療保險聯合會로 병합
3) 각 醫療保險프로그램의 財政을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하나의 醫療保險財政基金을 설립하도록 추진하되 경과조치로서 프로그램간 財政調整이 점진적으로 허용되도록 조치
4) 保社部 및 國稅廳의 공동협력하에 自營者에 대한 資力調査實施
5) 實際所得 및 被扶養者數를 감안하여 自營者의 保險料를 再評價

은 行政管理費의 過多發生을 낳게 되므로 [圖 3]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NHI관계기구를 단순화시킴과 동시에 프로그램간의 財政調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財政統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郭泰元・李啓植(編),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1988』, 韓國開發硏究院, 1988. 10.

權純源, 『國民醫療費推移와 醫療費安定化對策』, 韓國開發硏究院, 1988. 4.

權純源 外, 『醫療保險療養取扱機關 經營收支分析硏究報告書』, 韓國開發硏究院, 1989. 7.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88.

經濟企劃院, 『豫算槪要』, 各年度.

大韓民國政府, 『歲入歲出決算報告書』, 各年度.

延河淸 外, 『醫療保險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 韓國開發硏究院, 1983. 2.

醫療保險聯合會 및 醫療保險管理公團, 『醫療保險統計年報』, 各年度.

財務部, 『決算槪要』, 各年度.

江見康一, 「社會保障における資本分配と所得再分配視點」, 『經濟硏究』(25 : 2), 1974, pp. 97～105.

村上雅子, 『社會保障の經濟學』, 東洋經濟新聞社, 1984.

Arrow, Kenneth J., "Theoretical Issues in Health Insurance," *Collected Papers of K.J. Arrow*: Vol.6, *Applied Economic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85, pp.208～233.

Berki, Sylvester E., "Economic Effec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quiry*(7:2), 1971, pp.37～55.

Creedy, John, and Richard Disney, *Social Insurance in Transition: An Economic Analysis*, Clarendon Press, Oxford, U.K., 1985.

Davis, Karen,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Costs, and Consequences*,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Feldstein, Martin et al., "Distributional Aspec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and Finance," *National Tax Journal*(25:4), 1972, pp.497～510.

Feldstein, Paul J., *Health Care Economics*,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1983.

Henke, Klaus-Dirk, "What Can America Learn from the German Health Insurance System?", *Social Science*(55:3), 1980, pp.133～137.

Keintz, Rita M.,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Income Distribution*, D.C. Heath and Company, Lexington, M.A., 1976.

Klarman, Herbert E., *The Economics of Health*,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65.

Lefcowitz, Myron J., "Poverty and Health: A Re-examination," *Inquiry*(10:1), 1973, pp. 3～13.

Long, Stephen H. et al., "Income Redistribution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ing Alternatives," Jacques van der Gaag et al.(eds.), *Economics of Health Care*, Praeger Publishers, New York, 1982, pp.71～112.

Mills, Anne, "Economic Aspects of Health Insurance," K. Lee and A. Mills(eds.), *The Economics of Health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1983, pp.64~88.

Rushing, William A., *Social Functions and Economic Aspects of Health Insurance*, Kluwer Nijhoff Publishing, Boston, M.A., 1986.

Wilensky, Gail P. et al., "Variations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Benefits vs. Premiums,"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62:1), 1984, pp.53~81.

Yeon, Ha Cheong, "Who Gains and Who Loses: An Overview of Equity and Efficiency in Korea's Health Insurance System," Harvard Discussion Paper Series No.2, 1985.

〈附表 1〉 醫療保護財政의 主要年度別 推移

	1982	1985	1988
受惠對象者數(千名)	3,728	3,258	4,290
1種	642	642	648
2種	3,086	2,616	1,917
3種[1)]	—	—	1,725
國庫負擔額(百萬원)	30,260	58,598	122,536
國 費	22,888	44,612	94,311
地方費	7,372	13,986	28,225

註 : 1) 1986년부터 실시된 醫療扶助制임.
資料 : 保健社會部, 『保健社會』, 各年度.

〈附表 2〉 醫療保護對象者 및 受惠內容(1988)

(단위 : 百萬원, %)

	資格基準	對象者(千名)	受惠內容
1種	· 居宅保護者 : 4萬4千원미만(人/月) 所得 · 施設保護者 및 災害救護法에 의한 罹災民 : 全員 · 國家有功者, 人間文化財 : 9萬원미만 所得 · 越南歸順者 : 全員 · 性病感染者 : 全員	648	外來 : 診療費 全額無料 入院 : 診療費 全額無料
2種	· 自活保護對象者 4萬4千원미만(人/月) 所得 320萬원미만 財產保有	1,917	外來 : 診療費 全額無料 入院 : 診療費 一部本人負擔 ; 大都市居住者 : 40% 其他地域居住者 : 20%
3種	· 自活保護對象者와 유사한 低所得層 5萬4千원미만(人/月) 所得 540萬원미만 財產保有 (단, 전세생활자는 600萬원미만)	1,725	外來 : 診療費 2/3本人負擔 ; 入院 : 診療費 一部本人負擔 大都市居住者 : 50% 其他地域居住者 : 40%

註 : 1989년의 醫療保護의 診療酬價는 保險酬價의 90%수준임.
資料 : 保社部, 『保健社會』, 1988.

〈附表 3〉 醫療保險프로그램別 保險料 및 保險給與水準의 隔差(1988)

(단위 : 원)

	被保險者 月平均 所得[1]	平均保險 料率(%)	扶養率 (名)	被保險者 1人當 保險 給與[2] (A)	被保險者 1人當 保險 料[3] (B)	(A)/(B) (%)	55세이상 適用人口 比率[4](%)
職場保險	355,730	1.715	2.09	115,473	144,325	80.0	10.1(1.9)
公敎保險	404,435	2.3	2.89	172,473	216,528	79.7	15.7(7.2)
地域保險[5]	378,133	1.5	3.96	94,693	100,227	94.5	—(32.8)[6]

註 : 1) 職場 및 公敎保險은 平均標準報酬月額임.
2) 年間給與額으로 被保險者 및 被扶養者의 給與額을 被保險者數로 나눈 數値임.
3) 使用者負擔額 포함.
4) 總適用人口 중에서 55세이상 人口가 차지하는 比率이며 ( )안은 被保險者만의 數値임.
5) 1988년 1월부터 農漁村地域住民 및 自營者에게로 확대되었는데 現行地域保險의 保險料는 정확한 家口所得資料의 미비로 所得, 財産, 被扶養者數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음. 여기서는 政府가 行政管理費를 포함한 總財政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家口當 保險料率을 1.5%로 가정함. 이는 農漁村地域의 家口當月平均所得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被傭者에게 적용되는 保險料率 1.5~4% 범위 중 最低水準인 1.5%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6) 資料未備로 經濟活動人口 중 農業部門의 年齡構成比를 이용함.

資料 : 醫療保險聯合會 및 醫療保險管理公團, 『'88 醫療保險統計年報』, 1989.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1988.

〈附表 4〉 醫療保險프로그램別 財政收支 現況(1987~88)

(단위 : 百萬원, %)

	職場保險		公敎保險		地域保險		職種保險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1987	1988
總收入	657,352	807,764	230,594	260,997	9,058	214,495	44,917	n.a
保險料	608,159	740,035	118,979	134,328	6,675	116,463	42,465	43,173
國庫補助	—	—	91,414	104,697	1,828	94,559	130	n.a
其他收入	49,193	67,729	20,198	21,972	555	3,473	2,322	n.a
保險料/總收入	(92.5)	(91.6)	(51.6)	(51.5)	(73.7)	(54.3)	(94.5)	(n.a)
國庫補助/總收入	(—)	(—)	(39.6)	(40.1)	(20.2)	(44.1)	(0.3)	(n.a)
總支出	515,863	657,174	175,345	203,961	10,865	200,640	43,828	n.a
保險給與	464,167	592,096	163,633	190,401	7,202	162,034	39,409	40,464
行政管理費	31,841	40,306	10,014	11,338	1,767	38,058	3,230	n.a
其他支出	19,855	24,772	1,698	2,222	1,896	548	1,189	n.a
收支差	141,489	150,590	55,249	57,036	△1,807	13,855	1,089	n.a
累積積立金	421,839	553,982	116,974	158,594	—	—	—	n.a
保險給與/保險料	(76.3)	(80.0)	(77.8)	(79.7)	(107.9)	(94.5)	(92.8)	(93.7)
適用人口(千名)	14,971	16,269	4,364	4,508	317	6,777	1,320	1,082

資料 : 醫療保險管理公團, 『'88 醫療保險統計年報』, 1989 및 權純源 外, 『醫療保險 療養取扱機關 經營收支分析 研究報告書』, 韓國開發研究院, 1989.

〈附表 5〉 所得階層別 家計所得 및 保健醫療費 支出 現況(1988)

(단위 : 千원)

所得階層	家計所得[1] (A)	保健醫療費 (B)	B/A(%)
平均	657.2	34.1	5.2
100미만	45.1	14.8	32.8
100~150	125.3	11.4	9.1
150~200	172.5	13.4	7.8
200~250	221.6	13.3	6.0
250~300	272.4	16.1	5.9
300~350	321.5	15.0	4.7
350~400	372.0	16.7	4.5
400~450	421.6	20.2	4.8
450~500	472.0	20.7	4.4
500~550	522.1	21.7	4.2
550~600	573.2	26.0	4.5
600~700	644.7	28.0	4.3
700~800	744.0	31.2	4.2
800~900	845.3	36.7	4.3
900이상	1,328.2	83.2	6.3

註 : 1) 家計所得은 家口員所得, 事業 및 副業所得, 利子·社會保障受惠金 등의 其他所得을 포함한 것임.

資料 :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88.

〈附表 6〉 日本 醫療保險의 給與, 負擔 및 再分配指數(1978)

月所得階級 (萬円)	年平均所得 (千円)	年平均保險料 (千円)	年平均給與 (千円)	再分配指數(%)	
				世帶當	1人當
~40	210.9	13.1	296.4	134.3	48.4
40~60	486.7	28.8	165.3	28.0	12.6
60~80	682.4	33.1	328.4	43.3	21.0
80~100	888.3	41.6	286.7	27.6	12.0
100~120	1,093.0	48.1	156.3	9.9	3.0
120~140	1,274.3	55.6	196.4	11.0	3.3
140~160	1,494.3	59.1	163.4	7.0	1.4
160~180	1,687.1	65.8	260.4	11.5	3.4
180~200	1,879.7	69.2	204.5	7.2	1.7
200~240	2,186.6	76.7	185.0	4.9	0.6
240~280	2,589.1	83.0	167.8	3.3	△0.2
280~320	2,978.7	96.4	211.6	3.9	△0.2
320~360	3,390.3	105.1	192.9	2.6	△0.4
360~400	3,781.3	110.3	211.3	2.7	△0.1
400~500	4,438.1	124.1	224.9	2.3	△0.3
500~600	5,450.9	144.3	238.8	1.7	△0.4
600~700	6,427.3	170.9	171.6	0.0	△1.2
700~	10,806.0	190.2	233.9	0.4	△0.6
總數	3,280.4	94.4	211.0	3.5	3.5

資料 : 村上雅子, 『社會保障の經濟學』, 1984의 〈表 5-2〉를 축소하여 轉載.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 理事會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宋 大 熙
李 興 宰

本 硏究의 목적은 基本法制定으로 도입된 새로운 政府投資機關理事會制度가 갖는 특징과 그간의 운영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改善方向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政府投資機關理事會의 제도적 특징 중의 하나는 理事會가 執行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非常任으로 운영되며, 非常任理事의 法的責任이 不確實하다는 점이다. 運營面에서는 理事長의 任命, 理事에 대한 待遇, 當然職理事의 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改善을 위한 포괄적 改善方向으로서 專門性 있는 理事長의 任命을 위한 노력, 理事에 대한 待遇의 再調整과 理事 스스로의 職業倫理 提高努力, 當然職理事의 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시정노력, 理事會 活性化의 정도, 管理運營의 改善 등을 제시했다.

I. 問題의 提起

1984년 4월부터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 部門에 內部經營의 自律性을 보장하고 經營實績에 따른 責任을 강화하는 自律的 責任經營制度의 도입을 그 主要骨幹으로 하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이 도입됨에 따라 政府와 政府投資機關간의 關係方式이 바뀌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政府投資機關 內部의 組織運營形態가 바뀌게 되었다.

政府投資機關 內部 組織運營形態의 변화 중 政府投資機關 最高經營陣의 內部起用을 明文化한 점을 가장 특징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체제하에서는 과거 체제하에서의 執行理事, 專務 및 副社長 등 社長의 직근하급 경영층을 執行幹部로 명명하였으며 이들 執行幹部들은 예외없이 소속직원 중에서 任命토록 하였다[1].

筆者 : 宋大熙－本院 先任硏究委員
李興宰－本院 主任硏究員

1)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15條 ①項은 "投資機關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長이

이러한 執行幹部 계층에 대한 예외없는 內部起用 적용원칙과 아울러 外部人士의 起用이 가능한 理事會는 그 기능을 크게 축소시키고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의 身分을 모두 非常任으로 전환시키고 또한 理事의 대우도 크게 축소시켜 政府投資機關의 經營을 종래의 理事會 및 理事中心으로부터 社長 및 執行幹部中心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

이러한 政府投資機關의 自律的 責任經營制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政府投資機關 理事會制度」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政府投資機關 理事長制」폐지 또는 개선문제가 여러 각도에서 거론되고 있다[2]. 政府投資機關 理事長制의 폐지 또는 개선은 最高經營層에 대한 獨立性 및 自律性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事案의 신중한 검토가 必要하다고 할 것이다.

政府投資機關 理事長制 문제제기를 계기로 하여 本 論文에서는 政府投資機關 理事會制度를 재음미하고자 한다. 第2章에서는 公企業理事會 制度의 일반적 유형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第3章에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政府投資機關 理事會制度의 특징과 법적성격을 논의한다. 第4章에서는 理事會制度의 運營實態 및 問題點을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第5章 結論에서는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 理事會制度의 改善方向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理事會制度의 類型과 事例

1. 公企業理事會制度의 一般的 類型

公企業 理事會制度의 일반적인 類型은 理事會構成員들이 部長등과 같이 특정부서의 長을 겸하여 固有業務를 일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執行의 責任이 어디로 귀속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機能型理事會(functional board type)와 政策型理事會(policy board type)로 구분해 볼 수 있다[3].

機能型理事會는 理事들이 部長등과 같이 特定部署의 長을 겸하고 있으며, 理事會에 참석하여 議決을 하면서 동시에 擔當業務를 執行하고, 執行의 責任은 理事會構成員들이 分擔하는 형태로 運營된다. 機能型理事會는 다시 理事會의 構成員이 전원 상임으로 운영되는 형태(A)와 일부는 비상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B)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같은 機能型理事會(A)는 美國의「세인트로렌스」水路開發公社, 英國의 石公 등 國營企業 및 日本의 舊 專賣公社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機能型理事會(B)는 우리나라의 政府投資機關의 일부 子會社의 理事會運營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機能型理事會의 長點으로서는 첫째, 理事는 政策決定者로서 각기 擔當領域을 확실히 알고

任免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執行幹部는 소속 職員중에서 任命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1988년 6월 22일자「每日經濟新聞」은 平民黨의 李相洙대변인이 政府投資機關 理事長制度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 1988년 6월 25일자 同 新聞은 政府가 理事長制改善方案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도하고 있으며,「한겨레신문」도 1988년 6월 14일자에서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 존속방침"의 제하로 관련기사를 다루고 있다. 그 밖에도 民主黨은 1989년 2월 임시국회에 理事會關聯改編法案을 提出하였다.

3) 兪焄.『公企業論』, 博英社, 1984, pp.278~288.

있기 때문에 現實的인 政策決定을 할 수 있고, 둘째 管理責任者로서 理事는 각자 擔當分野에 대하여 숙지하고 企業의 全體目標에 비추어 經營執行을 할 수 있으며, 셋째 管理責任의 中央集權化와 그 弊害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短點으로서는 첫째, 각각 상이한 管理責任領域의 調整이 곤란하며, 둘째 日常의 管理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어 政策決定機關으로서의 理事會의 機能이 약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

政策型理事會는 理事들이 特定部署의 長을 겸하지 않으며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고 理事會의 의결만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이사회의 構成員이 일부는 상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A)와 전원 非常任으로 운영되는 형태(B)의 두가지 형태로 다시 나눠볼 수 있다.

이 같은 政策型(A)는 美國의 TVA, CCC, 프랑스의 國營企業 및 日本의 舊NTT 등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政策型(B)에 속하는 것으로는 臺灣의 電力公社등 國營企業과 현재 우리나라의 政府投資機關등을 들 수 있다.

政策型理事會의 경우는 理事會의 본래기능에 충실할 수 있고, 집행부서와의 업무중복의 우려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實際業務執行上 나타나는 세부적인 現象이나 經營現實을 제대로 반영하여 政策決定을 하기 어려운 短點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類型을 圖表化하면 〈表 1〉과 같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政府投資機關 理事會制度는 종래에는 機能型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나,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제정후 政策型에 가깝게 運營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政策型(B)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表 1〉 理事會制度의 類型

類型		常任與否	執行參與與否	權限및責任	事 例
機能型	A	全員常任	意思決定과 동시에 主要業務執行에 參與	· 理事會參席 · 擔當業務의 執行權 · 經營結果에 대한 責任	· 美國의 「세인트로렌스」水路開發公社 · 英國의 石公등 國營企業 · 日本의 舊專賣公社
	B	대부분 常任, 一部는 非常任	非常任은 執行에 不關與	관여한 執行만 責任	·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의 一部子會社
政策型	A	대부분 非常任, 일부는 常任	意思決定만 전담	· 理事會參席議決權 · 決定된 事項의 責任	· 美國의 TVA, CCC · 프랑스의 國營企業 · 日本의 舊NTT
	B	全員 非常任	意思決定은 主要事項에 국한	· 主要事項議決 · 經營諮問 · 執行部 最高經營陣이 책임을 짐	· 臺灣 電力公社등 國營企業 · 현재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

2. 國內民間企業의 理事會 運營事例

가. 財閥企業의 경우

理事會構成은 會社內의 執行業務를 擔當하는 社長 이하 常任理事와 前職任員 중 그룹내 他會社의 任員이나 그룹祕書室 또는 企劃調整室에 속해 있는 任員등의 非常任理事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非常任理事의 숫자는 보통 常任理事의 절반이 채 못되며, 理事會에 非常任理事가 直接參與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常任理事에게 委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5大 市中銀行의 경우

市中銀行 民營化措置의 일환으로 1983년 11월 朝興銀行을 시작으로 1984년 2월까지 非常任 理事會制度를 도입했다.

導入 당시의 취지는 業界代表, 辯護士, 公認會計士 등을 非常任理事로 選任하여, 理事會를 확대개편함으로써 大型金融事故의 발생을 방지하고 방만한 經營活動에 제동을 가하자는 데 있었다.

다만 經營上의 편의를 위해서 理事會의 축소판인 常任理事會를 常任任員들로 構成, 보다 일상적인 案件은 常任理事會에서, 중요한 案件은 非常任理事들이 포함된 擴大理事會에서 결정한다.

擴大理事會에 附議하는 主要業務는 다음과 같다.

- 株主總會開催 및 株總에 제출할 議案 作成
- 增資에 관한 사항
- 經營의 基本方針 및 計劃에 관한 사항
- 重要規程의 制定 및 改正에 관한 사항
- 經營實績의 評價, 豫算·決算에 관한 사항 등

1989년 8월 현재 第一銀行의 理事會構成을 보면 常任理事 13명, 非常任理事 7명으로 되어 있으며, 非常任理事는 주로 去來企業의 會長, 財界의 著名人士들로 選任되어 있다. 常任理事會는 週 2회정도 召集되고 있으며, 擴大理事會는 최소한 두달에 1회 이상씩은 열리는 편이다.

다. 長期信用銀行 등의 경우

長期信用銀行, 韓美銀行, 新韓銀行 등 外國人과 合作投資形態로 운영되는 銀行들의 경우는 外國人을 포함한 理事會에서는 商法上에 규정된 理事會 議決事項만을 다루고, 常任任員들로 구성된 常任委員會(또는 常任理事會)에서는 일상적인 銀行業務에 관한 主要政策을 다룬다.

1989년 8월 현재 3個銀行의 理事會構成 現況을 살펴보면 다음 〈表 2〉와 같다.

〈表 2〉 3個銀行의 理事會構成 現況

	長期信用銀行	韓美銀行	新韓銀行	備　　考
常任任員	7명	6명 (外國人 2명포함)	7명	각 常任監事 1명
非常任任員	11명 (外國人 4명포함)	6명 (外國人 3명포함)	약 30명	長期, 新韓은 非常任監事도 1명씩 있음

正式 理事會는 銀行에 따라 年 2~4回 정도 開催되고 있고, 常任委員會의 運營은 市中銀行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III.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理事會 制度의 特徵과 法的 性格

1.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 理事會 制度의 特徵

가. 政策型 理事會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 理事會制度의 첫번째 특징은 전술한 바와 같이 理事가 特定部署를 직접 맡아 執行하지 않으며, 理事는 오직 理事會에 부의된 안건만을 심의하는 政策型 理事會制度라고 말할 수 있다.

管理基本法 제13조 3항에서는 "理事는 理事會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理事의 任務는 원칙적으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參與하는 데 국한된다. 더욱이 審議對象인 議案은 理事會에 부의된 의안으로 되어 있어 理事는 受動的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同施行令 제11조는 "투자기관의 사장과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이(이사장)에 겸임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理事長과 社長은 엄격히 分離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管理基本法 제13조 2항은 "社長은 投資機關을 代表하고, 投資機關의 業務를 總括하며, 經營成果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理事長이 代表權을 갖지 않고 代表權은 社長이 가질 뿐만 아니라, 社長은 업무를 總括하고 經營成果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등 政策型理事會의 특성이 우리나라 投資機關理事會制度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非常任 運營

또 하나의 特徵은 理事를 非常任으로 한다는 것이다. 管理基本法 제11조 2항에서는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常任 또는 非常任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同施行令 제11조에서는 "理事長은 비상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1항에서는 "理事는 非常任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理事長과 理事 모두를 非常任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理事의 非常任化는 理事의 機能을 政策型으로 국한시키고 權限을 縮小하였으며 經營에 대한 관여를 배제하는 등 理事會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政策意志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外部人士의 任用이 가능한 理事를 非常任化시켜 그 機能을 축소시킨 것은 內部人士로 구성된 最高經營層에게 經營의 실권을 부여하여 責任經營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政府의 의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

이 같은 理事의 非常任化는 나름대로의 운영상 장단점이 있다. 理事를 非常任으로 할 경우에는 經驗과 識見을 지닌 外部人士의 활용이 가능하며 執行部의 自律性提高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責任意識의 결여와 시간의 제약으로 投資機關의 문제를 연구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다. 한편 理事를

4) 政府投資機關 經營組織改編指針(1984. 8. 13, 經評委, 第1號) 참조.

常任으로 할 경우에는 理事會의 機能을 强化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日常業務가 없으므로 집행에 관여할 우려가 있으며 豫算이 과다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5].

이같이 理事會를 政策型非常任의 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이의 效率化를 위해 몇가지 관련 부수적인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첫째, 非常任이므로 理事들의 他職業 兼職을 금하지 않는다.

둘째, 非常任인 理事의 業務把握 協調를 위해 관련 情報를 제공해 주며 이와 관련해 懇談會를 갖는다.

셋째, 非常任이므로 별도의 報酬는 지급하지 않고 會議參席 手當과 情報分析 手當만을 실비로 지급한다.

다. 多元的 構成

政府投資機關 理事會의 구성에 대하여 管理基本法 제9조 2항에서는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를 포함하여 數人의 理事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同施行令 제12조 2항은 "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사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理事長의 경우는 基本法 제11조에 의해 主務部長官의 제청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民間理事는 基本法施行令 제12조 3항에 의거 당해 投資機關의 經營 및 技術開發과 관련되는 政府出捐機關의 長, 公企業의 經營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자, 당해 投資機關의 經營과 관련되는 消費者團體 기타 관련단체의 임원 중에서 理事長의 제청으로 主務部長官이 임명하도록 했다.

政府當然職 理事는 施行令 제12조 3항에 의거 投資機關의 업무를 주관하는 院·部·處의 관계 室局長과 經營評價委員會의 幹事가 參與토록 되어 있다. 그 밖에도 執行部를 대표하는 社長이 提案理事의 資格으로 理事會에 참석한다. 그러나 이때 社長의 경우는 政策型으로 運營되는 理事會制度下에서, 社長이라는 별도의 補職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理事業務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理事會의 構成員으로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常任理事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같은 民間, 政府 및 會社代表인 社長등의 多元的인 理事會 構成은 각 構成員의 特性을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民間理事의 경우는 理事會의 주요직무인 議決機能을 專門化하고 국민각계의 의견을 直接 反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政府側 理事는 정부의 시책을 반영하고 經營評價委員會가 投資機關의 經營現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理事會가 獨立된 議決機關으로서의 機能을 발휘토록 하되 議決案件의 提案을 위해 社長을 理事會의 一員으로 참여케 하고 있다.

2. 法的 性格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 理事會는 民間會社와는 달리 投資機關의 最高 意思決定權限을 가지면서도 代表權은 갖지 않는다. 따라서 執行權이 없고 議決權만을 갖는 理事의 法的責任도 그만큼 限界가 있다고 본다.

---

5) 金益洙, 「政府投資機關 管理制度의 改善」,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金重雄·崔洸(編), 韓國開發硏究院, 1984, p.413 참조.

가. 非常任理事의 權限

1) 主要議案의 審議·議決權

理事는 投資機關의 主要議案을 審議議決할 權限을 갖는다. 理事會의 審議議決事項은 基本法 제9조에서 규정한 11개사항을 말한다. 즉, 經營目標·豫算·資金計劃 및 運營計劃, 豫備費의 使用 및 豫算의 移越, 決算, 基本財産의 取得 및 處分, 長期借入金의 借入 및 社債의 發行과 그 償還計劃, 生産製品 및 用役의 販賣價格, 剩餘金의 處分, 다른 企業體에 대한 出資, 定款의 變更, 內規의 制定 및 變更, 기타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같은 基本法 제9조의 열거사항은 어디까지나 包括的·例示的인 사항으로 해석된다.

審議議決은 基本法 제10조에 의하여 理事會構成員 過半數의 의결로 의결한다. 이 같은 理事會의 審議議決權은 投資機關의 運營方向에 관련된 指針的 內容을 다루는 政策決定 및 審議議決이라는 점, 執行部와는 獨立된 機構로서의 理事會가 의결한다는 점에서 投資機關의 最高의 意思決定的인 性格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代表權의 非保有

통상 最高意思決定權限을 갖는 자가 代表權을 갖는 것이 당연하나 政府投資機關의 경우는 理事會에 最高意思決定權限을 부여하면서도 代表權은 理事長이 아닌 社長에게 귀속시키고 있다(基本法 제13조 2항). 이 점은 새로운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핵심적인 改善部分으로서 理事長을 非常任으로 규정한 취지로 미루어 본다면 常勤社長에게 代表權을 준 것은 새로운 政府投資機關管理制度를 社長中心의 責任經營制度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特徵은 法的 性格에 앞서 理事會議決權의 形式性과 함께 投資機關運營의 沿革的인 行態를 동시에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投資機關의 理事會는 종래의 自律性에 입각한 責任經營의 不實을 改善하기 위해서 理事會의 經營關與 배제와 執行部에 대한 責任있는 運營權 賦與를 목표로 탄생된 運營方式이다. 이 같은 沿革的 背景下에서 모든 執行의 責任은 당연히 社長에게 부여하고 다만 의결은 理事會에서 관장토록 制度化하되 理事會를 形式化시킨 것도 같은 脈絡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非常任理事의 責任

1) 責任의 一般的 性格

公企業經營과 관련된 責任은 道義的 責任(responsibility)과 法的인 責任(accountab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道義的 責任은 公式的 役割이나 地位와는 상관없이 지는 包括的인 倫理責任으로서 일반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法的責任이란 公式的 地位權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法的追窮의 대상이 되는 責任으로서 일반적인 비판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刑事 및 民事的處罰의 대상까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경우 理事의 道義的 責任은 어떤 상황에서나 존재한다. 다만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점은 刑事·民事的 責任 및 處罰의 대상으로서의 法的責任의 경우가 해당되겠다.

2) 責任의 特性

非常任理事에게 責任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추궁할 수 있는가. 責任의 일반적 성격, 유사기관의 경우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投

資機關理事의 책임을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우리나라의 政府投資機關 理事會制度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類型上 소위 機能型이 아닌 政策型에 속한다. 따라서 理事가 서로 다른 각자 分野의 업무에 대하여 個人的인 責任을 지는 特定部署의 擔當責任이 없으므로, 일단은 理事 개인적으로 責任을 질 業務分野는 없다고 본다[6].

둘째, 理事會는 議決機構로서의 法的地位와 性格을 가지고 있어 관련 業務에 대한 심의·의결이 일차적인 義務이다. 그런데 심의·의결의 對象이 되는 사안은 具體的인 執行事案이라기보다는 包括的·抽象的인 의안이므로 執行結果 나타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의 파악을 통한 責任의 內容이나 範圍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7].

셋째, 理事會의 의결이 원인이 되어 執行結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절차상의 하자나 特別한 事由가 있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議決自體만에 관련해서 적어도 道義的責任은 추궁할 수 있으나, 法的責任은 추궁할 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政府의 認可나 調整을 받도록 된 사항에 대한 의결의 경우는 더욱더 책임의 성격이 약하다고 본다.

넷째, 理事는 經營諮問의 機能을 갖고 있는데 理事個人의 專門性에 입각한 諮問이 法的責任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이의 추궁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문제일 것이다.

市中銀行 및 合作會社의 非常任理事의 경우는 당해기관에 필요한 專門的인 사항에 대한 諮問遂行이 주요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 機能에 따른 法的責任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諮問事項의 範圍內에서의 法的責任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IV. 理事會制度의 運營實態 및 問題點

1. 理事會構成

政府投資機關 理事會의 構成은 理事長, 民間理事 및 政府當然職理事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投資機關 理事長의 任用前 社會的 背景을 보면, 1989년 2월 현재 전체 24명의 理事長 중에서 前職軍將星 출신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長次官 출신이 10명, 國會議員 출신이 3명으로 나타나 있다[8]. 이러한 현상 때문에 理事長職이 豫備役軍將星과 前職高級官僚를 위한 爲人設官이 아니냐 하는 비판과 함께 관련분야에 專門性을 갖지 못한 理事長이 投資

6) 經濟企劃院 審査評價局 投資機關2課, 「理事會運營活性化方案」, 1985. 9, p.11.

7) 실제로 理事會議決에 대한 法的責任의 추궁필요 여부에 대한 投資機關執行部의 의견을 묻는 設問調査結果를 보면, 責任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44%인 반면, 免責되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경우는 56%로 나타나고 있다. 즉, 免責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다소 높으나 대체로 의견의 양분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책임의 추궁을 주장하는 견해는 경영관리상의 責任追窮 必要性을 강조하는 데서 도출된 결론이고, 免責을 주장하는 견해는 投資機關理事會의 特性과 責任追窮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입장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經濟企劃院 審査評價局 投資機關2課, 前揭文, p.23 참고.

8) 經濟企劃院 審査評價局, 「政府投資機關 任職員現況」, 1989. 2.

〈表 3〉 民間理事數別 政府投資機關 現況

(1989년 2월현재)

理事數	合計	2人	3人	4人	5人	6人
機關數	24	4	12	6	1	1

資料：經濟企劃院 審査評價局, 「政府投資機關 任職員 現況」, 1989. 2.

機關을 맡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던 것이다.

民間理事의 경우는 投資機關의 規模에 따라 總數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表 3〉에서 보듯이 현재는 2人에서 6人까지 機關의 規模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3人이상의 理事를 두고 있는 機關의 數는 총 20개에 이르러, 機關들이 종래에 비해 民間理事의 수를 점차 增大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民間理事의 경우 任用 당시의 社會的 背景은 〈表 4〉에서 보듯이 大學敎授 출신이 40.5%로 가장 많고, 利益代表가 26.6%, 硏究機關 출신이 13.9%, 出資·出捐機關 출신이 3.8%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도 15.2%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投資機關關聯分野의 專門人보다는 포괄적 지식을 가진 교수 등을 중심으로 理事會가 構成되어 있어 民間理事가 企業運營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活用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종래에 비해 보면 敎授나 硏究機關出身보다는 利益代表出身 임용비율이 증가되어 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9].

〈表 4〉 民間理事의 職業別 分布

(1989년 2월 현재)

	合計	大學敎授	硏究機關	利益代表	出資出捐機關	其他[1]
總 數	79	32	11	21	3	12
比率(%)	100	40.5	13.9	26.6	3.8	15.2

註：기타는 職業公務員, 前職公務員, 前職 當該投資機關 任員 및 辯護士임.

資料：經濟企劃院 審査評價局, 「政府投資機關 任職員 現況」, 1989. 2.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公企業民營化에 따라 출현한 소액주주대표가 理事會에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10].

政府當然職理事의 構成은 理事會에 참여하는 主務部處의 室局長과 經營評價委員會의 幹事가 참석케 되어 있음은 앞에서 보았다. 그런데 主務部處의 當然職理事로서 財務部 理財局長이 5개 投資機關의 理事로 참석하며, 動資部 鑛務局長과 石油調整官이 각각 2개 機關에 理事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經營評價委員會 幹事는 모든 投資機關의 理事로 참여하게 되어 있어 결국 當然職理事는 중복임용되는 경향이 있다[11].

그 결과로 理事會 개최시 當然職理事의 不參 내지 代理參席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表 5〉에서 보듯이 經濟企劃院 局

9) 최근 副總理도 投資機關理事長들과의 懇談會에서 "現 理事會의 民間理事構成은 學界, 연구기관 출신들이 과반수이상을 점유하는 등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消費者團體나 關聯團體 등 광범위한 集團代表로 補强하여 國民各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韓國經濟新聞」, 1989.7.8 참조.

10) 姜信逸, 『公企業의 民營化에 관한 硏究』, 韓國開發硏究院, 1988. p.155.

11) 金東建교수는 政府當然職理事를 폐지시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金東建, 「政府投資機關理事會의 運營改善方向」, 『公企業論叢』, 第1卷 第1號, 韓國公企業學會, 1989.3, p. 94.

〈表 5〉 當然職 理事의 代理參席率

(단위 : 回數, %)

開催回數			685(100)
經濟企劃院	局長參席		279(40)
	代理參席	課長	348(51)
		事務官	26(4)
	不參		32(5)
主務部處	局長參席		334(49)
	代理參席	課長	233(34)
		事務官	68(10)
	不參		50 (7)

註 : 1984~88.9까지의 24개 政府投資機關 合計임. 단, 담배人蔘公社의 경우는 1987~88.9까지의 合計임.

資料 : 經濟企劃院 審査評價局 提供.

長의 경우 40%, 主務部處 局長의 경우 49% 정도는 理事가 직접 參席하고 있으나 거의 절반 이상은 代理參席을 하고 있다. 이 경우 課長級이 주로 참석하고 있으나 事務官級의 참석도 적지 않아서 他民間理事와의 관계에서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2. 理事會의 開催

理事會의 開催現況을 보면 1984년 5월 理事會 構成 이후 1988년 11월 현재까지 〈表 6〉에서 보듯이 召集理事會 710회, 書面理事會 268회를 開催하여 기관당 월평균 0.74회 개최하였다.

한편 書面理事會의 비율은 27.4%에 이르고 있는데, 1986년까지는 점차 書面理事會가 減少趨勢에 있었으나 그후 다시 增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가급적 書面理事會를 지양하고 원안의결을 통한 理事會의 充實化를 기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書面理事會의 문제는 開催回數보다 事案의 比重에 있다. 즉, 書面理事會를 남용하여 투자기관의 주요한 사항을 書面決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급적 이를 지양하여 충분한 討議를 거쳐 議決토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書面理事會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의례적인 사항에 국한시켜야

〈表 6〉 政府投資機關의 理事會 開催現況

	計	1984[1]	1985	1986	1987	1988[2]
召集理事會	710	107	145	162	180	116
書面理事會	268	59	71	40	52	46
計	978	166	216	202	232	162
機關當 月平均 開催回數	0.74	0.83	0.72	0.67	0.81	0.61
書面理事會 構成比率(%)	27.4	35.5	32.9	19.8	22.4	28.4

註 : *24개 政府投資機關 合計임.
1) 1984년 5월부터 12월까지임.
2) 1988년 1월부터 11월까지임.

資料 : 經濟企劃院 審査評價局 提供. 단, 1988년도 資料는 「政府投資機關參考資料」, 1988. 12에 의거 작성.

할 것이다. 政府方針으로 審議事項이 정해진 사안일지라도 理事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사항은 書面決議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召集理事會에 대한 理事의 參席現況을 〈表 7〉에서 살펴보면 當然職理事의 경우는 94%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民間理事의 경우는 84%에 이르고 있어 民間理事의 참석률이 다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民間理事의 참여율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表 7〉 召集理事會의 參席現況

		計	84[1]	'85	'86	'87
召集理事會開催回數		594	107	145	162	180
參席率(%)	當然職理事	94	99	97	93	89
	民間理事	84	85	81	84	86
	平均	90	93	91	91	88

註 : *24개 政府投資機關 合計임.
1)1984년 5월부터 12월까지임.
資料 : 經濟企劃院 審査評價局 提供.

3. 議案의 審議·議決

理事會의 議案處理에 관한 문제는 審議方式과 審議案件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84년 5월부터 1988년 11월 현재까지 議決案件은 총 2,232건에 이르고 있는데 〈表 8〉에서 보듯이 그 중 原案議決은 82.1%인 1,833건, 修正議決은 15.5%인 347건에 이르고 있다.

理事會의 議決過程에서 충분한 討議를 거치지 않고 無修正通過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지적되고 있다. 理事會 開催形態別 案件處理現況을 보면 1987년말까지 召集理事會의 경우 案件의 78.6%를 原案대로 처리하고, 修正議決로 처리한 案件은 18.4%에 그치고 있다.

한편 〈表 9〉를 보면 書面理事會의 경우는 무려 97.6%를 原案대로 처리하고 있고 修正議決로 처리하는 案件은 1%에 그치고 있어 書面理事會의 경우 거의 原案대로 통과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8〉 政府投資機關 理事會의 案件處理 現況

		計	1984[1]	1985	1986	1987	1988[2]
議決案件	計	2,232	455	487	430	519	341
	原案議決	1,833	355	407	368	431	292
	(%)	(82.1)	(73.6)	(83.6)	(85.6)	(83.0)	(85.6)
	修正議決	347	103	68	51	76	49
	(%)	(15.5)	(22.7)	(14.0)	(11.9)	(14.7)	(14.4)
	否決撤回		17	12	11	12	
	(%)		(3.7)	(2.4)	(2.5)	(2.3)	

註 : *24개 政府投資機關 合計임.
1) 1984년 5월부터 12월까지임.
2) 1988년 1월부터 11월까지임.
資料 : 經濟企劃院 審査評價局 提供資料. 단, 1988년도 資料는 「政府投資機關參考資料」, 1988.12에 의거 作成한 것임.

〈表 9〉 理事會 開催形態別 案件處理 現況

		計	84[1]	'85	'86	'87
召集理事會	計	1,603	369	392	377	469
	原案議決	1,260	249	313	319	379
	(%)	(78.6)	(67.5)	(79.9)	(84.6)	(81.5)
	修正議決	295	103	68	49	76
	(%)	(18.4)	(27.9)	(17.3)	(13.0)	(16.1)
	否決撤回	48	17	11	9	11
	(%)	(3.0)	(4.6)	(2.8)	(2.4)	(2.4)
書面理事會	計	288	86	95	53	54
	原案議決	281	86	94	49	52
	(%)	(97.6)	(100.0)	(98.9)	(92.4)	(96.3)
	修正議決	3	—	—	2	1
	(%)	(1.0)			(3.8)	(1.8)
	否決撤回	4	—	1	2	2
	(%)	(1.4)		(1.1)	(3.8)	(1.9)

註：*24개政府投資機關 合計임.
1) 1984년 5월부터 12월까지임.
資料：經濟企劃院 審査評價局 提供.

물론 모든 議案을 반드시 修正通過시켜야 할 이유는 없지만, 修正意見 開陳 없이 전면 原案대로 通過시키거나, 當該機關의 중요한 관련사항을 충분한 討議 없이 소홀히 취급하거나, 짧은 시간내에 졸속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당해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主務部 및 執行部에서 상정한 事項을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경우도 있어 심의가 不充實하게 이루어질 소지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요사안의 討議中에 대립되는 견해가 표출될 경우에는 理事會의 所要時間을 충분히 하여 研究·檢討·調整하여야 할 것이다.

審議案件의 選定에도 問題點이 있다. 審議議決案件이 理事會 該當事項인지의 여부에 대한 基準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즉, 당연히 심의의결사항으로서 定款에 규정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심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審議議決事項이 아닌데도 審議議決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審議議決對象인 重要事項이라고 할 수 있는 議案은 예컨대 公社運營計劃, 經營目標의 修正, 出資會社의 設立, 特別機構의 設立, 事業物量의 調整 등 政策的 次元의 企業經營事項이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반면, 業務關聯用語나 세세한 계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12].

4. 理事의 活用：諮問 및 懇談會運營

理事들이 企業運營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執行部로부터 필요한 情報를 제공받기 위한 조치로서 懇談會 형식의 모임이 있다. 이 간담회는 적어도 월 1회씩 갖도록 요망되고 있다[13]. 懇談會의 開催方法은 理事·理事長이 現場, 事業所, 傘下機關을 訪問하거나 주요 懸案에 대한 說明會 및 報告會를 겸하여 開催하고, 理事와 執行幹部와의 對話時間을 마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서 理事를 초청하여 직원을 상대로 한 講演會를 갖는 경우도 있어 理事의 參與提高와 이를 통한 職員의 敎育效果도 기대할 수

12) 金東建교수는 理事會의 主要審議事項은 基本法의 취지로 보아서 長期的인 經營戰略과 비전을 제시하는 政策的 決定事項에 국한시키고 필요하다면 基本法에 나열되어 있는 議決事項도 대폭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金東建, 前揭文, p.93.

13) 1985년 12월 14일의 政府投資機關의 社長懇談會에서 理事會活性化方案의 일환으로 정해진 지침임.

있다. 開催와 관련된 문제로서 開催日時와 懇談會 參席者의 範圍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非常任理事의 業務把握을 돕기 위해 情報를 提供할 경우 情報의 內容은 業務現況, 調査活動의 結果, 投資環境 등과 같은 理事會 關聯資料를 포함하여 理事의 參考資料로서 중요한 최소한의 情報는 제공해주어야 한다. 提供方法도 書面과 함께 최신 情報器機의 적극활용도 필요하다. 또한 審議해야 할 案件을 가급적 前期會議때 미리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情報提供期限[14]을 엄수하지 않는 기관이 있는데, 이의 엄수를 위한 內部報告時限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議決事項에 대해서는 면밀한 基礎調査를 통하여 理事會가 審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特別報告書를 作成하여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5. 理事에 대한 待遇등

理事長에 대한 待遇는 당초 政府가 제시한 資料에 의하면 報酬性格의 일정액 經費를 기관간 격차없이 일률적으로 50萬원으로 하고 涉外活動은 별도로 50萬원 범위내에서 정산지급토록 규정하였으나, 1987년 10월 이후 投資機關의 사정에 따라 自律的으로 理事長支給經費를 調整하여 월정액 100萬원과 100萬원 범위내의 業務推進費를 支給하도록 하고 있다.

14) 政府投資機關 經營組織改編指針(經評委 第1號, 1984.8.13)에서 제시한 기한임.

15) 이와 관련하여, 당해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해당기관 이사회에 추천하고 理事會가 이를 承認하는 理事長 推薦制로 전환하려는 經濟企劃院의 改編方案도 고려해 봄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같은 理事長의 待遇에 비해 理事의 경우는 관련 費用이 너무 적다는 불평이 있어 이의 재고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理事會 補助擔當職員의 固定配置를 理事數가 많은 機關의 경우에는 현재의 1명에서 2명으로 增員하거나, 地方에 主事務所가 있는 경우는 서울事務所에 專擔職員을 별도로 두어 충실히 情報를 提供하는 기관도 일부 있어 타기관에서도 考慮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結　論

앞에서는 理事會制度의 導入背景과 運用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추출된 問題點을 살펴보았다. 이에 관련된 문제의 언급시에 나름대로의 改善方向을 제시했으나, 여기서는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改善方向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 理事長職에 前職高級官僚 및 豫備役軍將星이 주로 任命되어온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계층의 인사를 중심으로 理事長을 選任함으로써 理事長職이 爲人設官式으로 運營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처음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 점은 制度運營上의 문제로서 政策當局의 의지여하에 따라 改善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왔으나 개선되지 못한 채 輿論의 비난을 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理事長制度 廢止論까지 등장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해당기관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理事長職에 任命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15].

둘째, 理事長 및 理事의 지나친 待遇는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手當등의 측면에서는

초기의 규정에 비해서 상당한 增額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적지 않은 待遇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業務에 相應한 待遇를 하되 過大化되지 않도록 하고, 理事長 스스로는 대우에 상응한 노력을 하는 職業倫理를 갖춰야 할 것이다.

셋째, 當然職理事의 代理參與와 參與姿勢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代理參席은 한 부서의 擔當者가 여러 投資機關을 重複하여 담당하게 되는 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當然職理事의 高壓的·官主導的인 參與態度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관여를 배제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설득과 이해와 협조의 자세로 參與하도록 바꿔져야 할 것이다.

넷째, 民間理事의 數를 좀더 늘리고[16] 部分民營化가 되는 投資機關에는 少額株主代表가 理事會에 參與하는 方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民間理事의 選拔에 있어서 投資會社의 子會社 社長이나 投資機關의 出捐機關의 長이 理事로 選任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投資機關의 業務와 관련되는 분야이지만 投資機關과 독립되어 이해의 충돌이 없는 人士를 理事로 任命하여야 公正하고 올바른 理事會를 運營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韓電, 通信公社등 國民株를 대량 보급하게 될 投資機關은 少額株主代表를 理事會에 參與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理事會機能이 보다 活性化되어야 하되 執行部를 지휘감독하는 理事會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理事會의 機能活性化는 활성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야기될지 모르는 執行部와의 마찰가능성, 理事에 대한 待遇 및 統制의 限界, 그리고 理事의 法的責任負擔의 문제 등과 연관시켜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理事의 法的責任이 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理事의 機能만 强化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問題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管理基本法에 명시된 바와 같이 社長이 投資機關을 代表하고 經營成果에 대한 責任도 지게 되어 있어, 責任經營의 主體는 執行部이고 理事會가 아니라는 점이 民間企業의 理事會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현재와 같은 諮問機能의 活性化 측면에서 다양한 方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理事會 運營上 제기된 문제의 개선을 위해 理事會에 부의할 案件의 정확한 선별에 의한 理事會의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고, 중요한 안건인 경우 가급적 書面決議를 지양하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審議議決하는 것이 필요하다.

16) 金東建교수는 民間理事를 1~2명 追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金東建, 前揭文, p.92.

▷ 參 考 文 獻 ◁

姜信逸, 『公企業 民營化에 관한 硏究』, 韓國開發硏究院, 1988.

經濟企劃院, 『政府投資機關의 새로운 經營體制의 定着과 理事會運營方案』, 1984.5.

_____, 『새로운 政府投資機關 管理秩序의 定着』, 1984.8.

_____, 『政府投資機關의 理事會運營 活性化方案』, 1985.12.

_____, 『公企業白書』, 1988.

_____, 『政府投資機關 參考資料』, 1988.12.

金東建, 「政府投資機關理事會의 運營改善方向」, 『公企業論叢』, 第1卷 第1號, 韓國公企業學會, 1989.3.

金益洙, 「政府投資機關 管理制度의 改善」,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金重雄 · 崔洸(編), 韓國開發硏究院, 1984.

司空 壹 外, 『政府投資機關 管理制度 改善方案』, 韓國開發硏究院, 1982.8.

宋大熙, 「政府投資機關 理事會制度의 運營現況과 發展方向」, 政策討議資料 8714, 韓國開發硏究院, 1987. 5.

宋大熙 外, 『政府投資機關 經營組織 改編方向』, 韓國開發硏究院, 1984.

兪焄, 『公企業論』, 法文社, 1984.

政府投資機關 經營評價委員會, 『政府投資機關經營評價便覽』, 各年度.

崔基元, 『商法新論(上)』, 博英社, 1984.

「每日經濟新聞」, 1988. 6. 25.

「한겨레신문」, 1988. 6. 14.

「韓國經濟新聞」, 1989. 7. 8.

廣告業의 産業組織과 政府規制改善方案

劉 承 旻

本 論文은 廣告主, 廣告代行業體, 媒體를 연결하는 流通構造를 중심으로 韓國廣告業의 産業組織論的 特性을 분석하고 廣告産業에 대한 政府規制의 現況과 問題點을 정리함으로써 對外開放이 기정사실화된 國內廣告市場에 대한 政策의 改編方案을 논의한다. 産業으로서의 廣告業에 초점을 둔 本 論文은 政策示唆點으로서, 첫째 放送廣告의 경우 長短期로 구분된 電波媒體政策의 改編을 통하여 公民營混合體制내에서 放送廣告의 供給擴大를 추구함을 前提로 韓國放送廣告公社에 부여된 代行獨占權과 價格規制機能의 縮小를 지향함으로써 市場機能을 복원할 것, 둘째 新聞 및 放送廣告 共히 媒體의 橫暴에 대하여 競爭政策當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셋째 市場失敗가 존재하는 분야는 오히려 發行部數 및 視聽率에 관한 情報의 需要·供給이기 때문에 ABC制度 및 視聽率調査制度의 정착을 위하여 政府가 노력할 것 등을 제시한다.

I. 序 : 分析의 主眼點

廣告와 관련된 종래의 연구들은 대부분 '廣告의 屬性'[1], '廣告와 競爭의 相互關係'(즉, 商品差別化를 통한 廣告의 進入障壁 役割), '虛僞·誇張廣告의 弊害 및 이에 관한 規制', '마케팅戰略으로서의 효과적인 廣告技法' 등에 국한된 반면 廣告産業自體에 대한 政府의 産業政策, 行政慣行 등이 갖는 競爭政策的 意味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本 論文은 新規成長産業으로서 그 經濟社會的 重要性이 漸增하고 있는 廣告産業에 대한 政府의 直接·間接的인 規制가 어떠한 競爭政策的 意味를 가지며 競爭促進을 통한 産業發展의 次元에서 바람직한 對應方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

筆者 : 本院 研究委員

* 筆者는 本 研究의 草稿에 대하여 귀중한 論評을 주신 本院의 李奎億, 金鍾奭, 金周勳, 金址鴻 博士께 깊이 감사드린다. 資料整理에 도움을 준 韓光錫 研究員, 原稿整理에 수고한 任贊順 研究助員께도 감사드린다. 本 研究에서 제시된 見解나 어떤 誤謬도 著者 個人의 것임은 물론이다.

1) 廣告의 定義 내지 意味와 관련된 문제로서 廣告

고자 한다.

이와 같은 硏究趣旨를 고려할 때 廣告主, 廣告代行業體(이하 代行業體), 媒體의 三者를 연결하는 전반적인 流通構造를 分析의 對象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代行業體들로 구성되는 '産業'(KSIC 84411)을 硏究對象으로 한다. 따라서 廣告主와 媒體에 대한 政策을 고려할 경우에도 代行業體와의 連繫下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競爭促進을 통한 産業發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規制 및 獨占禁止의 經濟學, 넓게는 産業組織論的 接近方法이 바람직한 方法論으로 판단되며 經營學的 考慮나 廣告産業의 外部效果 혹은 特殊性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자세 등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2].

廣告産業의 流通構造는 廣告主—代行業體—媒體의 3大 主體가 그 중심을 이루며 代行業體와 廣告物作成業體間의 垂直的 去來關係를 포함한다. 또한 韓國放送廣告公社(Korea Broadcasting Advertising Corporation : 이하 KOBACO)와 新聞協會廣告協議會 등이 代行業體와 媒體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韓國廣告産業의 特徵인데 각자의 역할은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流通構造를 따라 生産되는 財貨 및 用役에 대하여 책정되는 價格은 여러가지 형태인데 廣告主가 부담하는 總廣告費는 廣告料와 製作費로 구성되며 手數料는 廣告料의 일부인 代行手數料와 製作費의 일부인 製作手數料로 구분된다[3].

결국 廣告主가 廣告費 全額을 부담하지만 代行業體가 '資金循環까지 代行'하는 流通構造를 나타낸다. 그러나 價格의 決定에 있어서는 뒤에 논의되듯이 恣意的 要素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電波의 경우에는 KOBACO가 廣告料 및 代行手數料의 決定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廣告料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으로써 資金循環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理論的으로는 廣告料와 諸手數料의 決定이 3大 主體間의 相互力學關係, 즉 需給의 市場原理에 따를 것이나 이러한 價格決定過程에 KOBACO 등이 개입함으로써 市場메커니즘이 교란되고 있다. 따라서 廣告産業의 流通經路에 현재와 같이 政府獨占的 販賣代理人이 개입되어 流通過程을 복잡하게 하는 當爲性이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流通構造가 廣告産業의 長·短期的 位相이라는 觀點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硏究課題로 부각된다.

本 論文에서는 廣告産業을 TV, 라디오, 新聞, 雜誌의 4大 媒體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되 가장 중요한 TV와 新聞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産業組織論的 現況을 살펴보고

를 情報(information)로 보는 견해와 說得(persuasion)으로 보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Marshall의 建設的 廣告와 戰鬪的 廣告의 구분에서 유래하며 廣告를 '豐饒의 機構'(institution of abundance)로 볼 것이냐 혹은 '社會的 浪費'(social waste)로 볼 것이냐에 대한 論爭의 中心을 이룬다. 이러한 論議에서 출발한 廣告의 經濟學에 대해서는 Tuerck(1978), Sargent(1972), Worcester(1978) 등을 참조할 것.

2) 예컨대 公營放送體制의 支持者들은 廣告의 浪費性을 지적하고 '廣告無用論'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을 적절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廣告의 屬性에 관한 假說과 政府의 媒體政策이 면밀히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本文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論議는 本 論文과는 별도의 事案으로서 여기에서의 分析對象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3) (廣告料—代行業體의 代行手數料—KOBACO의 代行手數料)는 媒體의 廣告收益, (製作費—製作手數料)는 廣告物作成業體의 收益, (代行手數料+製作手數料)는 代行業體의 營業收益, KOBACO의 代行手數料는 KOBACO의 營業收益을 구성한다.

政府規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II章에서는 廣告産業의 市場構造的 現況을 검토하고 III章에서는 政府規制의 現況 및 問題點을 검토한다[4]. IV章에서는 本論文에서 제기된 爭點들을 요약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政策代案을 검토하고 結論을 맺고자 한다.

II. 廣告業의 産業組織

1. 概 觀

總廣告費는 지난 20여년 동안 급속한 伸張趨勢를 나타내면서 1988년에는 1兆원을 돌파하여 韓國의 廣告市場이 世界市場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5]. 年度別 廣告費, 廣告費의 媒體別 構成比, GNP 對比 廣告費의 比重 등은 <表 1>에서와 같은데 韓國의 廣告市場이 절대적인 規模面에서나 상대적인 比重面에서 모두 급속한 성장을 실현했음을 알 수 있다. 媒體別 構成比의 변화를 보면 TV廣告의 경우 다소 기복은 있었지만 꾸준한 增加趨勢임에 반하여 라디오廣告는 減少趨勢여서 兩者間 代替關係를 알 수 있으며 新聞, 雜誌의 경우에는 그 比重이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4大 媒體 이외의 媒體手段에 의한 廣告(表 1의 '기타'에 해당)의 比重이 최근 들어 많이 증가한 점, TV廣告의 比重이 1986년 이후 3년간 계속 감소한 점 등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상대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媒體環境의 變化라고 볼 수 있다.

廣告産業의 市場構造的 現況은 3大 主體를 중심으로 각각 그 數的 分布, 占有率 分布 등 基礎資料의 分析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各 主體別 現況을 比較·檢討할 때 相互間의 力學關係에 대한 推論이 가능할 것이다.

2. 廣告主

超大企業들의 比重이 크고 이들의 대부분이 主要企業集團(財閥)에 속해 있다는 韓國經濟의 特徵은 廣告産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廣告主로서의 大企業은 販促뿐만 아니라 소속된 企業集團의 이미지宣揚등의 이유로도 막대한 廣告費를 지출함으로써 大規模 廣告主가 된다[6]. 廣告費支出에 있어서 大企業이 차지하는 比重은 실제로 엄청난 것으로서 이들 大規模 廣告主가 속한 企業集團은 때로는 직접 廣告代行業에 참여하여 系列廣告主의 廣告費가 他그룹系列 代行業體로 流出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300大 廣告主의 數的 分布와 占有率의 分布를 살펴보면 分布의 偏差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7]. 1987년의 上位 300大 廣告主

---

4) III章에서 보듯이 廣告産業에 대한 政府規制는 실로 광범위하지만 本 論文에서는 産業組織論的, 流通構造的 觀點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政府規制만을 취급하기로 한다.

5) 1980년과 1986년을 비교할 때 世界廣告費는 55% 증가한 반면 韓國의 廣告費는 131% 증가했다. 世界市場에서 韓國이 차지하는 比重은 同期間中 0.38%에서 0.56%로, 順位는 23位에서 16位로 변화했다. 申寅燮(1988a), p.16을 참조할 것.

6) 200大 廣告主의 年度別 廣告費支出, 順位變化 등에 대해서는 第一企劃, 『廣告年鑑』, 各年號 및 Shin(1989), p.73 등을 참조할 것.

7) 李基興(1988), p.141, <表 1>을 참조할 것.

〈表 1〉 年度別 廣告費, 媒體別 構成比, GNP對比 廣告費 : 1968～88

	總廣告費 (億원)	媒體別 構成比(%)					GNP對比 廣告費(%)
		TV	라디오	新聞	雜誌	其他[1]	
1968	92	13.4	18.6	45.0	6.1	16.9	0.63
1972	190	24.6	15.6	35.9	7.7	16.2	0.45
1976	935	32.5	15.8	33.7	3.8	14.2	0.68
1979	2,186	28.8	13.8	34.9	3.7	18.8	0.74
1983	5,653	34.1	6.3	38.7	4.0	16.9	0.97
1986	8,185	36.5	5.4	36.7	4.2	17.2	0.99
1987	9,724	36.3	4.8	34.9	4.8	19.2	1.00
1988	12,785	34.8	4.0	36.2	5.1	19.9	1.15

註 : 1) 옥외광고, DM, 해외광고 등을 포함.
資料 : Shin(1989), pp. 67～69 ; 第一企劃, 『廣告年鑑 '88』 ; 第一企劃, 『第一企劃 社報』, 1989. 1, p.8.

만을 두고 볼 때 50億원 이상의 廣告費를 지출한 27개 廣告主가 總額의 37.9%를 점하고 있으며 10億원 미만의 少額廣告主가 반 이상의 數를 점유하고 1位 廣告主와 100位 廣告主의 廣告費가 10倍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등 廣告主分布는 '少數의 多額廣告主와 多數의 少額廣告主'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分布가 需要寡占(oligopsony)으로 파악될 수도 있겠으나 上位 廣告主와 下位 廣告主의 관계가 供給寡占市場의 先導企業(leader) 對 追從企業(follower)의 관계로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廣告主는 '廣告市場'에서 需要者의 役割을 담당하기 때문에 廣告主分布의 이 같은 특징은 廣告市場의 需要와 관련하여 중요한 示唆點을 제공하고 있다. 즉 少數의 多額廣告主가 總廣告費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만큼 이들의 需要獨占力이 존재한다는 假說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需要獨占力이 현실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은 供給者인 媒體들의 構造的 特性을 감안한 相對性, 廣告産業에 대한 政府規制를 포함한 制度的 環境 및 市場構成員의 行態的 特性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廣告主 相互間의 橫的 連帶組織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1988년 9월 창설된 韓國廣告主協會는 향후 廣告主의 利益을 대변하는 機構로서 그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廣告主協會는 需要側面의 事業者團體로서 競爭次元의 우려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는 供給者와의 力學關係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즉, 需要카르텔로서의 廣告主協會가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獨占的 媒體와 함께 雙方獨占(bilateral monopoly)形態의 市場構造를 초래하기 때문에 媒體의 一方的 獨占狀態보다는 나은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다.

廣告主와 관련된 市場構造的 特性은 業種別 혹은 브랜드別 廣告費分布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므로 〈表 2〉에서는 業種別 廣告費支出을 요약하고 있다. 最終消費와 직접 관련이 있는 業種이 당연히 압도적인 比重을 차지하

〈表 2〉 業種別 媒體別 廣告費 分布

順位 및 業種						媒體別 構成比(1988)[1]			
'85	'86	'87	'88	業　　種	比重(%)[1]	TV	라디오	新聞	雜誌
1	1	1	1	食品・飮料	19.6	74.7	8.3	13.5	3.5
2	2	2	2	藥品	13.3	52.1	6.2	36.8	4.9
4	3	3	3	化粧品・洗劑	8.6	71.7	3.6	13.0	11.7
5	4	4	4	家庭用品器機	6.5	47.4	3.3	35.0	14.3
6	9	9	5	流通	6.5	13.2	2.8	80.3	3.7
7	7	7	6	서비스・娛樂	6.0	7.9	2.3	84.7	5.1
3	5	6	7	官公廳・團體	5.7	7.8	0.8	90.7	0.7
8	6	5	8	電氣・電子器機	5.3	48.5	6.4	40.8	4.3
9	8	8	9	衣類・纖維	5.3	49.1	6.9	24.1	19.9
10	10	10	10	精密事務器機	4.6	42.1	5.1	41.4	11.4
-	-	-	-	其他[2]	18.6	-	-	-	-
				計	100.0				

註 : 1) 比重欄에는 각 業種이 總廣告費에 차지하는 比重을, 媒體別 構成比에는 同 業種의 廣告費에서 각 媒體가 차지하는 比重을 나타냄(1988년 기준).
2) 其他에 속하는 業種으로는 金融・保險, 出版, 建設・建資材, 醫療・敎育, 輸送器機, 化學工業製品, 基礎材, 一般產業器機 등이 있음. 이들 業種에 관한 상세한 統計는 資料源을 참조할 것.

資料 : 河澤煥(1988), p.152, 〈表 4〉; Shin(1989), p.70 ; 第一企劃, 『第一企劃 社報』, 1989. 1, p.9.

며 年度別로 業種間 順位變化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단, 各業種의 媒體別 廣告費의 構成比를 살펴보면 業種의 特性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특히 TV와 新聞을 대비할 때 그 현상이 현저하다. 이는 業種別로 廣告對象階層이 상이한 이유에서 오는 媒體選擇의 差異로 설명되는데 上位業種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분없이 상대적으로 廣告費用이 높은 TV廣告의 比重이 크며 廣告主들이 TV廣告를 통하여 치열한 販促競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廣告代行業體

韓國廣告代行業의 歷史는 오래 된 것이지만 產業으로서의 발전은 많은 이유로 제약되어 왔는데 媒體의 입장에서는 代行業의 認定이나 代行手數料의 支給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初期의 代行業體들이 收益性의 制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80년대에 들어 代行業界는 큰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放送廣告의 경우 言論統廢合에 이어 1981년 KOBACO가 설립되면서 '廣告代行社認定基準'이 제정되는 등 放送廣告代行業은 전혀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되었다.

KOBACO설립당시의 기준에 따라 인정된 代行業體는 오리콤, 제일기획, 연합광고, 나라기획 등의 4個社이며 그 이후 8個社가 추가로 KOBACO의 代行認定을 취득하여 1988년 말에는 〈表 3〉의 12個社가 '綜合代行業體'의

〈表 3〉 全媒體 代行認定을 취득한 12個 綜合廣告代行業體(1988.12 현재)

代行業體名 (創立年度)	系列그룹	取扱高 順位				取扱高[1] ('87 ; 億원, %)	從業員數 ('87 ; 名)	非系列廣告主의 比率('87 取扱高 基準)
		'84	'85	'86	'87			
제일기획(1973)	삼 성	1	1	1	1	1,074(25.1)	423	45.5
대홍기획(1982)	롯 데	4	3	3	2	732(24.1)	242	59.2
엘지애드(1984)	럭 키 금 성	3	4	4	3	712(41.1)	274	23.7
오 리 콤(1967)	두 산	2	2	2	4	707(12.1)	372	84.2
코 래 드(1981)	해 태	6	6	6	5	516(53.5)	227	69.7
연합광고(1974)	문 화 방 송	5	5	5	6	436(16.5)	182	100.0
동방기획(1984)	태평양화학	7	7	7	7	356(31.4)	139	55.3
금강기획(1983)	현 대	-	-	8	8	265(52.8)	141	36.8
삼희기획(1984)	한 국 화 약	10	9	10	9	213(30.1)	89	54.2
서울광고기획 (1980)	-	8	8	9	10	174(9.0)	98	100.0
거 손(1980)	-	9	10	11	11	125(126.3)	92	100.0
나라기획(1976)	-	-	-	12	12	122(89.9)	77	100.0

註 : 1) ( )안의 숫자는 前年對比 取扱高의 成長率을 나타냄. 本 論文에서는 賣出額이라는 용어 대신 取扱高라는 용어를 사용함. 代行業體의 賣出額은 總收益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取扱高의 일부에 불과함.
資料 : 第一企劃, 『廣告年鑑』, 各年號 ; Shin(1989), p.95 ; 李基興(1988), pp.142~43 ; 申寅燮(1989), p.20.

機能을 수행하게 되었다.

代行業體와 관련된 市場構造的 現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表 3〉의 12個 代行業體중 上位 9個社가 재벌그룹에 속하는 系列企業이라는 독특한 構造的 特性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8]. 이는 大規模 廣告主의 대부분이 재벌그룹에 속해 있다는 사실과 함께 韓國廣告産業의 構造的 特性을 반영하고 있다[9]. 특히 大規模 廣告主인 系列企業을 가진 企業集團으로서는 '代行業體의 系列企業化'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企業集團次元의 競爭, 有望産業으로서의 代行業에의 參與 등의 이유 이외에도 內部化(internalization) 혹은 垂直結合을 설명해 주는 情報費用·去來費用 및 組織費用,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不確實性 그리고 市場支配可能性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벌그룹에 속한 代行業體의 取扱高現況은 '系列廣告主'와 '非系列

8) 〈表 3〉에서는 '媒體의 代行業體 所有'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MBC 소속의 연합광고는 媒體(MBC)의 系列廣告主가 全無함에도 불구하고 6位를 기록하고 있다. 媒體所屬의 代行業體는 재벌그룹소속의 代行業體와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廣告代行業의 진정한 市場이라고 할 수 있는 非系列廣告主市場에서 廣告主를 유치함에 있어서 競爭的 優位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從業員數로 봐서도 300人이상이 2個社, 200人이상이 5個社로서 廣告代行業이 반드시 大企業에게 유리해야 할 經濟的 理由(예컨대 각종 規模의 經濟, 技術的 效率性, 資本所要)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요청된다.

廣告主'로 구분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表 3>에서는 1987년 取扱高에 대하여 각 代行業體別로 非系列廣告主의 相對的 構成比를 나타내고 있는데 代行業體間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分布의 離散性'은 上位 5個 代行業體의 경우 더욱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재벌그룹소속 代行業體의 系列廣告主 依存度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個別 代行業體의 相對的 優越性(創意性, 效率性, 販促能力, 經營能力 등)과 같은 經濟的 要因이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系列會社數, 賣出額規模, 主力業種 등에 있어서의 재벌그룹간 차이에 기인하는 統計的 結果일 가능성도 있다. Shin(1989)은 재벌그룹에 속한 代行業體가 갖는 長點으로서 母會社의 지원에서 출발하여 系列廣告主의 廣告를 확보함으로써 발생하는 事業의 安定性을, 短點으로는 廣告代行業의 要體인 創意性과 顧客管理能力의 缺如를 들고 있으나 <表 3>의 統計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재벌그룹소속 代行業體들이 그 동안 對內外的 保護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성공적임을 알 수 있다[10].

1980년 이전에 설립된 4個 代行社 중에서 取扱高가 큰 3個社(제일기획, 오리콤, 연합광고)에 국한하여 1980년과 1986년을 비교해보면 同 期間中 總廣告費가 297% 증가한데 비하여 이들의 取扱高는 428%나 증가했으며 이들의 取扱高가 차지하는 比重(市場占有率)은 17.0%에서 22.7%로 증가했다. 12個 代行業體의 경우에도 그 市場占有率(*CR*12)은 1986년의 51.1%에서 1987년의 55.9%로 1년동안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上位 3社 占有率(*CR*3)은 同 期間中 오히려 하락추세에 있는데 *CR*12의 증가는 代行率(代行業體取扱高／總廣告費)의 증가에 따른 代行社時代의 到來를 의미하지만 *CR*3의 하락은 寡占的 市場構造가 다소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11].

1989년에 들어 KOBACO의 放送廣告代行資格要件의 緩和 및 代行手數料 引上에 따른 期待收益增大 등의 이유로 <表 4>에서와 같이 廣告代行業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廣告代行業에 참여하지 않았던 재벌그룹들이 '社內代行業體'(in-house agency) 設立을 통한 系列廣告主의 확보를 토대로 廣告代行業에 참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製藥, 패션衣類, 食品 등의 業種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새로운 代行業體의 參與는 廣告代行業의 市場構造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보다 競爭的인 市場構造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大規模 廣告主의 社內代行業體 設立은 旣存의 代行業體들로서는 大規模 廣告主의 喪失을 초래할 것이다[12].

10) 對外的으로는 그동안 韓國廣告市場이 多國籍代行業體들에게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對內的으로는 최근까지 KOBACO등의 代行社認定基準에 의하여 進入이 規制된 점을 들 수 있다.

11) *CR*3, *CR*12는 다음과 같다.

	1986	1987
*CR*3	26.6	25.9
*CR*12(代行率)	51.1	55.9
12個 業體중 上位 3社의 比重	49.7	46.4

12) <表 3>의 12個 代行業體 이외에도 新聞廣告의 경우 5個 代行業體가 추가되어 總17個社가 新聞協會廣告協議會에 의하여 1989년 新聞廣告代行業體로 선정되었다. 이들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本文의 論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表 4〉 新規放送廣告代行業體 增加推移(1989.6.1 현재)

	88.12末	89.2.1	89.4.1	89.6.1	89.12末
放送廣告代行業體數	12	24	28	36	50[1)]

註 : 1) 예측치임.
資料 : 韓國經濟新聞(89.5.2) ; 經濟企劃院(1989).

4. 媒 體

媒體에 대한 市場構造的 分析 또한 媒體의 數的 分布와 '廣告市場占有率'의 分布를 살펴보는 것이다. 媒體의 廣告市場占有率은 두가지 차원에서 구분될 수 있는데 總體的 次元에서 4大媒體間의 相對的 比重은 〈表 1〉에서 이미 다루어졌으며 여기에서는 4大媒體의 媒體內 言論社別 相對的 占有率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印刷媒體의 경우에는 各社別 市場占有率에 관한 정확한 統計를 얻기가 어려웠다. 媒體의 廣告收益이란 결국 媒體가 제공하는 廣告서비스의 量과 이에 대하여 결정되는 價格(廣告料)에 의존하는데 價格은 市場成果 및 政府規制의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하지만 各社別 廣告收益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여기에서 다루기로 한다[13)].

媒體에 대한 市場構造的 理解는 媒體環境의 變化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廣告란 媒體의 活用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며 廣告費중에서 媒體가 제공하는 時間과 紙面을 구입하기 위한 費用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廣告産業에 있어서 건전한 媒體環境의 重要性이 부각된다. 廣告와 관련하여 韓國의 媒體環境을 검토할 때 그 構造와 形態가 市場經濟의 論理에 따라 구성되고 변화하기보다는 媒體를 둘러싼 政治·社會的 要因들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단적인 例가 1980년의 言論統廢合措置로서 放送協會와 新聞協會는 1980년 11월 言論機關의 전면적인 統廢合改編에 관한 決議文을 채택함으로써 媒體環境에 있어서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이는 媒體環境에 관한 한 政府의 言論政策이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言論自由化政策의 擴大, 廣告市場의 對外開放, 政府內 廣告專擔部署의 新設, 韓國ABC(發行部數公査)協會의 發足, TV廣告에 대한 需要의 急增 등이 媒體環境變化의 主要內容이라고 할 수 있다[14)].

이러한 外生的 變數 이외에 媒體市場의 構造的 特性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는 印刷媒體의 경우 發行部數 및 購讀率·回讀率을, 電波媒體의 경우에는 受信機普及率 및 視聽率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新聞發行部數는 최근까지 ABC機構가 없었던 이유로 극히 단편적인 情報만이 가능하며 TV視聽率 또한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收益 혹은 價格, 去來慣行 등을 통한 간접적인 推論만이 가능할 뿐이다.

13) 價格은 市場占有率, 發行部數, 視聽率 등에 관한 推定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히 價格의 決定이 市場外的 要因에 의하여 좌우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14) 程準基(1988) 및 李相勳(1988) 등을 참조할 것.

여기에서는 印刷媒體와 電波媒體를 구분하여 市場構造的 特性을 간략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가. 印刷媒體

1980년의 統廢合改編에 따라 中央紙 1, 經濟紙 2, 地方紙 5個社 등 8個 新聞社가 統廢合되었으며 조정되었거나 統廢合에 관련된 新聞社는 6個社였다[15].

1987년말 「言論基本法」이 「定期刊行物 登錄法」으로 대치되면서 統廢合으로 廢刊되었던 新聞·雜誌들이 復刊되고 創刊 또한 활발하여 定期刊行物의 登錄은 최근 들어 폭발적인 增加趨勢를 나타내고 있다[16]. 이에 덧붙여 1987년부터 發行面數에 관한 한 카르텔이 해체되면서 新聞紙面이 대폭 증가하게 됨에 따라 新聞廣告의 供給超過現象을 초래하게 되었다.

印刷媒體의 各社別 市場占有率에 관한 統計資料의 蒐集이 불가능함에 따라 廣告料에 관한 統計를 요약하면 <表 5>에서와 같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新聞社間의 價格談合이라고 할 수 있다. 新聞媒體의 廣告料는 發行部數, 購讀率, 回讀率 등의 函數인 廣告主의 需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市場機能에 의한 價格決定임에도 불구하고 ABC制度의 不在下에서 主要新聞社들은 자의적 기준에 의하여 '群別로 談合된 價格'을 책정하고 있다. <表 5>에서 '群間 價格差異'는 경제적인 이유로 설명되어지나 '群內의 同一한 價格'이 문제시된다. 예컨대 中央紙의 경우 9個 新聞社들은 1群의 4個社, 2群의 2個社, 3群의 3個社로 스스로를 구분한 뒤 각 '廣告項目'別로 동일한 廣告料를 책정하고 있다[17].

이러한 價格談合이 特定新聞社의 價格引下(undercutting)로 붕괴되지 않는 한 陰性的인 '웃돈去來'(發行部數가 많은 경우), '덤핑' 혹은 '謝禮金支拂'(發行部數가 적을 경우) 등의 형태로서 去來慣行이 교란되면서 왜곡되었던 市場機能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왜곡된 市場機能의 또다른 유형으로는 상호 합의된 날짜와 紙面에 廣告가 게재되지 못하는 경우로서 需要가 일시적으로 增減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表 5>에 나타난 廣告料는 公式的인 指針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우 廣告料는 廣告主, 代行業體 및 新聞社間의 協商對象이 된다. 만약 價格談合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發行部數가 많은 新聞社의 發行部數當 廣告料가 오히려 낮게 책정되는 矛盾이 발생할 것이다. 新聞社에 따라서는 廣告頻度와 大量購買時 割引條件(volume discounts)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廣告料(contract rates)制度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代行業體는 協商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表 5>에서와 같은 단면적인 廣告料 分析보다는 廣告料의 時間別 變化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특히 1987년 이후 印刷媒體의 폭발적인 增加에 따라 廣告料에 어떠

15) 統廢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姜建求(1988), p.75 및 中央日報 1988년 10월 18일자를 참조할 것.

16) 定期刊行物의 年度別 新規登錄(進入)現況 및 登錄數現況에 대해서는 姜建求(1988), p.76을 참조할 것. 日刊紙의 경우 1988년(1月~8月)에만 30個社가 新規登錄, 登錄數는 60個社로 倍加되었다.

17) '廣告項目'이란 廣告料를 差別策定함에 있어서 公告, 營業, C/L(컬러광고) 등의 구분을 말한다. 市場機能이 導入된다면 이러한 廣告項目의 區分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表 5〉 主要新聞媒體의 廣告料 單價(1段×1cm) 比較(1989. 6. 1 현재)

(단위 : 千원)

區 分	新 聞 社 名	營業 1面	營業其他面[1]
中央紙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70	40
	경향신문, 서울신문	68	38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45	28
스포츠紙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30	25
經濟紙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중앙경제, 동양경제	32	17
地方紙	부산일보	20	13
	대구매일신문	19	12
	광주일보	13.5	11
	대전일보	11.5	10

註 : 1) 公告의 경우 其他面은 1面을 제외한 모든 面을, 營業의 경우에는 1, 2, 3, 4, 14, 15, 16面을 제외한 모든 面을 말함.

資料 : 第一企劃, 『廣告年鑑 '88』, pp. 504~506에서 89. 5. 1 현재의 統計를 발췌한 후 廣告主로부터의 資料提供으로 보완함. 地方紙의 경우 89. 5. 1 현재임.

한 變化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간단한 서베이결과 新聞廣告紙面의 供給增加가 公式料金表上의 價格下落을 초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이미 지적한 群內價格談合이 여전히 有效하며 去來慣行의 問題點이 그대로 답습된다는 관측을 가능하게 한다[18].

나. 電波媒體

印刷媒體와는 대조적으로 電波媒體의 경우에는 言論自由化政策이 그 數的 分布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放送의 內容에만 변화를 가져왔다. 放送廣告時間의 供給制限과 함께 放送廣告料는 公共料金의 次元에서 KOBACO에 의하여 인상이 억제되어 특히 TV廣告時間의 需給에 있어서 격심한 不均衡을 深化시키고 있다. 放送廣告料에 대하여 原價概念을 도입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料金算定基準을 제시할 必要性이 대두되고 있으나 그 기본적 요건인 廣告效果의 客觀的인 測定 및 視聽率 調査制度 등이 여전히 課題로 남아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도 放送廣告는 본격적인 '代行社 時代'로 진입하고 있다[19].

視聽率調査는 廣告料金의 合理的인 策定을 위해서 필수적인 要素임에도 불구하고 KOBACO라는 미디어랩(media representative)에 의하여 獨占代行狀態가 유지되는 까

18) 雜誌의 경우에도 新聞의 경우와 동일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雜誌는 취급하는 領域에 따라서 購讀層이 명확히 구분되고 장기간에 걸친 높은 回讀率등의 特殊性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9) 放送廣告의 경우 代行率은 1984년의 34.1%에서 1988년의 90.8%로 급속한 伸張勢를 나타냈다. 또한 1987년의 경우 100大 廣告主 중 97개 廣告主가 代行業體의 廣告主로 이루어졌다.

〈表 6〉 兩大放送社 廣告收益 比較 : 1986, 1987

(단위 : 億원, %)

		1986			1987		
		廣告收益	成長率	構成比	廣告收益	成長率	構成比
KBS	1TV	392	△ 7.6	11.4	318	△18.2	7.9
	2TV	945	18.8	27.5	1,201	29.1	30.5
	全體	1,487	9.0	43.3	1,696	14.1	42.3
MBC	TV	1,655	14.5	48.1	1,993	20.4	49.7
	全體	1,949	12.8	56.7	2,307	18.3	57.7
總	計	3,436	11.0	100.0	4,003	16.5	100.0

資料 : 李相勳(1988), p. 293, 〈表 3〉 참조.

닭에 競爭이 형성되지 않고 廣告料에 대한 論議自體가 불필요하게 되며 視聽率競爭을 근거로 한 廣告料決定을 뒷받침할 專門的 自律性이 결핍되어온 것이다[20].

채널數가 고정되어 있는 한 放送媒體의 構造的 特性의 변화는 市場占有率의 相對的 分布에 반영되며 이는 〈表 6〉에 나타난 兩大放送社의 廣告收益比較를 통하여 알 수 있다. KBS 1TV의 경우 계속 負의 成長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廣告制限措置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며 KBS 2TV의 경우에는 오히려 MBC TV를 훨씬 능가하는 成長을 보였는데 이는 KBS 2TV의 視聽率 提高 및 전반적인 供給不足의 附隨效果로 판단된다.

放送廣告料의 現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放送廣告의 種類를 구분하는 방법과 放送廣告의 時間帶別 區分에 따라 廣告料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放送廣告는 種類別로 스팟廣告, 프로그램廣告, ID, 時報, 年間스포츠廣告, 特輯廣告 등으로 구분되며 時間帶別 '時級' 區分은 SA, A, B, C로 나누어진다[21]. 放送廣告料는 視聽率과는 무관하게 種類와 時級別로 〈表 7〉에서와 같이 책정되고 있는데 아무리 視聽率이 낮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政策上 혹은 行政上 SA時級에 설정되면 廣告主는 廣告效果와 관계없이 과다한 廣告費를 지불해야 한다. 즉, 放送廣告料의 問題는 단순히 料金自體의 恣意的 決定 이외에도 種類 및 時級의 恣意的 決定의 問題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表 7〉에서 보듯이

20) 韓國廣告協議會(1988), pp.18~21을 참조할 것. 실제로 朝鮮日報에서는 87년 4월 1일부터 新聞紙面에 TV視聽率을 게재했으나 곧 중단되고 말았는데 이는 放送媒體들이 視聽率調査에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증명한다.

21) 스팟廣告는 放送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廣告, 프로그램廣告는 廣告主가 스폰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前後에 행해지는 廣告, ID는 TV화면의 放送局 名稱告知나 放送順序를 字幕으로 표시하는 廣告, 時報는 放送時間告知의 提供形態로 하는 廣告, 年間스포츠廣告는 스포츠中繼時 執行하는 廣告, 特輯廣告는 非正規프로그램으로 편성된 特輯프로그램에 참여하는 廣告를 말한다. 放送廣告의 時級區分을 SA, A, B, C로 정함에 있어서는 TV의 경우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따라 相異하며 라디오의 경우 AM과 FM에 따라 相異하다. 種類 및 時級에 대해서는 第一企劃, 『廣告年鑑 '88』, 1988, pp. 515~516을 참조할 것.

〈表 7〉 스팟·프로그램廣告의 放送社別 單價比較(1988. 1. 1 현재)

(단위 : 千원)

媒體 \ 時級	30″스팟廣告[1]				프로그램廣告[2]			
	SA	A	B	C	SA	A	B	C
KBS 1TV(전국)	138	90	32	14	26	21	15	7
KBS 2TV(전국)	168	105	40	18	31	25	17	8
MBC TV(전국)	180	112	43	19	35	28	19	9

註 : 1) 30″스팟廣告의 單價는 프로그램廣告의 單價와 比較하기 위하여 30″스팟廣告 1回에 소요되는 廣告料總額을 30으로 나눈 秒當 單價임.

2) 프로그램廣告의 單價는 使用秒當 1回 單價를 말함. 프로그램에 따라 相異한 製作費는 별도이며, 時級과 時級이 겹치는 프로그램의 廣告料는 該當時級의 時間比率에 의하여 계산됨에 유의함.

資料 : 第一企劃, 『廣告年鑑 '88』, pp. 516~518.

廣告單價는 全國채널의 경우 放送社別로 각각 상당한 價格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중요한 점은 放送社別, 時級別, 種類別 單價의 水準 및 差異가 어떠한 基準에 의하여 결정되느냐인데 앞서 지적되었듯이 다분히 恣意的인 要素를 발견할 수 있다.

放送廣告의 경우 〈表 7〉의 廣告料는 印刷媒體와는 달리 고정되어 있으며 廣告主와의 協商의 對象이 아니다. TV廣告나 SA時級의 라디오放送은 특히 販賣者市場(seller's market)의 特性을 갖는다고 주장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放送廣告許容時間에 대한 規制와 廣告料金의 引上抑制로 극심한 需給不均衡現象이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恣意性을 내포한 放送廣告料 水準이 어떠한 增加趨勢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論議를 위하여 중요할 것이므로 이를 〈表 8〉에서 요약한다. 이 表에서는 廣告料의 增加를 나타냄에 있어서 統計的 誤謬를 피하기 위하여 前年對比 增加率과 前年對比 絶對額의 增加分(增加

〈表 8〉 放送廣告料 增加推移 : 1977~89(SA級 스팟 30″ 1回 全國料金 基準)

(단위 : 千원)

媒體	商業放送			公營放送(KOBACO 이후)									
	'77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4	'89.7
KBS 2TV	420	500	1,240	2,230	2,377	3,237	4,258	4,338	4,629	4,045	5,045	5,499	5,395
· 增加率(%)	-	19	148	80	7	36	32	2	7	9	0	9	△2
· 增加額	-	80	740	990	147	860	1,021	80	291	415	0	454	△104
MBC TV	740	1,587	2,250	2,925	3,336	3,603	4,440	4,629	4,629	5,397	5,397	5,883	5,772
· 增加率(%)	-	114	42	30	14	8	23	4	0	17	0	9	△2
· 增加額	-	847	663	675	411	267	837	189	0	768	0	486	△111

資料 : 經濟企劃院(1989).

額)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III. 政府規制의 現況과 問題點[22)]

政府規制가 시행되는 메커니즘은 여러가지의 구체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81년 제정된 「韓國放送廣告公社法」에 의거, 設立된 KOBACO에 대한 指揮·監督을 통하여 政府가 放送廣告市場을 규제해 온 사실은 間接的 政府規制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政府規制는 法律, 施行令, 訓令, 告示, 要綱, 約款, 綱領, 指針 등 각종 法規에 의거하여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廣告關聯法規를 정리함으로써 이를 살필 수 있겠다. 廣告를 규제하는 法規는 워낙 다양한 분야로 전개된 까닭에 이들을 일정한 基準에 따라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第一企劃(1988)과 申寅燮(1988b), 韓國廣告協議會(1988) 등은 다소 상이한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23)]. 그러나 이들 廣告關聯法規가 모두 本論文의 관점에서 競爭次元의 重要性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放送廣告와 新聞廣告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政府規制를 事案別로 구분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1. 放送廣告時間의 供給에 대한 規制[24)]

放送廣告時間의 供給에 대한 제한은 放送廣告에 대한 政府規制가 안고 있는 問題點의 根因을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放送法 施行令」 第31條 1項 1號에 의하면 "廣告主가 제공하는 放送文書의 廣告時間은 그 放送順序時間의 100분의 8이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1976년 10월 文化公報部 告示 第349號 이후 계속되어 온 制約이다. 上記 法規의 各項各號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制限規定을 갖는지와 規制의 問題點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表 9>에 간단히 요약되어 있다.

放送廣告時間의 供給問題에 관한 논의는 長·短期로 兩分되어야 한다. 短期的 對應方案은 현행 放送채널範圍內에서의 政策的 對應方案을 의미하고 長期的 對應方案은 民營放送體制의 導入問題를 포함하여 채널數에 대한 政府의 言論政策을 의미한다. 兩者 모두 競爭促進 및 政府規制緩和의 次元에서만 代案을 제시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本論文에서는 外生的인 政策變數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供給不足이 餘他의 問題點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는 점에서 IV章에서는

---

22) '政府規制'라 함은 所期의 目的을 위하여 자유로운 市場의 競爭機能을 목표하는 만큼 제어하는 수단으로 政府에 의하여 直·間接的으로 市場의 主體 및 主體間의 去來에 가해지는 條件의 總體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狹義의 直接的 規制 못지않게 間接的 規制의 重要性이 크기 때문에 本論文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政府規制를 分析對象으로 한다.

23) 이들 既存의 硏究를 종합할 때 ① 去來慣行關係(16個), ② 媒體關係(20個), ③ 保健衛生등 廣告內容關係(10個), ④自律規制關係(6個)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4) 廣告時間의 供給에 대한 規制는 數量規制(quantity control)의 문제로서 뒤에 언급될 價格規制(price control)와 관련하여 어떠한 規制手段이 더욱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數量規制와 價格規制의 比較에 대한 기존의 연구(예컨대 Weitzman(1974))는 두가지 規制手段間의 選擇을 다루는데 반하여 放送廣告를 둘러싼 현실은 두가지의 規制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그 차이점이 있다.

〈表 9〉 放送廣告의 種類別 時間制限과 問題點[1)]

廣告種類[2)]	時間類型(초)	制限規定	問題點	業界建議事項[3)]
프로그램廣告	TV : 15, 20, 30, 60, 120 R : 20, 30, 40, 60	· 放送順序時間의 8/100 이내 가능	· 廣告時間供給不足 · 時級別 無差別 適用	· 10/100으로 조정 · 時級別 差別 認定
		· 프로그램진행중 廣告制限	· 프로그램전후 廣告集中現象	· 프로그램진행중 廣告許容
스 팟 廣 告	TV : 30 R : 20	· 시간당 TV 2회, R 4회 이내 · 매회 TV 3건, R 4건 이내 · 總廣告時間 매회 TV 90초, R 80초 이내	· 時間類型이 고정적이고 回數, 件數, 總廣告時間에 대한 制約으로 다수 廣告主의 참여가 곤란	· 많은 廣告主에게 廣告機會 許容(예컨대 20초 5건으로 변경)
KBS 1TV의 廣告	평일 오전 1회 30초 10건 이내	· 브럭廣告만 許容[4)]	· 廣告時間供給不足의 深化	· 放送廣告機會의 확대

註 : 1) 스팟, 프로그램 이외의 廣告種類(ID, 시보, 연간스포츠, 특집)에 대해서는 資料源을 참조할 것.
2) 스팟, 프로그램廣告의 뜻에 대해서는 註21)을 참고할 것.
3) 業界建議事項은 간단한 서베이 결과임.
4) 브럭廣告란 소위 말하는 SB(station break)廣告로서 스팟廣告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資料 : 第一企劃, 『廣告年鑑 '88』, p.515.

本 硏究의 범위내에서 政策代案을 제시한다.

2. KOBACO와 관련된 放送廣告 規制와 그 問題點

1981년 1월 KOBACO가 "公共에 봉사하는 放送廣告體制를 정립하고 言論公益事業과 文化事業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國民의 건전한 文化生活과 放送文化의 發展 및 言論人의 厚生福祉增進에 기여함을 목적으로"[25)] 設立됨에 따라 모든 放送廣告는 KOBACO를 통하여서만 가능하게 되는 放送廣告의 일대변혁이 초래되었다. 政府機關의 機能과 役割을 수행할 만한 法的 根據, 權限을 가진 KOBACO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韓國特有의 制度로서 政府가 인정한 獨占的 放送廣告代行業體이기 때문에 放送廣告産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명시함에 있어 廣告産業의 發展에 관한 고려가 全無했다는 모순이 지적된다. 이는 앞으로 논의될 KOBACO關聯 諸問題의 本質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KOBACO 設立初期에 放送廣告의 販賣를 放送社가 직접 담당할 것인가 아니면 KOBACO가 이를 담당하여 資金循環의 媒介役을 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KOBACO가 資金循環에 직접 개입하게

25) 「韓國放送廣告公社法」 第1章 1條.

되었으며 모든 放送미디어에 대한 排他的 販賣組織(exclusive sales arm)의 機能을 갖게 되었다. 排他的 販賣權은 자연히 KOBACO로 하여금 "代行業體認定"(agency recognition)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도록 하였다[26]. 1980년 무렵의 政治狀況의 副產物로 탄생한 KOBACO는 組織自體가 廣告代行의 二重構造를 형성함으로써 放送廣告에 대한 政府規制의 核心을 이루고 있다. 論者에 따라서는 公共事業者인 KOBACO의 問題를 政府規制의 問題와 독립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廣告產業에 대한 政府規制問題의 本質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KOBACO와 관련된 放送廣告規制의 主要類型은 다음과 같다[27].

① 放送廣告의 1次的 代行營業業務의 獨占化

② 放送廣告代行業體 資格要件을 통한 廣告代行業에의 進入規制

③ 放送媒體가 KOBACO에게 지급하는 代行手數料 및 이의 일부로서 KOBACO가 廣告代行業體에게 지급하는 代行手數料를 KOBACO가 결정하는 形式의 價格規制

④ 廣告料의 決定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價格規制

가. 放送廣告代行業務의 政府獨占

放送廣告代行業은 앞서 논의된 市場構造分析에서 보았듯이 民間代行業體들이 廣告主 誘致競爭을 하는 가운데 '民間代行業體들을 대행하는 獨占的 代行業體인 KOBACO'를 가짐으로써 二重的 代行構造를 이루고 있다. 「韓國放送廣告公社法」 第15條는 "國內 各 放送局은 公社가 代行委託하는 廣告放送외에는 廣告放送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함으로써 KOBACO에게 放送廣告代行 獨占權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IV章에서 詳述하기로 한다.

나. 放送廣告代行業에 대한 進入規制

KOBACO가 民間代行業體의 進入을 제한하는 근거는 「韓國放送廣告公社法 施行令」 第9條 3號에 의거하여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廣告代行社의 放送廣告代行에 관한 規則」을 통해서인데 이에 관한 한 KOBACO는 상당한 政策變化를 거듭해 오고 있다. 同 規則의 主要內容으로는 代行社의 定義, 代行社의 資格要件, 廣告料 및 手數料 등이 있는데 進入規制와 관련하여 최근의 改正을 보면 <表10>에서 요약된 바와 같다. 設立初期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資格要件이 부과됨으로써 높은

26) 「韓國放送廣告公社法」 第3章 14條에 의하면 放送廣告代行에 관한 事項 이외에도 KOBACO의 主要業務로는 ①言論機關, 言論團體, 言論人의 支援 등 言論公益에 관한 事項, ②文化藝術振興에 관한 事項, ③放送廣告物의 調査·硏究에 관한 事項, ④放送廣告資料, 情報의 國際交流에 관한 事項, ⑤其他 公社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附帶事業 등이 있다. 法에 명시된 業務 이외에도 KOBACO는 傘下組織을 통하여 附帶業務를 수행하고 있다.

27) KOBACO와 관련된 '規制'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지만 競爭促進이라는 主題와 관련하여 本 論文의 關心對象으로서 과거 KOBACO의 不公正去來行爲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인기프로그램販賣時 비인기시간대 프로그램, 라디오프로그램, 택시·전철역廣告 등의 '끼워팔기' 행위, ②再放送 및 錄畫送出에 旣存廣告主 參與强制行爲, ③인기프로그램廣告主에 대한 循環不放, 報償廣告處理 및 單位廣告時間調整行爲, ④廣告委託書의 事後交付行爲, ⑤방송사사정에 의한 特輯編成 및 프로그램變更에 따르는 不利益强要行爲, ⑥政府廣告代行獨占行爲. 經濟企劃院(1988a, 1988b, 1988c); Shin(1989), pp.142~146 등을 참조했음.

〈表 10〉 放送廣告代行에 관한 規制改正(1989. 1. 1.)

	改 正 前	改 正 後
資格要件	· 特定媒體社 또는 企業體에 종속되지 않은 자	· 現行과 同一
	· 廣告代行取扱高가 全體賣出額의 80% 이상인 자[1]	· 廣告代行業이 主業種인 자로서 廣告代行取扱高가 全體賣出額의 80% 이상인 자[1]
	· 公社와 3개월이상 계속적으로 거래하였으며 非系列廣告主의 月平均 放送廣告實績이 3億원 이상인 자	· 廢止
	· 當該年度契約이 유효한 非系列廣告主 5개사 이상인 자	· 當該年度契約이 유효한 非系列廣告主 3개사 이상인 자
廣告料納付	· 當該月의 末日을 기준. 廣告料는 3개월까지 現金으로 납부	· 3개월이내에 現金化할 수 있는 代行社가 背書한 當座手票 또는 銀行어음을 납부 · 代行社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서는 該當金額에 대해 銀行, 保險會社, 短資會社, 信用保證基金의 別途支給保證
支給保證	· 上場法人 또는 그에 준하는 會社의 連帶保證이나 保險會社, 銀行, 其他 保證을 확실히 할 수 있는 機關의 保證	· 支給保證 －上場企業 중의 連帶保證 －銀行, 保險會社, 短資會社, 信用保證機關의 支給保證 · 基本支給保證額 : 1億원 －최근 3개월을 기준, 月平均去來額의 150%(기본보증액 포함)의 支給保證

註 : 1) 取扱高와 賣出額간의 혼동에 유의함. 〈表3〉 註1)을 참조할 것.
資料 : 韓國放送廣告公社, 『廣告情報』, 1988. 12, p. 110에서 인용.

人爲的 進入障壁이 형성되었으나 현재로서는 거의 自由化된 상태이다. 특히 1989년의 資格要件改正內容에 따라 〈表 4〉에서 보듯이 代行業體數가 대폭 증가했다.

다. 價格規制와 그 問題點

KOBACO의 設立은 자연히 代行業体의 存續與否와 既存 手數料體系의 維持與否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KOBACO의 設立趣旨가 放送미디어의 廣告收益 일부를 거두어들임으로써 公益資金을 조성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KOBACO로서는 價格體系야말로 公益資金의 造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였다.

1) 放送廣告料

放送廣告料는 KOBACO의 「放送廣告代行約款」 第7條의 規定에 의거하여 放送社와 KOBACO가 '協議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兩者間 協議時에는 電波料, 프로그램製作費, 放送時級, 物價上昇率, TV普及率

및 放送網擴充程度등을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합리적인 廣告料金 決定體系가 별도로 확립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28]. 廣告料와 관련된 問題點으로는, 첫째 公共料金의 次元에서 KOBACO가 廣告料의 安定化에 기여했다고 評價하는 견해도 있으나 廣告料의 引上抑制가 放送廣告의 需給不均衡을 심화시켜서 KOBACO의 不公正去來行爲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둘째 KOBACO가 廣告料決定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廣告料決定이 廣告主—媒體間의 力學關係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廣告料引上이란 곧 KOBACO의 收益增大를 의미하므로 KOBACO로서는 廣告料의 引上抑制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表 8>에서 보듯이 公營放送以後 廣告料 增加推移는 증가율 측면에서는 다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絶對額의 增減分을 볼 때 KOBACO의 廣告料 引上抑制 노력이 의문시된다. 廣告料를 둘러싼 問題點은 최근 들어 다분히 노골화되고 있는데 KOBACO가 1989년 4월부터 廣告料를 7~9% 인상하자 廣告主協會가 이에 반발, 결국 7월에 2% 인하하게 되었다[29].

2) KOBACO의 代行手數料

放送媒體가 KOBACO에 지급해야 할 代行手數料는 文公部長官이 「韓國放送廣告公社法」 第20條 1項에 의거 廣告費의 20%로 인정률을 결정했다. <表 11>에서 보듯이 KOBACO 설립이전에는 放送社가 代行業體에게 廣告費의 10%(스팟廣告) 내지 5~8%(프로그램廣告)를 직접 代行手數料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廣告收益으로 가졌기 때문에 20%라는 代行手數料는 放送社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損失을 초래했다. KOBACO의 代行手數料로서 廣告費의 20%란 放送社와 民間代行業體가 부담하는 '租稅'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廣告料의 引上을 통하여 廣告主 및 一般消費者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KOBACO의 主要業務를 담당할 수 있는 機構를 설립, 政府의 租稅收入으로 충당하고 KOBACO의 放送廣告規制機能을 대폭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現行制度대로 廣告에서 上記 '租稅'를 징수하여 그 業務를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3) 民間代行業體의 代行手數料

KOBACO가 民間代行業體에 지불해야 할 代行手數料는 앞서 언급한 「廣告代行社의 放送廣告代行에 관한 規則」 第5條의 手數料關聯條項에 의거하여 결정되는데 KOBACO의 代行手數料政策은 <表 11>에서와 같이 市場構造의 變化와 함께 수시로 변화하여 왔으나 調整의 幅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의 代行手數料 引上措置는 代行業界의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代行手數料의 國際慣例는 TV의 경우 15%이며, 라디오의 경우 이보다 다소 높을 수도 있다. 代行業體의 收益은 代行手數料에 의존하기 때문에 代行手數料의 水準은 代行業體에 대한 適正利潤

28) KOBACO의 公益資金造成 目標額이 廣告料決定에 중요한 變數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29) 廣告主協會側은 KOBACO의 引上案이 실질적으로 9%라고 주장하고(表 8 참조), 이로 인한 廣告主의 부담이 500億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KOBACO側案에 따르면 廣告料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SA, A時級에 대해서는 9%, '끼워팔리고' 있는 B, C時級에 대해서는 7% 引上임). 한편 KOBACO側은 放送社側이 16.1~27.3%의 引上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7~9%가 최소폭이라고 강조했다. 『週刊每經』, 1989.5.11자, pp.78~79 참조.

〈表 11〉 放送廣告代行業의 市場構造와 KOBACO의 手數料政策 變化

施 行 日	市場構造[1]	手數料體系	備 考
KOBACO 설립이전	3個 代行業體	· 스팟廣告 10%, 프로그램廣告 5~8%	
81.2.1.	4個 代行業體	· TV 7%, R 8%	· KOBACO설립
84.7.4.	既存 4社+新規 3社	· 既存 4社는 手數料 변동 없음 · 新規 3社 : TV 불인정, R 8%	· 라디오手數料만 인정
86.1.1.	既存 7社+新規 1社	· 全體 8社 系列 非系列 TV 5% 7% R 5% 8%	· 新規 3社 TV手數料 認定(85.7.1) · 系列, 非系列 廣告主의 차별
88.1.1.	既存 8社+新規 4社	· 全體 12社 系列 非系列 TV 5% 8% R 5% 8%	· TV部門 1% 上向調整
89.1.1.	변동없음.	· 全體 12社 系列 非系列 TV 6% 9% R 8% 10%	· 全部門 1~3% 上向調整

註 : 1)既存, 新規代行業體名에 대해서는 〈表 3〉을 참조할 것.
資料 : 韓國廣告協議會(1988) p.30 ; 1989.1.1자 資料는 「廣告代行社의 放送廣告代行에 관한 規則(89.1.1 改正)」, 第5條를 참조함.

保障이라는 과제로 귀착된다[30].

4) 價格規制에 대한 論議의 要約

價格規制의 側面에 있어서는 進入規制의 改善狀態와는 대조적으로 아직도 KOBACO의 規制機能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의 소지가 존재한다. 중요한 사실은 廣告料, 代行手數料의 問題들이 각기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廣告費를 두고 放送社, KOBACO, 代行業體 '3者間 나눠먹기'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는 세 가지 유형의 價格이 方程式體系內에서 상호연관되어 결정되는 同時決定性을 의미한다. 예컨대 民間代行業體의 手數料引上壓力은 곧 KOBACO의 收益減少를 의미하므로 이는 KOBACO의 代行手數料(20%) 引上 혹은 廣告料의 引上壓力으로 귀착될 수 있다. 逆으로 KOBACO가 스스로 收益增加動機를 갖게 되

30) KOBACO에서 조사한 1987년 韓國廣告業界의 當面問題들에 대한 廣告人들의 반응을 보면 14個 항목 중에서 '代行社適正利潤保障問題'가 15.4%로 1位를 차지, 現行 手數料水準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

면 이는 廣告料의 引上 혹은 民間代行業體의 手數料減少 등으로 귀착된다. <附錄>에서는 일정한 가정 아래 KOBACO의 介入 혹은 代行手數料의 引上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論者에 따라서는 民間代行業體의 手數料가 國際水準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에 들어 代行業體數가 폭증한 사실을 들어 現行手數料가 낮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進入制限이 워낙 엄격했던 까닭에 기존의 代行業體들이 市場擴大에 따른 短期的 超過利潤(windfall profit)을 누려왔고 大規模 廣告主들이 社內代行業體를 설립하고자 했던 사실 등에 기인할 뿐이라고 판단된다.

3. 新聞廣告에 있어서의 問題點

가.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

新聞協會 廣告協議會는「日刊新聞 廣告代行에 관한 規則」第3條에 의거하여 同 協議會의 公認을 받은 代行業體만이 新聞廣告代行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同 協議會는 廣告代行에 필요한 製作施設·組織·人員을 갖추고 있는 자본금 5千萬원 이상의 法人體, 5개 이상의 廣告主를 확보하고 媒體에 전속되지 아니한 자 등의 資格要件을 요구하고 있으나 放送廣告代行社의 資格要件(表 10 참조)만큼 엄격히 적용되기보다는 恣意的 要素가 많이 작용하는 실정이다. 어쨌든 이는 新聞廣告代行을 둘러싼 競爭的 流通秩序를 파괴하며 政府가 아닌 民間事業團體의 公認形式을 취한 競爭制限行爲로서 公正去來法 適用의 問題를 제기한다. 한편 新聞廣告의 代行手數料는 上記 規則 第4條에 의거하여 15%로 결정되었으며 廣告物의 審議는 新聞倫理委員會가 事後審議하는 형태를 취한다.

나. 去來慣行의 分析

新聞廣告의 경우에는 事業者團體의 規則에 의한 競爭制限보다는 不公正한 去來慣行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데 이는 規制改善의 次元에서보다는 公正去來法의 適用次元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1) 業種別 差等單價制와 代行手數料 不認定의 問題[31]

현재 각 新聞媒體는 <表 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廣告揭載面, 位置, 規格, 色度 등에 따른 공식적인 料金表를 작성, 이를 기준으로 廣告料金을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料金表自體의 問題는 별도로 하더라도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채 業種에 따라서 '差等單價制'를 실시하고 '低單價業種'에 대해서는 低單價의 損失을 보전하기 위하여 代行手數料를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代行手數料不認定). 差等單價制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業種은 製藥, 出版, 映畫, 觀光廣告 등으로서 新聞廣告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業種들이다. 이들 業種에 대해서는 非公式的 割引이 慣例化되어 있으며 이들 業種이 新聞社와 直去來하는 경우와 代行業體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의 料金體系가 相異하여 代行業體의 利用率 또한 매우 낮은 편이다. 差等單價制는 순수히 廣告主와 新聞社間의 去來關係에서 需要獨占力과 供給獨占力의 相對的 位相에 의하여 야기된 문제로서 단순히 協商能力을 반영한

31) 韓國廣告協議會(1988), pp. 39~42를 참조할 것.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나 個別新聞社의 입장에서는 差別價格政策(discriminatory pricing)이라는 不公正去來行爲를 자행하는 셈이다. 이러한 價格差別은 他業種의 小規模 廣告主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며 代行手數料 不認定은 代行業體의 정당한 利潤機會를 박탈하기 때문에 문제시된다.

2) 價格談合

個別新聞社의 입장에서 相異한 業種에 대하여 差別價格政策을 취하는 사실과는 별도로 동일한 業種(廣告主)에 대하여 新聞社들간에 價格談合을 하는 행위 또한 競爭制限的 效果를 갖는다. 이는 〈表 9〉에 관한 앞서의 논의에서 지적된 群內 價格談合을 지칭하는 것으로 각 新聞社는 發行部數, 廣告效果의 差異에 따라 廣告料 또한 상이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談合패턴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價格談合은 II章에서 논의된 대로 去來慣行이 교란됨으로써 왜곡되었던 市場機能이 보완되는 문제점의 원인을 형성한다. 新聞廣告紙面의 供給過剩은 廣告主誘致를 위한 新聞社간의 競爭을 격화시켜 各 新聞社는 價格談合을 깨고 廣告料引下 등의 競爭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되지만 아직도 競爭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談合可能性이 존속된다. 新聞紙面의 供給過剩은 大規模 新聞廣告主의 需要獨占力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業種別 低單價制度는 강화되고 이에 따라 代行手數料의 不認定 또한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新聞廣告紙面의 供給過剩이 放送廣告時間의 供給不足과 대조를 이루면서 放送媒體의 廣告消化量이 상당한 정체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新聞廣告展望을 상대적으로 밝게 보는 견해도 있다.

IV. 爭點別 政策對應方案의 檢討

1. 政策改編의 基本方向

廣告業에 대한 政府規制緩和方案은 廣告業自體의 문제뿐만 아니라 政府의 言論政策 및 여타의 政治·社會的인 問題들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代案을 수립함에 제약조건이 있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주장이 부분적인 타당성을 지닌다고 판단되지만 廣告業界에 대한 政策決定의 모든 부분에 經濟外的인 要因의 고려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비약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에 관한 合理的인 對應은 결국 廣告業의 諸分野에 대하여 이같은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가려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廣告業의 產業組織, 政府規制問題 등을 취급한 本 論文의 論議를 중심으로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政策改編方向을 제시한다. 첫째, 經濟的 혹은 經濟外的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合理化될 수 없는 競爭制限狀態가 단순히 政策的인 이유로 존재한다면 이는 政府失敗의 可能性을 극대화할 뿐이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合理化될 수 있는 競爭制限狀態의 경우에는 市場失敗가 존재할 것이므로 市場失敗의 原因이 규명되어야 하며 현재의 政策이 가장 費用效果的인 方法인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廣告業에 있어서는 放送廣告의 경우 媒體의 獨寡占力 및 매스컴 특유의 强制能力, 公益資金造成을 위한 KOBACO의 存在 등이 競爭

制限狀態의 근본적인 要素를 형성하며, 新聞廣告의 경우 媒體의 獨寡占力은 미약하지만 매스컴 특유의 强制能力이 강하게 작용하여 競爭制限狀態의 근본적인 요소를 형성한다고 판단된다[32]. 여기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基本方向을 중심으로 本 論文에서 제기된 主要爭點에 대한 政策代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放送廣告時間 供給不足의 問題

放送廣告時間의 供給이야말로 完全競爭的 市場構造를 가진 媒體環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獨寡占狀態를 피할 수 없다. II章 및 III章에서 논의되었듯이 放送廣告時間의 供給을 제한하는 要因은 短期的인 것과 長期的인 것으로 구분된다.

가. 短期政策代案

短期的인 制限要因과 그 問題點은 〈表 9〉에서 상세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 表에서 요약된 業界의 건의사항은 현행 放送채널의 범위내에서 放送廣告時間의 供給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政策當局으로서는 물론 廣告時間增加에 대한 視聽者들의 부정적 반응과 公營放送體制內에서의 廣告收入增大는 營利追求라는 비판 때문에 放送時間의 擴大에 소극적일 수 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放送時間의 8/100이내"라는 현행 規制를 고수하고 KBS 1TV의 廣告를 계속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政策代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8/100을 時級別로 무차별하게 적용하기보다는 上下限을 둔 時級別 差別을 인정하여 평균이 8/100 이내가 되도록 함으로써 SA, A時級에 있어서의 供給不足을 緩和할 수 있다[33]. 둘째, 프로그램진행중의 廣告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廣告의 集中現象을 방지할 수 있다[34]. 셋째, 스팟廣告의 時間類型을 보다 다양하게 許容함으로써 보다 많은 廣告主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스팟廣告의 總許容時間 또한 時級別 差異를 두어 實質的인 供給增加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심야방송시간의 연장, 낮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放送時間의 擴大에 따른 供給不足의 緩和를 기대할 수 있다.

나. 長期政策代案[35]

長期政策代案이란 民營·公營間의 選擇의 問題 및 채널數의 擴大問題를 포함한 政府의 放送言論政策을 의미한다. 따라서 廣告產業의 觀點에서만 政策이 결정될 수는 없겠으나 여기에서는 廣告產業이라는 視角에만 집착하면서 다음과 같은 政策代案을 제시한다. 첫째, 純粹公營, 純粹民營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32) 여기에서 말하는 '매스컴 특유의 强制能力'이란 媒體가 廣告主, 代行業體와 거래함에 있어서 供給獨占力 이외의 이유로서 부당한 去來條件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3) "實際廣告時間 對 總廣告許容時間의 比率"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KBS 2TV의 경우 60.4%(1983), 61.0%(1984), 47.6%(1985), 48.6%(1986), 53.2%(1987), 64.2%(1988)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廣告時間의 供給不足은 全體時級보다는 SA, A時級에만 해당하는 現象임을 확인할 수 있다. TV의 경우 月間 放送廣告의 待機物量이 100億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이들 時級의 供給不足을 의미한다.

34) 예컨대 117分 길이의 '드라마게임'의 경우 9分20秒 동안 30個의 廣告가 계속 나가는 現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35) 현재 운영중인 放送制度硏究委員會의 第3分科委에서도 長期代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 것이기 때문에 公民營混合體制를 指向하되 현재와 같이 불분명한 公營의 槪念을 과감히 개선하여 純粹公營放送社를 政府財源등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는 純粹民營放送社로 전환한다. 둘째, 民營放送의 채널을 추가함으로써 放送廣告時間의 供給이 대폭 증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民營放送社가 廣告主와 代行業體에 대하여 갖는 獨占力의 횡포를 政府가 적절히 규제하며 民營放送社間의 競爭이 촉진될 수 있는 수단을 별도로 강구한다.

3. KOBACO 問題

KOBACO의 存在와 獨占力을 合理化할 수 있는 經濟的 혹은 經濟外的 論理가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함으로써 KOBACO에 대한 政策代案의 제시가 가능함은 이미 강조한 바 있다. 합리화주장은 ① 公營放送體制를 유지하기 위하여 商業的인 廣告營業機能을 放送社에서 분리할 필요성, ② 公益資金을 조성할 필요성, ③放送媒體의 市場支配力 濫用을 牽制할 필요성 등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로는 ①의 경우 公營放送에 廣告를 허용하는 自體矛盾, ②의 경우 特定產業만을 상대로 公益資金을 조성하는 행위의 不當性, 公益資金支出에 대한 비판 및 受惠者負擔原則의 喪失, ③의 경우 競爭政策當局의 義務不履行 등을 들 수 있다.

합리화주장 중 ①, ②는 시대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그 논리가 많이 퇴색되었으나 ③의 경우에는 아직도 KOBACO의 存在와 獨占力을 정당화하는 마지막 논리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虛構性은 韓國經濟에 散在해 있는 수많은 獨寡占的 產業의 市場支配的 供給者를 規制함에 있어서 어떠한 政策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 쉽게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KOBACO의 獨占的 存在를 無效化하는 것은 韓國電力公社 혹은 韓國電氣通信公社 등의 경우에 그 존재를 뒷받침하는 經濟論理가 KOBACO의 경우에는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KOBACO의 維持可能性(sustainability)을 의심하게 하는 점이다.

이러한 단순한 반대논리뿐만 아니라 本 論文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KOBACO의 主要業務는 規制的 效果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代行獨占과 二重的 代行構造 이외에도 廣告代行業에 대한 進入規制, 代行手數料 및 廣告料와 관련된 價格規制, 不公正去來行爲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對外開放이 기정사실화된 지금 對內自律化를 통한 流通構造의 合理化, 競爭的 市場構造의 實現, 競爭力培養을 통한 韓國廣告產業의 國際化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KOBACO에 대한 政府政策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36]. <表 12>에서는 각 事案別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政策對應方案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基礎資料를 제공하며 각 事案別로 政策代案을 제시하고 있다.

<表 12>에서의 論議는 결국 代行獨占權과

36) 本 論文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對外開放과 對內自律化의 連繫에 대한 분석을 통한 示唆點의 導出을 생략하기로 한다. 廣告市場의 完全開放이 韓國廣告業의 產業組織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對內自律化를 분석함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對外開放이 對內自律化와 관련하여 가지는 문제의 핵심은 양자간의 순서를 정하는 選擇의 問題라고 판단된다. 廣告市場의 對外開放에 관해서는 尹大熙(1988)를 참조할 것.

〈表 12〉 KOBACO 問題의 論議를 위한 豫備的 分析

機能區分	問 題 點	機能不在時 豫想問題	政策代案
放送廣告代行獨占權	· 規模의 經濟, 市場失敗등 獨占을 合理化하는 經濟論理의 不在[1)] · 代行業體에 대한 供給獨占權, 매체에 대한 需要獨占權이 法的으로 보장되어 競爭 및 價格의 媒介機能이 원천적으로 배제됨. · 二重的 代行構造로 인한 流通構造의 非效率性을 야기함. · 不公正去來行爲의 根因으로 작용함.	· 媒體의 供給獨占力이 廣告時間의 供給不足과 함께 급격히 강화되어 獨占力의 濫用에 따른 弊害 발생 우려	· 放送廣告代行의 獨占權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法規改編 · 媒體獨占力 規制를 위한 競爭政策次元의 補完規制措置 필요
進入規制	· 代行社 資格要件의 완화에 따라 進入規制는 유명무실함.	· 최소한의 進入規制는 廣告産業의 합리화를 위한 조치임.	· 現行 資格要件 유지 · 登錄制 혹은 申告制로의 이행 검토
價格規制 (I): 放送廣告料 規制	· 현행 廣告料 體系는 放送廣告時間의 供給制限과 함께 전반적인 超過需要 및 時級別 需給의 불규칙한 패턴을 초래함. · 이는 또한 代行獨占權과 함께 KOBACO의 不公正去來行爲의 원인으로 상존함. · 廣告料의 原價槪念 不在	· 價格不安定을 통한 廣告主 및 消費者의 보호문제가 야기됨. · 이는 결국 規制解除時 廣告料가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가의 문제임. ①大幅上昇[2)]: 媒體의 獨占力이 작용하여 大幅上昇함. (seller's market) ②小幅上昇 내지 安定: 媒體의 供給獨占力이 廣告主의 需要獨占力에 의하여 상당히 상쇄됨으로써 小幅上昇 내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됨.	· 1案: 大幅上昇은 현행 價格規制를 합리화하므로 價格規制 必要 · 2案: 大幅上昇, 小幅上昇을 불문하고 價格規制를 해제함[3)].

註: 1) 韓國電氣通信公社, 韓國電力公社 등의 존재를 지탱하는 經濟論理와 대조적임.
2) 大幅上昇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媒體의 供給獨占力이 충분히 작용할 것이라는 假定 이외에도 現行 放送廣告料體系가 獨占價格보다 훨씬 낮다는 假定이 있음.
3) 이러한 주장에는 大幅上昇의 경우에도 超過需要問題가 해결됨과 동시에 廣告主保護의 필요성이 무시된다는 인식이 있음.

<表 12>의 계속

機能區分	問　題　點	機能不在時 豫想問題	政策代案
價格規制(II): KOBACO의 代行手數料 20% 規制	·廣告料規制의 必要性을 증대(附錄 참조) ·KOBACO의 代行手數料 20%는 流通構造의 非效率性을 초래하는 根因으로서 廣告主의 입장에서는 과대한 租稅의 성격을 가짐. ·媒體의 입장에서는 國際價格(15%)보다 높은 代行手數料를 지불하며, 代行業體의 입장에서는 國際價格보다 낮은 代行手數料를 지급받는 결과를 초래함.	·公益資金 및 KOBACO 運營費用의 調達問題가 대두됨.	·1案 : 規制維持, 手數料 引下 ·2案 : 財政으로 資金出處를 전환
價格規制(III): 民間代行業體의 代行手數料 規制	·國際水準의 代行手數料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廣告代行業의 발전이 제약됨. ·系列廣告主와 非系列廣告主에 따라 代行手數料가 差等支給됨으로써 價格體系가 歪曲되며 代行業體에게 '廣告主 交換'의 誘因이 주어짐[4].	·代行手數料의 上向調整時 KOBACO의 收益이 減少됨.	·1案 : 規制維持, 手數料引上 ·2案 : 規制解除
公益廣告	·없음	·公益廣告의 肯定的 效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함.	·公營放送社가 이를 담당함.
言論公益 및 文化藝術振興事業	·受惠者負擔의 原則이 전혀 무시됨으로써 支出의 效率性이 의문시됨.	·既得權의 喪失과 함께 分配構造의 변화가 초래되며 利益集團의 반발이 예상됨.	·受惠者負擔의 原則을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함.

註 : 4) '廣告主交換'이라 함은 代行業體들이 각자의 系列廣告主를 상대방의 系列廣告主와 交換함으로써 보다 높은 代行手數料(表 11의 價格差別 참조)를 지급받을 수 있는 狀況을 상정한 것임.

價格規制를 문제시한다고 요약된다. 前者의 경우에는 廣告産業을 둘러싼 不合理, 非效率의 原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政府의 獨占權保障이 유지될 수 있는 論理的 根據가 희박하며 결국 媒體에 대한 競爭政策의 適用强化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後者의 경우에는 價格規制의 緩和 내지 解除時 그 效果에 대한 예측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放送廣告料에 대한 規制解除와 함께 廣告料가 얼마만큼 인상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放送廣告市場을 販賣者市場(seller's market)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購買者市場(buyer's market)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상이한 예측이 가능한데 상승폭의 크기를 불문하고 規制解除를 주장하는 代案(表의 2案)은, 첫째 媒體와 代行業體의 희생위에 廣告主만이 보호되어야 하는가, 둘째 廣告主의 保護가 반드시 消費者에게 낮은 商品價格으로 전가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셋째 價格規制時 超過需要에 대하여 廣告時間을 적절히

割當할 수 있는 非價格手段이 존재하는가 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설득력이 강한 代案으로 대두된다. 하지만 放送廣告時間의 供給不足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1案은 短期對策, 2案은 長期對策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가 결국 KOBACO의 存廢問題와 직결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本 論文의 중요한 결론은 KOBACO에 대한 政府의 政策을 변경함에 있어서 KOBACO가 일정한 收益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고 된 獨占權, 規制措置의 不合理한 점이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KOBACO의 支出側面에서 계획된 事業들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지속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은 반드시 분리되어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新聞廣告에 있어서의 不公正去來行爲

本 論文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新聞廣告에 있어서의 主要課題는 規制次元의 問題解決이 아니라 부당한 共同行爲 혹은 不公正去來行爲에 대한 競爭政策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去來秩序를 올바르게 확립한다는 것이었다[37]. 新聞媒體間의 競爭이 媒體增加와 함께 制限的競爭에서 自由競爭의 時代에 돌입함에 따라 去來秩序가 오히려 더욱 혼란해질 것이라는 예측 또한 競爭政策次元의 對應을 촉구하고 있다. 競爭政策의 엄격한 적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앞서 지적한 매스컴의 强制能力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競爭政策當局의 獨立性이 강조된다.

III章에서 지적된 新聞廣告의 問題點에 대해서는 「獨占禁止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第11條(부당한 共同行爲의 制限) 第1號(價格을 決定·維持 또는 變更하는 행위), 第2號(商品의 販賣條件 또는 用役의 提供條件이나 그 代金 또는 代價의 支給條件을 정하는 행위), 第4條(去來地域 또는 去來相對方을 제한하는 행위) 및 第15條(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第1號(유리 또는 불리한 價格이나 去來條件으로 부당하게 去來相對方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第4號(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相對方과 거래하는 행위), 第5號(去來相對方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의 條項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政策代案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행이 되지 못할 뿐이다.

5. 公正競爭의 與件確保를 위한 政策的 對應

新聞廣告의 경우에는 ABC制度, 放送廣告의 경우에는 視聽率調査制度가 합리성에 기초한 公正競爭을 위한 필수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制度가 도입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市場機能이 실패하고 있으므로 政府는 이에 적극 개입하여 制度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38].

37) 1988.7.8. 第142回 國會本會議 會議錄 第19號, pp.494~495에서 이에 대한 발언을 발견할 수 있다.

38) 이외에도 代行業體의 系列廣告主 依存問題, 媒體所屬 代行業體의 問題, 對外開放과 對內自律化의 連繫問題등에 관한 政策方向이 논의될 수 있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附錄：代行手數料의 效果에 관한 考察

廣告主, 代行業體, 媒體는 각각 그룹전체를 대표한다. 廣告時間을 x, 廣告時間單位當 廣告料를 r, 代行業體의 手數料率(%)을 λ라고 할 때 市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假定을 부여한다.

主　　體	外生變數	制御變數
廣 告 主	r, λ	$x=x^d$(需要)
代 行 業 體	r, λ, x	
媒　　體	λ	r, $x=x^s$(供給)

각 主體의 最適化問題는 廣告主의 경우(廣告에서 발생하는 利潤增大—廣告費支出)을, 代行業體의 경우 (廣告代行收益—廣告代行費用)을, 媒體의 경우 (廣告收益—廣告費用)을 각각 極大化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문제를 數式化하여 解를 구한다.

$$\text{廣告主}: \max_{\{x=x^d\}} \pi(x)-rx$$

廣告主는 x만큼의 廣告가 갖는 利潤增大效果 ($\pi(x)$)와 廣告費用인 rx를 비교하여 수요(x^d)를 결정한다. "$\pi'(\cdot)>0$" 및 "$\pi''(\cdot)<0$"을 가정할 때 極大化條件은 "$r=\pi'(x^d)$", 즉 "廣告單價=限界利潤增大"라는 需要函數이다. 代行社의 경우에는 $\{\lambda, r, x\}$가 모두 外生變數로 주어졌기 때문에 目的函數의 값이 固定的이며 進入制限이 없는 한 "廣告代行收益=廣告代行費用"이 될 때까지 進入이 일어날 것이다.

$$\text{媒體}: \max_{\{r,x=x^s\}} (1-\lambda)rx-c(x)$$

r이 媒體의 制御變數라 함은 獨占的 媒體를 의미하므로 媒體는 極大化에 있어서 廣告主의 極大化條件인 需要函數($r=\pi'(x)$)를 고려한다. 따라서 媒體의 目的函數는 $\{(1-\lambda)\pi'(x)\cdot x-c(x)\}$이며 x에 관하여 미분한 極大化條件은 아래와 같다.

$$(1-\lambda)\{r+\pi''(x)\cdot x\}-c'(x)=0$$

즉, 獨占企業의 限界收益이 限界費用과 같아지는 점에서 供給이 결정되는데 代行手數料가 없을 경우의 限界收益은 $\{r+\pi''(x)\cdot x\}$가 된다.

결국 政策的으로 결정되는 代行手數料($\lambda>0$)는 다음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실제 需要曲線에 따르는 限界收益(MR)보다 더욱 작은 限界收益(MR')을 초래하여 媒體로 하여금 $\lambda=0$의 경우; 즉 (p_m, x_m)보다 높은 價格(p'_m)과 낮은 供給量(x'_m)을 결정하게 한다. 만약 KOBACO에 의하여 $(1-\lambda)$가 $(1-\lambda-\theta)$로 줄어들 경우(θ는 KOBACO의 純手數料) 上記 效果는 더욱 증폭되어 限界收益은

* 媒體의 경우 目的函數를 정의함에 論難의 素地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형태는 단순히 廣告營利를 추구하는 商業主義的 媒體를 假定하는데 그 代案으로서 公營概念을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에는 (廣告收益—廣告費用=0)의 制約條件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는 第4者(예컨대 政府)의 導入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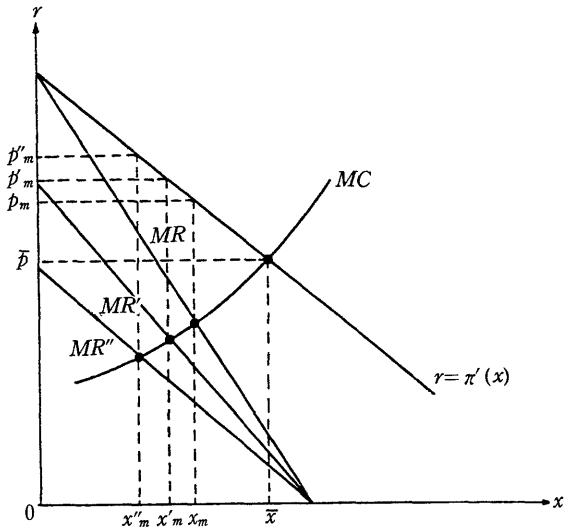

MR''이 되어 媒體는 (p''_m, x''_m)을 선택할 것이다. 獨占媒體에 대한 價格規制의 필요성은 獨占價格과 限界費用의 乖離에 기인한다. 政府의 價格規制는 $r=\bar{p}$의 수준에서 合理化되지만 현재와 같이 供給制限이 병행된 경우에는 제한된 供給量이 $\bar{x}$보다 작으면 割當(rationing)의 問題가 발생하게 된다. 중요한 사실은 $(p_m-\bar{p})$의 크기가 價格規制의 필요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lambda+\theta)$가 크면 클수록 獨占의 弊害를 증대시켜서 이는 價格規制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KOBACO가 20%씩이나 手數料로 거두어들이는 상황이야말로 價格規制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문제는 價格規制의 問題가 어떠한 형태로 해소될 수 있느냐는 것인데 ① 供給制限의 緩和, ② $(\lambda+\theta)$의 減少, ③ 需要獨占力의 擴大, ④ 媒體數 增大를 통한 媒體間 競爭深化 등의 요인은 價格規制의 當爲性을 下向調整할 것이므로 政策的 示唆點이 크다고 본다.

▷ 參 考 文 獻 ◁

姜建求, 「媒體環境의 變化」, 『廣告硏究』, 1988 겨울호, 韓國放送公社, 1988, pp. 73~87.

經濟企劃院, 「公共事業者에 대한 不公正去來行爲 2次實態調査結果」, 公正去來室 內部資料, 1988a.

_____, 「業種別 競爭制限實態: 對美通商摩擦(예상)業種을 중심으로」, 對外調整室 內部資料, 1988b.

_____, 「放送廣告産業의 現況과 問題點」, 公正去來室 內部資料, 1988c.

_____, 「放送廣告業에 대한 政府規制緩和方案(예비조사결과보고)」, 1989.

申寅燮, 「廣告環境의 變化와 韓國廣告産業의 位相」, 『廣告硏究』, 1988 겨울호, 韓國放送廣告公社, 1988a, pp.7~29.

_____, 「廣告關係法 무엇이 문제인가?」, 『'88 韓國廣告大會』, 韓國廣告協議會, 1988b, pp. 24~35.

尹大熙, 『韓國廣告産業의 對外開放推進方向』, 政策硏究資料 88-19, 韓國開發硏究院, 1988.

李基興, 「廣告産業動向」, 『廣告年鑑 '88』, 第一企劃, 1988, pp. 138~143.

李相勳, 「TV・라디오」, 『廣告年鑑 '88』, 第一企劃, 1988, pp. 290~298.

程準基, 「新聞」, 『廣告年鑑 '88』, 第一企劃, 1988, pp. 279~284.

第一企劃, 『廣告年鑑』, 各年號.

_____, 『第一企劃 社報』, 1989년 1월호.

河澤煥, 「國內廣告費分析」, 『廣告年鑑 '88』, 第一企劃, 1988, pp. 144~155.

韓國廣告協議會, 『韓國廣告產業發展對策報告書』, 1988. 12.

韓國放送廣告公社, 『廣告情報』, 1988년 12월호.

Sargent, Hugh W.(ed.), *Frontiers of Advertising Theory and Research,* Pacific Books Publishers, Palo Alto, California, 1972.

Shin, In Sup, *Advertising in Korea*, Sisa-yongosa Inc., 1989.

Tuerck, David G.(ed.), *Issues in Advertising: The Economics of Persuasi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Washington, D.C., 1978.

Weitzman, Martin L., "Prices vs. Quantiti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July 1974, pp.477~491.

Worcester Jr., Dean A., *Welfare Gains from Advertising: The Problem of Regulati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Washington, D.C., 1978.

家計資産蓄積經路에 대한 考察

金 寬 永

本稿에서는 家計의 貯蓄行態가 一生週期(life cycle)에 걸쳐 年齡-資産關係(age-wealth profile)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微視的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살펴보았다. 本稿에서는 기존의 Ando-Modigliani의 模型에 成人相當數라는 槪念을 導入, 無子女家口와 有子女家口 사이에 資産蓄積經路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즉, 有子女家口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또다른 형태의 世代間交付(intergenerational transfer)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人的資本形成에 투자함으로써-消費가 이 시기에 급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資産蓄積이 無子女家口의 경우보다 완만해질 수 있음을 밝혔다.

I. 序 論

家計의 消費, 貯蓄性向에 대한 이해는 경제 전반에 걸친 장기변동이나 단기변동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國際收支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貯蓄率이 投資率을 상회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이 분야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와서 정책입안자들은 가계의 저축형태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많은 政策課題들에 직면하고 있다. 즉,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貯蓄政策의 變化, 租稅構造, 社會保障年金 및 기타 社會保障支援金 등에 관한 모든 정책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巨視經濟部門에서 보면 總量的 時系列資料를 사용한 소비 및 저축에 대한 분석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筆者 : 本院 硏究委員

* 本稿의 草稿를 읽고 유익한 批評을 하여 준 本院의 文亨杓, 柳潤河 博士에게 감사하며 本稿의 作成에 많은 도움을 준 李彰洙硏究員에게도 감사한다. 이들의 提案을 모두 받아들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硏究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나 시간의 제약상 그 대부분이 受容될 수 없었음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後續硏究에서 이를 反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微視的 媒介變數(micro parameter)들이 전체인구에 걸쳐 어떤 구조적인 법칙에 따라 변화할 때 總量資料의 實證分析結果 얻어진 媒介變數들의 推定値는 실제의 構造的 媒介變數(underlying structural parameter)에 대해 단지 동떨어지고 복잡한 관계(a distant and complicated relationship)만을 나타내게 된다. 예컨대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할 때, 증가된 소득이 기업가들에게 돌아갈 때의 경우와 은퇴한 연금수혜자에게 돌아갈 때의 경우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賃金所得의 增加와 配當所得의 增加도 각각 상이하게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현상을 넘어 개별 경제주체들의 消費 및 貯蓄行態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本稿의 목적은 이러한 가계의 저축행태가 一生週期에 걸쳐 年齡—資產關係(age—wealth profile)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종래의 平生所得假說은 家口主의 年齡에 따른 부양가족의 급증현상을 고려치 않음으로써 資產蓄積經路가 완만한 언덕구조(smooth hump shape)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실제 데이터는 資產蓄積經路에 굴곡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本稿는 成人相當數라는 槪念을 導入, 이론적으로 이러한 굴곡의 존재가 最適資產蓄積經路와 一致(consistent)함을 보이고자 하는 데 있다. 本稿에서 다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假說은 자녀들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또다른 형태의 世代間 交付(intergenerationl transfer)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人的資本(human capital)에 대해 투자하는 —중년층의 가구는 소비에 있어서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의 資產蓄積經路는 유자녀가구의 경우 중년기에 다소 주춤하게 되며 本稿에서는 종래의 平生所得假說에 대한 분석이 주로 資產蓄積經路의 언덕구조(hump shape)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평생소득가설이 내포하는 의미를 연구하였다.

분석의 기본모형으로는 Ando and Modigliani(1963)에서 비롯된 一生週期模型(life cycle model)을 사용하였다. 同 模型을 기초로 家計의 效用函數에 成人相當數(adult equivalent)를 포함시킴으로써 家計의 資產蓄積經路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微視的 시뮬레이션(micro-simulation)을 이용하여 성인상당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生存期間이 不確實하다고 가정할 경우 資產蓄積經路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一般的 模型

1. 基本的 模型

貯蓄 내지는 資產의 蓄積에 대한 가장 큰 동기는 은퇴 후의 消費生活에 대한 충분한 資金源을 마련하는 것이다. 만약 한 개인이 은퇴후 勤勞所得이 없다면 그는 그가 일하는 동안의 勤勞所得을 모두 消費해서는 안된다. 이 간단한 원리가 個別消費者로 하여금 그의 平生所得을 적절히 配分하여 消費하게 만든다. 平生所得假說은 이러한 사실에 基礎하여 消費

者의 最適平生選擇이 다음과 같은 移時的 配分問題(intertemporal allocation)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max_{X^i} U^i(X^i,\ A^i) \quad \cdots\cdots (1)$$
$$s.t.\ (X^i,\ A^i) \in \Omega^i$$

$X^i = \{x^i_{j,\ \tau}\}^{\tau=0,\ \cdots T}_{j=1,\ \cdots C}$는 消費者 i의 소비집합의 벡터이며 A^i는 最終資產(terminal wealth) 혹은 消費者 i의 豫定遺產(planned bequest)이다. Ω^i는 消費者 i의 豫算制約을 포함한 制約條件이다. 效用函數는 $(X^i\ ,A^i)$에 오목하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消費者가 現在의 消費, 未來의 消費 그리고 遺產에 의해서만 효용을 얻음을 의미한다. 또한 物價水準이 변하지 않는다는 假定도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合理的 消費者(rational consumer)라면 주위 여건이 바뀜에 따라 새로운 대책을 계속 세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對策의 持續性이 어느 일정기간동안 무시될 수 있다면 우리는 效用函數를 일련의 弱可合效用(weakly summable subutilities)의 계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效用函數를 다음과 같이 각 시점 副效用들의 弱可合性函數形態로 표현하여 移時的 分離性(intertemporal separability)을 가정하기로 한다.

$$\sum_{t=0}^{T} \theta^i(t)\ U^i(X^i_t) + b^i\ \theta^i(T)\ U^i(A^i) \cdots (2)$$

$\theta^i(t)$는 할인율 ρ로 표시되는 主觀的 割引要素(subjective discount factor)이다(예를 들면 $\theta^i(t) = (1+\rho^i)^{-t}$).

이러한 分離性假定에 따르면 현재의 效用函數가 각각 過去의 消費, 未來豫想消費와 完全한 獨立을 이루게 되며 平生消費配分이 所得實現時期와 무관하게 된다. 이는 移時的 消費行動分析에 여러 문제를 발생시켜 온 그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니다.

이제 消費者의 選好를 代表的 消費者의 選好로, 消費集合(consumption bundle)을 單一財貨(single aggregate commodity) C로 나타내면 消費者가 직면하는 效用極大化 問題는 아래와 같다.

$$\max \sum_{t=0}^{T} (1+\rho)^{-t}\ U(C_t) + bU(A_T) \cdots\cdots (3)$$

C_t는 單一財貨 消費量의 時間經路(time path)[1]이다. 어떠한 不確實性도 없으며 완전한 資本市場이 존재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平生豫算制約(lifetime budget constraint)만이 유일한 제약조건이 될 것이다.

$$\sum_{t=0}^{T} C_t \prod_{i=0}^{t} (1+r_i)^{-1} + A_T \prod_{i=0}^{T} (1+r_i)^{-1}$$
$$= A_o + \sum_{t=0}^{T} E_t \prod_{i=0}^{t} (1+r_i)^{-1} \cdots\cdots\cdots\cdots\cdots (4)$$

r^i는 i시점의 이자율이고 E_t는 나중에 정의될 t시점의 화폐소득이다. 論議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等彈力性效用函數(iso-elastic utility function)를 가정하자[2].

$$U(C_t) = \begin{cases} \dfrac{1}{1-\Gamma} C_t^{1-\Gamma} & \Gamma \neq 1 \\ \ln C_t & \Gamma = 1 \end{cases} \cdots\cdots\cdots (5)$$

1) 本稿 전반에 걸쳐 t는 두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한편으로 t는 家口主年齡으로 0에서 T까지의 값을 취한다. 또는 단순하게 시간표시의 下添字(subscript)로 쓰인다.

2) 確實性을 가정할 경우 식(5)의 效用函數를 어떤 방식으로 單純增加轉換시킬지라도 동일한 선호체계를 대표한다.

$$U(A_T)=\begin{cases}\frac{1}{1-\Gamma}A_T^{1-\Gamma} & \Gamma\neq 1\\ lnC_T & \Gamma=1\end{cases}$$

이러한 형태의 效用函數에서의 勞動供給은 分離的(separable)이거나 外生的(exogenous)이 된다. 모든 형태의 소득이 E_t로 정의되어 E_t는 勤勞所得, 利子所得, 配當所得, 私的年金과 社會保障으로부터의 所得의 합계가 된다. 또한 初期賦存資産(A_o)이 0이라고 하면 (4)식 制約下의 (3)식 極大化의 一階條件(first order condition)은 다음과 같다.

$$\frac{U'(C_t)}{U'(C_{t+1})}=\frac{1+r_{t+1}}{1+\rho}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6)$$

윗식은 이자율에 1을 더한 값이 時間選好率에 1을 더한 값과 같아질 때까지 소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CRRA(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부류의 效用函數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바뀐다.

$$\frac{C_{t+1}}{C_t}=\left(\frac{1+r_{t+1}}{1+\rho}\right)^{1/\Gamma}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7)$$

여기서 $(1+r_{t+1}/1+\rho)$이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을 경우 消費量은 각각 增大, 不變, 減少할 것이다[3]. (7)식을 平生豫算制約式에 代入하면 아래와 같이 C_t, A_T의 명시적인 最終解를 구할 수 있다.

$$C_t=\alpha E_o\left[\frac{\prod_{i=0}^{t}(1+r_i)}{(1+\rho)^t}\right]^{1/\Gamma} \quad \cdots\cdots\cdots (8)$$

$$A_T=\alpha E_o\{b\prod_{i=0}^{T}(1+r_i)\}^{1/\Gamma}$$

$$\alpha=\{b^{1/\Gamma}(\prod_{i=0}^{T}(1+r_i)^{1/\Gamma-1}+\sum_{t=0}^{T}(1+\rho)^{-t/\Gamma}\cdot\prod_{i=0}^{t}(1+r_i)^{1/\Gamma-1}\}$$

α는 嗜好媒介變數(taste parameter)이고 E_o은 $t=0$에서의 平生所得의 現在價値이다. 다음 節에서는 이 基本模型을 진전시켜 N_t의 成人相當數(adult equivalents)로 구성되는 가구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 擴大된 模型

Blinder et al.(1981)에 따르면 위 模型은 가구주 연령이 t인 경우 N_t成人相當數로 구성되는 가구의 경우로 발전시킬 수 있다. 가구의 效用函數를 (9)식과 같이 정의하고 $U(A_t)$를 전과 같다고 하면 가구효용은 성인당 家口消費量에 成人相當數를 곱한 것과 같다. 이때의 消費量經路와 最終資産은 식(10)과 같다.

$$N_t U(C_t/N_t)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9)$$

$$C_t=\alpha_1 E_o\left[\frac{\prod_{i=0}^{t}(1+r_i)}{(1+\rho)^t_{1/\Gamma}}\right]^{1/\Gamma}\cdot(N_t)^{1/\Gamma} \quad \cdots\cdots\cdots\cdots (10)$$

$$A_T=\alpha_1 E_o\{b\prod_{i=0}^{T}(1+r_i)\}$$

식(10)에서

$$\alpha_1=\{b^{1/\Gamma}\prod_{i=0}^{T}(1+r_i)^{1/\Gamma-1}+\sum_{i=0}^{T}(N_t)^{1/\Gamma}\cdot(1+\rho)^{-t/\Gamma}\prod_{i=0}^{t}(1+r_i)^{1/\Gamma-1}\} \quad \cdots\cdots\cdots\cdots (11)$$

가구주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 N_t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가구주는 家口消費經路의 커다란 증가를 경험할 것이다.

이상의 消費經路가 現在資産保有高 A_t의 궤적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를 살펴봄으로써 위의 模型이 주는 시사점을 이해하고자 한

3) $U'>0$이고 $U''<0$인 어떤 형태의 效用函數에서도 이 사실은 성립한다.

다[4]. E_t을 장래 t이 되는 시점에서의 所得의 現在價値라 하자.

$$E_t = \sum_{s=t}^{T} E_s \prod_{i=t}^{s} (1+r_i)^{-1}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12)$$

T는 生存期間(length of life)으로 완전히 알려진 것으로 가정한다. 장래 t시점에서의 예산제약식에서는 A_t와 E_t의 합이 未來消費와 豫定遺産의 現在價値의 合과 일치하게 된다.

$$A_t + E_t = \sum_{s=t}^{T} C_s \prod_{i=t}^{s} (1+r_i)^{-1} + A_T \prod_{i=t}^{T} (1+r_i)^{-1}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13)$$

(13)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 利子率이 일정[5] 하다고 가정하면 식(8)을 이용하여 식(14)와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A_t + E_t)/E_o = \alpha_1 (1+r)^t \{ \sum_{s=t}^{T} (1+M)^s \cdot (N_s)^{1/\Gamma} + \delta \}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14)$$

이때

$$M = \left| \frac{1+r}{1+\rho} \right|^{1/\Gamma} \text{이고}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15)$$

$$\delta = b^{1/\Gamma} (1+r)^{T/r-T}$$

식(14)에 의하면 總平生所得에 대한 現在資産價値의 合의 비율이 가구주연령이 t인 시점에서 아직 남아 있는 消費의 成人相當期間(adult equivalent years of consumption)의 線型函數이다.

4) 平生所得假說模型 혹은 一生週期模型은 또한 家口의 資産蓄積에 관한 理論이다. 따라서 이 모형으로 가구의 資産에 대한 分布를 설명할 수 없으면 가구의 저축행위를 설명하는 모형으로서의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5) 確實性의 세계에서 時間從屬利子率은 단지 문제를 다루기 힘들게 할 뿐으로 모형의 시사점을 바꾸지는 못한다.

우리는 식(14)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 } 안의 항목은 일정한 효과를 미치는 고정요소로서 成人相當數의 未來消費年數와 利子率에 대한 期待値가 일정하게 이루어짐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상이한 집단에서의 δ의 推定値는 각 집단의 平均家口가 해당 消費年數에 상당하는 遺産을 남김을 의미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資産保有의 家口主年齡에 대한 함수형태가 平生所得理論의 엄격한 형태에서 추론된 高次非線型函數 形態를 취한다. 따라서 家計資産의 가구주연령과 가구주연령의 제곱합으로의 線型回歸로 단순히 家計資産蓄積의 시간경로를 추정할 수 없다. 또 t시점에서의 成人相當數의 수인 N_t가 家計資産蓄積의 시간경로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진학으로 N_t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결국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며 家口資産蓄積에 마이너스의 효과가 발생하여 家計의 資産蓄積速度가 감소할 것이다.

3. 微視的 시뮬레이션 結果

本節에서는 微視的 시뮬레이션(micro-simulation)技法을 사용하여 계량적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모형의 시사점을 알아보자. 平生所得假說 模型觀點에서 본 저축행위에 대한 微視的 시뮬레이션 접근의 최초연구는 Tobin and Dolde(1971)이었다. 그후 White(1978), Summers(1981), Auerbach and Kotlikoff (1983)가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복잡한(때때로 高次非線型) 이론적 모형이 주는 단순한 시사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런 형태의 복잡한 이론적 모형의 산술적 시뮬레이션(numeric simulation)이 실증분석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론적 모형의 산술적 시뮬레이션은 데이터 부족등으로 現實世界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모델의 媒介變數값이 변함에 따라 모델의 行態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다. 즉, 산술적 시뮬레이션은 실증분석의 보완적 열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둘째,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一般性이나 강한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도출된 특정결론이 一般性을 갖는 것인지 또는 그것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특정 媒介變數값의 귀결이어서 媒介變數에 대한 가정이 변화하면 결과 역시 변화하게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위의 한계를 염두해 두고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技術的 假定(technical assumption)을 하여보자.

(1) 각 개인의 成人生涯期間은 60년이다. 25세에 소득을 갖기 시작하여 40년간 지속된 후 65세에 은퇴한다[6].

(2) 각 개인의 賃金所得은 최초 1,000에서 시작하여 매년 9%의 平均上昇率로 증가한다.

(3) 負의 資產은 실현불가능하다.

(4) 家口主가 35세(경제연령은 10세)일 때 첫자녀를 갖게 되고 40세(經濟年齡은 15세)일 때 둘째를 갖게 된다.

(5) 자녀의 成人相當數는 다음과 같다.

7세까지 0.3
15세까지 0.5
18세까지 0.8
22세까지 1.25
24세까지 0.3
24세이후 0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최종 방정식체계는 식(16)과 같다.

$$C_t = C_{t-1}\left(\frac{1+r}{1+\rho}\right)^{1/\Gamma}\left(\frac{N_t}{N_{t-1}}\right)^{1/\Gamma}$$

$$Y_t = Y_o(1+g)^t \quad \cdots\cdots (16)$$

$$E_t = rA_{t-1} + Y_t$$

$$S_t = E_t - C_t$$

$$A_t = (1+r)A_{t-1} + Y_t - C_t$$

우선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를 보면 消費形態는 가구주연령의 증가에 따라 부드럽게 증가한다. 初期資產은 1,000으로 고정인데 이는 최종자산을 이자율 r로 할인한 近似割引價値(approximate discounted value)이며 [圖 1]에는 무자녀가구의 消費, 貯蓄 및 收入經路가 나타나 있다[7].

다음은 두 자녀를 갖는 가구의 경우이다. 첫째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시 소비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첫째가 대학에 다니고 둘째가 고등학교에 다닐때 소비량은 2,123(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70% 높다)으로 극대점에 도달한다. 따라서 이 무렵 자산의 蓄積速度는 감소한다. [圖 2]는 消費, 貯蓄 및 收入經路를, [圖 3]은 이 두 경우의 資產蓄積經路를 보여준다.

前者(자녀가 없는 家口)의 資產蓄積形態는 통상적인 모습(usual nice shape)을 갖는 것에

6) 실제 은퇴연령을 65세로 하면 임금소득 획득연령은 25세이나 미시적 시뮬레이션에서는 경제연령으로 환산되어 취업연령이 0으로 가정된다.

7) 시뮬레이션 결과 각 경우 消費, 貯蓄, 資產 등의 資料는 워낙 방대하여 本稿에서는 이의 게재를 생략하고 그림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圖 1] 無子女家口의 消費, 貯蓄 및 收入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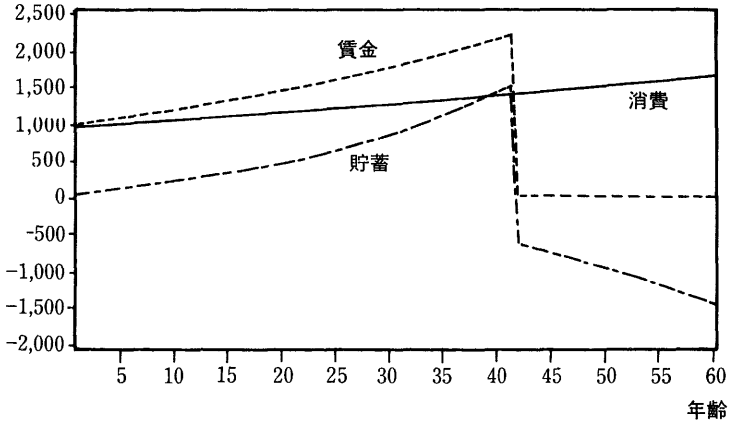

[圖 2] 子女가 있는 假想家口의 消費, 貯蓄 및 收入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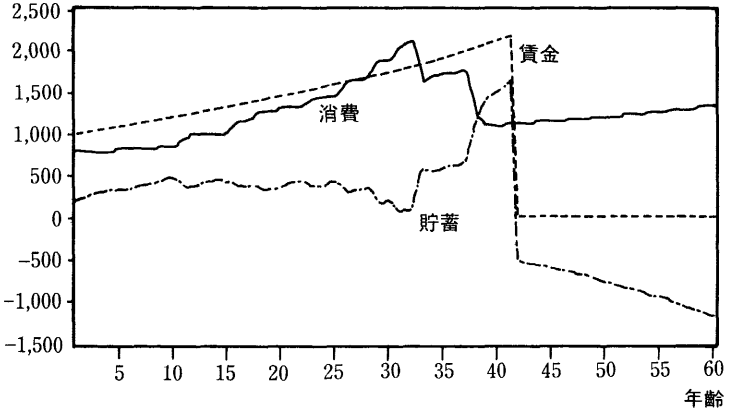

[圖 3] 資產蓄積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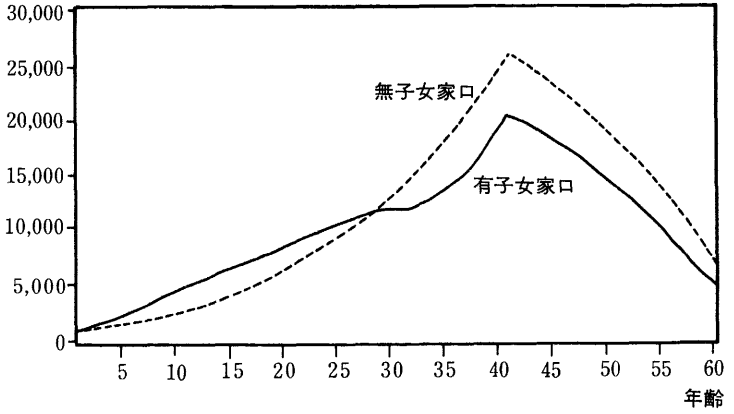

[圖 4] 消費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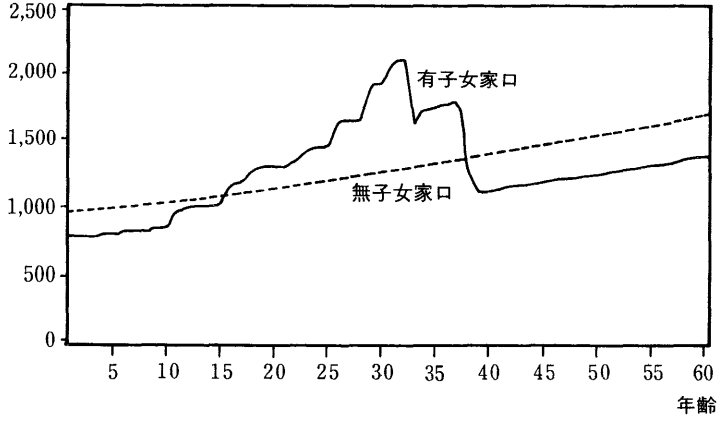

대해 후자의 경우는 불규칙적인 유형을 보여준다. 후자는 초기에 더 많은 資産을 蓄積하게(더 적은 소비를 한다) 되고 자녀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면 소비형태가 급상승하게 되며 분가 이후부터는 전자의 경우와 동일한 資産蓄積類型을 보여준다.

III. 不確實性을 갖는 변형된 模型

本節에서는 個人의 壽命이 不確實하다는 가정하에 模型을 전개시키기로 한다. 模型은 공정(fair)한 私的 또는 公的年金의 不在라는 조건 속에서 분석된다. 따라서 각 소비자는 確率的 生涯(stochastic life length)에서 추론되는 經濟的 危險에 직면하게 되며 保險을 통하여 위험을 완전히 감소시킬 수 없다. 이러한 가정은 너무 강하고 비현실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수긍할 만하고 타당성도 있다. 生命保險이 물론 대중적이긴 하지만 無知, 保險賦課率에 있어서의 公定性의 缺如 등으로 年金과 같은 제도가 별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생명보험의 가입에 의해 "너무 일찍" 죽을 危險의 큰 부분을 分散시킬 수 있을지라도 "너무 늦게" 죽을 위험을 계속 갖게 되므로 이러한 접근은 약간의 통찰력을 준다.

年金과 社會保障에 대한 고려없이 生涯가 不確實한 경우를 분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遺産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確率的 生涯와 危險回避性向의 상호작용은－유산을 남길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평균적으로 많은 양의 遺産을 창출하게 된다.

I. 理論的 模型

前과 같이 제약조건하 平生에 걸친 效用極大化를 가정하자. T는 마지막 計劃時期(last planning period)로 生을 마치는 확정적 시점이 아니라 生存確率이 아주 작게 되는(negligible) 시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소비자는 效用極大化에 死亡率을 반영한다. 本稿에서는 Yaari(1965)에 의해 최초로 시도된 접근방법을 택하기로 하는데 負의 純資産(negative net worth)을 남긴 채 생애를 끝마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法的, 制度的, 倫理的 制約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生存確率이 아주 작을 때에만 純資産이 0이 될 수 있다.

前章에서와 같이 效用函數의 여러가지 특질을 가정하면 적정소비계획은 식(17)과 같이 期待效用을 極大化하는 문제로 된다.

$$max\, E\left[\sum_{t=0}^{T}(1+\rho)^{-t}\, U(C_t)\right] = \sum_{t=0}^{T} P_t(1+\rho)^{-t}\ \ U(C_t)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17)$$

P_t는 t期末까지 생존할 확률이며 초기에 알려져 있다. 生存期間이 확실히 알려진 경우와 달리 각 개인은 T期末에 遺産을 남기려 하지 않지만 예정보다 일찍 죽을 경우 遺産이 남게 된다. 本節의 마지막 부분에서 期待遺産의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平生豫算制約式(lifetime budget constraint)은 아래와 같다.

$$\sum_{t=0}^{T}(1+r)^{-t}C_t = \sum_{t=0}^{T}(1+r)^{-t}E_t \cdots\cdots\cdots (18)$$

또 모든 t에 대해 $A_t=(1+r)A_{t-1}+Y_t-C_t \geq 0$가 성립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건하에서 효용극대화의 一階條件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frac{U'(C_t)}{U'(C_{t+1})}\frac{P_t}{P_{t+1}}=\frac{1+r}{1+\rho}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9)$$

期待限界效用의 比率은 저축에 대한 客觀的, 主觀的 報酬의 比率($(1+r)$의 값을 $(1+\rho)$의 값으로 나눈 값)과 일치한다.

여기서 두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 매 기말에 해당기말까지 생존하게 되었으므로 總期待壽命이 증가되었고 限界效用條件의 요소인 P_{t+1}과 P_t 값이 변했을지라도 각 개인은 매 기말에 再契約을 원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상대비율인 P_{t+1}/P_t이며 이 비율은 그 자체가 t기말까지 생존할 경우 $t+1$기말까지 생존할 條件附確率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 따라서 각 개인은 각 기말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보험수리적으로 완전히 공정한 年金·保險市場(perfect actuarially fair annuity and insurance markets)이 존재하여 제약조건이 未來期待消費의 現在價値가 未來期待所得의 現在價値와 같은 경우에도 再契約을 원하지는 않게 된다[8].

둘째로 이자율과 最適消費形態를 연관시켜 보자. 모든 것이 확실한 경우의 分析에서는 $((1+r)/(1+\rho))$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 消費프로필이 증가, 불변 또는 감소했었다. 생존기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P_{t+1}/P_t)가 시간에 대해 증가하지 않는다(non-increasing sequence)[9]고 가정하자. $((1+r)/(1+\rho))=1$이면 (P_{t+1}/P_t) 값에 따라서 불변 내지 감소할 것이다. $((1+r)/(1+\rho))>1$일 경우는 t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증가하다 감소하게 된다. 後者의 경우 일정한 r, ρ, 生存確率$\{P_t\}$에 대해 最大消費의 연도는 유일하며 $U'>0$, $U''<0$이면 效用函數의 형태와 독립적이다.

앞에서와 같이 相對危險忌避度(degree of relative risk aversion)가 일정한 效用函數(CRRA class utility function)를 假定하자.

$$U(C_t)=\begin{cases}\dfrac{1}{1-\Gamma}C_t^{1-\Gamma} & \Gamma\neq 1\\ lnC_t & \Gamma=1\end{cases} \quad \cdots\cdots\cdots(20)$$

이 경우 시간에 걸친 消費프로필을 구하면 식 (21)과 같다[10),11)]

$$C_t=C_{t-1}\left(\frac{P_t}{P_{t-1}}\cdot\frac{1+r}{1+\rho}\right)^{1/\Gamma}$$

$$=C_o\prod_{i=1}^{t}\left(\frac{P_i}{P_{i-1}}\cdot\frac{1+r}{1+\rho}\right)^{1/\Gamma}$$

$$C_o=\left[\alpha\beta K_1\sum_{t=0}^{T}Q_tW_t+\sum_{t=1}^{T-1}W_t\right]/$$

$$\left[\alpha\beta K_i\sum_{t=0}^{T}Q_tR_t+\sum_{t=1}^{T}R_t\right]\cdots\cdots\cdots\cdots\cdots(21)$$

$$\alpha=((1+r)^{T-T_B}\cdot(1+g)^{T_B})^{-i},$$

$$\beta=(1-\alpha(1+r)^T)^{-i}$$

$$K_1=(1+T)\ (1+r)^T$$

$$W_t=\sum_{i=1}^{t}Y_i(1+r)^{-i}$$

$$R_t=\sum_{k=1}^{t}\left(\prod_{i=1}^{k}\left(\frac{P_i}{P_{i-1}}\cdot\frac{1+r}{1+\rho}\right)^{1/\Gamma}\right)(1+r)^{-k}$$

$$Q_t\text{는}\begin{cases}t\geqq 1\text{이면} & (1-P_t)\prod_{i=0}^{t-1}P_i\\ t=0\text{이면} & (1-P_t)\prod_{i=0}^{t-1}P_i\end{cases}$$

8) 상세한 내용은 Yaari(1964)와 Yaari(1965)를 참고.

9) 이는 모든 상대적인 경우에 타당하다. (P_{t+1}/P_t)가 t기까지 살아왔을 경우 $t+1$기에 생존할 條件附確率이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t가 증가한다고 해도 변동되지 않는다.

10) 資産이 負가 아니라는 제약조건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

11) 상세한 도출과정은 附錄을 참고.

T_B는 유산을 주고 받는 부모와 자녀간의 年齡隔差이다. 식(20)에서 確率項이 非增加數列이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완전확실성의 경우보다 불확실한 생존기간의 경우에 t와 $t-1$간의 消費프로필의 기울기가 더 작게 된다. 한편 資產保有高 A_t의 궤적으로 이 모형의 示唆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_t=(1+r)^t\{A_o+\sum_{i=1}^{t}(Y_i-C_i)(1+r)^{-i}\}$$
$$=(1+r)^t\{A_o+\sum_{i=1}^{t}Y_i(1+r)^{-i}-C_oR_t\}$$
$$A_o=\alpha\beta(1+r)^T\sum_{t=0}^{T}Q_T\{\sum_{i=1}^{t}Y_i(1+r)^{-i}-C_oR_t\}$$

여기서도 이 모형에 따른 家計資產蓄積의 時間經路는 家計純資產의 年齡多項式으로의 線型回歸에 의해 단순히 추정될 수 없다. 또한 모형은 N_t 成人相當數로 구성되는 가계의 경우로 변화시킨다면 確實性의 경우처럼 N_t가 식(22)에 非線型方式으로 들어가게 된다. N_t가 A_t에 負의 效果를 미치기 때문에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진학에 따른 N_t의 증가는 家計의 資產蓄積을 감소시킬 것이다.

2. 시뮬레이션 分析結果

確實性의 경우와 같이 다음을 가정한다.

(1) 각 개인의 最大 成人生涯期間은 95년으로 經濟生涯의 시작(20세)부터 소득을 갖기 시작하며 바로 그 최초시기에 은퇴시기를 결정한다[12].

(2) 각 개인의 賃金所得은 1,000부터 시작하여 매년 g%의 成長率로 증가한다.

(3) 일정량의 遺產이 가능하며 負의 資產은 실현불가능하다.

생존확률은 미국의 1980년 標準通常死亡率統計表(US Commissioner's 1980[13] Standard Ordinary Mortality Table)(남자의 수명)에서 채택하기로 한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이자율(r), 위험기피도(Γ), 주관적할인율(ρ), 은퇴시기에 대한 母數값을 결정했다.

[圖 5]는 $r=0.04$, $g=0.02$, $\rho=0.03$, $\Gamma=1$ 그리고 $T_R=40$(T_R은 은퇴경제연령의 기대치)인 基準家口의 경우와 相對危險忌避度, 利子率, 主觀的割引率 등을 변화시킨 比較家口의 資產蓄積經路를 보여주고 있다. (가)는 Γ를 1에서 10으로 변화시킨 경우이다. Γ를 相對危險忌避度係數(a measure of relative risk aversion)로 해석하면 각 개인은 Γ값이 클수록 위험부담을 기피하게 되므로 더 많은 자산을 기대사망연도 이후의 시기에 보유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Γ가 무한대에 접근한다면 어떤 모험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계획소비량이 전기간에 걸쳐 균등화된다. 따라서 Γ값이 클수록 持續均衡狀態(steady state)에서 遺產의 양이 커지게 될 것이다. 基準家口의 경우는 경제연령 30세에 소비량이 정점에 도달했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다. Γ값이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여기서는 $\Gamma=1$), 계획기간 후반기의 소비량 프로필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즉 경제연령 30세에 1,552였던 소비계획량이 40세에는 1,456로 60세에는 417로 감소한다(生存確率은 0.177). 比較家口의 경우는 경제연령 30세에 1,509였던 소비계획량이 40세에는 1,449로 60세에는 1,323로 감소한

12) 確實性의 경우보다 생존기간을 늘린 것은 生存確率統計表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며 이 변화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13) 死亡率統計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uebner and Black(1982)의 20章을 참고.

[圖 5] 生存期間이 不確實한 경우의 資產蓄積經路

(가) 相對危險忌避度가 커질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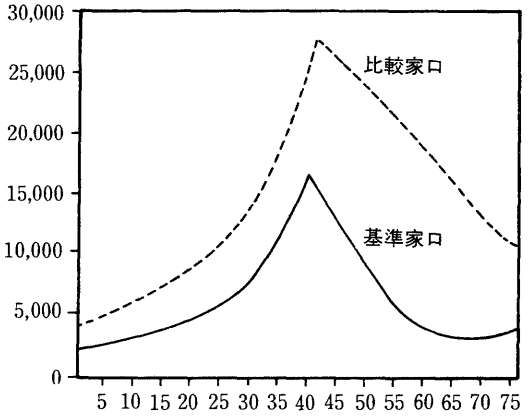

(假定) 基準家口 : $\gamma=0.04$ $\rho=0.03$ $\Gamma=1$ $g=0.02$ $T_R=40$
比較家口 : $\gamma=0.04$ $\rho=0.03$ $\Gamma=10$ $g=0.02$ $T_R=40$

(나)隱退年齡이 5년 늘어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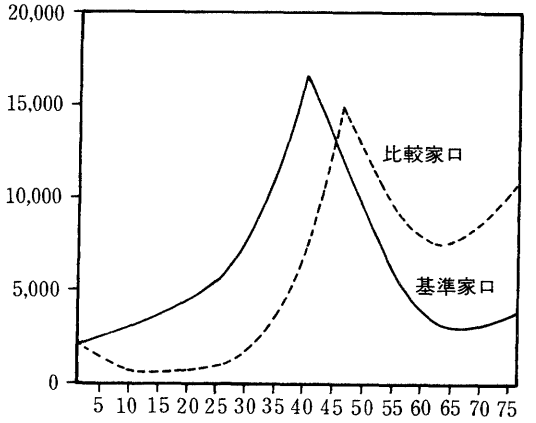

(假定) 比較家口 : $\gamma=0.04$ $\rho=0.03$ $\Gamma=1$ $g=0.02$ $T_R=45$

(다)主觀的 割引率이 늘어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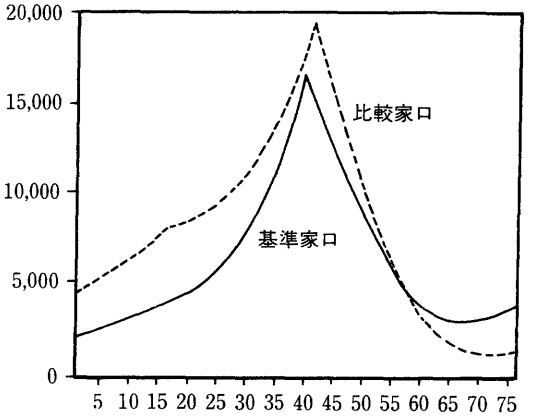

(假定) 比較家口 : $\gamma=0.04$ $\rho=0.025$ $\Gamma=1$ $g=0.02$
$T_R=40$

(라)利子率이 커질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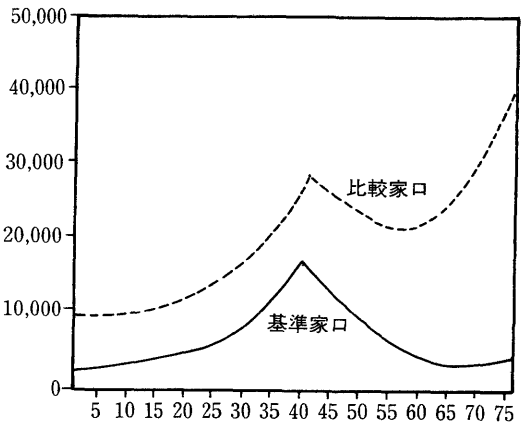

(假定) 比較家口 : $\gamma=0.05$ $\rho=0.03$ $\Gamma=1$ $g=0.02$
$T_R=40$

다. 다음 $\Gamma=10$ 인 경우보다 $\Gamma=1$인 경우에 資產蓄積이 더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연령 48세인 68세때 資產蓄積을 비교해 보면 基準家口는 9,882이고 比較家口는 24,569이다. 이 결과로 볼 때 일반적으로 確率的 生涯期間과 危險忌避가 상당량의 遺產을 창출한다는 것 그리고 Γ값이 클수록 遺產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은퇴시기 T_R을 60세(경제연령 40세)에서 65세로 변화시킨 경우이다. 이는 각 개인의 평생자원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消費量增加를 초래하지만 消費, 所得, 貯蓄, 資產蓄積의 類型은 전과 동일하다.

(다)는 主觀的選好率 ρ값을 하락시켜 소비

시점에 대한 선호를 감소시킨 경우로 각 개인은 젊은 시절에 보다 많이 자산을 축적하고 노년기에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라)는 利子率을 上昇시킨 것으로 主觀的選好率을 감소시킨 것과 유사한 효과를 준다. (다)에서는 경제연령 34세에 소비경로는 1,825의 정점에 도달하는데 비해 (라)에서는 경제연령 37세에 2,019의 최고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자율이 높은 경우와 主觀的選好率이 낮은 경우의 유일한 차이점은 實質資産蓄積量으로 이자율이 높은 경우 더 큰 資産을 蓄積하게 된다. 그러나 축적유형은 거의 동일하다.

Ⅳ. 結　　論

本稿에서는 일반적인 가계의 저축 및 소비형태가 일생주기에 걸쳐 年齡－資産關係(age-wealth profile)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Ando and Modigliani(1963)에서 비롯된 平生所得假說模型 또는 一生週期模型을 기본적 모형으로 삼아 살펴보았다.

종래의 平生所得假說模型 또는 一生週期模型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은퇴전에는 자산이 축적되다가 은퇴후에는 자산이 감소하는 그러한 資産蓄積經路의 언덕구조(hump shape)의 糾明 내지는 分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언덕구조의 분석보다는 世代間交付의 형태로 간주되는 자녀들에 대한 敎育費의 負擔이 유자녀가구와 무자녀가구의 資産蓄積經路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一生週期模型을 기초로 家計의 效用函數에 成人相當數를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 사이에 消費 및 貯蓄形態가 차이나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산술적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有子女家口의 경우 資産蓄積이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을 시기에 급격히 완만해지고 은퇴후의 資産減少도 무자녀가구보다 완만하다는 사실을 보았다. 이는 유자녀가구의 소비가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는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무자녀가구와 유자녀가구의 相異한 消費 및 貯蓄形態, 즉 個別經濟主體들의 貯蓄動機에 대한 分布를 앎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은 인구구조 및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뮬레이션은 특정매개변수의 값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實證分析을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本 硏究의 발전방향은 적절한 微視的資料를 사용한 實證分析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다.

附錄 : 不確實한 生存期間을 가정할 경우의 消費, 資產蓄積經路의 導出過程

消費者는 자신의 生存期間이 불확실하나 계획기간의 最終年度(T) 이전에 반드시 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종연도(T)와 (t-1)기까지 살았을 경우 t기에 생존할 확률(P_t)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다. 사망후 남겨진 모든 자산은 상속된다.

개개 소비자는 다음 效用函數의 期待値를 極大化하고자 한다.

$$max\, E\left[\sum_{t=0}^{T}(1+\rho)^{-t}\, U(C_t)\right]$$
$$=\sum_{t=0}^{T} P_t(1+\rho)^{-t}\, U(C_t) \cdots\cdots\cdots\cdots \text{(A.1)}$$

$$U(C_t)=\begin{cases}\dfrac{1}{1-\Gamma}C_t^{1-\Gamma} & \Gamma\neq 1 \\ lnC_t & \Gamma=1\end{cases} \cdots \text{(A.2)}$$

平生豫算制約式(lifetime budget constraint)은 다음과 같다.

$$\sum_{t=0}^{T}(1+r)^{-t}\, C_t=\sum_{t=0}^{T}(1+r)^{-t}\, E_t+A_o$$
$$A_t=(1+r)\, A_{t-1}+Y_t-C_t\geqq 0 \cdots \text{(A.3)}$$

家計收入(E_t)은 賃金所得(Y_t)과 利子所得의 合이다.

$$\begin{aligned} E_t &= rA_{t-1}+Y_t & t\geqq 1 \\ E_t &= Y_o & t=0 \end{aligned} \cdots\cdots\cdots\cdots \text{(A.4)}$$

t기에 사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Q_t &= (1-P_t)\prod_{i=0}^{t-1} P_i & t\geqq 1 \\ &= 0 & t=0 \end{aligned} \cdots\cdots\cdots\cdots \text{(A.5)}$$

資產蓄積過程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A_t=(1+r)\, A_{t-1}+Y_t-C_t$$
$$=(1+r)^t\left((A_o+\sum_{i=1}^{t}(1+r)^{-i}(Y_i-C_i)\right) \cdots\cdots\cdots\cdots \text{(A.6)}$$

遺產이 상속자녀에게 相續되고 동 遺產相續이 T기에 유효해진다고 가정하면 t기에 사망하는 소비자에 의한 상속은 다음과 같다.

$$B_t=(1+r)^{T-t}\, A_t$$
$$=(1+r)^T\left[A_o+\sum_{i=1}^{t}(1+r)^{-i}(Y_i-C_i)\right] \cdots\cdots\cdots\cdots \text{(A.7)}$$

따라서 期待遺產(expected bequests)은 다음과 같이 된다.

$$B_E=\sum_{t=0}^{T} Q_t B_t$$
$$=(1+r)^T\left[\sum_{t=0}^{T} A_o Q_t+\sum_{t=0}^{T} Q_t \sum_{i=0}^{t}(1+r)^{-i} \cdot (Y_i-C_i)\right] \cdots\cdots\cdots\cdots \text{(A.8)}$$

Q_t의 합은 1이므로 ($\sum_{t=0}^{T} Q_t=1$) (A.8)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B_E=(1+r)^T\left[A_o+\sum_{t=0}^{T} Q_t \sum_{i=1}^{t}(1+r)^{-i} \cdot (Y_i-C_i)\right] \cdots\cdots\cdots\cdots \text{(A.9)}$$

이제 效用極大化의 一階條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_t=C_{t-1}\left(\frac{P_t}{P_{t-1}}\cdot\frac{1+r}{1+\rho}\right)^{1/\Gamma}$$

$$= C_o \prod_{i=1}^{t} \left(\frac{P_i}{P_{i-1}} \cdot \frac{1+r}{1+\rho}\right)^{1/T} \quad \cdots\cdots\cdots(A.10)$$

$$= C_o \left[\prod_{i=1}^{t} S_i\right]$$

여기서 $S_i = \left(\frac{P_i}{P_{i-1}} \cdot \frac{1+r}{1+\rho}\right)^{1/T}$ 이다.

따라서 $\sum_{i=1}^{t} C_i(1+r)^{-i} = C_o \sum_{i=1}^{t} \left(\prod_{k=1}^{i} S_k\right)(1+r)^{-i}$

$$= C_o R_t \cdots\cdots\cdots\cdots(A.11)$$

$$R_t = \sum_{i=1}^{t} \left(\prod_{k=1}^{i} S_k\right)(1+r)^{-i}$$

나아가 개별 소비자의 賃金所得은 은퇴시까지 매년 g의 증가율로 상승한다고 가정한다.

$$Y_t = \begin{cases} Y_o(1+g)^t & t \leq N \\ 0 & t > N \end{cases} \cdots\cdots\cdots(A.12)$$

$$W_t = \sum_{i=1}^{t} Y_i(1+r)^{-i}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A.13)$$

그러면 期待遺產方程式(A. 9)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B_E = (1+r)^T \left[A_o + \sum_{t=0}^{T} Q_t \sum_{i=1}^{t} Y_i(1+r)^{-i} - \sum_{t=0}^{T} C_o Q_t R_t\right]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A.14)$$

여기서 持續均衡 遺產制約條件(steady state bequest constraint)—한 世代에 의한 유산은 同 世代가 받았던 유산보다 $(1+g)T_B$만큼 커야 한다—을 가정하면 g는 전반적 경제의 成長指標로 간주될 수 있다.

$$A_o = (1+r)^{-(T-T_B)}(1+g)^{-T_B} B_E = \alpha\beta_E \quad \cdots(A.15)$$

(A. 15)식의 첫항 $(1+r)^{-(T-T_B)}$은 유산 $t=0$기에까지 할인하는 할인율이다. (A. 15)를 (A. 14)에 대입하면

$$A_o = \alpha(1+r)^T \left[A_o + \sum_{t=0}^{T} Q_t W_t - \sum_{t=1}^{T} C_o Q_t R_t\right]$$

또는 $A_o = \alpha\beta(1+r)^T \left[\sum_{t=0}^{T} Q_t W_t - \sum_{t=1}^{T} C_o Q_t R_t\right]$

$$\beta = (1-\alpha(1+r)^T)^{-1} \quad \cdots\cdots(A.16)$$

平生豫算制約式인 (A. 3)식은 상기 표현을 빌면 다음과 같다.

$$C_o(1+R_T) = \sum_{t=1}^{T} r A_{t-1}(1+r)^{-t} + \sum_{t=0}^{T}(1+r)^{-t} Y_t + Y_o \quad (A.17)$$

또는 $C_o\left(1+\sum_{t=1}^{T} R_t\right) = A_o(rT+1)\sum_{t=0}^{T-1} rW_t - \sum_{t=0}^{T-1} rC_o R_t + Y_o + W_t$

(A. 15)식과 (A. 16)식을 연결하면

$$C_o = \frac{\left(\alpha\beta K_1 \sum_{t=1}^{T} Q_t W_t + \sum_{t=1}^{T-1} rW_t + Y_o + W_T\right)}{\left(\alpha\beta K_1 \sum_{t=1}^{T} Q_t R_t + \sum_{t=1}^{T-1} rR_t + 1 + R_T\right)}$$

$$K_1 = (1+rT)(1+r)^T \quad \cdots\cdots\cdots(A.18)$$

α, β, R_t 그리고 W_t의 매개변수에 대한 가정이 주어지면 C_o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消費(C_t) 및 資產蓄積(A_t)의 경로도 자동적으로 구해진다.

▷ 参 考 文 獻 ◁

Adams, F. Gerard and Susan M. Wachter, *Savings and Capital Formation: The Policy Options,* The Proceedings of the Nation's First Savings Forum Held in Philadelphia, PA, Lexington/D.C. Heath Co., Lexington, MA, 1986.

Ando, Albert and A. Kennickell, "How Much (or Little) Life Cycle is There in Micro Data? Case of U.S. and Japan," Paper presented at Instituto San Paolo di Torino Conference to Honor Franco Modigliani, in Martha's Vine-yard, MA, September 1985, 19~21.

Ando, Albert and Franco Modigliani,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1963, pp.54~83.

Auerbach, Alan and Lawrence J. Kotlikoff, "An Examination of Empirical Tests of Social Security and Savings," Chapter 8, *Social Policy Evaluation: An Economic Prospective,* Elhanan Helpman, Assaf Razin and Efraim Sadka(eds.), Academic Press, 1983, pp. 161~179.

Blinder, Alan S., "A Model of Inherited Weal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87, 1973, pp.608~626.

_____,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Life Cycle Consump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6, 1976, pp. 87~93.

Blinder, A.S., Robert Hall Gordon, and Donald E. Wise, "Social Security, Bequests, and the Life Cycle Theory of Saving: Cross-Section Tests," NBER Working Paper, Jan. 1981.

Browning, M.J.. A.S. Deaton, and M. Irish, "A Profitable Approach to Labor Supply and Commodity Demand over the Life Cycle," *Economics*, Vol.18, No.4, 1985, pp.854~875.

Clower, R.W. and M.B. Johnson, "Income, Wealth and the Theory of Consumption," J.N. Wolfe(ed.), *Value Capital and Growth, Papers in Honor of Sir John Hicks,* Edinburgh University Press, Aldine Publishing Co., Chicago,IL., 1968.

Davies, J.B., "Uncertain Lifetime, Consumption, and Dissaving in Retire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9, 1978, pp.561~577.

Deaton, Angus S., "Wealth Effects on Consumption in a Modified Life Cycle Model,"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39, 1972, pp.443~453.

Feldstein, Martin, "Social Security and Saving: The Extended Life Cycle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6, No. 2, 1976, pp.77~86.

Friedman, Milton,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Kenneth K. Kurihara (ed.), *Post Keynesian Economics,* Rutgers University Press, New Brunswick, New Jersey, 1954.

Heckman, James J., "Life Cycle Consumption and Labor Supply: An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Consumption over the Life Cycl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4, 1974, pp.188~194.

Huebner, S., and K. Black Jr., *Life Insurance,*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82.

Kennickell, Arther, "An Investigation of Life Cycle Savings Behaviour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ennsylvania, 1984.

King, Mervin A. and L-D. L. Dicks-Mireaux, "Asset Holdings and the Life Cycle," *Economic Journal,* Vol.92, June 1982, pp. 247~267.

Modigliani, Franco,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nd Inter-country Differences in the Saving Ratio," W. A. Eltis et al. (eds.), *Induction, Growth, and Trade, in Honor of Sir Roy Harrod,* Clarendon Press, London, England, 1970.

Shorrocks, A.F., "The Age-Wealth Relationship: A Cross-Section and Cohort Analysi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57, 1975, pp.155~163.

Tobin, James and Walter Dolde, "Wealth, Liquidity and Consumption," *Consumer Spending and the Monetary Policy: The Linkages,*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Boston, Massachusetts, 1971, pp. 99~156.

White, Betsy Buttrill, "Empirical Tests of the Life Cycle Hypothe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8, 1978, pp.547~560.

Wolff, Edward N., "The Accumulation of Household Wealth over the Life Cycle: A Microdata Analysi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27, 1981, pp.75~96.

Yaari, Menahem E., "On the Consumer's Lifetime Allocation Proces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5, No.3, 1964, pp.304~317.

_____, "Uncertain Lifetime, Life Insurance and the Theory of the Consumer,"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32, 1965, pp.137~149.

_____, "A Note on Separability and Quasiconcavity," *Econometrica,* Vol.45, 1977, pp.1183~1186.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 案內

1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18 切 判/ 122쪽 高級洋裝/3,000원

2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18 切 判/ 158쪽 高級洋裝/3,000원

3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紈 著 18 切 判/ 250쪽 高級洋裝/4,000원

4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18 切 判/ 146쪽 高級洋裝/3,000원

5 農產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 柳炳瑞 共著 18 切 判/ 318쪽 高級洋裝/5,000원

6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A.O. Krueger 編 18 切 判/ 254쪽 高級洋裝/4,400원

7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淇 著 18 切 判/ 198쪽 高級洋裝/4,000원

8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18 切 判/ 294쪽 高級洋裝/4,400원

9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金光錫 L.E. Westphal 共著 18 切 判/ 336쪽 高級洋裝/5,000원

10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236쪽 高級洋裝/4,000원

11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18 切 判/ 202쪽 高級洋裝/4,000원

12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秊 著 18 切 判/ 250쪽 高級洋裝/3,500원

13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18 切 判/ 508쪽 高級洋裝/6,800원

14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492쪽 高級洋裝/6,400원

15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342쪽 高級洋裝/5,000원

16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18 切 判/ 532쪽 高級洋裝/6,800원

17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18 切 判/ 252쪽 高級洋裝/4,400원

18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18 切 判/ 370쪽 高級洋裝/5,600원

19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18 切 判/ 244쪽 高級洋裝/4,000원

20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18 切 判/ 214쪽 高級洋裝/4,000원

21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410쪽 高級洋裝/6,000원

22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 M. Roemer 共著 18 切 判/ 194쪽 高級洋裝/5,000원

23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18 切 判/ 306쪽 高級洋裝/5,000원

24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18 切 判/ 204쪽 高級洋裝/3,500원

25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朴埈卿 共著 18 切 判/ 166쪽 高級洋裝/3,500원

26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18 切 判/ 198쪽 高級洋裝/4,000원

27.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林栽煥 共著 18 切 判/ 250쪽 高級洋裝/4,000원

28 纖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18 切 判/ 180쪽 高級洋裝/3,500원

29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18 切 判/ 192쪽 高級洋裝/4,000원

30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18 切 判/ 470쪽 高級洋裝/6,400원

31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宋丙洛 編 18 切 判/ 410쪽 高級洋裝/6,000원

32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18 切 判/ 272쪽 高級洋裝/4,500원

33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18 切 判/ 236쪽 高級洋裝/4,000원

34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E.S. Mills 共著 18 切 判/ 270쪽 高級洋裝/4,500원

35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18 切 判/ 306쪽 高級洋裝/5,000원

36 韓國工業化패턴과 그 要因
金光錫 著 18 切 判/ 272쪽 高級洋裝/4,000원

37 保健醫療資源과 診療生活圈
延河淸 金學泳 共著 18 切 判/ 336쪽 高級洋裝/5,500원

38 韓國의 敎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N.F. McGinn 外 18 切 判/ 272쪽 高級洋裝/4,500원

39 貿易・外援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田英鶴 譯 18 切 判/ 256쪽 高級洋裝/4,000원

40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414쪽 高級洋裝/6,000원

41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384쪽 高級洋裝/5,000원

42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 1910~75*
A. Keidel 著 18 切 判/ 268쪽 高級洋裝/4,500원

43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潘性紈 D.H. Perkins 共著 18 切 判/ 396쪽 高級洋裝/6,000원

44 需給構造와 物價政策
李 烘 著 18 切 判/ 288쪽 高級洋裝/5,000원

45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司空 壹 L.P. Jones 共著 18 切 判/ 410쪽 高級洋裝/6,000원

46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清 著 18 切 判/ 214쪽 高級洋裝/4,000원

47 韓國 經濟·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E.S. 메이슨 外 18 切 判/ 530쪽 高級洋裝/6,800원

48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李天杓 著 18 切 判/ 228쪽 高級洋裝/4,000원

49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朱鶴中 著 18 切 判/ 432쪽 高級洋裝/7,000원

50 國民經濟와 福祉年金制度
延河清 閔載成 共著 18 切 判/ 428쪽 高級洋裝/7,000원

51 技術革新의 過程과 政策
金仁秀 李軫周 共著 18 切 判/ 402쪽 高級洋裝/7,000원

52 韓國의 經濟開發과 人口政策
R. 레페토 金善雄 外 18 切 判/ 328쪽 高級洋裝/5,000원

53 韓國의 金融發展：1945～80
D.C. 콜 朴英哲 共著 18 切 判/ 334쪽 高級洋裝/5,600원

54 韓國의 賃金構造
朴烜求 朴世逸 共著 18 切 判/ 440쪽 高級洋裝/5,200원

55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金光錫 朴埈卿 共著 18 切 判/ 238쪽 高級洋裝/5,400원

56 轉換期의 韓國經濟와 金融政策
金重雄 南相祐 共著 18 切 判/ 354쪽 高級洋裝/5,600원

57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延河清 著 18 切 判/ 348쪽 高級洋裝/4,200원

58 地方財政調整制度와 財源配分
李啓植 著 18 切 判/ 280쪽 高級洋裝/5,200원

59 벤처캐피탈의 役割과 課題
姜文秀 著 18 切 判/ 236쪽 高級洋裝/4,400원

60 家計貯蓄과 租稅政策
李啓植 著 18 切 判/ 366쪽 高級洋裝/8,000원